

# 백서 [ I ]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1. T/F 구성현황

2. 사법농단 일지

3. T/F 회의 일지

4. 법원 조사보고서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 간 사

2018년 10월 27일 새벽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2017년 3월 초순경 언론이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겸임해제 사건을 보도하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1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은 실질적인 조사는 하지도 않고 조사 시늉만 하였다.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그해 11월에 대법원은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원에서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당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상조사위원회는 관련 자료의 입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8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였고 그해 5월 25일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른바 대법원 3차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상당했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은 국민들의 실망과 한탄과 우려만을 낳았다. 특별조사단이 그 조사내용을 공개하는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국민들은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믿었으나 대법원은 결국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민변은 2018년 5월 25일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는 직후에 50여 명의 회원들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를 구성하였다. T/F는 먼저 사법농단 관련 전체 사건들에 대하여 법률적인 분석과 해설을 한 '이슈리포트'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슈리포트는 언론에 배포하는 용도였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참고하기를 바랐다.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이슈리포트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전언이 있었다.

사법농단 수사의 1차적인 어려움은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이었다. 수사 단초로서의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통상 90%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사법농단 수사에서는 발부율이 10% 미만이었다. 10%의 영장발부율도 그나마 '사법행정왜곡' 사건에 대하여 발부된 것이고 '재판관여' 사건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발부율은 1% 정도였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은 영장전담판사들이 전면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형국이 되었다. 심지어 유해용 변호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들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즉시 폐기처분하였고,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휴대폰을 파괴하거나 폐기처분하였다. 법원의 전, 현직 판사들은 한몫이 되어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폐기하고 각종 영장을 기각하면서 국민을 기만하였다.

이에 T/F에서는 민변 역사상 최초로 1인 시위를 결정하였다. 민변은 2018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동문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여 10월 31일까지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변호사들에게 1인 시위는 그리 친숙하지 않았다. 경험을 해본 변호사들도 있었지만 상당수 변호사들

은 1인 시위를 처음으로 하였다. 더욱이 그 장소가 일상 재판을 하러 다니는 법원이었으므로 마음이 불편 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음으로 양으로 이를 격려해주는 판사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많은 위로가 되었다. 민변 사상 처음으로 연인원 1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1인 시위에 동참하였다. 지부에서도 독자적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민변 회원들이 사법농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굳센 의지로 1인 시위를 이어가던 와중에 드디어 임종현이 구속되었다. 임종현은 원세훈 댓글공작 사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범의노조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사건 등 사법농단의 핵심적 지위에 있었기에 그의 구속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2019년 1월 24일 새벽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판사들은 엘리트 집단으로 통칭된다. 늦은 밤까지 서초동의 거대한 법원 건물은 불빛이 꺼질 줄을 모른다. 판사들은 그 불빛을 정의의 나침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또한 자부심을 느꼈을 터다. 1990년대 중반부터 법조비리의 대책으로 법원은 판사들과 변호사들을 포함한 일반인과 사이에 장벽을 치기 시작하였다. 변호사가 판사를 방문할 때에는 방문대장에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음에는 허가를 받으라고 하였고 이윽고 유리문으로 막아버렸다. 유리장벽이 변호사와 판사들 사이의 비리를 막는 장치라고 한다면 판사들은 다른 방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더 지속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 상고법원의 방안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올바른 방법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실행 방법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방안만을 절대시하였고 심지어 이를 위하여 국가권력에 아부하고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사법농단의 매듭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부터 풀어야 한다. 판사들은 수사를 하는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누가 감히 누구를 수사하느냐는 반발을 하였다. 검찰이 순수하고 결점이 없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검찰의 문제는 검찰개혁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법원은 통상 90%를 상회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보여왔다. 법원은 압수수색에 있어서 피의사실 '관련성'의 개념을, ① 압수수색시점 시점으로, ②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③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④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라면,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왔다. 그것이 사후적으로 전혀 압수수색의 계기가 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환부 내지 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오직 사법농단 사건 관련하여만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혹은 '압수대상 물건이 존재할 개연성이 없다'는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적어도 법원과 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에서만은 최소한의 기본을 지켜야 했다. 법원 판결의 정당성은 헌법이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 판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기초하는 것

이다.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 존립의 근거가 되는 반면 이러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하여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불가침의 독립성을 헌법이 보장하는 이유는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요 특징은 이들에게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판 결과는 사법농단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예견하였던 바이다. 민변은 이러한 예견에 근거하여 특별재판부에서의 재판을 요구해왔다. 다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국면이다.

민변은 또한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였다. 2021년 2월 4일 국회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사법농단 판사들은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처분이 정직 1년에 불과해 설령 징계절차를 통해 최고 정직 1년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들이 언제든지 재판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을 통해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직 피해자들의 구제까지 험난하고 기나긴 여정이 남아 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해 사법농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은 혼신의 노력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결국은 법원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분들은 사법개혁의 소망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 백서가 사법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되었으면 한다.

2021. 5. 10.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변호사 천 낙 봉

# 목 차

1. T/F 구성현황 .....	백서 [ I ]
2. 사법농단 일지 .....	백서 [ I ]
3. T/F 회의 일지 .....	백서 [ I ]
4. 법원 조사보고서 .....	백서 [ I ]
5. 사법농단 관련 문건 .....	백서 [ II ]
6. 공동고발장 .....	백서 [ III ]
7. 이슈페이퍼 .....	백서 [ III ]
8. UN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 긴급청원 .....	백서 [ III ]
9. 사법농단 관여 법관 시민사회 탄핵소추안 .....	백서 [ IV ]
10.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 법안 .....	백서 [ V ]
11. 사법농단의 기록 [민주변론 기고] .....	백서 [ V ]
12. 사법농단 관련 토론회 등 자료집 .....	백서 [ VI ]
13. 성명, 논평 등 .....	백서 [ VII ]
14. 사법농단 관여 법관 형사 판결문 .....	백서 [ VIII ]
15. 법관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 .....	백서 [ IX ]

1

TÆ 구성현황

# T/F 구성현황

## □ T/F 구성 경위

- 2017. 3.경 언론 보도를 통해 사법부 내 블랙리스트 문제로 거론되던 사법농단 사태는, 세 차례의 법원 내 자체 조사를 거치면서 민간 사찰 의혹, 재판 거래 의혹으로 확대되었음.
-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이라 함)이 2018. 5. 25.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전사회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음.
- 민변은 특별조사단이 구성되기 이전부터 법원 내의 조사 기구에 조사의 투명성과 철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객관적 외부인사의 참가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으나, 대법원은 단 한 명의 외부 인사 없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여 법관 6명만으로 위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였음.
- 민변은 위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이를 입수하여 검토한 후, 기본적 입장을 담은 논평의 발표(2018. 5. 28.), 피해당사자 간담회(2018. 5. 29.) 및 그 결과를 담은 기자회견(2018. 5. 30.) 등을 사무처 단위에서 진행하였음.
- 민변은 2018. 6. 4. 제31차 사업연도 제1차 집행위원회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별도의 단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하여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이하 'T/F'라 함)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음. 이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대응은 주로 T/F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 □ T/F 구성원

- 집행부: 단장 천낙봉, 부단장 김지미, 총괄간사 최용근
- 구성원: 권태윤, 김남준, 김성주, 김준우, 김지은, 김진, 김차곤, 김태욱, 류신환, 박수빈, 박인숙, 백철, 서기호, 서채완, 서희원, 성창익, 송상교, 신건호, 신윤경, 심재섭, 심재환, 안지희, 염형국, 오민애, 오용택, 오지원, 오현정, 우지연, 이상희, 이선경, 이종희, 이주희, 임운태, 장보람, 전정환, 전종원, 조미연, 조민지, 조지훈, 천지륜, 하주희, 허진선, 황준협
- 팀: 사법농단 특별법팀(염형국 등 9명), 탄핵팀(서기호 등 12명)

2

사법농단 일지



# 사법농단 일지

## - 사법농단 의혹 제기부터 첫 번째 유죄 판결까지

일 자	내 용
<b>2017년</b>	
1. 23.	•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2. 9.	• 법원행정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를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으로 겸임인사 발령
2. 13.	• 법원행정처,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의 중복 가입 금지 원칙을 들어 법관들에게 중복으로 가입한 연구회를 정리하라고 공지
2. 15.	• 김형연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탈퇴 조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견제 조치'라는 취지로 법원 내부망에 공개 질의 •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탄희 판사에게 '공개질의 반대논리 연구회 전파' 요구
2. 16.	• 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2. 20.	•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탈퇴 조치 시행 유보 공지 • 이탄희 판사에 대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겸임발령 해제
3. 5.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에 대하여 견제를 지시했으며,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 7.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법원 내부망에 '이탄희 판사 법원행정처 근무 원하지 않아 겸임해제' 해명글 공지
3. 8.	• 김형연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진상조사 청원문 게시
3. 9.	• 전국법원장간담회, 조사기구 구성 및 조사 논의
3. 13.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조사권 위임
3. 22.	•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개시(위원장 : 이인복 전 대법관)
3. 24.	•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착수
4. 7.	•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4. 18.	• 진상조사위원회,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4. 24.	• 진상조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진상조사 결과 부의
5. 15.	•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및 추가조사 요구
5. 17.	• 양승태 대법원장, 유감 표명 및 전국 단위 판사회의 개최 지원 약속
5. 23.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퇴임 및 소부 복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5. 29.	• 서울중앙지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6. 19.	•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및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법관회의 상설화' 등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
6. 27.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징계 및 고영한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 주의 조치 권고
6. 28.	•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에 우려 표명

일 자	내 용
7. 5.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유감 표명
7. 18.	•김소영 신임 법원행정처장 임명
7. 20.	•최한돈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조사소위 위원장(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의견 개진 후 사직서 제출
7. 24.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유감 표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및 조사권 위임 재촉구 성명 의결
8. 10.	•대법원 징계위원회,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감봉 4개월 징계 결정 •오현석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조사소위 위원(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하며 금식기도 시작
8. 21.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
9. 11.	•전국법관대표회의 3차 회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 결의
9. 25.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9. 12. 국회 청문회, 9. 21.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9. 28.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 면담
10. 16.	•김명수 대법원장, 진상조사위원회 면담
10. 27.	•대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논의
11. 3.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11. 13.	•김명수 대법원장,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중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 조사권 일체 위임
11. 20.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착수
12. 14.	•민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법원개혁도 없다' 성명 발표
<b>2018년</b>	
1. 5.	•추가조사위원회,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대면조사
1. 12.	•추가조사위원회, 전·현직 법원행정처 기획재1심의관 대면조사
1. 22.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민변,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성명 발표
1. 23.	•대법관 전원, 원세훈 항소심 판결 관련 청와대와의 교감설을 부인하는 입장문 발표
1. 24.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후속조치 기구 구성 입장 표명
1. 25.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퇴임 및 소부 복귀
1. 29.	•수원지방법원 판사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성역 없는 조사 촉구
1. 31.	•민변,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성명 발표 /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2. 1.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취임
2. 12.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 구성 (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2. 22.	•대법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의결
2. 23.	•특별조사단 1차 회의, '비밀번호 파일' 및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 조사 착수
4. 11.	•특별조사단 2차 회의, 사찰 의혹파일 406개 선정하여 추가조사
5. 25.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발표
5. 28.	•민변,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처' 논평 발표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성명 발표
5. 29.	•KTX 해고승무원, 대법원 대법정 점거농성 •사법농단 사태 피해당사자 및 피해단체·관련사건 대리인/변호인, 긴급간담회
5. 30.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반값등록금운동본부·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일 자	내 용
	<p>회·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긴급조치피해자모임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전교조·민주노총법률원·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민변,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p>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담화 발표: 관련자 징계의 신속한 진행,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 공개, 형사상 조치는 추후 사발위·전국법원장간담회·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의견 종합 후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제도 마련(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인·물적 분리,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조속히 시작),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등</li> <li>● 민변,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중 '민변대응전략' 문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li> <li>● 노동법률단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성명 발표</li> <li>● 더불어민주당,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제안</li> <li>● 피해당사자 단체 등, 대법원 앞 1인 시위 시작</li> </ul>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의혹 전면 부인 입장 발표</li> <li>● 전국법관대표회의, 의혹 문건 원문 제출 요청</li> <li>● 참여연대,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 410개 문건 중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 손상된 D등급 파일 6개를 제외한 404개 문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li> </ul>
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구성 (단장: 천낙봉 부회장)</li> </ul>
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 간담회; 위원 대다수가 수사 불가피 의견 피력</li> <li>●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 기재 410개 문건 중 98개 문건만을 언론 통해 공개</li> <li>●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서울중앙지검 2018형제47348호)</li> <li>●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농성단, 기자회견 및 철야 농성 시작</li> </ul>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법원장간담회 개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조단의 결론을 존중하며 사법부에서 고발·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의 의견 논의</li> <li>●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UN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조사관" 진정서 제출 및 기자회견</li> <li>● 민변,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진력하라. - 현 시기 우리 모임의 3대 요구에 대하여' 논평 발표</li> <li>●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기자회견</li> </ul>
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변,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410개 문건 전부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청구</li> </ul>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 및 집회</li> <li>● 대법원, 민변의 5. 30.자 '민변대응전략' 문건 정보공개청구 불허 결정(비공개결정)</li> <li>●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문건의 추가 공개는 없다"는 입장 개진</li> <li>●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는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li> <li>2. 우리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관한 신뢰 및</li> </ol> </li> </ul> </li> </ul>

일 자	내 용
	<p>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p> <p>3. 우리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p> <p>4.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긴급 기자회견</li> </ul>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변, 대법원의 2018. 6. 11.자 '민변대응전략'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li> <li>• 민변,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논평 발표</li> <li>•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법농단 410개 파일, 국민이 직접 봐야 합니다 - 국민이 직접하는 정보공개청구' 카드뉴스 배포</li> <li>•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대법관 의견 수렴(대법관 간담회)</li> </ul>
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변 사법농단TF, 1호 카드뉴스 배포</li> </ul>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담화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자료 영구보존</li> <li>- 관련자 중 일부의 징계 및 업무 배제</li> <li>-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 불가</li> <li>- 수사 진행시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 자료의 제공 및 협조 입장</li> </ul> </li> <li>• 대법관 13명, 재판거래 의혹 근거 없다는 취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 발표</li> <li>• 민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아쉬움을, 대법관들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논평 발표</li> </ul>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법률가능성단·민주법연·민변·민주노총법률원·피해자 단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li> <li>•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사태 주요이슈 심층 분석 기자회견</li> <li>•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서 특수1부로 재배당, 본격 수사 착수</li> <li>•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능성단, 철야농성 종료</li> <li>• 대법원, 민변의 6. 8.자 410개 문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일부 비공개결정(목록만 공개)</li> </ul>
6.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대법원에 의혹 관련자 하드디스크 등 자료 임의제출 서면요청</li> </ul>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 홍보심의관, 'KTX 여승무원 사건 관련 정리' 자료 배포 - "재판연구관실에서 집단 지성에 의해 심층연구와 검증을 거친 것"</li> <li>•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출국금지</li> </ul>
6.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변·민주노총·416연대·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민주법연 제안,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 토론회</li> <li>• 민변, '대법원은 KTX 승무원들을 두 번 죽이지 마라! - 대법원의 KTX 승무원 사건 해명 자료에 대한 논평' 발표</li> <li>• 검찰, 참여연대 임지봉 교수 고발인 조사</li> <li>• 민변 사법농단TF, 2호 카드뉴스 배포</li> </ul>
6.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행정처, 2018. 6. 11.자 '민변대응전략'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li> <li>• 검찰, 민주법연 조승현 교수 고발인 조사</li> </ul>
6.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본 사법개혁방안 긴급 토론회' 개최</li> </ul>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변 사법농단TF,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이슈페이퍼(1) 발간</li> </ul>

일 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연대, 법원행정처 대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li> <li>●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관련 410개 파일 원본 등 검찰 제출</li> <li>●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대법관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확인</li> </ul>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행정처, 디가우징 문제에 대해 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퇴임으로 관련 규정(‘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및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 등의 처리 후 보관</li> <li>-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제27조, 제30조, 제31조와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통상의 업무절차에 따라 진행</li> <li>-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그 직무의 특성상 임의로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제27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장비로서, 제30조에 따라 불용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제31조에 따라 완전히 소거조치를 하기 위하여 디가우징</li> <li>- 종전 퇴임 대법관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도 디가우징의 방법으로 완전히 소거 조치를 하여 왔음</li> </ul> </li> <li>● 민변,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논평 발표</li> </ul>
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변 사법농단TF,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이슈페이퍼(2) 발행</li> <li>●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제1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li> </ul>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상고법원 반대 변협 예산지원 중단의혹에 ‘사실무근’ 반박</li> </ul>
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하드디스크 등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법원행정처와 합의</li> <li>●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 통신망에 ‘검찰 수사팀이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 입회 아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런 협조는 하드디스크 내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 게시</li> <li>● 민변 사법농단TF,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이슈페이퍼(3) 발행</li> </ul>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변 사법농단TF, ‘익명 인터넷 카페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동향 파악’ 이슈페이퍼(4) 발행</li> </ul>
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변 사법농단TF,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5) 발행</li> <li>● 민변 사법농단TF,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의 이메일 서버(이메일 수·발신 내역 포함) 및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li> <li>2.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및 직장/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컴퓨터 등 전산장치 포함), 소환 조사, 소환 불응시 신병 확보 조치</li> <li>3. 디가우징과 같은 증거인멸 시도에 관한 수사 : 특히 디가우징 장치의 사용기록부 확보, 디가우징 지시자 및 수행자에 대한 수사,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 원본의 확보</li> <li>4. 사법농단 문건 작성 지시자에 대한 수사</li> <li>5. 김민수 전 심의관의 공용서류무효 혐의 또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li> <li>6. 재판 심증 노출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li> <li>7. 민간인 사찰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li> </ol> </li> </ul>

일 자	내 용
	8.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간 재판 내용에 대하여 소통한 사안 관련,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수사 9. 제3자에 대한 소 제기 유도 등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안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10. 재판거래 의혹 사안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대법원 청사 내에서 의혹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시작</li> </ul>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li> </ul>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송승용 부장판사 참고인 조사</li> <li>●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대법원의 이정현 의원 로비 의혹 반박</li> <li>● 검찰, 대법원에 이정현 의원과의 접촉 상황에 대한 자료 추가 요청</li> <li>● 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6) 발행</li> </ul>
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기획조정실 소속 판사 2명 등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총 6명의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 돌입</li> <li>● 민변 사법농단TF,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이슈페이퍼(7) 발행</li> </ul>
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등 참고인 조사</li> </ul>
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관련 이재정 의원 및 강제징용 피해자 참고인 조사</li> </ul>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인사이동</li> </ul>
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사찰 피해 의혹' 관련 민변 전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li> <li>● 민변 사법농단TF,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8) 발행</li> </ul>
7.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변 사법농단TF, 법원행정처 작성 410개 문건 비공개 결정에 불복 행정심판 청구</li> <li>● 검찰, 양승태·박병대 하드디스크 확보 및 복구작업 돌입</li> </ul>
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양승태 비판 글 강제 삭제 고소사건 수사 착수</li> <li>●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 논의</li> <li>● 민변 사법농단TF,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9) 발행</li> </ul>
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긴조 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한 김기영 판사에 대한 불이익 정황 포착 및 수사 착수</li> <li>● 검찰, 부산지법 판사 비위혐의 관련 관계자 조사</li> </ul>
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 법관징계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연루 판사 13명 징계 여부 첫 심의</li> <li>● 검찰, 임종헌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원세훈 사건 관련 문건 확인</li> <li>● 검찰, 양승태·박병대·이규진·김민수 압수수색영장 청구</li> <li>● 민변 사법농단TF, '철도노조 파업, KTX 승무원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10) 발행</li> </ul>
7.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양승태 등 압수수색영장 기각</li> </ul>
7.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임종헌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li> </ul>
7.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임종헌 USB 확보</li> </ul>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미공개 문건 228개 원문 공개 요구</li> <li>● 민변 사법농단TF,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나서라' 논평 발표</li> </ul>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양승태·박병대 등 출국금지</li> </ul>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변 사법농단TF, '쌍용자동차, 콜텍 정리해고,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사건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11) 발행</li> </ul>
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임종헌 사무실 등 압수수색</li> <li>●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li> </ul>

일 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li> </ul>
7.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변 사법농단TF, '국립대학교 기성희비 사건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12) 발행</li> <li>•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410건 전부 공개 결정</li> </ul>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변 사법농단TF, '전교조 시국선언, 김형근 교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13) 발행</li> <li>• 대법원, '재판개입 의혹' 일제 강제동원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li> <li>• 법원,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기각</li> <li>• 민변 과거사위원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발표</li> </ul>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법원에 '부산 법조비리 사건' 자료 세 번째 임의제출 요구</li> </ul>
7.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검찰의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기록 열람복사 요청 거부</li> <li>• 민변 사법농단TF, '키코 사건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14) 발행</li> <li>•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등 문제 된 문건 410개 전체 공개</li> </ul>
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li> </ul>
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취임</li> <li>• 법원, 강제징용 문건 작성 판사 및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영장 기각,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 발부</li> <li>• 검찰, 외교부 압수수색</li> <li>• 검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거래' 관련 수사 착수,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 참고인 조사</li> <li>• 민변 사법농단TF,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15) 발행</li> </ul>
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사법농단 관련 마산지원 김민수 부장판사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li> </ul>
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임효량 판사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li> </ul>
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현기환 전 정무수석 피의자 소환 조사</li> </ul>
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김민수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조사</li> </ul>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기춘 전 비서실장, 검찰 소환 불응</li> </ul>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 '사찰 피해' 차성안 판사 관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추가 공개</li> <li>• 법원, 전·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li> </ul>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원세훈 문건 작성' 정다주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li> </ul>
8.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일제 강제징용 재판 거래'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소환 조사</li> </ul>
8.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박상언 전 심의관 소환 조사</li> </ul>
8.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이규진 부장판사 사무실 및 최희준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li> </ul>
8.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헌재 문건 유출' 최희준 부장판사 소환 조사</li> </ul>
8.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li> <li>•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li> </ul>
8.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li> </ul>
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수사기록 유출' 나상훈 판사 소환 조사</li> </ul>
8.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명재권 부장판사 영장전담 투입</li> <li>• 전교조, 김기춘, 임종현 등 소송개입 의혹 관련자 고소</li> <li>• 민변 사법농단TF, 사법농단 관련 영장기각 규탄 1인 시위 시작</li> </ul>
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고영한 등 압수수색 영장 재차 기각</li> <li>• 검찰, 고영한 출국금지</li> </ul>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통진당 소송개입' 관련 대전지법 방창현 부장판사 소환</li> </ul>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정황 확인</li> <li>• 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개편 논의</li> </ul>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li> </ul>

일 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강제징용 소송 개입' 관련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압수수색영장 기각</li> </ul>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소환 조사</li> <li>• 검찰,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li> <li>• 법원, 박병대·임종헌 압수수색 영장 기각</li> </ul>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개편 및 지방법원장 임명제도 개혁 논의</li> </ul>
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대법원 기밀 유출' 관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소환 조사</li> </ul>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유해용 압수수색 영장 기각</li> <li>• 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안 의결</li> </ul>
9.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유해용 전 연구관 유출문건에 한해 사무실 압수수색</li> </ul>
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유해용, 이민걸, 김현석 소환조사</li> <li>•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li> <li>• 민변 사법농단TF, "'셀프' 법원 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논평 발표</li> </ul>
9.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수사 협조 당부</li> <li>•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련 '관련자 문책' 언급</li> <li>• 민변,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논평 발표</li> <li>• 민변 사법농단TF, '서기호 전 판사 연임거부 취소소송 재판개입' 이슈페이퍼(16) 발행</li> </ul>
9.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전교조 재판거래 의혹'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 변호사 사무실, 박상언 부장판사 사무실, 방모 전 전주비법 판사 사용 PC 압수수색</li> <li>• 검찰, 임종헌 전 차장 휴대전화 임의제출 확보</li> </ul>
9.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대법 문건 유출' 유해용 구속영장 청구</li> </ul>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수사기밀 유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환</li> <li>• 검찰, 조운선 전 정무수석 강제징용 재판 관련 참고인 조사</li> </ul>
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비선 진료 소송 개입 및 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구속영장 기각</li> <li>•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전산망을 통해 법원행정처 폐지 공지</li> </ul>
9.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변 사법농단TF,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논평 발표</li> </ul>
9.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 영장전담 보임, 총 영장전담 판사 5명 구축</li> </ul>
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양승태 차량 압수수색, 자택 서재에서 USB 확보</li> <li>• 검찰,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li> </ul>
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노조, '노조 사찰'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li> </ul>
1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li> </ul>
1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이메일 압수수색</li> </ul>
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기각</li> <li>• 검찰, 신광렬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li> </ul>
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헌정 현재 사무처장,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 결정하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의견 표명</li> </ul>
1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견책' 징계</li> <li>• 박상기 법무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수사가 금년 내로 끝날지 확실할 수 없다'고 답변</li> </ul>
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소환 조사</li> <li>• 재판거래 피해자 단체,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고발</li> </ul>
10.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임종헌 전 차장 재소환</li> </ul>
10.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임종헌 전 차장 3차 소환 조사</li> </ul>



일 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특별재판부 도입에 위헌 논란' 제기</li> <li>•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검찰의 영장기각사유 공개 부적절' 의견 표명</li> <li>• 임성근 판사, 징계 불복 소송</li> </ul>
10. 19.	• 민변 사법농단TF,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발표
10. 20.	• 검찰, 임종헌 전 차장 4차 소환 조사
1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임성근 부장판사 쌍용차 재판 개입 정황 확인</li> <li>• 검찰, 세월호 명예훼손 재판에 청와대, 법원행정처 개입 정황 포착</li> <li>•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인사자료 일부 검찰 제출 방침</li> </ul>
10. 23.	• 검찰,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
10.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퇴임시 대법원 기밀자료 유출 정황 포착</li> <li>• 법원, 임종헌 전 차장 영장실질심사</li> </ul>
10. 27.	• 법원,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
10. 28.	• 검찰, 임종헌 전 차장 소환조사
10. 29.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국회 법사위에 '임종헌 고발' 요청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권순일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 6명 탄핵' 국회에 공식 제안 (1차)</li> <li>•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li> </ul>
11. 1.	• 국회, 임종헌 고발요청서 법사위 접수
11. 3.	• 검찰, 임종헌 구속기간 연장
11. 6.	• 검찰, 법원행정처로부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인사자료 확보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발전위원회, 사법행정회의 구성 법원 개혁안 공개</li> <li>• 검찰, '강제징용 소송 개입' 차한성 전 대법관 소환 조사</li> </ul>
11. 8.	• 대법원,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위헌 의견서 국회 제출
1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민일영 전 대법관 소환조사</li> <li>•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3부 신설</li> </ul>
11. 11.	• 검찰,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참고인 조사
11. 12.	• 검찰, 광병훈 전 법무비서관, 한모 변호사 김앤장 사무실 압수수색
11. 13.	•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 판사 탄핵 내용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 이메일 발송
11. 14.	• 검찰, 임종헌 전 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기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30여개 죄명으로 구속기소
1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임종헌 사건 신설 형사부 배당</li> <li>• 민변 사법농단TF,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성명 발표</li> </ul>
1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박병대 전 처장 소환 조사</li> <li>•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 가결</li> </ul>
11. 20.	• 검찰, 박병대 전 처장 재소환
11. 21.	• 법원,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연내 징계 예정
11. 22.	• 검찰, 박병대 전 처장 3차 소환 조사
11. 23.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 조사
11. 24.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재소환
11. 25.	• 검찰, 박병대 전 처장 4차 소환 조사
11. 27.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3차 소환 조사
11. 28.	• 검찰, 양승태 전 비서실장 김정만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11. 30.	• 검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추가 압수수색
12. 3.	• 검찰, 박병대, 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일 자	내 용
12. 4.	● 검찰, 양승태 사법부 통진당 소송 배당 조작 정황 포착
12. 5.	● 검찰, 양승태 사법부 현재 기밀 김앤장 유출 정황 포착
12. 7.	● 법원, 박병대, 고영한 구속영장 기각 ● 민변, “법원은 진정 ‘임종헌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인가.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논평 발표
12. 9.	● 검찰, ‘통진당 소송 개입 의혹’ 이인복 전 대법관 소환 조사
12. 10.	● 법원, 임종헌 공판준비기일
12. 12.	●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자체 개혁안 공개
12. 13.	● 검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 소환조사 ● 검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추가 압수수색
12. 14.	● 민변,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진정한 사법개혁안이 아니다’ 논평 발표
12. 16.	● 검찰, 서기호 전 의원 2차 참고인 조사 - 임종헌 전 처장이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관사에게 전화를 건 정황 확인
12. 18.	●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징계회부 법관 13명 중 7명 징계처분 ● 민변 사법농단TF,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 규탄한다 - 국회는 하루빨리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논평 발표
12. 20.	● 검찰,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소환조사
<b>2019년</b>	
1. 7.	● 검찰,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법원 행정처 개입 의혹’ 관련 이동원 대법관 서면조사 ● 검찰, 강제징용소송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로 외교부에 전달된 정황 포착 ●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사법농단 검찰 수사 비판’ 사표 제출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조사
1. 8.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조사
1. 9.	● 검찰, 양승태 사법부와 강제징용 소송 등을 두고 재판거래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조사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거부로 무산
1. 11.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의 표명 ●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판사 8명 정직, 감봉 등 징계 집행 ● 민변 사법농단TF,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책임 추구를 요구한다’ 논평 발표
1. 14.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2차)
1. 15.	● 검찰, 정치인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임종헌 추가 기소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3차)
1. 17.	● 법원, 사법농단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재임용 탈락
1. 18.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및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혐의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 민변,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 행정 개혁에 나서라’
1. 23.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1. 24.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박병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 민변 사법농단TF,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논평 발표

일 자	내 용
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li> <li>• 검찰, 법원행정처 내 수사 관련 포렌식 작업 마무리</li> </ul>
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적부심 포기</li> </ul>
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종헌 전 차장 변호인, 첫 공판 기일 전 전원 사임</li> </ul>
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임종헌 전 차장 불출석으로 재판 연기</li> </ul>
1.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김종복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 10명 탄핵' 국회에 공식 제안 (2차)</li> </ul>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임종헌 전 차장 소환 조사</li> <li>• 민변 사법농단TF,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입장문 발표</li> </ul>
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소환</li> </ul>
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등 47개 범죄사실로 기소: 주된 혐의는 2013~16년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혹, 2013~2017년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정책 등에 비판적인 판사 16명(중복 31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검토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 판사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영장전담부장판사를 통해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 등의 사본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 등</li> <li>• 검찰,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기소</li> </ul>
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중앙지법, 양승태 사건 형사35부(박남천 부장) 배당</li> <li>•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 내부망에 '사법농단 관련 판사 추가 징계 및 재판 배제 검토' 의견 게시</li> </ul>
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행정법원,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특조단 보고서 중 404개 파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li> </ul>
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신청</li> </ul>
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기일 진행</li> <li>• 대법원,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 축소 및 일부기능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관</li> </ul>
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초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 10명 불구속 기소.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사실 대법원에 통보</li> <li>• 법원, 양승태 보석청구 기각</li> </ul>
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변 사법농단TF,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아직도 갈 길 멀다 - 검찰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추가 기소에 부처' 성명 발표</li> <li>• 법원행정처, 검찰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의 비위통보에 관하여 확인 작업 착수</li> </ul>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판사 6명(임성근, 신광렬, 이태종, 심상철, 조의연, 성장호) 업무배제 결정(이민걸, 방창현 판사는 이미 정직 중)</li> </ul>
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임종헌 첫 공판기일. 공판준비절차와 달리 대부분 검찰 진술조서 부동의</li> </ul>
3.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양승태 첫 공판기일. 증거 대부분 부동의</li> <li>•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부분 공소장 변경 요구</li> </ul>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임종헌 사건에 정다주 판사 증인 출석</li> </ul>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증인 채택</li> </ul>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용 전 재판연구원, 검찰 조서 증거능력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li> </ul>

일 자	내 용
4. 16.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성명 발표
4. 17.	•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임종헌 사건에 시진국 판사 증인출석
4. 27.	•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유해용 문건 유출 사건에 임종헌 증인 채택
4. 30.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양승태 사건에 임종헌, 이민걸 등 증인 채택
5. 9.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현직 판사 10명 추가 징계 청구
5. 10.	• 민변 사법농단TF, '대법원장의 뒤늦고 소극적인 징계청구,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로 볼 수 없다' 논평 발표
5. 13.	•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
5. 19.	• 법원, 임종헌 전 차장 구속기간 연장 결정
5. 29.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양승태 사건 1차 공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및 민변 사법농단TF,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업 출범 •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임종헌 사건에 현재 파견판사 증인 출석 내부정보 임 전 차장에 전달 시인
6. 2.	•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6. 5.	•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유해용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6. 13.	•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 •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이 2019. 3. 5.경 대법원에 통보한 현직법관 66명의 명단 및 비위통보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
6. 24.	• 유해용,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312조 제1, 2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6. 27.	•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
6. 28.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양승태 사건에서 임종헌 USB 증거능력 인정
7. 2.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임종헌 전 차장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블로그에 강제징용 판결에 관하여 회교적 해결을 위해 시간을 번 것이라는 의견 게재
7. 5.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보고서 증거 채택, 양승태 피고인의 위법 수집증거 주장 반대 입장 확인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 발표
7. 8.	• 임종헌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유해용 재판에 증인 출석, 사실상 증언 거부
7. 10.	• 서울고법,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사건 형사3부로 재배당
7. 17.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재판부 직권 보석 가능성 언급
7. 19.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양승태 피고인의 퇴정 명령 요청에 재판 종료
7. 22.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양승태 피고인에 대해 주거, 통신 제한 및 도주 금지 등 조건으로 직권 보석결정 • 민변 사법농단 TF, '양승태 피고인에 대한 직권보석 결정에 부처' 논평 발표
7. 26.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시진국 전 심의관 상고법원 관련 보고서 대법원장 전달 확인 증언
7. 28.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 계획
8. 6.	•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판부에 특별공판팀 구성
8. 19.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영장전담 수사기밀 보고 관련 피고인 첫 공판
8. 23.	• 검찰,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주4회 재판 요청
12. 16.	• 검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0년

일 자	내 용
1. 13.	•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1심 무죄 선고
2. 13.	• 법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 무죄 선고
2. 14.	•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무죄 선고
2. 17.	• 대법원, 임성근·신광렬·이민결 등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 재판부 복귀 인사
2. 19.	• 민변, '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 부당성에 대하여 -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라' 논평 발표
3. 13.	• 법원,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보석 청구 인용
8. 11.	• 이동원 대법관, 임종현 전 차장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민결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국회의원 지휘 확인 소송 항소심 관련 문건을 받은 것은 사실 이나 위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
9. 18.	• 법원, '수사 기밀 누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무죄 선고
10. 8.	• 임성근·이민결 부장판사, 법관 연임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11. 20.	•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 양 전 대법원장 및 박병대·고영한 대법관, 임종현 전 차장 등 8 명과 국가 상대로 3억원 손배소 제기
12. 23.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추진 의사 표명
<b>2021년</b>	
1. 22.	•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 107명,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동의
1. 29.	• 법원,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선고
2. 1.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1명,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 임성근, 코트넷에 글 올리고 탄핵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
2. 4.	• 국회, 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179표, 반대 102표)
2. 5.	• 검찰,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1·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3. 23.	• 법원, 이민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무죄.



3

T/F 회의 일지

# TF 회의 일지

## □ 제1차 회의 / 2018. 6. 5. 19:00

- 참석: 천낙봉, 송상교, 최용근, 서희원, 신윤경, 조미연, 서채완, 장보람, 신건호, 조지훈, 전정환, 서중희, 박수빈, 서기호, 김준우, 김지은, 유정찬, 이상희, 류신환, 전종원, 김세희, 김지미, 심재섭
- 논의사항: TF 구성 보고(2018. 6. 4. 집행위원회에서 TF 구성 결의), 대법원 3차보고서 발표 이후 민변의 대응 공유, TF 운영 기조 논의

## □ 제2차 회의 / 2018. 6. 7. 19:00

- 참석: 천낙봉, 송상교, 최용근, 심재섭, 김성주, 김지은, 김지미, 김세희, 서희원, 조지훈, 신윤경, 신건호, 서기호, 오현정, 유정찬, 안태진(자원활동가), 장설희(자원활동가)
- 논의사항: 업무분장 점검 및 진행 상황 보고, 1인시위 준비 논의, 이슈페이퍼 등 향후 작업 방식 논의, TF 조직 구성 추가

## □ 제3차 회의 / 2018. 6. 14. 12:00

- 참석: 권태운, 오현정, 오지원, 서기호, 신건호, 김지미, 김지은, 조미연, 서중희, 송상교, 신윤경, 천낙봉, 최용근, 서희원, 전종원, 김준우
- 논의사항: 대법원장 입장 발표 임박에 따른 민변의 대응 전략 논의, 기자간담회 준비 논의, 이슈페이퍼 발간 논의, 추가 업무분장

## □ 제4차 회의 / 2018. 6. 22. 18:30

- 참석: 김지미, 서기호, 천낙봉, 심재섭, 조미연, 송상교, 최용근, 김준우, 서희원
- 논의사항: 이슈페이퍼 취합 현황 및 수정본 검토, 이슈페이퍼 배포 계획 논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대응 방향 논의, 10대 수사과제 촉구 필요성 논의,

## □ 제5차 회의 / 2018. 7. 2. 14:00

- 참석: 천낙봉, 최용근, 심재섭, 오민애, 신윤경, 김지미, 전정환, 서희원, 오현정, 서기호, 송상교
- 논의사항: 이슈페이퍼 발간계획 검토, 10대 수사과제 선정 검토, 향후 사업계획(개인별 리포트, 탄핵절차 검토, 특별법 제정) 논의



□ 제6차 회의 / 2018. 7. 12. 14:00

- 참석: 김지미, 서기호, 신윤경, 전정환, 천낙봉, 최용근
- 논의사항: 이슈페이퍼 발간계획 검토,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 공청회 기획안 검토

□ 제7차 회의 / 2018. 7. 19. 19:00

- 참석: 김지미, 김진, 서기호, 송상교, 오현정, 이종희, 전정환, 천낙봉, 최용근
- 논의사항: 이슈페이퍼 발간계획 검토, 법관 탄핵 절차 및 법리 검토, 특별법 초안 검토

□ 제8차 회의 / 2018. 7. 31. 12:00

- 참석: 천낙봉, 장주영, 민경한, 서기호, 최용근, 김진, 송상교, 심재섭, 박인숙, 서희원, 전정환, 이주희, 조미연, 안지희, 신윤경, 김성주, 권태운
- 논의사항: 정보공개청구 관련 논의, 이슈페이퍼 발간계획 검토, 추가공개문건 분석 준비

□ 제9차 회의 / 2018. 8. 3. 12:00

- 참석: 천낙봉, 최용근, 김진, 김지미, 심재섭, 서희원, 전정환, 이주희, 조미연, 안지희, 신윤경, 김성주
- 논의사항: 추가 공개 문건 분석, 긴급 토론회 논의, 압수수색 영장기각 관련 성명 발표 논의,

□ 제10차 회의 / 2018. 8. 17. 12:00

- 참석: 천낙봉, 최용근, 김진, 김지미, 서희원, 조미연, 오용택, 전정환, 박인숙
- 논의사항: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 특별법 발의 확인, 시국회의 사업(국회대응 등) 검토, 이슈페이퍼 발간계획 검토, 긴급 토론회 평가, 향후 과제(탄핵안, 국정감사 대응) 확인

□ 제11차 회의 / 2018. 8. 24. 12:00

- 참석: 천낙봉, 김진, 서희원, 김지미, 조미연, 전정환, 송상교, 최용근, 서기호, 신윤경, 이주희, 조민지, 오용택, 이종희, 심재섭, 김성주, 조지훈
- 논의사항: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2차 시국회의 논의결과 공유, 탄핵소추안 검토, 검찰 수사 관련 대응방안 논의, 영장기각 규탄 1인 시위 논의, 이슈페이퍼 발간계획 검토

□ 제12차 회의 / 2018. 8. 31. 12:00

- 참석: 천낙봉, 서기호, 김진, 이주희, 서희원, 오용택, 권태운, 최용근, 송상교, 심재섭

- 논의사항: 시국회의 5차 집행단체회의 결과 공유, 1인시위 관련 논의, 사법적폐청산 문화제 논의, 신문 광고 관련 논의, 검찰 면담 논의

#### □ 제13차 회의 / 2018. 9. 7. 18:00

- 참석: 권태운, 김지미, 김진, 서기호, 서희원, 송상교, 오현정, 이주희, 심재섭, 전정환, 조미연, 천낙봉, 최용근
- 논의사항: 1인시위 시기 연장 논의, 탄핵팀 진행 경과 보고, 행정심판 관련 논의, 시국회의 주최 광역 지역 순회 토론회 논의, 이슈페이퍼 발간계획 검토, 신문광고 관련 논의, 검찰 면담 논의

#### □ 제14차 회의 / 2018. 9. 13. 12:00

- 참석: 천낙봉, 서기호, 최용근, 송상교, 서희원, 조지훈
- 논의사항: 1인시위 참여 독려 및 외화 방안 논의, 검찰 면담 관련 보고, 행정심판 관련 논의, 시국회의 사업계획 논의

#### □ 제15차 회의 / 2018. 9. 28. 12:00

- 참석: 천낙봉, 김준우, 서희원, 송상교, 전정환, 조지훈, 최용근
- 논의사항: 1인시위 참여 독려 논의, 탄핵팀 진행 경과 보고, 시국회의 사업계획 논의,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소식지 원고 청탁 관련 집필자 선정

#### □ 제16차 회의 / 2018. 10. 12. 18:00

- 참석: 천낙봉, 송상교, 최용근, 김지미, 서기호, 이주희, 전정환, 서희원
- 논의사항: 탄핵팀 진행 경과 보고, 3차 사법농단 시국회의 경과 보고, 국회 엽서 보내기 운동 등 시국회의 사업계획 논의

#### □ 제17차 회의 / 2018. 10. 25. 18:00

- 참석: 천낙봉, 서기호, 서희원, 송상교, 이주희, 전정환, 조미연, 조지훈, 최용근
- 논의사항: 탄핵팀 진행 경과 보고, 제정당 대표 면담 추진 등 시국회의 사업계획 논의, 2018년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의견 제출 검토, 개인별보고서/이슈페이퍼/타임라인/탄핵의견서 등 자료집 발간 관련 논의, 인권보고대회 인권보고서 작성 및 인권 현안 대담 준비 관련 논의

#### □ 제18차 회의 / 2018. 11. 14. 12:00

- 참석: 천낙봉, 서기호, 서희원, 송상교, 심재섭, 이주희, 전정환, 최용근
- 논의사항: 탄핵소추안 공개 제안 기자회견 및 당대표 면담 진행 경과 보고, 시국회의 사업계획 논의, 인권보고대회 인권 현안 대담 준비 관련 논의, 법관 탄핵 및 특별법 제정 요구 법학자/변호사 연명 관련 논의

#### □ 제19차 회의 / 2018. 12. 6. 12:00

- 참석: 천낙봉, 서기호, 송상교, 김지미, 염형국, 최용근, 김진, 이주희, 서희원
- 논의사항: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대응 논의, 탄핵 촉구 페이스북 릴레이 진행 논의, 공소장 분석 및 재판모니터링 담당 팀 신설 관련 논의, 시국회의 사업계획 논의

#### □ 제20차 회의 / 2018. 12. 21 12:00

- 참석: 천낙봉, 서기호, 전정환, 김진, 김지미, 송상교, 이주희, 서희원
- 논의사항: 임종현 기소사건 모니터링 관련 논의, 탄핵팀 진행 경과 보고, 향후 대응방향 논의

#### □ 제21차 회의 / 2019. 1. 10. 12:00

- 참석: 김준우, 김진, 서기호, 송상교, 오용택, 이주희, 조미연, 조지훈, 천낙봉, 최용근
- 논의사항: 임종현 기소사건 모니터링 관련 논의, 탄핵팀 진행 경과 보고, 유엔 인권이사회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대응 관련 논의, 양승태 소환 이후 대응 논의

#### □ 제22차 회의 / 2019. 1. 24. 13:00

- 참석: 천낙봉, 김지미, 김진, 서희원, 이주희, 전정환, 조미연, 최용근
- 논의사항: 양승태 구속 이후 대응 논의, 임종현 기소사건 모니터링 관련 논의, TF 중간백서 제작 관련 논의

#### □ 제23차 회의 / 2019. 2. 12. 12:00

- 참석: 천낙봉, 조지훈, 이주희, 조미연, 전정환, 서희원
- 논의사항: 임종현 기소사건 모니터링 관련 논의, 사법농단 관련 피고인 공소장 분석 논의

#### □ 제24차 회의 / 2019. 2. 27. 12:00

- 참석: 천낙봉, 송상교, 서기호, 서희원, 조미연, 최용근
- 논의사항: 사법농단 관련 피고인 공소장 분석 논의, TF 중간백서 목차 가안 및 출판 방식 검토

□ 제25차 회의 / 2019. 3. 22. 12:00

- 참석: 천낙봉, 송상교, 서기호, 조미연, 서희원, 최용근
- 논의사항: 사법농단 관련 피고인 공소장 분석 논의, 임종현 기소사건 모니터링 관련 논의

□ 제26차 회의 / 2019. 4. 18. 12:00

- 참석: 천낙봉, 조지훈, 김지미, 최용근, 이주희, 조미연, 서희원
- 논의사항: 사법농단 재판 시민방청단(두눈부름 재판방청단) 관련 논의, TF 중간평가 논의

□ 제27차 회의 / 2019. 6. 11. 12:00

- 참석: 천낙봉, 김진, 조지훈, 최용근, 서희원
- 논의사항: 사법농단 관여법관 징계 관련 정보공개청구 논의, 두눈부름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방청 계획 논의

□ 제28차 회의 / 2019. 7. 24. 12:00

- 참석: 천낙봉, 서기호, 전정환, 조지훈, 서희원
- 논의사항: 사법농단 재판 진행현황 공유, 재판모니터링 공유, 사법농단 관여법관 징계 관련 정보공개청구 후속대응 논의, 두눈부름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방청 계획 논의

□ 제29차 회의 / 2019. 8. 28. 12:00

- 참석: 천낙봉, 전정환, 조지훈, 이주희, 서희원
- 논의사항: 사법농단 재판 진행현황 공유, 사법농단 관여법관 징계 관련 정보공개청구 후속대응 논의, 두눈부름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방청 계획 논의

□ 제30차 회의 / 2019. 11. 22. 12:00

- 참석: 천낙봉, 송상교, 최용근, 이주희, 서희원
- 논의사항: 사법농단 재판 진행현황 공유, 사법농단 관여법관 징계 관련 정보공개청구 후속대응 논의, 두눈부름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방청 계획 논의, 백서 발간 계획 논의

□ 제31차 회의 / 2020. 1. 7. 12:00

- 참석: 천낙봉, 김지미, 최용근, 서희원

- 논의사항: 사법농단 재판 진행현황 공유, 사법농단 관여법관 징계 관련 정보공개청구 후속대응 논의, 두 눈부름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방청 계획 논의, 백서 발간 계획 논의, TF 후속 활동방향 논의

□ 제32차 회의 / 2020. 5. 8. 12:00

- 참석: 천낙봉, 송상교, 이주희, 서희원
- 논의사항: TF 해소 논의, 백서 발간 논의, 법관탄핵/사법농단 관련 판결 분석 등 남은 과제에 대하여는 사법센터로 이관을 요청하기로 함.

4

# 법원 조사보고서

# 조사보고서

2017. 4. 18.

진상조사위원회

# 목 차

<b>I.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활동</b> .....	1
1. 진상조사의 배경 .....	1
2.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	2
3. 조사기간과 조사장소 .....	3
4. 조사범위 .....	3
5. 조사내용과 조사방법 .....	3
<b>II.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기초적 사실관계</b> .....	5
1.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립 경위 .....	5
2. 국제인권법연구회 임원진 현황 .....	5
3.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활동 내용 .....	5
4. 법원행정처의 주목과 우려 .....	6
5. 이규진 상임위원의 인사모 활동 관여와 보고 .....	7
<b>III.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활동에 대한 견제 의혹</b> .....	7
1. 심의관 등의 연구회 가입을 통한 감시 의혹 .....	7
2. 인사모 최초 준비모임 감시 의혹 .....	8
3. 인사모 활동에 대한 견제 의혹 .....	9
4. 예산 및 인사 관련 불이익 의혹 .....	11
<b>IV.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견제 의혹</b> .....	12
1. 사실관계 .....	12
2.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부당한 견제 여부 .....	15
<b>V.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 관련 의혹</b> .....	18
1. 전문분야연구회의 중복가입 상황 .....	18
2. 중복가입 해소조치 공지 관련 사실관계 .....	19



3.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타당성 .....	22
4. 중복가입 해소조치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공동학술대회 견제의 관련성 .....	26
5. 결론 .....	28
<b>VI. 이탄희 판사의 기획제2심의관 인사 발령과 검임해제 관련 의혹 .....</b>	<b>28</b>
1. 사건의 경위와 의혹 .....	28
2. 기획제2심의관 인사발령 의혹 .....	35
3. 부당한 지시 관련 의혹 .....	36
4. 검임해제 의혹 .....	37
5. 기타 은폐조치 의혹 .....	37
6. 결론 .....	39
<b>VII.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의혹 .....</b>	<b>40</b>
1. 의혹의 내용 .....	40
2. 이탄희 판사의 진술 .....	40
3. 이규진 상임위원의 진술 .....	41
4. 일부 언론의 보도 .....	41
5. 조사 경과 .....	41
6. 검토 결과 .....	43
7. 결론 .....	44
<b>VIII. 진상조사위원회의 종합 의견 .....</b>	<b>45</b>
1. 의혹 사건들에 대한 조사결론 .....	45
2. 제안 .....	48
3. 조사위원회의 입장 .....	49
<b>※ 별지</b>	
○ 조사 목록	
○ 물적 자료 목록	

#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 I.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활동

### 1. 진상조사의 배경

- 2017. 2. 13.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원칙에 따라 법관들에게 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를 정리하고, 만약 정한 기한 후에도 중복가입되어 있을 경우 뒤에 가입한 연구회는 탈퇴하는 것으로 전산상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코트넷 공지가 있었음
- 2017. 2. 15. 위 공지에 대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인 김형연 부장판사가 전문분야연구회 중 제일 나중에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포럼에 게시함
- 2017. 2. 20.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이 '전문분야연구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계획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코트넷에 공지하여 위 조치의 시행이 유보되었고, 그날 2017년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겸임발령을 받았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탄희 판사에 대한 겸임해제 인사발령이 있었음
- 2017. 3. 5.과 3. 6.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던 중복가입 금지 원칙에 따라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가입한 법관들의 탈퇴 등 조치를 시행한 것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문제 등을 골자로 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고, 대법원 고위층이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판사에게 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해당 판사가 항의하자 정식 출근 2시간 만에 원래 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인사를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가 있었음

- 2017. 3. 7. 법원행정처장은, 언론보도는 당사자 확인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판사에 대한 겸임해제 인사발령은 해당 판사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구체적인 불희망 사유는 개인의 인사문제로서 본인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언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해명글을 코트넷에 공지함
- 2017. 3. 8. 이탄희 판사가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폰방에 언론보도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도된 것이고, 법원행정처가 본인에게 관련 경위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 정식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이 경험한 부분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고심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날 김형연 부장판사는 대법원 차원에서 공정한 조사기구를 만들어 진상을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는 청원문을 게시함
- 2017. 3. 9.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관에 대한 인사발령을 둘러싼 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공정·명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문제점을 신속히 조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코트넷 공지를 하였음
- 2017. 3. 13. 대법원장이 최근 현안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요청하면서 조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음

## 2.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 이인복 석좌교수는 전국의 법관들에게 진상조사에 참여할 적임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7. 3. 22. 판사회의를 통해 추천된 20여 명의 법관, 개인적으로 추천된 30여 명의 법관들 중 조사 범위 및 대상, 조사 방법, 조사위원의 대표성,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위원으로 서울고등법원 성지용 부장판사(개인 추천),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연금 부장판사(판사회의 및 개인 추천), 의정부지방법원 이화용 부장판사(판사회의 추천), 서울남

부지방법원 안희길 판사(판사회의 추천), 서울가정법원 김태환 판사(판사회의 추천), 사법연수원 구태회 교수(위원장 지명)를 선정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함

### 3. 조사기간과 조사장소

- 조사기간

2017. 3. 24.(금)부터 2017. 4. 18.(화)까지 26일간

- 조사장소

사법연수원 사무실과 조사실(818호)

### 4. 조사범위

-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 관련 의혹

- 법원행정처 심의관 인사발령과 겸임해제 관련 의혹

- 위 사건의 처리 및 수습과 관련된 사법행정권 남용, 특정 연구회 활동 견제 및 특정 학술행사에 대한 연기·축소 압력 의혹

### 5. 조사내용과 조사방법

-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 3. 24.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면서 법원행정처에 물적 자료의 보전을 요구하였고, 조사기간 동안 총 3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조사대상자와 조사범위, 조사일정, 물적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조사계획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에 대한 정리 및 평가를 하였음

- 진상조사위원회는 물적 자료와 관련하여 2017. 4. 7. 법원행정처장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견제 의혹과 관련된 문서·이메일, 판사 동향을 보고하는 내용의 문서 존재 의혹과 관련된 문서·이메일의 확보를 위하여 임종헌 전 차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016년도 기획제1심의관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음

○ 법원행정처장은, 진상조사위원회가 확인하고자 하는 의혹의 문서나 이메일을 생성하고 관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동의를 없는 한 법원행정처장이 위 요청을 수락할 권한이 없고, 법원행정처 문서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문서들이 다수 있으므로 위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조사위원회가 이를 강제로 확보할 근거나 방법이 없어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된 물적 자료들만 조사 가능하였음

○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음

#### 가. 대면조사

진상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여러 의혹사건의 당사자들 중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1명에 대하여는 미리 경위서를 요청하여 제출받고 조사일정을 조율한 다음, 제출된 경위서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한 질의서를 이용하여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대상자에게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하여 대상자가 답변을 하거나 보충 설명을 하는 청문방식의 대면조사를 하였음(대면조사 대상자는 별첨 조사 목록 기재와 같음)

#### 나. 서면조사

진상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여러 의혹사건의 당사자들 중 서면조사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20명에 대하여는 관련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서를 요청하여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였음(서면조사 대상자는 별첨 조사 목록 기재와 같음)

#### 다. 그외 물적 자료

진상조사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나 법원행정처로부터 확보한 이메일, 법원행정처 보관문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녹음파일 등을 조사하였음(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물적 자료 목록 기재와 같음)

## II.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기초적 사실관계

### 1.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립 경위

- 2011. 8.경 연구영역을 국제인권법 분야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았음<sup>1)</sup>
- 당시 사법정보화연구회, 젠더법연구회, 헌법연구회, 형사법연구회처럼 중복 가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연구회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재판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복가입 가능 연구회로 지정되지 않았음
- 결국 설립신청 당시의 발기인 중 상당수가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가입되는 결과가 되어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한 후에 설립허가를 받았음

### 2. 국제인권법연구회 임원진 현황

-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매년 연말 무렵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간사를 선출함
- 임원진은 회장 이외에 분과위원장, 편집위원장, 간사, 총무, 운영위원으로 구성되고, 임원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연구회의 학술대회 개최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함
- 2015년과 2016년 연구회 회장은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고, 2017년 현재 회장은 이진만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임
- 이탄희 판사는 연구회의 2017년 기획팀장(총무 4인 중 1인)임

### 3.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sup>2)</sup>의 활동 내용

- 2015. 7. 7. 코트넷 연구회 게시판에 '사법제도 소모임'이라는 명칭(이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으로 변경됨)의 소모임이 제안되었음<sup>3)</sup>

1) 설립허가신청서상 주요 연구 대상을 ① 국제인권법조약 연구, ② 북한 인권문제 및 탈북자 인권문제, ③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④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⑤ 기타 사회적 이슈가 되어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될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등으로 특정하여 설립하였음

2)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인권보장 소모임', '법관론 소모임', '독서 소모임', '난민법 소모임', '소수자 인권 소모임', '표현의 자유 소모임', '인권법 산악회', '문화예술 소모임' 등의 여러 소모임이 있음. 연구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특별한 절차 없이 코트넷 연구회 게시판에 소모임 설립을 제안할 수 있고 자유롭게 소모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따로 관리되는 구성원 명단도 없음. 인사모도 이러한 소모임 중의 하나임

- 인사모에서 2015. 8. 11.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찬반토론을 한 결과, 참석자 중 18명이 반대하고 1명이 찬성하였는데, 이 토론결과는 2015. 8. 19. 코트넷 연구회 게시판에 게시되었음
- 인사모에서는 이후 2015. 9. 14.부터 2017. 2.경까지 바람직한 합의부의 조직과 운영 및 사실심 충실화 방안, 전관예우 등과 같은 재판업무 관련 주제들에 관해서도 토론을 하였으나, 주로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 사법행정 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방안,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의 향방, 인권보장을 위한 법관의 독립과 사법행정, 바람직한 대법관(대법원장)상, 사법부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등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그 토론결과를 코트넷 연구회 게시판에 게시하였음

#### 4. 법원행정처의 주목과 우려

- 인사모가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게시한 2015. 8. 경은 대법원이 상고법원의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시기였음. 따라서 인사모는 법원행정처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었음
- 행정처는 그 후로도 인사모가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에 관한 논의를 거듭하자, 인사모 활동은 연구회의 당초 설립취지인 '국제인권의 연구'와 무관하여 부적절한데다가 논의 주제들이 우리법연구회 논의 주제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인사모 활동에 대한 우려를 하였음
-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는 2015. 7.경 인사모 회원의 활동이 법관의 품위유지, 직무수행에의 지장, 공정성, 독립성, 사법 신뢰, 단체의 폐쇄성 등 측면에서 법관윤리강령 제5조 '법관의 직무외 활동'이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 등에 저촉되는 면은 없는지에 관하여 기초적인 검토를 하였는데, 법관윤리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음

3) 당시 연구 주제로는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배제, 심급제도(상고법원의 설치, 상고허가제), 법관의 임용·전보·사무분담 등 인사문제, 법관회의의 기능과 권한 등이 제시되었음

## 5. 이규진 상임위원의 인사모 활동 관여와 보고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5. 1.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임기를 시작하였고, 2015.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위촉되어 차장이 주재하는 실장 회의, 처장이 매주 주재하는 회의 등에 참석해 왔음<sup>4)</sup>
- 이규진 상임위원은 그 후 2년 동안 연구회 모임에 활발하게 참석하면서 수시로 연구회 운영위원과 인사모 회원들에게 인사모 활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오해와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는 등 우려를 계속 전달하고 활동 자제를 요청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가능성을 고지하기도 하였음
- 이규진 상임위원은 법원행정처가 인사모 활동에 관하여 우려를 가지자 평소 인사모 활동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상고법원과 법관인사 이원화 등 특히 민감한 주제를 다룬 논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장회의 등에 참석하여 인사모의 활동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음

## III.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활동에 대한 견제 의혹

### 1. 심의관 등의 연구회 가입을 통한 감시 의혹

#### 가. 사실관계

- 2013. 5. 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의관 등 행정처 관계자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코트넷 커뮤니티에 회원으로 일괄 전산 가입처리되었음
- 연구회 운영진이 행정처에 경위를 문의하자, 연구회의 활동상황이 예산배정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에 행정처 관계자들을 전산 가입처리하여 활동내용을 살펴보는 일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답변함

#### 나. 검토결과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9조에 의하면, 전문분야연

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실장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편의상 '양형실장'으로 호칭됨



구회의 자료물 평가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연구회 성과 평가위원회'를 두고(제1항),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총괄심의관, 정보화심의관, 기획제1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판사, 사법정책실 판사,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함(제3항)

- 평가위원회는 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제4항), 행정처장은 위 보고내용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와 법원 네트워크 등 전산자원의 사용을 지원함(제5항)
- 전산정보관리국에서는 매년 평가위원들이 위 예규에 따라 전문분야연구회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코트넷 연구회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위원들은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시글의 수, 내용, 조회수 등의 정보를 확인함(평가를 위한 기간 동안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평가완료 후에는 권한을 회수함)
- 당시 전정국에서는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국제인권법연구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분야연구회에 평가위원들을 '2013. 5. 1. 하루' 일괄 전산 가입처리하였다가 탈퇴시켰음. 따라서 이는 관련 예규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임<sup>5)</sup>

## 2. 인사모 최초 준비모임 감시 의혹

### 가. 의혹 제기

- 2015. 7. 21. 인사모 최초 준비모임 당시 이규진 상임위원이 이OO 부장판사(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수시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상황을 파악하였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도 퇴근하지 않고 인사모 동향을 파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5) 다만, 2013년 이외의 연도에는 정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열람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권한 부여업무를 처리하였고, 2013년에만 착오로 정회원 가입처리하였다고 함

#### 나. 사실관계

- 준비모임에 참석했던 이OO 부장은 인사모에 관심을 가지는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논의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대강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행정처 심의관들이 퇴근하지 않고 인사모 동향을 파악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음

#### 다. 검토결과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던 이규진 상임위원이 연구회 내의 인사모 준비 모임 참석자인 이OO 부장을 통하여 준비모임 논의 내용을 확인한 정도로는 인사모에 대한 감시라고 보기 어려움

### 3. 인사모 활동에 대한 견제 의혹

#### 가. 사실관계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5. 7. 첫 인사모 모임 이후 인사모 대표 등 연구회 주요 회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인사모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의하며 우려를 전달하였음
- 인사모가 2015. 8. 11. 상고법원 도입에 관하여 토론한 결과를 코트넷 연구회 게시판에 게재하려고 하자, 이 상임위원이 당시 대표에게 '다수가 반대하였다'는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음
- 이 상임위원은 2015. 8. 24.경 연구회 주요 회원에게 인사모 활동의 부적절성과 상고법원 논의의 문제점을 인사모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음
- 2015. 9. 9. 인사모 주요 회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법원 예산으로 공식 사이트를 사용하는 연구회가 법원행정처에 반대하는 모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인사모 모임에서의 토론결과 발표의 수위 조절을 의미하는 '톤다운(tone down)'을 제안함. 나아가 인사모의 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행정처로부터 연구회 예산의 삭감, 중복가입 규제 등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거나, 인사모가 협력하면 국제화연수 인원을 늘려줄 수 있고 코트넷 게시판에 배너광고처럼 국제인권법연구회로 바로가기 기능

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음

- 2016년도 연구회 간사에게도 인사모가 연구회 내에 있으면 연구회 전체의 존립이 문제될 수 있고, '국제인권법과 사법 요약본' 발간 관련 예산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인사모 활동을 자제하도록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음

#### 나. 검토결과

- 이규진 상임위원이 2015. 7.경부터 인사모 활동에 대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소모임이고 법원행정처가 거부감을 가진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운영진에게 사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토론결과 발표의 수위 조절을 제안하고, 행정처의 예산 삭감, 중복가입 규제 등의 불이익을 고지하는 한편, 국제화연수 기회 확대 등을 혜택으로 제시하면서 인사모 활동 자제와 축소를 유도한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부당한 견제로 볼 여지도 있음
- 이규진 상임위원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연구회 회장으로서는 연구회가 본연의 학술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고, 나아가 인사모가 제2의 우리법연구회로 오인 받아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언한 것이라고 해명함
- 임종헌 전 차장도 인사모 활동에 관하여 우려하기는 하였지만 행정처가 전면에서 나서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다가 이규진 상임위원이 연구회 주요 회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하겠다고 하여 이규진 상임위원을 통해 행정처의 우려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처했다는 취지로 진술함
- 연구회 운영진의 진술 중에는 이규진 상임위원의 평소 언행에 대하여 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견제와 압박이라고 느끼지 못했다는 내용도 꽤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회나 인사모 회원들에 대한 예산상,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음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5. 11.경 연구회 회장으로 재선되었는데, 당시 총회에서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도 없었음

- 이규진 상임위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는 행정처와 인사모 사이에서 양자의 우려와 입장을 서로에게 전달하고 인사모 활동이 법원 대내외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조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임. 인사모 활동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었음
- 따라서 이규진 상임위원이 연구회 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견제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4. 예산 및 인사 관련 불이익 의혹

##### 가. 예산 관련 불이익 의혹

##### (1) 의혹 제기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인사모 활동 때문에 예산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2) 사실관계

##### (가) 매년 배정되는 예산

- 상반기에는 성과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정됨
- 하반기 배정액 중 절반은 모든 연구회에 일률적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절반은 회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됨
-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6년 상반기에 실시된 2015년 1년간의 연구회 활동 평가 결과 15개 전문분야연구회 중 1위(84점)를 차지해 가장 많은 금액을 배정받았음(15위인 연구회의 2배)
- 2016년 하반기 및 2014~2015년에도 위와 같은 예산배정 원칙에 따라 정당한 금액을 배정받았음

##### (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책자발간 예산지원 내역

- '국제인권법과 사법' 발간과 관련하여 2014. 12. 18. 및 2015. 5. 7. 두 차례에 걸쳐 총 700만 원을 예산재배정 받았음
- '국제인권법과 사법 요약본' 발간과 관련하여 2016. 6. 9. 300만 원을 예산재배정 받았음

- 2011년부터 현재까지 4개의 전문분야연구회에서만 위와 같은 책자 발간 예산 지원을 받았음

### (3) 검토결과

- 인사모 활동이 시작된 2015년도 연구회 활동 평가결과 1위를 차지해 가장 많은 예산을 받은 점, 매년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예산 외에 예산재배정을 통해 전문분야연구회 책자 발간을 지원받는 것은 예외적인 일로 보이는 점, 연구회 전임 운영진도 책자 발간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구회에 대한 예산 관련 의혹은 근거가 없음

## 나. 인사 관련 불이익 의혹

### (1) 의혹 제기

-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인사모 활동과 관련해서 일부 회원들에게 정기인사에서 불이익한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2) 검토결과

- 인사총괄심의관에 대한 두 차례의 대면조사 및 서면조사 내용과 제출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인사명령은 충분한 근거와 원칙 및 기준에 따른 것임이 확인됨
-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인사모 회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의혹도 근거가 없음

## IV.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견제 의혹

### 1. 사실관계

#### 가. 공동학술대회 관련 정황

- 2016. 10. 연구회 간사가 인사모 대표에게 그동안의 인사모 연구 결과물을 외부에 발표할 것을 제안한 다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법관인사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추진함

- 2016. 12.경부터 인사모가 주축이 되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본격적으로 논의함
- 2017. 1. 15. 연구회의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의 개최 여부와 시기에 대하여 논의 끝에 행사를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다가 1. 23. 개최된 온라인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 시기를 3. 25.로 최종 결정함
- 공동학술대회 발표내용에는 대법원장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대법원장에의 권한 집중, 대법관 제청권, 대법원 구성을 비롯하여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학술대회 발표자는 2017. 2. 9. 전국 법관을 상대로 주제발표 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 이메일을 송부하여 그 결과를 취합한 후 이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로 함
- 2016년 연말부터 2017. 3.경까지는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의 정치 일정, 국회 개헌특위에서의 대법원장 권한 축소와 관련된 개헌 움직임 등으로 인해 법원행정처에서 법원 내외의 사법제도 논의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시기였음<sup>6)</sup>

#### 나. 이규진 상임위원의 법원행정처에서의 대책보고

- 2016. 12. 24.경 외부와 연계된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연구회 주요 회원들을 통하여 공동학술대회의 발제자와 논의주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함
- 2017. 1. 3.경 임종헌 전 차장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연구회의 공동학술대회 추진경과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략한 1차 메모를 작성하여 보고함
- 2017. 1. 11. 위 1차 메모의 내용을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1)'이라는

6)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016년 연말쯤 구성되어 2017. 2. 16.까지 총 10차례 전체회의를 하였음. 개헌특위에서는 법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법부 관료화 저지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대법원장 호선제,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 제청권,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이 논의되었음. 당시까지 개헌특위 2소위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 제청권 폐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지 않도록 사법권 독립을 위한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 제청권,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대외비 문건으로 정리하고, 그 후 알게 된 연구회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다시 정리하여 '인사모 공동학술대회 대책(2)'라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함

- 2017. 1. 13. 처장이 주재하는 차장·실장들 간의 주례회의에서 위 2건의 대책문건을 가지고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을 보고함
- 법원행정처는 공동학술대회 발표내용이 당시의 개헌특위 논의사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등을 다루고 있어 개헌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외부와 연계된 학술대회를 상반기에 개최하거나 그 결과를 언론 등에 발표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하였음

#### 다. 이규진 상임위원의 연구회에 대한 관여

- 2016. 12. 24. 이후 인사모 대표, 이OO 부장 등에게 외부기관과의 법관인사제도 논의는 부적절하고 연구회 내 소모임이 전체 연구회의 이름으로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학술대회의 부적절함을 지적함
- 2017. 1. 중순까지 이OO 부장과 자주 만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외부 연계 행사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공동학술대회를 하면 대법원 차원에서 중복가입 문제를 정리할 것이다. 발표자에게 발표를 하지 말거나 발표 수위를 낮춰달라고 전해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OO 부장이 발표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음
- 2017년도 연구회 신임 회장에게도 운영위원들에게 공동학술대회의 연기 등을 권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신임 회장은 2017. 1. 중순경 운영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이탄희 판사에게 전화하여 '젊은 판사들의 의견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1. 15. 열린 긴급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공동학술대회 상반기 개최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학술대회의 상반기 개최가 결정되었음
-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의 상반기 개최가 결정되자,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7. 1. 16. 내지 17.경 그동안 인사모 활동에 관하여 자주 논의해

온 이OO 부장에게 전화로 '실장회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함

- 2017. 1. 23. 온라인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 일자가 3. 25.로 확정되자, 다음날인 1. 24. 연구회 기획팀장인 이탄희 판사에게 전화하여, 이탄희 판사 등 연구회 회원 2명의 심의관 추천을 거론하고 행정처에서 같이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탄희 판사가 연구회에서 발언권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 '공동학술대회가 법원 내부행사로 치러지도록 하고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함

#### 라. 공동학술대회의 개최

-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의 공동학술대회가 2017. 3. 25. 14:00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음
- 구체적인 주제는 ① '미국과 독일의 법관 인사제도', ② '법관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sup>7)</sup>(발제시에 법관 501명에 대한 설문응답 결과를 분석한 내용도 함께 발표하였음)임

## 2.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부당한 견제 여부

### 가. 관련 정황과 부당성의 판단 기준

- 2017년 상반기는 탄핵과 대선 및 개헌특위의 개헌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이고, 법관들의 사법제도에 관한 의견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경우 외부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 논란이 야기되거나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법원행정처로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외부와 연계하여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공동학술대회의 부작용 우려를 전달하며, 법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요

7) 현행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제적 수준의 사법부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대법원장 임명절차,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전보인사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음



청하거나 자제를 권고할 수는 있다고 보임

- 다만 연구회에 대한 우려의 전달이나 대안 요청 및 자제 권고 등은 그 내용이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통제나 불이익의 고지와 같은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될 것임

#### 나. 법원행정처의 대응

- 행정처는 2017. 1. 이규진 상임위원으로부터 공동학술대회 대응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2건의 대책문건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음
  - '회장이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을 일대일로 접촉함으로써 공동학술대회 안이 부결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제1안)'과 '운영위원회를 설득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명칭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소모임인 인사모 명칭으로 공동개최하도록 하는 방안(제2안)' 및 추가 방안으로서 '학술대회를 7~8월로 연기하는 안', '연구회 자체 학술대회로 축소하고 이미 섭외한 교수 2명은 발표에만 참여시키며 외부 광고는 금지하는 안' 등의 대책이 제시됨[대책문건 (1)]
  - 인사모 측의 대안으로서 '연구회 자체 학술행사로 개최하되, 주제를 각국의 법관인사제도 연구와 같이 학술적으로 하고, 장소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중회의실로 하며, 교수들은 발표자로만 참여시키는 안(문제점 :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개최사실을 알리려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법관인사논의의 주체가 국제인권법연구회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되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셈이 됨)'과 적극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체 차원의 조치를 하는 안(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상세 검토하여야 함)' 등의 대책이 제시됨[대책문건 (2)]

#### 다. 검토결과

- 법원행정처가 보고받은 대책문건 (1), (2)에 따른 대책들은 기본적으로 법관들이 법관인사제도를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전제로 하여, 연구회 내부행사로 축소시키고 외부 발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음. 이 대책들은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단순한 우려의 전달 및 자제 권

고를 넘어 학술대회 주관, 행사시기와 장소, 행사의 방법, 언론노출의 금지 등 세세한 내용까지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차장 주재 실장회의와 처장 주재 주례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부작용의 우려도 커서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나, 이규진 상임위원이 실제로 연구회 운영위원 및 회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제3자를 통한 설득 등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 단계에서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저지 또는 학술대회 축소 및 연기를 위해서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인사모 대표가 연구회 자체 행사로 축소해서 행사를 치르는 방안을 이 상임위원에게 제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응방안은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임
- 이 상임위원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일이 3. 25.로 확정되자 곧바로 이탄희 판사에게 전화하여 행정처 심의관 발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학술대회를 내부행사로 진행되도록 하고 언론에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판사 사직서 제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음
- 이 상임위원은 연구회 주요 회원들에게 인사모 활동이 계속되면 중복가입 규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 또한 대책문건 (2)에도, 학술대회를 연구회 자체 행사로 축소하는 '인사모 안'조차 '그 결과가 코트넷으로 공지되면 법관인사 논의의 주체가 국제인권법연구회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부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적극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연구회 전체 차원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결국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시행되었는데, 그 시행으로 말미암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행정처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음
- 이규진 상임위원의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노력은 지난 2년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서 연구회와 행정처 사이에서 해온 조정 및 중

재자 역할의 연장선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2017. 1.경에는 이미 연구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장회의 등에서 조치가 필요함을 보고하고 연구회 관계자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공동학술대회의 연기 및 축소를 시도한 것은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로 보임

- 그리고 이규진 상임위원이 보고하여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된 공동학술대회 관련 대책들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법원행정처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V.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 관련 의혹

### 1. 전문분야연구회의 중복가입 상황

- 2000. 8. 1. 제정된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사법정보화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분야연구회의 중복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환경, 의료, 언론, 기업 등 여러 분야의 전문분야연구회가 설립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전문분야연구회가 설립되었음
- 2004. 4.경 전문분야연구회 간사들이 모여 중복가입 금지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기획조정실이 의견을 수렴한 끝에 중복가입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비회원에게도 게시물의 게시 권한을 주는 방안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간사들에게 통지하였음
- 2005. 6.경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가입되어 있는 11명의 법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중복가입된 연구회에서 탈퇴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음
- 2011. 6.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신청 당시 발기인 중 상당수가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가입되는 결과가 되어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한 후 2011. 8. 설립허가를 받았음

## 2. 중복가입 해소조치 공지 관련 사실관계

### 가. 2017. 1.경<sup>8)</sup> 실장회의에서의 논의

- 임종현 전 차장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관련 예규에 위반하여 전문분야 연구회에 중복가입한 법관 수가 많아 예산의 형평성 있는 배정이 곤란하다는 논의를 하고 그에 대한 해소조치를 강구하기로 함
- 당시 직권탈퇴 조치로 중복가입 회원이 많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영향을 받거나 위 연구회에 불리한 조치라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기존 예규의 준수 및 예산의 효율적 분배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이유로 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함

### 나. 해소조치의 지시

-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 업무는 기획조정실의 업무임
- 임종현 전 차장이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관련 공지문 작성 업무를 맡겼고, 이 상임위원은 2017. 1. 말경 기획제1심의관에게 공지문 초안을 2월 초까지 작성해 줄 것을 지시함
- 당시 이규진 상임위원은 기획제1심의관에게, 실장회의에서 논의된 조치의 논거로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예산 중복집행에 대한 지적을 받을 우려를 들었고, 자진탈퇴 없이 정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나중에 가입한 연구회에서 직권탈퇴되며, 비회원이라도 법관이면 누구나 연구회 자료 등을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 등을 지시함

### 다.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의 공지문 초안 작성 경위

- 기획제1심의관은 2017. 2. 6.부터 2. 13.까지 사이에 중복가입 해소 공지에 따른 전산상 필요한 조치(기술적 방안)와 위 공지에 따라 중복가입이 정리된 이후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신청서 심사 등 커뮤니티 관리에 관한 부분을 정보화심의관과 협업으로 준비함
- 기획제1심의관은 전문분야연구회의 코트넷 커뮤니티는 전정국에서 관리하

8) 실장회의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1월 중순경 내지 말경으로 기억하고 있음

니 공지문의 명의자는 전정국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정국장 명의로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공지문 초안을 작성하였음

- 위 공지문 초안은 이규진 상임위원과 임종현 전 차장의 수정을 거쳐서 기획제1심위원의 의견대로 전정국장 명의로 공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당시 전정국장은 뒤늦게 기획제1심위원 등으로부터 임종현 전 차장이 중복가입 해소조치 관련 공지문을 자신의 명의로 코트넷에 공지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는 않았음
- 전정국장은 2017. 2. 13. 12:40경 정보화심의관으로부터 기획제1심위원의 공지문 게시 부탁이 있어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아 검토한 다음, 그날 13:31경 게시해도 된다는 회신을 하였고, 그 무렵 정보화심의관이 코트넷에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에 관한 공지문을 게시하였음

라. 처장과 대법원장에 대한 보고 여부

- 처장은 2017. 2. 10. 주례회의에서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공지문 게시에 관해 보고를 받았음
- 대법원장은 위 공지문 게시 전에 관련 보고를 받은바 없음<sup>9)</sup>

마. 중복가입 해소조치 공지내용

-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향후 국회나 감사원에서 예산을 부적절하게 중복 집행하였다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가입한 법관은 2017. 3. 5.까지 가장 관심 있는 분야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연구회에서는 탈퇴해야 함
- 3. 6. 이후에도 중복가입되어 있을 경우 예규 취지에 따라 가장 먼저 가입한 연구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그 뒤에 가입한 연구회에서는 탈퇴하는 것으로 전산처리함
- 중복가입을 금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

9)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대법원 위임전결사항 내규(내규 별표 1)'에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시행은 실·국장 전결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기존 예규의 집행에 불과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진술하였음

문분야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전문 역량강화를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는 법관이라면 누구나 모든 전문분야연구회의 자료 등을 자유롭게 읽고 게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중복가입 해소조치에 관한 의견 수렴

- 위 공지 전까지 법원행정처의 평심의관, 부장심의관, 국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획제1,2심의를관과 정보화심의관을 제외한 나머지 평심의관, 부장심의를관 등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계획을 모르고 있었음

사. 공지 이후의 정황

- 공지문 게시 후 전문분야연구회가 아닌 민사재판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중복가입 해소 대상으로 착각하여 탈퇴하는 일이 발생하여 사법지원심의관이 2017. 2. 13. 민사재판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민사재판 커뮤니티는 탈퇴 대상이 아니라는 공지를 함
- 사법지원총괄심의관도 전정국장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로 형사법연구회에 중복가입한 법관들이 탈퇴하게 되면 형사재판과 관련된 안내나 공지에 지장이 많다는 문제를 제기함

아.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의 공개 건의 및 질의

- 2017. 2. 15.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가 제도개선법관토론폰방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님에 대한 공개 건의 및 질의서(최근 법원행정처의 법관들에 대한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및 탈퇴 조치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함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현행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예산 배정 방식이 가능함에도 굳이 중복가입 금지라는 기본권 침해적 효과를 수반하는 사법행정을 강행하는 이유 및 실제로 국회나 감사원에서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중복가

입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는지

- 중복가입금지 조치의 내용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나중에 가입한 연구회를 강제로 탈퇴시키는 이유 및 2017. 3. 5.을 시한으로 강제 수단을 강구할 만큼의 시급성이 있는지

자. 차장 명의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유보

- 임종현 전 차장은 중복가입 해소조치에 대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코트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중복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예규의 개정의견을 게시하자, 2017. 2. 20.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유보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음
- 임종현 전 차장은 위 공지 전에 이에 관하여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장과 함께 대법원장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반대 기류가 강하여 시행을 보류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음

### 3.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타당성

가. 해소조치의 시기

(1) 법원행정처의 주장

-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상반기 예산 지원은 5월에 이루어지므로 늦어도 3월 초에는 회원 수 등 배정기준이 확정되어야 하고, 재판이 잠시 소강상태가 되는 2월 정기인사철에 연구회 탈퇴 및 가입 판단이 용이하며, 인사이동 후 사무분담이 확정되는 2월 말에 전문재판부와 관련된 연구회에 대한 탈퇴 및 가입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마무리되어야 함

(2) 검토결과

- 대부분의 전문분야연구회가 전문재판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사이동 후의 사무분담 확정을 고려하면, '전문재판부 관련 전문분야연구회'의 탈퇴 및 가입은 정기 인사철 무렵이 적절한 시기일 수 있음
- 그러나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상반기 예산 배정은 연구회의 전년도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하반기 예산 배정은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일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3월에 회원 수를 확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sup>10)</sup>

- 정기 인사철 무렵이 이사, 사건의 정리 및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분주한 시기임에 비추어 보면, 재판이 소강상태라고 하여 연구회 탈퇴 및 가입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나. 중복가입 해소의 방법

##### (1) 법원행정처의 주장

- 나중에 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가 중복가입에 해당하므로 자진탈퇴 없이 정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예규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해당 연구회에서 직권탈퇴되는 것으로 조치하였음

##### (2) 검토결과

- 중복가입의 문제는 회원인 법관이 선택하여 해소함이 가장 바람직함
- 기조실장이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가입되어 있는 법관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중복가입된 연구회에서 탈퇴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전례도 있음(당시 직권탈퇴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음)
- 결국 2. 13.자 공지에서 직권탈퇴의 방법으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은 부적절해 보임

#### 다. 중복가입 상태의 장기간 방치 내지 묵인 여부

##### (1) 법원행정처의 주장

- 전문분야연구회가 설립된 2000년 이래 거의 매년 중복가입 문제를 검토하여 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고, 현재도 코트넷 커뮤니티 팝업창 등으로 중복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원행정처가 중복가입 상태를 장기간 방치 내지 묵인하였거나 예규가 사문화된 것이 아님

##### (2) 검토결과

- 2005. 6.경 당시 기조실장이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가입한 11명의 법관들

10) 연구회의 상반기 성과 평가시 '회원 참여도(전체 회원 중 글을 게시한 회원 수)'도 평가기준 중 하나이므로 전체 회원 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하나 그 비중이 평가항목 중 10%에 불과함



에게 일정기한까지 탈퇴해 줄 것을 요청한 이래 2. 13.자 중복가입 해소조치까지 10년이 넘도록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최근 몇 년간 연구회 중복가입자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간부진이나 회원들에게 중복가입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구하거나 앞으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공지한 일이 없었음
- 오랜 기간 관련 예규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예규가 사문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방치 또는 묵인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의견수렴절차나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해소조치를 실행함은 부적절해 보임

#### 라.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근거

##### (1) 사실관계

- 2017년도 전문분야연구회 배정 예산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근거는 최근 연구회 회원 수가 연평균 1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연구회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음<sup>11)</sup>

##### (2) 법원행정처의 주장

- 2017년도 예산의 예비 심사시에 중복가입 해소와 관련된 지적이 있었으므로 종전과 달리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의 중복집행이라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음
- 예산 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배정기준인 회원 수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고, 2017년에는 오랫동안 동결된 예산이 50% 증액되었으므로 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
-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연구회와 법관들에게 예산 지원이나 국제화연수 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돌아가는 불

11) 2017년도 예산 증액 신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중 전문분야연구회 부분에는 '대법원이 연구회 회원 수가 연평균 1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회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함'이라는 내용이 있고, '위 17% 증가'라는 부분에 각주로 '연구회가 예규에 맞추어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는 지속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는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개선 도모를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공평한 결과가 초래됨

(3) 검토결과

- 2017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중복가입의 해소 문제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전문분야연구회의 학술활동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 법관 수의 증가를 이유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예산 배정의 공정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통하여 연구회 가입 법관 수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모순적인 조치로 보일 수 있음

마. 의견 수렴의 문제

(1) 법원행정처의 주장

-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현재의 예규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이 아니라 기존 예규의 집행에 불과하여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크지 않았음

(2) 검토결과

-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법관들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학술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임에도, 예규 위반상태를 시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문분야연구회 간부진이나 회원들은 물론 법원행정처 내부의 의견조차 수렴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 2004. 4. 기획조정실이 중복가입 금지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할 때에도 전문분야연구회 간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전례가 있음
- 사전 논의 없이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전문분야연구회가 아닌 커뮤니티에서도 법관들이 탈퇴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갑자기 일방적으로 시행한 이번 조치는 절차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바. 공지 명의를 적정성

(1) 법원행정처의 주장

-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현행 예규에 따른 집행에 불과하고, 전정국장이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상 코트넷 커뮤니티 관리 책임을 맡고 있어 전정국장 명의로 공지하였음

(2) 검토결과

- 전문분야연구회 설립 이래 그 예산 배정 문제는 기획조정실이 담당하여 왔고, 2004년과 2005년의 중복가입 금지에 대한 의견수렴, 중복가입 해소 조치도 모두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였음
- 전정국은 코트넷 커뮤니티와 관련하여 연구회 가입 및 운영관리 업무 중 기술적인 부분만 담당하고 예산 배정 업무는 전혀 다루지 않음
- 2. 13.자 공지 중에는 '중복가입이 허용되는 연구회(4개) 중 사법정보화연구회는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연구회로, 형사법연구회는 현재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에 한하여 중복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부분도 있는바, 위 공지에 기술적 조치 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전정국장 명의로 공지함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4. 중복가입 해소조치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공동학술대회 견제의 관련성

가. 의혹 제기

-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연구회가 준비 중인 공동학술대회를 앞두고 법원행정처의 대회 연기 및 축소요구를 거부하자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나. 법원행정처의 주장

- 관련 예규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고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공정한 예산의 배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검토해 오던 조치를 실행한 것에 불과함

다. 의심스러운 정황 및 사실관계

- 이규진 상임위원이 법원행정처의 거부감과 우려에 기초해 인사모 활동에

대한 견제 및 공동학술대회 축소를 위해 여러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 모 활동에 대한 불이익으로 연구회에 대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음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6. 12. 24. 이후부터 2017. 1. 중순까지 사이에 이 OO 부장과 자주 만나 공동학술대회에 대하여 '외부와 연계한 대회는 하지 않는게 좋겠다. 공동학술대회를 하게 되면 대법원 차원에서 중복가입 문제를 정리할 것이다. 발제를 하는 판사에게 발표를 하지 말거나 발표를 하더라도 수위를 낮춰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였고, 그 후 이 OO 부장은 해당 판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2017. 1. 초경부터 임종헌 전 차장 주재의 실장회의, 처장 주재의 주례회의 등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외부와 연계하여 주최하는 공동 학술대회에 대한 대책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음
- 당시 이규진 상임위원이 보고한 대책문건에도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으로 '커뮤니티 전체 차원으로 조치'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커뮤니티 전체 차원의 조치로서 학술대회 개최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전격적으로 시행되었음
-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기획조정실의 업무에 속하므로 기초 실장이 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종헌 전 차장은 실장회의 등을 거쳐 조치의 시행이 결정되자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업무처리를 맡겼는데, 이는 이 상임위원이 그동안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면서 연구회 관련 문제를 맡아 처리해 왔기 때문으로 보임
- 실장회의 등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로 인해 중복가입자가 가장 많은 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연구회를 겨냥한 것이라는 오해가 생길 가능성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는 것인바, 실제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가장 나중에 설립되었고 중복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위 조치로 인해 회원 수 감소가 가장 클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중복가입 해소조치 이후에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의 공개 질의와 건의 및

예규의 개정의견 게시 등 연구회 회원들의 반발이 제기되자 임종헌 전 차장은 불과 일주일 만인 2017. 2. 20. 해당 조치의 유보방침을 공지하였음

- 이탄희 판사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기획제2심의관으로부터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대상으로 한 조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7. 2. 16. 임종헌 전 차장과 통화하면서 그 진위 여부를 묻자, 임종헌 전 차장도 연구회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

## 5. 결론

- 앞서 본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과 사실관계,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시기와 내용, 방법과 절차, 명의, 제시된 근거 등 어느 면에서 보아도 시급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주된 대상으로 한 조치라고 보는 의혹에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임
- 특히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된 대책문건의 대응과 동일한 성격의 조치가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부당한 견제라고 볼 여지도 충분함
- 결국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법원행정처가 현행 예규의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연구회 또는 공동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제재조치로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VI. 이탄희 판사의 기획제2심의관 인사 발령과 겸임해제 관련 의혹

### 1. 사건의 경위와 의혹

#### 가. 법관 정기인사 이전의 정황

-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7. 1. 12.경 코트넷 연구회 게시판에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안건으로 긴급 운영위원회 소집을 공지함
- 국제인권법연구회 전 간사인 이△△ 부장판사는 운영위원회 당일인 2017.

1. 15. 오전에 이탄희 판사에게 전화하여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연구회 회장의 우려를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법원 인사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가 외부 정치세력 등의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였음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이OO 부장판사는 운영위원회 개최 전 이탄희 판사에게 전화하여 행정처 높은 분의 이야기라면서 공동학술대회를 대법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학술대회를 안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전달함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다른 위원들의 찬성으로 2017년 상반기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되 구체적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결정함
- 이탄희 판사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이OO 부장에게 전화하여 학술대회 개최가 상반기로 결정된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OO 부장은 '행정처 높은 분이 이규진 상임위원이고, 이 상임위원에게 이탄희 판사와 연구회 회원인 또 다른 판사를 행정처로 데려가라고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함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7. 1. 초순경부터 이OO 부장과 자주 공동학술대회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외부 연계 행사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공동학술대회를 하면 대법원 차원에서 중복가입 문제를 정리할 것이다. 발표자에게 발표를 하지 말거나 발표 수위를 낮춰달라고 전해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OO 부장은 공동학술대회 발표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음
- 이규진 상임위원은 공동학술대회 개최 여부가 결정된 2017. 1. 15. 직후 이OO 부장에게 '실장회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함
-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7. 1. 23.경 온라인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3월로 최종 결정함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7. 1. 24. 이탄희 판사에게 전화하여 이 판사가 기획팀장으로서 공동학술대회가 철저하게 내부행사로 치러지도록 해주고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이탄희 판사 등 연구

회 회원 2명을 행정처 심의관으로 추천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행정처에서 같이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함

-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7. 2. 7. '공동학술대회 준비 카톡방'에서 논의를 한 결과 공동학술대회 장소를 최종적으로 연세대학교로 결정함

#### 나. 법관 정기인사 이후의 정황

##### (1)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의 정황

- 이탄희 판사는 2017. 2. 9. 대법원 인사발령 법 제24호에 따라 2. 20.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겸임명령을 받음
- 임종현 전 차장은 인사발령 당일 이탄희 판사에게 전화하여 축하인사를 전했고, 이 판사는 2017. 2. 10.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차장, 기획조정실 실장과 심의관, 사법지원심의관들과 인사를 나누었음
- 이탄희 판사는 2017. 2. 10.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전·현직 심의관들을 만나 행정처 생활에 대한 조언을 구했는데, 그들로부터 '차장이 공식 직제 대로 일하지 않고 직접 심의관을 불러 비밀리에 일을 시키거나 다른 심의관이 한 일을 몰래 다시 검토시킨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음

##### (2) 이탄희 판사의 이규진 상임위원 사무실 방문

- 2017. 2. 14. 16:30경 이규진 상임위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사를 함
- 이탄희 판사와 이규진 상임위원이 제출한 경위서에 기재된 당시 발언의 주요 요지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음

##### [이탄희 경위서]

◎ 이규진 : 처장님께 보고 드렸다. 이제부터는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행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진만 회장에게 맡겨두면 된다고. 행정처는 정보를 취합하는 소스가 엄청나게 넓다. 예를 들면 연구회 모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내용도 다 알고 있다. 운영위원회도. 이판사님이 기조실 컴퓨터에 보면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파일들이 있다. 그 비밀번호를 이판사님이 어차피 다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텐데, 그러더라도 놀라지 말고 좋은 취지에서 한 거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판사를 심의관으로 추천한 것은 내가 아니고 기조실장이다. 나는 의견조회만

응답했다. 대신 동그라미를 2개 쳤다. 기초실장이 이판사를 추천한 이유는 전에 TF같은 것을 하면서 이판사가 보여준 성실함 때문이다.

[이규진 경위서]<sup>12)</sup>

◎ 이규진 : 제가 추천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의견을 묻기에 제가 동그라미 2개라고, 아주 성실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어요. 모두들 성실하다고 평하더군요.

◎ 이탄희 : 차장님 업무지시가 많다고 들었는데, 기초실장님에게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 이규진 : 기초실장께서 나중에 다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차장님 지시 업무를 우선하되 반드시 기초실장께서는 귀뜸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이탄희 : 제가 인권법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없을까요.

◎ 이규진 : 대법원이 인권법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요. 이판사님이 인권법 기획팀장이니까 혹시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권법에서 이판사님을 멀리하거나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행정처 일도 잘 하고, 인권법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조화롭게 한다면 별 문제도 없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 이탄희 판사는 위와 같은 이규진 상임위원의 말에 충격을 받아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함

### (3) 법원장간담회 장소 답사 및 이규진 상임위원과 통화

- 이탄희 판사는 2017. 2. 14. 이규진 상임위원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전임자로서 업무 인수인계를 해줄 당시 기획제2심의관(현 기획제1심의관)으로부터 다음날의 법원장 간담회 사전 답사에 동행제의를 받고 승낙함
- 2017. 2. 15. 08:00경 기획제2심의관과 함께 답사를 떠났는데, 이동 중 이규진 상임위원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09:56경 이 상임위원에게 전화함
- 이 상임위원은 이탄희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면서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와 관련하여 연구회 간사가 이의를 제기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반박논리를 연구회 측에 전파하라는 취지로 말함

12) 이규진 상임위원은 당시 30분 정도 덕담을 나누었는데, 이탄희 판사가 심의관으로서 각오를 말하고, 자신이 조연을 하는 자리였다고 진술하였음



- 이탄희 판사는 답사 장소 도착 후인 11:40경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다시 전화하여 '못하겠다. 지금 답사 나와 있어 어차피 여러 군데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것 시키니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상임위원은 '아직 인사이동 중이라 그런데 행정처에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함

(4) 기획제2심의관과의 대화

- 답사에서 복귀한 후 22:00경 기획조정심의관실에서 기획제2심의관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기획제2심의관은 이탄희 판사에게 '중복가입 탈퇴조치는 국제인권법을 타겟으로 한 것이고, 이 조치에 대해 차장님은 주저하였으나 차장님이 밀어붙였다고 들었다. 너는 역량도 있겠지만 연구회 때문에 기조실에 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음
- 이탄희 판사는 귀가 후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해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하였고, 그로 인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에게 반박논리 전과를 지시했으며, 자신이 기획심의관이 되면 결국 계속 그러한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법원이 판사의 뒷조사를 하는 등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에 고민하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고 함

(5) 사직 의사표시 관련 정황

- 이탄희 판사는 2017. 2. 16. 09:00경 출근길에 사직을 결심하고 인사제1심 의관과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로 사직의사를 전하고, 안양지원에 출근하여 지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함
- 그날 12:00경 아내로부터 차장이 통화를 바란다는 연락을 받고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탄희 판사가 제출한 경위서에 기재된 당시 통화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임종헌 : 이판사 오해다. 대외비이지만 인사자료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 내가 기획2심의관 누구로 해야 되나 상의할 때 김OO 부장이 이판사를 추천하면서 배석들 중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해서 온 거다(인사 배경을 계속 설명).

◎ 이탄희 : 중복가입탈퇴 조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타게팅한 정책결정이었다고

기획제2심의관님 통해서 들었다.

◎ 임종헌 : 그 부분 내 책임 50% 인정한다.<sup>13)</sup>

◎ 이탄희 : 이규진 실장님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하는 지시들을 했다.

◎ 임종헌 : 그건 내 책임 아니다.

◎ 이탄희 : 그럼 이규진 실장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말이나. 언론보도 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것을 차장님 의중 없이 어떻게 하나.

◎ 임종헌 : 꼭 무산시킨다는 것 보다 좀 조용하게 가면 좋잖아.<sup>14)</sup>

◎ 이탄희 : 저를 데려오실 때부터 연구회 관련 부수적인 목적 있지 않았냐. 일석이조?

◎ 임종헌 : 그래!<sup>15)</sup>

◎ 이탄희 : 그냥 조용히 사직서만 처리해주면 법원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알게 된 내용은 그냥 제가 안고 가겠다.

- 이탄희 판사는 위 통화 중 임종헌 전 차장이 처음부터 인사에 대한 오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자신을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제에 가입시킬 목적으로 기획조정실로 인사발령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임종헌 전 차장에게 자신의 인사에 연구회 관련 부수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일석이조'를 거론했는데 임종헌 전 차장이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고 보고 자존심이 몹시 상해 흥분하였다고 함
-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제1심의관, 과거 이탄희 판사와 같은 재판부에 근무했던 김OO 부장은 2017. 2. 17. 이탄희 판사에게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통하여 사직을 만류하면서 인사발령대로 기획심의관으로 부임하거나 사법지원심의관 등 다른 자리 부임을 권유함
- 이탄희 판사는 2017. 2. 18. 11:00경 사직을 만류하는 임종헌 전 차장의 전화를 받고 사직 대신 겸임해제를 해주면 안양지원에 돌아가서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함
- 임종헌 전 차장은 위 통화 후 인사총괄심의관으로부터 이탄희 판사의 인

13) 임종헌 전 차장은 이 부분에서 책임이 아니라 인권법 견제 목적을 언급하였고 '50%까지는 안된다'라고 말하였다고 함

14) 임종헌 전 차장은 이와 같은 취지로 말한 기억은 없으나, 평소 민감한 시기에 공동학술대회를 조용히 치렀으면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함

15) 임종헌 전 차장은 이 부분 기억이 없고 그렇게 말할 리가 없는데 만약 그랬다면, 흥분한 이탄희 판사를 달래는 과정에서 '그래, 그래'라고 한 말이 긍정의 의미로 오해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함

사회망 1순위가 사법정책연구원이라는 말을 듣고 이 판사에게 사법정책연구원 인사발령을 제의함

- 이탄희 판사는 저녁 무렵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전화하여 겸임해제 발령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임종헌 전 차장은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이 판사의 안양지원 복귀를 내용으로 하는 인사발령 준비를 지시함

#### (6) 겸임해제 발령

- 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은 2017. 2. 20. 10:00경 대법원장에게 그간의 경위를 보고하면서 이탄희 판사에 대한 겸임해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여 대법원장의 인사결재를 받음
- 이탄희 판사는 그날 인사발령 법 제33호에 따라 겸임해제되어 안양지원으로 복귀했는데, 위 인사발령문은 코트넷에 게시되지 않았음

### 다. 겸임해제 발령 이후의 정황

#### (1) 언론의 보도

- 2017. 3. 6. 언론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대법원 고위층이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법관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해당 법관이 항의하자 정식 출근 2시간 만에 원래 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인사를 하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음

#### (2) 처장의 해명글 게시

- 법원행정처장은 2013. 3. 7. '최근의 언론보도에 관하여 법관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해명글을 공지함
  - 그 내용은 해당 판사가 법원행정처 근무를 불희망하여 겸임해제 발령을 하였고 구체적인 불희망 사유는 개인의 인사 문제로서 해당 판사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 라. 인사 관련 의혹의 제기

- 이탄희 판사에 대한 인사를 둘러싼 의혹은, ①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지 인사모의 활동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탄희 판사를 기획제2심의

관으로 보임하였는지 여부, ② 임종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이탄희 판사에게 공동학술대회의 축소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③ 이탄희 판사가 지시에 불응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 겸임해제 발령을 하여 원소속 법원으로 복귀시켰는지 여부, ④ 기타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등임

## 2. 기획제2심의관 인사발령 의혹

### 가. 의혹의 내용

-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지 인사모의 활동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탄희 판사를 기획제2심의관으로 보임하였는지 여부

### 나. 검토결과

- 이탄희 판사는 업무역량, 주변의 평판, 성품과 의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 TF팀에서의 연구성과 등이 모두 우수했고 여러 사람이 심의관으로 추천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획제2심의관 보임은 이례적인 인사로 보기 어려움
- 기획제2심의관은 1년 후 기획제1심의관으로 보임되는 자리이고, 기획제1심 의관은 각 실국 심의관들의 정보와 자료 수집, 교환과 정리 등을 통하여 관련 업무를 통할하는 핵심적인 보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특정 연구회 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획제2심의관 보임은 상정하기 어려움
- 이탄희 판사를 비롯한 몇몇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의 심의관 발령이 연구회 역량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500명에 가까운 연구회 회원 중 일부가 매년 꾸준히 심의관으로 발령되고 있고, 몇몇 회원의 행정처 발령으로 연구회 역량이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음
- 기획1,2심의관에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함께 보임되는 것이 비정상적인 인사라는 취지의 주장도 있으나, 2006년, 2012년, 2015년 법관정기인사에서 기획심의관, 윤리감사심의관의 보직에 동기인 판사가 보임된 전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례적인 인사로 볼 수 없음

- 이규진 상임위원이 2017년 법관 정기인사를 전후해서 이탄희 판사에게 심의관 추천을 언급하면서 공동학술대회의 축소, 중복가입 해소조치 비판에 대한 반대논리 전파 등을 요구한 것은 이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기획팀장으로 활동한 때문으로 보이고, 그것만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견제 목적의 인사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움
- 결국 이탄희 판사의 기획제2심의관 발령에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3. 부당한 지시 관련 의혹

#### 가. 의혹의 내용

-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임종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이탄희 판사에게 공동학술대회의 축소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 나. 검토결과

- 이규진 상임위원이 2017. 1.에는 국제인권법학회 회장직에서 이미 물러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장 주재의 실장회의 및 처장 주재의 주례회의에서 조치가 필요함을 보고하고 연구회 관계자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공동학술대회의 연기 및 축소 요구를 한 일련의 행위가 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음
- 이규진 상임위원이 1. 15. 이OO 부장을 통하여 대법원의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거부감을 전달하였고, 1. 24. 이탄희 판사에게 전화하여 심의관 추천을 운운하면서 공동학술대회의 축소 및 언론 미발표에 대한 노력을 요구한 것은 역시 위와 같은 일련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함
-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제재조치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이규진 상임위원이 2. 15. 이탄희 판사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하여 연구회 회원들에게 반대논리를 전파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위와 같은 부당한 조치의 정당성을 옹호하라는 것으로서 역시 부당한 행위로 볼 소지가 있음

- 당시 이탄희 판사는 전날 이규진 상임위원 사무실에서 들은 판사 뒷조사과 일 등의 이야기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다가, 이미 이 상임위원으로부터 공동학술대회의 연기 및 축소 등과 관련한 요구를 받은 일이 있었으므로, 이 상임위원의 위와 같은 반대논리 전과 요구 역시 개인적인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따른 지시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규진 상임위원의 이탄희 판사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요구는 부당한 지시와 간섭으로 볼 소지가 충분함
- 임종현 전 차장은 2. 9. 이탄희 판사에게 기획제2심의관 보임을 축하하는 전화를 하였고, 이 판사가 2. 10. 임종현 전 차장을 방문하여 인사한 이후 사직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이 판사와 접촉한 일이 없고, 이규진 상임위원 외의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이 판사에게 직접 어떠한 지시나 요구를 하였다고 볼 정황을 찾아볼 수 없음

#### 4. 겸임해제 의혹

- 이탄희 판사가 2. 16.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2. 18. 임종현 전 차장 등에게 사직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겸임해제를 통하여 안양지원으로 복귀하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음
- 이탄희 판사는 임종현 전 차장 등으로부터 사법연수원이나 사법정책연구원으로의 발령을 제의받자 이를 거부하고 거듭 안양지원 복귀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 따라서 이탄희 판사가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 겸임해제 인사발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와 의혹은 근거가 없음

#### 5. 기타 은폐조치 의혹

##### 가. 사직 의사의 만류

- 이탄희 판사 스스로도 사직서를 수리해 주면 법원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조용히 안고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임종헌 전 차장, 인사총괄 심의관실 관계자, 김OO 부장 등이 이탄희 판사의 사직을 만류하기 위하여 이 판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는데, 이는 우수한 동료법관의 사직을 만류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원행정처 인사관계자로서 인사와 관련하여 생긴 문제를 원만하게 수습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대응인 측면이 있는데, 임종헌 전 차장 등의 위와 같은 노력을 이탄희 판사의 사직으로 인한 과장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나. 타 기관 전보 제의

-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탄희 판사에게 일반 법관들과의 접촉이 적은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전보를 권유함은 이 판사의 사직 관련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었다는 일부 의혹이 있음
- 인사총괄심의관은 이탄희 판사에 대한 사법연수원 전보 제안에 대하여, 사법연수원 정책연구교수는 심의관 업무를 겸임한 전례가 있어 이 판사가 계속 심의관 업무를 담당할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한 것이었고 이 판사의 안양 지원 복귀시 법원간 업무부담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 임종헌 전 차장 등의 사법정책연구원 전보 제안은 인사심의관의 착오 보고로 이탄희 판사의 법관 인사희망 1순위가 사법정책연구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제안한 것이 확인되었음<sup>16)</sup>
- 결국 이탄희 판사에 대한 사법연수원 또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의 전보 제안은 사건 은폐 시도로 보기 어려움

#### 다. 법원행정처장의 해명글 게시

- 3. 7.자 해명글은 언론보도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어 전국 법관들의 관심

16) 실제 이탄희 판사가 사법정책연구원을 희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 판사가 인사희망원을 제출할 무렵 인사제1심의관에게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가 사법정책연구원을 지망하라고 권유하는데, 사법정책연구원을 지망하는 것이 괜찮나'라고 물어보았을 뿐인데, 인사제1심의관이 이 판사가 실제 사법정책연구원을 지망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내용이 인사총괄심의관과 차장에게 전달된 것임

과 주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이탄희 판사의 겸임해제 발령이 단지 개인사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어 의혹을 증폭시킨 면이 있음

- 그러나 이탄희 판사가 임종현 전 차장 등에게 안양지원으로 복귀시켜 주면 조용히 재판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겸임해제 발령이 이루어진 점에서 법원행정처로서는 이 판사가 겸임해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인식했을 여지가 있음
- 나아가 인사심의관 등이 이탄희 판사 측에 해명글을 게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 판사와의 사전연락을 희망하였으나, 해명글 게시 전에 이 판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식의 확인 없이 해명글을 게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장의 해명글이 사건 은폐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 라. 인사명령의 미공지(인사명령 제33호)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의 업무처리 관행상 정기인사, 하반기 인사(6, 7, 8월), 임명, 연임, 일부 퇴직의 다섯 가지 경우에만 인사발령문을 코트넷에 게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 2016. 2. 23.부터 2017. 2. 20.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227개의 인사발령 중 코트넷에 게시된 것은 25개에 불과함
- 인사명령의 코트넷 공지에 관한 업무처리 관행과 게시 사례에 비추어 이탄희 판사의 겸임해제 발령 코트넷 미공지는 사건 은폐 시도라고 할 수 없음

## 6. 결론

- 이탄희 판사에 대한 심의관 겸임 인사발령과 겸임해제 인사발령 자체에는 인사권 남용의 정황을 찾아볼 수 없음
- 이탄희 판사는 이규진 상임위원으로부터 공동학술대회 및 중복가입 해소조치 관련 요구를 듣고 전후의 여러 정황상 기획재2심의관으로 부임하는 경우 앞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된 부당한 업무를 계속 지시받아 수행하여야 할 것이 예상되고, 전임자 등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법원행정처의 실상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고 생각되자, 이를 견디기 어려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임

- 이탄희 판사의 인사발령을 둘러싼 나머지 의혹들은 근거가 없거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VII.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의혹

### 1. 의혹의 내용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을 뒷조사한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파일(뒷조사파일)이 존재한다는 내용임

### 2. 이탄희 판사의 진술

- 기획제2심의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후인 2017. 2. 14. 이규진 상임위원의 사무실로 인사하러 갔을 당시 이 상임위원으로부터 판사들 뒷조사파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함
- 이탄희 판사가 제출한 경위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행정처는 정보를 취합하는 소스가 엄청나게 넓다. 예를 들면 연구회 모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내용도 다 알고 있다. 운영위원회도. 이판사님이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보면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파일들이 있다. 그 비밀번호를 이판사님이 어차피 다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텐데, 그러더라도 놀라지 말고, 좋은 취지에서 한 거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임

### 3. 이규진 상임위원의 진술

- 이탄희 판사에게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기획조정실 컴퓨터의 비밀번호 파일에 대하여도 전혀 모름

- 2016. 12. 24. 이탄희 판사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님
- 만일 이탄희 판사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자신이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대처방안을 작성하여 실장회의시 보고한 메모(페이퍼)일 수도 있으나, 비밀 번호가 걸린 파일 이야기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음

#### 4. 일부 언론의 보도

- 2017. 4. 7.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위 파일이 기획조정실 내 기획제1심의관 컴퓨터에서 관리되다가 최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음

#### 5. 조사 경과

##### 가. 관련자들의 진술

- 기획조정실장, 전 기획제1,2심의관 등은 모두 기획조정실 내에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파일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획조정실의 업무성격상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 나. 대책문건들의 확보

- 2017. 1. 3. 작성하여 2017. 1. 11. 보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 (1)', 2017. 1. 11.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사모 공동학술대회 대책 (2)' 등 2건의 대책문건을 조사과정에서 확보하였는데, 모두 '대외비'라는 기재가 있음

##### 다. 대책문건들의 작성 및 보고자 - 이규진 상임위원

- 2017. 1. 3.경 차장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공동학술대회 추진경과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략한 내용의 1차 메모를 작성하여 보고함

- 2017. 1. 11. 위 1차 메모의 내용을 다시 대책문건 (1)로 정리하였고, 그 후 알게 된 연구회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대책문건 (2)를 작성함
- 2017. 1. 13. 처장 주례회의에서 위 두 문건을 가지고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을 보고함

라. 대책문건 (1)의 기재내용

문건명 :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 (1)

① 인사모 일반

- 첫 모임 시기 및 현재까지의 모임 횟수
- 구성원 현황 : 대표, 간사, 주요 참여자, 현재 잠시 참여도가 낮아진 참여자 이름 및 소속
- 문제점 :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의 인적·물적 지원을 받는 공식기구인 '커뮤니티'라는 점, 설립취지인 '국제인권의 연구'와 법관인사 내지 인사제도의 논의는 무관하다는 점

② 공동학술대회 추진 경과

- 최초 제안자의 이름 및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와의 접촉 경위
- 잠정적 세미나 일자(2017. 3. 25.)
- 세미나 주제(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집중 등) 및 발표자, 지정토론자
- 인사모의 향후 계획 : 2017년 새로이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확정할 예정(2017년 운영위원회 회원들의 이름 및 현황, 의결에 12명 중 1명 불참, 회의에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4명과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7명의 이름)

③ 대응

- 1차 경고 : 인사모 대표 등에게 외부기관과의 법관인사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경고하였음(연구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것까지는 막지 아니함)
- 향후 대응 : 회장이 운영위원들을 일대일로 접촉하여 공동학술대회 안이 부결되도록 한 후 법관들이 개인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닌 인사모 명칭으로 공동개최하도록 하는 방안, 학술대회를 하반기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는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자체 내부 행사로 축소하게 하는 방안, 외부에 행사가 알려지지 않게 하는 방안 등

마. 대책문건 (2)의 기재내용

문건명 : 인사모 공동학술대회 대책 (2)

① 운영위원회 개최 움직임

- 2017. 1. 15. 일요일 개최예정임

-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의결하면 법관인사에 관한 공동학술대회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임

② 대응방안

- 공동학술대회 대신 연구회 자체 학술행사로 개최하고 주제도 '각국의 법관인사제도 연구'와 같이 학술적으로 네이밍하는 인사모 측 제안이 있었으나, 학술행사의 개최사실을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리려 할 것이 예상됨
- 따라서 대책이 아닌 조치를 논의하고 적극 대처하는 방안제시(커뮤니티 전체 차원으로 조치,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추후 상세 검토)

6. 검토 결과

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관한 의문

- 이규진 상임위원의 업무는 기획조정실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규진 상임위원이 기획조정실 컴퓨터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알기 어려워 보이고, 만일 비밀번호가 설정된 대외비 파일이라면 더욱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
- 기획조정실의 분장업무는 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집행계획의 수립, 국회와 행정부처 등 대외기관과의 관계업무, 법령·규칙·내규·예규의 조사연구 등으로서 판사들의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해야 하는 관련 업무는 찾아보기 어려움
-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 업무는 기획조정실 소관이지만, 예산의 배정은 게시물의 평가, 회원 참여도, 세미나 개최 여부 및 성과, 코트넷 커뮤니티 운영의 적절성, 회원의 수 등 이미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위 업무를 위하여 별도로 판사들의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할 필요성은 없음
- 평소 행정처의 역할과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기획제2심의관도 판사들의 동향을 조사하여 기록한 문건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음

#### 나. 위 대책문건들이 뒷조사파일인지 여부

- 이탄희 판사가 이규진 상임위원으로부터 행정처가 연구회 모임과 운영위원회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들었다는 점에 비추어 뒷조사파일은 결국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판사도 그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함
- 대책문건들은 이규진 상임위원이 실장회의 등에서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을 보고 및 논의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대표와 간사, 주요참여자 및 잠시 참여도가 낮아진 참여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공동학술대회를 발제한 법관의 이름과 추진경위, 공동학술대회의 주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이름,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이름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구성원의 이름 및 그 찬반 예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기재내용은 이탄희 판사가 이규진 상임위원으로부터 들었다는 판사들의 뒷조사파일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 이규진 상임위원이 '실장회의 등에서 보고한 보고서가 혹시 기획조정실에 남아 있으면 앞으로 그곳에서 근무하게 될 이탄희 판사에게 마치 자신이 연구회 회장이면서 이상한 것을 작성해서 행정처에 준 것처럼 보이는 게 걱정되어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동료법관의 진술도 있음<sup>17)</sup>

## 7. 결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탄희 판사가 이규진 상임위원으로부터 들었다는 기획조정실 컴퓨터의 판사들 뒷조사파일은 결국 위 대책문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더 나아가 연구회 대책문건들 이외의 전체 판사들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음

17) 이규진 상임위원은 평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서 실장회의 등에서 연구회 관련 문제를 보고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간단한 메모를 작성한 경우에는 실장회의에 참석한 실장들에게 그 출력물을 나누어 주었고,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컴퓨터에는 파일 형태로 저장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 VIII. 진상조사위원회의 종합 의견

### 1. 의혹 사건들에 대한 조사결론

#### 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활동에 대한 부당한 견제 의혹

- 법원행정처가 평소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사모의 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였으나 주로 연구회 회장인 이규진 상임위원을 통하여 인사모 활동의 부작용 등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외에 인사, 예산 기타 부분에서 연구회와 인사모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음. 따라서 행정처의 평소 연구회와 인사모 활동에 대한 부당한 견제와 압박 의혹은 인정하기 어려움
- 이규진 상임위원이 회장으로 있는 동안 연구회 운영진과 인사모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행정처의 우려를 전달하고 비협조시의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행정처나 연구회의 입장과 우려를 서로에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 노력한 측면이 있고, 인사모 활동이 크게 위축된 정황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상임위원이 재임기간 동안 부당한 견제나 압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부당한 견제 의혹

- 이규진 상임위원이 2017년에는 연구회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회가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차장이 주재하는 실장회의 및 처장이 주재하는 주례회의에서 조치가 필요함을 보고하고 연구회 관계자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공동학술대회의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은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로 보임
- 나아가 이규진 상임위원이 보고하여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된 공동학술대회 관련 대책들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법원행정처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 중복가입 해소조치 관련 의혹

-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비록 기존 예규에 따른 집행이기는 하나 그 시기와 방법, 근거, 내용과 시행 과정 등에서 시급성과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해소조치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국제인권법 연구회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제재로 볼 만한 의심스런 정황이 많으므로, 이는 법원행정처가 예규의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공동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제재조치로서 사법행정 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라. 이탄희 판사의 인사발령과 겸임해제 관련 의혹

- 이탄희 판사의 기획제2심의원 인사발령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견제 목적이라거나 연구회 견제에 활용할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고, 이 판사의 겸임해제 발령 역시 본인의 강력한 요구로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한 지시 거부에 대한 제제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이규진 상임위원이 이탄희 판사에게 한 공동학술대회의 연기 및 축소 노력 요구, 중복가입 해소조치 관련 반대논리 전파 요구 등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부당한 지시와 간섭으로 볼 소지가 충분함
- 이탄희 판사는 이규진 상임위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들을 받고 기획제2심의원장으로 부임하는 경우 앞으로 연구회와 관련된 부당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할 것이 예상되고, 전임자 등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법원행정처의 실상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고 생각되자, 이를 견디기 어려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임
- 결국 이탄희 판사의 사직 의사표시에는 이규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요구들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이 상임위원의 위와 같은 요구들은 외부와 연계된 공동학술대회를 우려한 법원행정처가 그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견제를 하고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하거나 그 반발에 대한 대응논리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원행정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밖에 이탄희 판사에 대한 사직 만류와 처장의 해명글 공지, 타 기관으로의 전보 제의, 겸임해제 인사발령의 코트넷 미공지 등 이 판사의 사직의 사표시와 겸임해제 인사발령과 관련된 은폐시도 의혹들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의혹

-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관한 의혹은, 이탄희 판사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에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이 상임위원으로부터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 뒷조사를 한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기되었음
- 이탄희 판사가 이규진 상임위원으로부터 들었다는 판사들 뒷조사파일의 내용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탄희 판사도 당시 그런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기초실의 업무분장상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업무는 연구회에 대한 예산의 배정에 불과하여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평소 실장회의 등에서 연구회나 인사모 관련 동향의 보고 등은 이 상임위원이 맡아서 한 점에 비추어 기초실 컴퓨터에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임
- 이규진 상임위원이 2017. 1. 차장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와 처장이 주재하는 주례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보고한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 (1), 인사모 공동학술대회 대책 (2)'의 두 문건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대표와 간사, 주요참여자 및 잠시 참여도가 낮아진 참여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공동세미나를 발제한 법관의 이름과 추진경위, 공동세미나의 주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이름,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이름과 공동세미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구성원의 이름 및 그 찬반 예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두 문건의 내용과 앞서 본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탄희 판사가 이 상임위원으로부터 들었다는 기초실 컴퓨터의 판사들 뒷조사파일은 결국 위 두 문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두 문건 이외에 전체 판사들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다른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음

## 2. 제안

### 가. 사법제도에 관한 논의의 공론화 필요성

- 이번 의혹사건의 배경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 인사모가 설립 이래 상고법원 등의 심급제도, 법관인사제도, 대법원장의 인사권 등 사법행정과 사법제도에 관한 논의를 함에 대하여 법원행정처가 민감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음
- 인사모의 활동이 연구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학술단체인 전문분야연구회에 소속된 소모임이 주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함
- 나아가 법원행정처의 우려처럼 법관 개인의 사법제도에 대한 견해가 외부적으로 공표되는 경우 특히 최근의 대선 일정과 개헌논의 등 정치적 상황과 결부되어 논란이 야기되고,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여 사법제도에 관한 일선 법관들의 관심과 논의 및 의견수렴 요구를 외면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의 문제는 법관 개개인은 물론 사법부의 독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논의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독점하여서는 안 되고, 법관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수렴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오히려 권장되어야 함
- 따라서 이번 의혹사건을 계기로 법관들의 자율적인 연구모임을 통한 사법제도 관련 논의의 공론화 보장, 이에 대한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 법원행정처의 업무처리 시스템과 관행의 문제

- 이번 의혹사건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원행정처의 업무처리 시스템

과 관행 중, 일부 업무는 각 실국의 분장사무나 지휘계통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점,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중간관리자나 심의관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시되는 지휘계통 위주의 수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무시되는 수평적인 의사소통의 부재 등은 특히 문제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심의관 등의 발탁인사, 근무평정이 우수하고 평판이 좋은 법관들을 행정처 주요 보직자로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관행 등이 행정처 근무경력이 없는 많은 법관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한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반성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3. 조사위원회의 입장

- 조사위원회는 이번 의혹사건들이 법관의 독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법원 내부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경우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어떠한 편견과 예단도 가지지 않고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를 하였음
- 조사대상자들도 의혹사건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조사에 응하여 의혹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관의 자율적인 연구모임과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하고, 특히 사법제도와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법관의 독립과 결부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독점하여서는 안 되며, 법관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수렴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조사 목록

(가나다 순)

순번	이름	소속	직위	조사유형
1	김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 기획제1심의관)	서면 및 대면조사
2	김연학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서면 및 대면조사
3	김형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서면 및 대면조사
4	김형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면 및 대면조사
5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면 및 대면조사
6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면 및 대면조사
7	이수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면 및 대면조사
8	이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전산정보관리국장)	서면 및 대면조사
9	이탄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서면 및 대면조사
10	임종현	.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서면 및 대면조사
11	임효량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전 기획제2심의관)	서면 및 대면조사
12	고영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장	서면조사
13	김기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면조사
14	김영식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면조사
15	김영훈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서면조사
16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면조사
17	박노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지원장	서면조사
18	박진웅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면조사
19	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서면조사

20	송오섭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서면조사
21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면조사
22	양승태	대법원	대법원장	서면조사
23	이동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면조사
24	이상엽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면조사
25	이인석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서면조사
26	이진만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면조사
27	정계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면조사
28	차문호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면조사
29	최영락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면조사
30	최웅영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서면조사
31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면조사

## 물적 자료 목록

종류	내용
이메일	2004. 4. 23.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발신, 전문분야연구회 간사들 수신(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금지와 관련한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2004. 5. 6. 기획담당관 발신, 전문분야연구회 간사들 수신(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금지와 관련한 제도개선보고)
	2005. 4.경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발신,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법관들 수신(중복가입금지 규정 준수 부탁)
	2016. 10. 1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발신, 김○○ 사무관 수신(전문분야연구회 예산 관련 자료)
	2017. 2. 6. 기획제1심의관,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 상호간(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
	2017. 2. 6. 정보화심의관, 전산주사보 상호간(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커뮤니티)
	2017. 2. 8. 정보화심의관 발신, 기획제1심의관 수신(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리스트)
	2017. 2. 13. 기획제1심의관 발신,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수신(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
	2017. 2. 13. 기획제1심의관, 정보화심의관 상호간(의견요청)
	2017. 2. 13. 정보화심의관 발신, 전산주사보 수신(전문분야연구회 주요공지글 관련)
	2017. 2. 13.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정보화심의관 상호간(중복가입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관련)
	2017. 2. 18. 이탄희 판사 발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외 16명 수신(2017년 대법원 심의관 워크숍 관련)
	2012. 2. 8. 정보화심의관 발신, 전산주사보 수신(전문분야연구회 평가관련)
	2013. 5. 1. 정보화심의관 발신, 전산주사보 수신(전문분야연구회 가입관련)
	2013. 5. 1. 전산주사보 발신, 정보화심의관 수신(전문분야연구회 가입관련)

	2014. 4. 17. 정보화심의관 발신, 전산주사보 수신(전문분야연구회 가입관련)
	2016. 5. 27. 정보화심의관 발신, 전산주사보 수신(전문분야연구회 평가관련)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2017. 1. 24.부터 2017. 3. 9.까지 관련자들 사이에 송수신된 문자 ·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통화내역	2017. 1. 1.부터 2017. 2. 28.까지 관련자들 2명 사이의 발신 통화내역(음성 및 문자)
법원행정처 보관 문서	2000. 7. 28. 기획조정실장 명의 전문분야연구회 가입안내 공지글
	2011. 6. 30.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허가신청서, 신청서에 첨부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칙, 회원 명단
	2011. 8. 12.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이호재 기획제1심의관에게 보낸 중복가입 문제가 해소된 연구회 회원 명단
	2016. 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작성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중 법원 연구회 예산과 관련된 부분 발췌
	2017. 1. 9.경 작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주간업무계획 요약본
	2017. 2. 6. 기획조정실과 전산정보관리국 작성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대외비)
	2017. 2. 13. 기획조정실 작성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대외비)
	2017. 2. 16. 기획조정실 작성 중복가입 해소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검토(대외비)
	2017. 3. 9. 윤리감사관 작성 이탄희 판사 관련 사실관계 정리(대외비)
	2017. 3. 21. 기획조정실 작성 2017년도 전국 법원장 간담회 결과보고(대외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요구서(전문분야실무연구회 지원 부분), 2017년 대법원 예산 추가 재원 요구
	2016년도 인사발령 법 제42호, 법제43호, 법제48호, 법제58호, 법제71호, 법 제78호, 법제85호, 법제93호, 법제95호, 법제98호, 법제101호, 법제102호, 법제103호, 법제105호, 법제110호, 법제134호, 법제135호, 법제136호

	2017년도 인사발령 법제9호, 법제11호, 법제12호, 법제13호, 법제14호, 법제15호, 법제19호, 법제20호, 법제21호, 법제22호, 법제23호, 법제24호, 법제25호, 법제26호, 법제31호, 법제32호, 법제33호
	2011. 4. 14. 기획조정실장 명의 환경법연구회 발간 '환경소송의 제문제' 책자 구매 관련 예산재배정 및 비용지급 의뢰
	2011. 4. 25. 기획조정실장 명의 '환경소송의 제문제' 책자 구입비 예산재배정
	2011. 12. 1. 기획제1심의관 명의 민사집행법 연구회 발간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책자 구매 관련 예산재배정 및 비용지급 의뢰
	2011. 12. 9. 기획조정실장 명의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책자 구입비 예산재배정
	2014. 12. 4. 기획조정실장 명의 '국제인권법과 사법' 발간 관련 예산재배정 및 소요비용 지급의뢰
	2014. 12. 18. 기획조정실장 명의 '국제인권법과 사법' 발간 관련 예산재배정
	2015. 4. 28. 기획조정실장 명의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3주년 주요 판례평석' 등 발간 관련 예산재배정 및 소요비용 지급의뢰
	2015. 5. 7. 기획조정실장 명의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3주년 주요 판례평석 등 발간 관련 예산재배정
	2016. 6. 2. 기획조정실 작성 2016년 전문분야연구회 1차 예산배정(안)
	2016. 6. 9. 기획조정실장 명의 2016년 국제난민 컨퍼런스 비용 지원비 예산 재배정
	2016. 12. 22. 기획조정실 작성 2016년 전문분야연구회 2차 예산배정(안)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문분야 연구회별 예산배정액
	2017. 1. 3. 인사모관련 공동학술대회(1)(대외비)
	2017. 1. 11. 인사모 공동학술대회 대책(2)(대외비)
내규	대법원 위임전결사항 내규
녹음파일	관련자들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2건
기타	2017년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법관 명단
	이탄희 판사 인사희망원 2건(2016, 2017년도) 및 2017. 2. 16.자 사직서

# 조사보고서

2018. 1. 22.

추가조사위원회



# 목 차

<b>I. 추가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b> .....	1
<b>II. 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b> .....	5
1. 인사모 관련 .....	5
2. 공동학술대회 관련 .....	8
3. 조사 결과 .....	13
<b>III. 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 관련</b> .....	14
1. 배경 .....	14
2. 조사 경과 .....	15
3.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	15
4.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	17
5.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	18
<b>IV.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b> .....	22
1. 개요 .....	22
2. 관련 문서 .....	23
3.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	23
4.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보고 .....	25
5.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	27
6.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	28
7.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	29
8.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	30
9. 박○○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 .....	31
10. 조사 결과 .....	32

<b>V. 특정사건 담당재판부 등의 동향 파악</b> .....	33
1. 문서 정보 .....	33
2. 주요 내용 .....	33
3. 검토 .....	34
<b>VI. 종합의견</b> .....	35

#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 I. 추가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 1. 추가조사위원회의 구성

- 대법원장은 2017. 11. 3.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조사를 결정하였고, 같은 달 13. 위원회 형태로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민중기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를 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명함
- 위원장은 2017. 11. 15. 성지용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최한돈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최은주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안희길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형률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구태희 교수(사법연수원)를 위원으로 위촉함
- 위원회는 2017. 11. 17. 17:00 서울고등법원 제14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의 대강과 활동계획을 정하였고, 같은 달 20. 사법연수원에서 활동을 시작함

### 2. 조사의 목적과 원칙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관한 의혹의 해소
-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인적 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 사법부 구성원의 자존감과 명예에 흠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
- 가능하면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와 참여 하에 조사를 진행

### 3. 조사의 기간과 장소

- 조사기간  
2017. 11. 20. ~ 2018. 1. 22.
- 조사장소  
사법연수원 사무실, 제4세미나실(컴퓨터 분석실), 5층 중회의실 등

#### 4. 조사의 대상과 범위

- 조사의 물적 대상 :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임효량 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의 HDD와 SSD(저장매체)
- 조사의 시적 범위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2011. 11.경부터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2017. 4.경까지
- 2017. 11. 23.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사대상인 HDD, SSD에 대한 보존조치(복제장비를 이용한 하드카피)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27. 공문으로 재차 요청함
-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2017. 11. 29. 21:00~24:00경 HDD 3개와 SSD 3개(임종현 전 차장 사용 HDD, SSD를 제외한 나머지 저장매체)에 대하여 보존조치를 취함
- 2017. 12. 1. 11:00~12:00경 임종현 전 차장이 사용하던 HDD와 SSD는 이를 분리하여 봉인함(보존조치 없이 법원행정처가 보관함)
- 2017. 12. 22. 법원행정처에 임종현 전 차장 HDD 및 SSD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협조가 어렵다고 답변함
- 2018. 1. 8. 공문을 통하여 재차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12. '추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음'이라고 회신함
- 임종현 전 차장이 사용하던 저장매체를 제외한 나머지만 조사하였음

#### 5. 기술자문위원의 선임

- 2017. 11. 23. 물적 조사에 필요한 기술적 부분의 자문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상진 교수, 서울서부지방법원 남현 판사와 인천지방법원 오현석 판사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함
- 기술자문위원은 기술적인 자문만 하였고,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추출된 파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음

## 6. 컴퓨터 사용자 등의 조사 동의 내지 참여 여부

- 위원회는 활동개시 이후 한 달여간 조사대상 컴퓨터와 관련한 당사자들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하였으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2017. 11. 30. 공문으로 물적 조사에 대한 참관을 요청하였다가, 같은 해 12. 7. 참관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음
- 위원회는 조사대상과 방법을 한정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조사과정의 참여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물적 조사로 사적 정보가 누설되거나 비밀이 침해될 개연성이 거의 없으며, 이러한 조사에 당사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2017. 12. 26. 물적 조사를 개시함. 관련 당사자들에게 조사업정일 2~3일 전에 조사일정을 통보하고 참여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참여를 요청하거나 실제 참여한 당사자는 없었음

## 7. 조사의 방법과 문서파일의 선별

- 조사대상 및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검색어<sup>1)</sup>가 한개 이상 포함된 파일을 기술적으로 추출함<sup>2)</sup>
- 추출된 파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별함
  - 법원행정처(인사·감찰부서 제외)가 법관의 성향, 동향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보관한 문서
  - 위 문서 가운데 관련 자료 수집의 경위, 문서 작성의 동기와 목적, 이용 정황 등에 비추어, 법관의 연구 활동과 판사회의 등예의 개입 및 재판에의 직·간접적인 관여 등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
  - 다만 법관의 인사, 내부 보고와 기관 사이의 협조, 여론에 대한 대응 등 사법행정상의 필요와 합목적성이 인정되는 문서는 제외함

## 8.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의 처리






- 물적 조사로 추출된 파일 중 암호가 설정된 파일(정상파일<sup>3)</sup>)에서 약 460개,

1) 성향, 동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의 이름 등

2) SSD는 저장매체의 특성으로 인한 기술적 이유로 복구율이 현저히 낮았음

유실파일<sup>4)</sup>에서 약 300개가 발견됨)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특히 암호가 설정된 정상파일 중 아래의 5개 파일은 제목 자체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기술적 제약과 보안유지의 어려움, 협조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

 84748_(170124)인사모 관련 검토+1 [박 ]].hwp	2017-02-06 오전 12:34
 86250_(160408)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	2016-04-11 오후 10:20
 86311_(160315)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 [임종헌수정].hwp	2016-04-15 오후 2:23
 86312_(1603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인사).hwp	2016-04-15 오후 2:24
 95483_(160407)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	2017-01-12 오후 2:40

## 9. 보안유지 조치

- 위원회는 조사대상 파일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의 협조를 받아 다음의 보안유지 조치를 취함
- 사법연수원 건물의 구조와 동선을 고려하여 사람의 왕래가 가장 적은 곳을 조사 장소로 선정하고,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문의 열쇠는 위원이 항시 휴대하면서 관리함
- 조사에 소요되는 장비 일체(조사용 고사양 컴퓨터 4대, 인터넷용 일반 컴퓨터 1대, 모니터 9대, 프린터 1대, ENCASE 1개)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지원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만 조사를 진행함
- 조사에 참여하는 장비운용자 등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위원이 추출된 문서를 선별하는 동안에는 가급적 퇴실하도록 하며, 조사장소에 출입하는 사람 모두(위원 포함)에 대하여 휴대전화, USB 등의 장비를 일체 지참하지 못하도록 함
- 조사장소에 장비 운용자가 있는 동안에는 위원회의 위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실무관이 함께 재실함
- 조사에 사용하는 컴퓨터는 일체 망에 연결하지 않음. 단, 필요한 경우에는

3)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파일로 원 파일명의 확인이 가능함

4) 삭제되었던 것을 복구한 파일로 원 파일명의 확인이 불가능함

전산정보관리국 실무관이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장비(속칭 '에그')를 이용하여서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함(실제 인터넷에 접속한 적이 없음)

- 조사장소에 CCTV를 2대 설치하여 조사장면을 24시간 녹화함
- 조사대상에서 추출된 파일 등은 원칙적으로 조사장소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일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단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실 내에서 관리하는 '문서목록' 내지 '파일목록'에 기재한 후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고, 열람을 마친 이후에는 다시 조사장소로 반입하여 파쇄 내지 삭제하도록 함

## 10. 인적 조사

- 선별한 문서의 작성 경위와 보고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7명에 대한 인적 조사(대면방식)를 실시하였음

## II. 인사모<sup>5)</sup> 및 공동학술대회

### 1. 인사모 관련

#### 가. 인사모 동향 파악의 경위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던 이규진 상임위원<sup>6)</sup>은 2015. 7. 7. 코트넷 국제인권법연구회 게시판에 인사모 제안 글이 게시되기 이전에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으로부터 '연구회 내 소모임에서 사법제도, 법관인사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는데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모임으로 보이니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

#### 나. 2015년 인사모 활동내용 파악 보고

- 이규진 상임위원은 그 무렵부터 인사모 모임에 참석한 일부 회원들로부터 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으로 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아래와

5)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의 약칭임

6) 이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편의상 '이규진 상임위원'이라 함

같이 일련의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보고함

- 보고서에는 참석자와 논의 주제, 논의 결과 등 코트넷 게시판에 일반적으로 게시되는 내용을 넘어서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특히 특정 주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한 법관과 발언 내용)과 취지, 모임 분위기와 토론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에 합류한 법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간략하게 기재되었음

1) 2015. 7. 21. 첫 예비모임 관련 보고('사법제도소모임 관련 보고'7))

- 참석자 12인의 이름(현재 소속법원, 연수원 기수 표시)
- 구체적 논의 내용(논의된 내용 전반, 주요 논의대상 등)
- 그 중 상고법원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지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중립적 의견이 다수였고 이○○ 부장만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였다고 함. 박○○ 판사 역시 신중한 입장의 의견을 밝혔다고 함.  
추후 연구를 계속하지는 의견으로 귀결된 것으로 보임』
- 『외부로의 의견 표출에 관하여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함. 커뮤니티 회장과외의 의견 조율, 대법원에서의 의견 전달 및 의견 교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제시되었고, 그에 관하여 찬성이나 반대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함』
-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논의의 부적절 문제’ 와 ‘상고법원 등 현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 문제’ 8)에 관한 검토의견  
『향후 논의의 수준이나 범위가 상향되거나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추후 상황을 체크해 나가면서 막을 수 있는 문제로 보임. 모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임』  
『관심을 갖고 추후 모임활동을 주시한다면 상고법원에 관하여 대법원과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문제는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2) 2015. 8. 11. 두 번째 예비모임 관련 보고('사법제도소모임 관련 보고(2)')

- 참석자 16인의 이름(현재 소속법원, 연수원 기수 표시)  
『부장판사 참석자가 늘었음. 총무인 박○○ 판사가 개별적으로 이메일에 의한 연락을 취하여 모임을 주도하였음』

7) 해당 문건의 명칭. 문건 자체에서 굵은선 처리나 밑줄 표시가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표시하고 사람 이름은 비실명 처리함. 이하 같음

8) 실장회의 및 처장 주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임



■ 상고법원 논의 내용

『이○○ 부장판사가 찬성론 입장, 이○○ 부장판사가 반대론 입장의 기초발표를 하고, 결론을 내지 않은 채 각 입장의 논거에 관하여 상호 토론이 이어졌다고 함』

『이○○ 부장판사는 문건을 작성하여 와서 심도 있는 비판을 하였고 회원들에게 이를 공개하지는 않은 채 구두로 발표만 하였는바, 추후 어딘가에 발표하려는 생각으로 보였다고 함』

『외부로의 의견표출 문제에 관하여는 신중론이 우세하였으나, 최소한 인권법 커뮤니티 내에 당일 논의된 내용을 올리는 문제에 관하여는 다수가 찬성의사를 표하였다고 함. 박○○ 판사가 당일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2015. 8. 21. 이전까지 참석 회원들에게 회람하기로 하였고, 커뮤니티에 올리는 문제에 관하여는 회람 이후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하였다고 함』

3) 2015. 9. 14. 정식 첫 모임 관련 보고['인권과 사법제도소모임 관련(3)']

- 2015. 9. 9. 인사모 주요 회원들과의 저녁자리 참석자, 회장 발언 요지, 참석자들의 반응
- 2015. 9. 14. 정식 첫 모임 주제 발표자 4명의 이름(소속 법원, 연수원 기수)
- 참가법관들 중 배석판사들과 부장판사들의 의견
-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수 명의 법관이 뒤풀이에 합류한 사실 및 해당 법관들의 이름

다. 2016년 인사모 활동내용 파악 보고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5. 11. 20.로 예정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총회에 앞서 2015. 11. 10. 커뮤니티 게시판에 회장선거 불출마의사를 공지하였으나, 법원행정처(실장회의 및 처장 주례회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지 인사모에 대한 창구 역할 내지 협조 차원에서 회장 연임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규진 상임위원은 총회 이틀 전 회장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번복함. 결선투표 결과 이규진 상임위원이 다시 회장에 당선됨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6년에도 인사모 모임 중 민감한 주제를 다룬 논의와 그 결과 등을 파악하였는데, 특히 2016. 4. 8. 제7회 모임(논제: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의 향방) 이후 그 모임에 참석한 법관을 통해 강경발언을 한 법관과 발언내용 및 특정 법관의 역할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였고, 그 무렵 인사모 카톡방이 개설되어 있음도 확인하여 보고함

## 2. 공동학술대회 관련

### 가. 진상조사 당시 제출된 대책문건 (1), (2)

-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이규진 상임위원은 진상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대책문건 (1), (2)'를 제시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에 관한 대책을 '대책문건 (1), (2)'와 같이 2회에 걸쳐서 자신이 실장회의와 처장 주례회의에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책문건 (1), (2)'외에도 5개의 공동학술대회 대책문건이 추가로 발견됨. 위 추가 문건들은 대부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되어 기획조정실장과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된 다음 실장회의와 처장 주례회의에서 논의됨[대책문건 (1), (2) 역시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내용을 이규진 상임위원이 전체적으로 수정한 후 실장회의에 제시하여 논의 또는 보고한 것으로 확인됨]
- 이규진 상임위원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법원행정처 실장들과 조사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자신이 최종적으로 수정하여 보고한 '대책문건 (1), (2)'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나머지 추가 대책문건들의 존재 및 논의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함으로써, 결국 '위 대책문건 (1), (2)'가 작성·논의된 이후에도 법원행정처가 여러 차례 공동학술대회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 사실 및 논의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음
- 이는 이규진 상임위원이 이탄희 판사에게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취지의 실언을 하는 바람에 이번 사태가 야기된 것에 따른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내부 분위기가 강하였고, 이규진 상임위원은 그러한 법원행정처 내부의 분위기와 요청 때문에 위와 같이 대처한 것으로 보임

### 나. 추가 확인된 5개 대책문건

- 추가 확인된 5개 공동학술대회 대책문건은 대부분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기획조정실 심의관들과 다른 실의 심의관이 회의의 기초자료로 작성하여 기

획조정실장과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위 각 문건들이 실제로 실장회의 또는 처장 주례회의에 제시되어 보고 및 논의됨

- 위 각 문건에 의하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확정(2017. 1. 23.) 되기 이전에는 주로 회장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문제제기, 연구회 명의로 행사 고수할 경우 회장의 학술대회 불참과 사임, 예산 지원 감축 등의 대책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됨
-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의 개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기존 논의를 포함한 단기방안(공동학술대회 대응 중심)과 중기방안(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 방안 중심)이 로드맵(p12, 13 참조)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동학술대회 주제 한정 등의 협의 불발시 회장 등 사퇴 및 탈퇴, 중복가입 해소 조치 등이 포함되었으며, 나아가 이로 인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반 회원들의 동요 및 탈퇴, 공동학술대회의 고립화 분위기 조성, 대안적 인권 대형 행사 개최로 인권 관련 법관들의 관심을 다른 연구회로 유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됨

#### 다. 5개 대책문건의 주요 내용

##### 1) 2017. 1. 12.자 인사모 대응 방안

-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인사모는 최초 설립 당시부터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소모임**이었으나, **법관 사회 반발을 우려하여 현재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임**
  -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주제로 대학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부정적 파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임 ⇨ 적극적 대응책 마련 필요
- [총론] 대응의 기본방향
  -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됨
    - 문제 해결의 주체는 **現 회장임** ⇨ 전임 회장이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
    - **법원행정처가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회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후속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암시해서는 안 됨**
  - 철저히 '단체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접근해야 함

- 現 회장은 핵심 세력이 보여주는 **비민주적인 모습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을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해야 함

■ [각론] 구체적인 대응 방안

- 2017. 1. 15. 운영위원회 속행 ⇨ 사임하겠다는 뜻 시사

- 회장은 “① 커뮤니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② 커뮤니티 예산을 활용하여, ③ 외부와 연계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설명
- 만일 운영위원들이 회장에게 강력하게 반발할 경우, 충분한 어조로 위와 같은 설명을 반복하면서, ④ 위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 아례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커뮤니티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단체 운영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 같다는 설명을 추가함
- 운영위원들이 계속 반발할 경우,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더 추기로 논의해 보자고 하면서 속행하자고 주장**
- 운영위원들이 속행하지는 주장에도 반발할 경우, 회장은 **“여러분들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제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만 회장직을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 고 설명 ⇨ 회장이 사임의 뜻을 시사하면 운영위원들이 더 이상 강경한 주장을 할 수는 없고, **속행에 동의할 것이며, 아마도 뒤풀이에서 이야기하자면서 뒤풀이 자리로 이어질 것임**

- 2017. 2. 말 운영위원회 개최

- **‘소모임’ 주관 행사로 개최할 것을 주장**, ‘커뮤니티’ 주관 행사 고수 시 ‘임시총회 소집’도 검토 가능(단,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할 필요 있음)

■ 커뮤니티 주관 행사 고수 시 주요 대책

- ① 커뮤니티 명칭 사용 및 회비 지출 승인 거부
- ② 신임 회장 학술대회 불참 → 신임 회장 사임  
**신임 회장 사임**하면서 **고법부장 이상 회원들도 함께 탈퇴**하는 것이 적절
- ③ 예산 지원 감축(최소화)

2) 2017. 1. 16.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경과

■ 운영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 정리

- 회장: 커뮤니티 명의 사용한 외부행사 반대, 추가 논의 위한 운영위원회의 속행, 공동세미나의 연기 주장
- 나머지 운영위원들의 의견

■ 절차적 문제와 대회연기 의견에 대하여 가장 강경하게 반대한 법관의 이름

■ 회의 결과

- 연구회 명의로의 행사 고수할 경우 강경인(연구회 명칭 사용 및 회비 지출 승인 거부 등과 유화인(연구회 자체 학술행사로 개최하는 안을 제시) 및 각 안의 문제점

### 3) 2017. 1. 23.경 인사모 대응 방안

- 국제인권법연구회 온라인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당일 연구회 회장이 주장해야 할 내용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강행될 경우의 대책이 기재되어 있음(위 2017. 1. 12.자 대응 방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함)

### 4) 2017. 1. 말경 인사모 관련 대응 방안

- 2017. 1. 23. 운영위원회에서 2017. 3. 25. 공동학술대회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하여 개최하기로 의결된 후 작성됨

■ 공동학술대회는 사법부 독립 및 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성 있으므로 **대응 로드맵 마련 필요**

■ 구체적 대응 방안

■ 단기방안: 공동학술대회 관련 대응 중심

- 법관 상대 설득 논리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연구회가 해당 전문분야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는 것은 규정에 반한다는 취지의 문제제기

- **다수 회원이 인사제도 세미나 개최의 부적절함에 동의할 경우** ⇨ 세미나 개최 백지화 및 인사모 활동 위축

- **부적절하지 않다**고 연구회 여론이 모아질 경우 ⇨ **'회장 직위 정상수행 불가'** 를 이유로 **회장직 사퇴**(고법부장, 심의관 출신 자법부장이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한 지지 차원에서 명분을 내세워 탈퇴) ⇨ 다수 법관들의 심리적 거리감 및 주저감 형성

■ 중기방안: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 방안 중심

① **모든 전문분야연구회 상대로 규범 준수 요구 → 중복가입해소 + 연구 범위 준수 관행 정착시 인권법연구회가 가장 큰 타격**(중복가입자 일제 해소 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중 **50%가 넘는 200명 이상 급감** →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현저한 타격)

② 규정 위반 연구회에 대한 예산 등 지원 삭감 및 해외 출장 제한

③ 보편적 인권 관련 사법부 내 다른 조직에서 대형 행사 주도

현재 국제인권법 소속 **법관들** 상당수는 '국제인권' 이 아닌 **보편적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 가입** ⇨ **보편적 인권 이슈 관련 다른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은 국제인권법연구회로의 독점적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

- 인사모 활동에 대한 자성 목소리 유도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자신들이 인권 관련 사법부 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임하고 있음. 사법부 내 다른 기구(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사법정책연구원 등)가 국제인권법의 전형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에 관하여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 **사법행정 관련 문제제기에 매몰되어 정작 국제인권 관련 이슈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 내부 자성 목소리 유도 가능

- 로드맵(안): 아래 표

시기	방안 예시
1월 하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법 회장 등이 회원 상대 공식 문제제기 '인사제도 외부학술행사는 국제인권법의 <b>전문분야 연구범위와 무관함에도 연구회 공식 행사로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으로서 부당</b>하고, 인권법 연구회 명의로가 아니라 인사모 명의로 행사 개최 가능한데, 이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함'</li> <li>-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지지 의사 밝힐 우군 필요함</li> </ul>
2월 초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인 일반 법관들이 인사모 의견에 동조할 경우 ⇒ <b>연구 주제 한정하는 방안 관련 협의</b></li> <li>-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주제로 심도 깊은 세미나 개최</li> <li>- 사법부 예산 관련 논의도 상정 가능</li> </ul>
2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하 협의 불발시) <b>회장등 사퇴 및 탈퇴</b></li> <li>- 선배 법관들 회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차원에서 동반 탈퇴</li> <li>- 법관들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의 활동에 심리적 거리감 발생</li> </ul>
인사이동 후 3월 초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정국장 명의 <b>전문분야커뮤니티 운영 관련 안내 말씀 공지</b></li> <li>- <b>중복가입 금지 규정 형해화</b>로 선량한 법관들이 피해받고 있으므로, 모든 커뮤니티 및 회원들은 3월 중순까지 자율적으로 해소해주시기 바람</li> <li>- <b>커뮤니티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b>해주시기 바람</li> <li>- 중복가입 금지로 인한 학술정보 접근 제한 해소 등을 위하여 커뮤니티의 <b>모든 게시글은 커뮤니티 회원이 아닌 법관에게도 공개</b>됨</li> <li>◆ 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사법정책연구원 등의 <b>인권 관련 대형 행사 검토 및 준비 착수</b></li> </ul>
3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반 회원들 동요 및 탈퇴</li> <li>- 선배법관들 대거 탈퇴 및 중복가입 금지 해소 조치 등의 영향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꺼리는 분위기 형성</li> </ul>

3월 하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관 인사제도 관련 연세대 법전원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li> <li>- 인사모 등 강성 세력 중심 개최, 고립화 분위기 조성</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li> <li>- 인사모에 대한 자연스러운 활동 중지 여론 조성</li> <li>◆ 대안적 인권 대형 행사</li> <li>- 인권 관련 법관들의 관심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닌 다른 연구회 등으로 이동</li> </ul>

### 3. 조사 결과

- 이규진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던 2015년과 2016년에 인사모 회원들의 모임 및 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문건들이 확인되었음. 위 문건들에는 인사모 모임에서 특정 주제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과 결과를 포함해서, 발언자들의 구체적인 발언내용과 취지, 모임의 분위기와 토론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 상황 등에 이르기까지 모임에 참여한 법관들의 동향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
- 이규진 상임위원의 인사모 활동내역 보고는 인사모 설립 당시인 2015. 7.경의 예비 모임부터 2015. 9.의 정식 첫 모임 때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2016년에는 정기적인 보고가 거의 없다가 2016. 말경에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무렵부터 다시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이 긴밀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문건으로 이규진 상임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제출한 '대책문건 (1), (2)' 외에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이 작성한 5개의 추가 대책문건이 확인되었음. 위 추가 대책문건들은 임종현 전 차장의 지시로 주로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 의해 회의자료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위 문건들은 실장회의와 처장 주례회의 등에 제시되어 위 문건들에 기재된 대응방안이 논의된 점에 비추어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견제 논의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주도한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초기 대응은 주로 공동학술대회를 연구회 내부행사로 축소시키고 외부 발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었

으나,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로는 기획조정실에서 마련한 '공동학술대회 대응을 중심으로 한 단기 방안'과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를 중심으로 한 중기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중기 대응 방안 중 일부인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실행되었음. 그 이외의 중기 대응 방안으로 국제인권법 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 다른 전문분야연구회 등의 인권 관련 대형 행사 개최로 인사모를 고립시키거나 견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sup>9)</sup>

### III. 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 1. 배경

- 우리법연구회는 2015. 5.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여 상고법원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압도적이었음을 발표함. 이에 법원행정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연구회 탈퇴 후에도 교류를 지속하면서 상고법원 반대 논의의 주축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세 결집 방지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함<sup>10)</sup>
- 인사모도 2015. 7. 21. 예비모임에서 상고법원 논의를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 등 사법제도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자, 법원행정처는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법원행정처는 2015. 8.부터 2015. 10.까지 각급 법원 법관들로부터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 및 소통 기구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직전인 2016. 1. 29. 인사모 모임에서 송○○ 판사가 수직적,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수평적, 민주적 법원운영방식으로 바꾸기 위하여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판사를 판사회의에서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9) 대책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의 전 심의관들은 위와 같은 로드맵 등에 관하여 상부의 지시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이고, 중복가입 해소 조치 이외에는 대부분의 대책이 비현실적이거나 부작용이 큰 방법이었어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거나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법관들의 특정 커뮤니티 및 연구 모임에 관하여 이러한 내용의 부정적인 대책과 견제 방안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논의된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임

10)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기획조정실



취지의 발표를 함

- 법원행정처는 이를 판사회의를 통한 사법행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sup>11)</sup>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핵심 그룹의 악의적 폄하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위원 추천권자인 고등법원장에게 추천 희망 법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sup>12)</sup>

## 2. 조사 경과

- 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법관들의 동향 내지 성향 등을 파악한 내용이 포함된 3개의 문건이 확인됨
- ①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은 송○○ 판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 방안 문건이고, ②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은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이며, ③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는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문건임
- 문건들은 모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성하였고, 작성된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및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됨
-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 및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을 가급적 충실하게 공개하기로 함

## 3.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 가. 문건의 작성

- 2016. 2. 24.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작성하였음

### 나. 주요 내용

- 송○○ 판사가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를 발표한 2016. 1.

11) 판사회의의 순기능 제고방안 (운영 측면 검토), 2016. 3. 14. 기획제2심의관실

12)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 2016. 4. 4. 기획조정실

29. 인사모 모임에 참석한 법관들을 기재하고, 그 중 우리법연구회 前·現 회원을 밑줄로 구분함

- 발표문의 요지, 송○○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 사법행정에 대한 주된 관심사 등을 사진을 첨부하여 기재함
- 송○○ 판사가 2016. 2. 1. 발표문에 기초하여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평'에 게시한 건의문 내용 및 그에 대한 법관들의 반응 등을 분석함
- 2016. 2. 26. 개최 예정인 인사모 모임 주제 및 참석예정자가 기재되어 있음
-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관하여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하면서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을 분류하였는데, 핵심 그룹으로 우리법연구회의 부장판사 6명, 평판사 5명,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부장판사 1명의 이름이 기재되었고, 주변 그룹으로는 우리법연구회의 판사 1명,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판사 9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
-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다만 핵심 그룹은 주로 우리법연구회 전, 현 회원이고, 주변 그룹은 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들이라는 취지가 기재됨
-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치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통해 소수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이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제시됨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음

다. 검토 결과

- 문건은 송○○ 판사를 비롯한 일선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에 대한 주장을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핵심 그룹 법관들의 판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문건에는 발표문 작성 및 발표자인 송○○ 판사의 구체적인 특징(두 연구회

의 핵심 리더, 활동방식)과 주된 관심사(판사회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으로 분류된 법관들의 이름이 특별한 분류기준과 내용도 없이 나열식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러한 내용들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평소 동향이나 사법정책 관련 주장들은 법원행정처의 특별한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어 온 것으로 보임

-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및 그 대상자의 범위가 불분명한 '핵심 그룹'이라는 용어에 관해서 법원행정처의 일부 전 심의관들은 인적 조사 시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중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회원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 4.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 가. 문건의 작성

-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2016. 3. 7. 작성하였음

##### 나. 주요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박○○ 판사가 2016. 3. 중순에 있을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출마하자, 법원행정처가 박○○ 판사의 의장 경선 출마 경위, 박○○ 판사가 의장으로 당선되었을 경우의 문제점 및 그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건임
- 박○○ 판사의 학력과 경력을 게시한 프로필을 기재하면서 2015. 4. 16. 게시판에 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글을 게시한 경력을 기재하고 있고, 전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서 2016년에 출범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이용하여 판사 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그룹의 요청으로 의장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
- 박○○ 판사가 의장으로 당선될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면서 단독판사회의 명의로 건의문, 성명서를 채택하거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등

의 사법행정라인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대응 방안으로는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 판사를 적극 지원하되, 그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선거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함<sup>13)</sup>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음

#### 다. 검토 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 판사는 2016. 3. 18. 출마의 변<sup>14)</sup>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에게 코트넷 메일로 전송하였고, 그 3일 후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출마하였음<sup>15)</sup>
-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원의 판사회의 의장 경선과 관련해서 출마 예정자의 프로필과 경력 등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선을 넘어 경선 출마의 경위와 지원 법관들의 세부 동향까지 파악하고, 그 대응전략으로 다른 판사의 의장 경선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은 대응 방안의 실행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임

### 5.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 가. 문건의 작성

-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2016. 3. 28. 작성하였음

#### 나. 주요 내용

- 검토 배경과 관련하여 "핵심 그룹의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폄하  
⇒ 사법행정위원회가 '의례적 기구', '들러리'라는 프레임 구축 중"이라고 하

13) 문건에 지원단 중 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 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등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출마자인 ○○○ 판사와 의장 경선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음

14) 출마의 변은 ① 과거 수행했던 최선임 단독(또는 배석) 판사의 경험을 살려 모순된 제도나 관행 개선에 앞장서겠다, ②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기수별, 업무별로 골고루 잘 안배하여 간사를 선임하겠다, ③ 난치병 판사에 대한 모금운동 및 질병휴직 중 판사에 대한 연구법관 선정에 관한 내규 검토 경험을 살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앞장서 돕겠다는 취지임

15) 이와 관련하여, ○○○ 판사는 3차례에 걸쳐 추가조사위원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고, 법원행정처의 사주를 받아 박○○ 판사의 낙선을 위해 대항마로 나선 것이 아닌데, 법원행정처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향을 받아 경선에 출마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다면 본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상황이기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보내 왔음

면서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경과를 기재함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고등법원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함

- 사법행정위원회가 실제 구성되면, **핵심 그룹은 위원 위촉 결과**를 두고 다시 문제제기를 할 것임
- 각 고등법원장이 이른바 '왕당파' 로 불리는 법관(예: 행정처 심의관, 기획법관·공보관, 수석부 배석판사, 해외 유학 선발 경력 등을 보유한 법관) 위주로 위원 추천할 경우 ⇨ **핵심 그룹에게 공격 기회** 제공하는 셈
  - ① 사법행정위원회의 **출범 의의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② 핵심 그룹의 공격으로 **위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
- 아래와 같은 법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고등법원장에게 정보 제공함**으로써 **핵심 그룹의 악의적 폄하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필요 있음
  - ①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가 있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
  - ② **법관 사회에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법관
  - ③ 정치적 색깔이 없으면서도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법관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고등법원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함

- 후보자 추천 기준과 관련하여, 전제조건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으로 하되, '독선적이거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법관은 제외'하고, 적극적 기준으로 '핵심 그룹과 유대관계'가 있고, 여성이나 장애 법관 등 '법관 사회의 상징성'이 있으며,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관을, 소극적 기준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특정 보직 경력이 있는 법관을 제시하고 있음
- 후보자 추천 명단과 관련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법관은 1순위에 적색으로, 1순위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유력한 후보군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법관은 2순위에 청색으로, 3순위는 흑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중 10명의 법관들에 대한 개별 추천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중요한 내용으로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영향력이 있어 강경한 주장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고, 추천 명단에도 '기본적으로는 보수 성향이지만,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송○○ 판사가 믿고 따르는 선배',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전략적 사고에 능하나, 주

장이 강한 편은 아님',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경선에서 박○○ 판사 지지', '비밀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개설자, 우리법연구회 핵심 그룹, 強性' 등의 기재가 되어 있음

- 세부 내용 및 추천 명단은 【별지 3】 기재와 같음

#### 다. 이후의 경과

- 기획조정실은 2016. 4. 4.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 추천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핵심 그룹 등 진보 성향 법관들의 호응을 얻을만한 법관들이 충분히 추천되어 핵심 그룹은 최소한 '위원 구성 문제'에 관한 한 더 이상 사법행정위원회를 폄하할 명분이 없다고 적시됨
- 다만, 재판제도발전위원회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원문화개선위원회 특정 법관 1명(사유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에 대한 교체 여부를 검토함

##### ■ 문제점

- 여성 부장판사 없음
- 주류 법관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장판사 부족
  - [진보] 이○○, 장○○, 유○○
  - [일반] 구○○, 이○, 조○○ ☞ 구○○, 이○ 부장판사가 強性이라는 평가

- 검토 의견으로, 부장판사급 위원 추가 추천 요청의 경우 법원행정처가 고등법원장의 추천권 행사에 깊게 관여하였다는 오해 발생 가능성이 있고,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는 예민한 안건이 상대적으로 적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현상유지'가 제시됨
- 다만, 예민한 안건이 많은 추후 출범할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의 경우 특정 성향 판사의 위원회 좌지우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진보 성향 법관 후보군을 사전 검토하였듯, 이른바 주류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법관 후보군도 사전 검토하여 대항마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각 고등법원과 사전 협의'하는 방안이 제시됨

- 한편,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은 2016. 4. 8.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사법행정위원회에 특정 성향의 법관이 상당수 참여한 반면 다수 법관의 의사를 대변할 법관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므로, 신중히 안건을 결정·회부하더라도 실제 의견 수렴 및 회의 과정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예상되는 모든 의견, 주장들을 정리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회의의 논의방향, 결론 등이 수용 불가능 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바꾸는 노력을 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 라. 검토 결과

- 추천 명단 등에 기재되어 있는 ① 보수나 진보, 온건 및 강성 여부 등의 정치적 성향, ② 특정 성향의 다른 법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③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④ 가족관계 등의 사유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그 판단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 문건 및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 법관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분류한 특히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내용은 자칫 부정적인 이미지의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도 부적절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법원 내에서 다른 위원회 등이 구성되거나 법관들의 여론 및 동향 파악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아무런 비판 없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정보가 그대로 누적되어 관리될 위험성이 있음<sup>16)</sup>
-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을 여러 가지 경력과 성향 및 활동내용 등에 기초하여 특정한 그룹 또는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과정에서 일정한 경력을 가진 일부 법관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른 그룹과 유형에 속한 법관들은 원천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안배하는 내용으로 후보자

16) 실제로 2016. 4. 12. 통합실무지원단에서 작성한 사법행정위원회 요구사항에 관한 보고에 첨부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명단에 기존 추천 명단에 없던 법관들에 대하여 경력, 성향, 가족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추가됨

검토를 하고 관련 정보를 추천권자인 각 고등법원장에게 제공함은 추천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 후보자 검토 내용은 이른바 진보적 성향을 가진 법관도 많이 추천되도록 하여 균형 있는 위원회가 구성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건하거나 보수적 성향의 법관들이나 "주류 법관"<sup>17)</sup>들을 추천하고, 검토 문건에서 이른바 '強性'으로 평가된 법관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다분하게 나타남

#### IV.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

##### 1. 개요

-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하여 평소 다수 법관들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들이 상당수 발견되었음
-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제도와 사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법원행정처가 그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의견과 동향 등을 파악하거나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임
- 다만, 법관들의 의견과 동향을 파악하거나 법관 여론 수렴을 위한 정보 수집은, ① 사법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② 그 방법과 절차도 가능한 한 공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③ 정보의 수집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④ 수집한 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어서는 안 됨
- 물적 조사를 통해 확인한 문건들 중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건들만을 골랐고, 가급적 문건의 전부를 공개함

17)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 표현을 그대로 인용함



## 2. 관련 문서

- 가.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본문 게시)
- 나.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보고 【별지 4】
- 다.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별지 4-1】
- 라.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 【별지 5】
- 마.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별지 6】
- 바.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별지 6-1】
- 사.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별지 7】
- 아.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 (본문 게시)

## 3.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 가. 문건의 작성 및 배경

- 위 문건은 기획조정실이 2016. 8. 24. 작성하였음
- 정운호 사태 등 전·현직 부장판사 관련 사건이 발생하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고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법원장에 의한 사법행정권한 행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방안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작성되었음

### 나. 주요 내용

- 주기적 점검 대상으로 법관의 업무영역뿐만 아니라 언행 등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함. 법관의 사건처리 관련 점검 사항 이외에 법관의 언행 관련 점검 사항으로 법정 내 막말 여부와 함께, 법관의 부적절/비윤리적 법원 조직 내부 및 외부 행동을 제시함
- 공식/비공식적 방법을 망라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므로 가용한 공식적 방법 이외에도 비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다만,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

지가 필요함을 적시함

- 법원장, 기획법관 등의 공식라인을 통한 정보수집 방안 이외에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수집으로, ① 신뢰할 수 있는 거점법관(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을 통한 해당 법원의 동향 주기적 파악, ② SNS, 게시판 리서치를 통한 정보수집 등이 제시됨
- SNS, 게시판 리서치를 통한 정보수집 대상으로 ① 법관들이 가입한 카페 '이판사판'의 익명게시판, ② 여성법관들이 가입한 카페 '유스티티아', ③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법관 관련 공개된 SNS(가령 facebook) 등이 적시됨<sup>18)</sup>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앞부분 생략)

#### 4. 점검 및 조치 시스템 구축

##### 가. 착안 사항

###### ▣ 정보 수집에서 개선사항 피드백까지 시스템화

- “정보수집 ⇨ 점검사항 추출 ⇨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 ⇨ 법원장에게 통지 등 대책 시행 ⇨ 개선사항 피드백” 의 단계별 시스템화

###### ▣ 공식/비공식의 정보 수집 + 공식적 점검의 외관

###### ● 공식/비공식 방법을 망라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필요

- 공식적 정보수집이 주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
- **기용한 비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 ● 「공식적」 점검의 외관 필요

- 비공식적 정보수집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 필요
-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점검이 진행된다는 외관 필요함

##### 나. 정보 수집

###### 1) 공식라인을 통한 정보수집

###### ▣ 법원장으로부터 분기별 ‘각급 법원 특이사항’ 서면보고 수령

(이하 생략)

###### ▣ 기획법관을 통한 정기적/비정기적 보고 수령

(이하 생략)

18) 문제 법관 관련 공개 SNS 점검에는 당사자 본인의 SNS 점검과 함께, 부장판사인 경우 그 배석판사나 참여판, 실무관의 SNS 점검 등이 제시됨

▣ **고충처리법관 제도를 통한 고충 보고 수령**

(이하 생략)

▣ **소통의 창을 통한 정보 수집**

(이하 생략)

2)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수집**

▣ **거점법관을 통한 정보 수집**

- **신뢰할 수 있는 거점법관**(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을 통한 해당 법원의 동향 주기적 파악

▣ **특이통계 추출 전산 시스템 개발을 통한 조기 경보체제 구축**

(이하 생략)

▣ **SNS, 게시판 리서치를 통한 정보수집**

- 법관들 대상으로 한 **익명게시판(이판사판)** 점검
- 여성법관들이 가입한 '**유스티티아**' 의 동향 주기적 점검
-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법관 관련 공개된 SNS(가령 facebook)** 점검
  - 당사자 **본인**의 SNS 점검
  - 부장판사인 경우 그 **배석판사나 참여관, 실무관**의 SNS 점검

(이하 생략)

4.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보고

가. 문건 개요

- 위 문건은 기획조정실이 2015. 2. 14. 작성한 것으로, 기획제1심의관 사용 컴퓨터 저장매체 중 '○○○'19) 폴더의 하위 폴더인 '각종 보고서'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던 정상 파일임20)
- 위 문건을 작성한 당시 기획조정실 ○○○ 심의관은, 기초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보고되지 않은 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가 인사이동시 삭제한 파일이므로 정식 보고서라고 볼 수 없고, 당시 기획조정실로 인사발령이 난 상태로 아직 부임 전이던 ○○○ 판사가 기초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5. 2. 15.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문건이 기초실장에게 보고되었다고 진술함. 실제

19) ○○○은 당시 기획조정실에 근무한 심의관 이름임

20) 자세한 내용은 【별지 4-1】 참조

보고된 것이라고 진술한 문건은 위 문건과 대응방안에서 차이가 있는데, ①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신중한 운영, 위험성 있는 글의 삭제 또는 실명화를 권유하는 방안, ②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③ 법관 전체의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 공지하는 방안, ④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관 전체의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 공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장기과제로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함

-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는 '여성 판사 네이버 카페'<sup>21)</sup>의 회원이었던 몇몇 여성 판사들이 익명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 등을 목적으로 2014. 10. 24. 개설함

#### 나. 정보수집 방법

-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여 관련 게시물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거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임<sup>22)</sup>

#### 다. 주요 내용

- 위 카페의 개설경위와 카페 운영자, 회원 현황, 회원, 구성, 회원 가입절차, 카페에서의 의사소통 방법 및 주요 게시판 개요 등이 정리되어 있고, 이어문제 소지 있는 주요 게시물 및 댓글이 소개되어 있음
- 상고법원 설치, 원○○ 형사사건 선고,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법원 인사 등의 이슈에 관한 법관들의 게시물 및 그에 대한 댓글이 문제 소지 있는 주요 게시물 및 댓글로 적시됨

21) 익명에 의한 글 게시 기능이 없음

22) 위 문건의 대응방안에는 카페의 자진폐쇄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미 확보한 아이디, 비밀번호로 회원을 가장하여 활동 중단에 대한 글을 올려 카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 앞서 본 기획조정실의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7)'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인사모 관련 대응 중 중복가입 관행 전면 해소가 이루어질 경우를 전제로 커뮤니티 게시물 전면 공개 방안이 실시되면 심의관 등이 의심을 감수하면서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

- 대처방안으로,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사법부 현안 등에 관한 잘못된 정보 확산을 억지하는 차원에서, 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카페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고, ② 법관윤리강령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후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하는 내용이 제시됨<sup>23)</sup>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음

## 5.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 가. 문건의 작성 및 배경

- 위 문건은 기획조정실이 2015. 7. 6. 작성하였음
- 상고법원안에 대한 내부 반대 움직임이 있고, 그 핵심 그룹은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로, 이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 및 정상적인 사법행정 시행에 불안요소가 되므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나. 주요 내용

- 반대 법관들이 세 결집을 통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거나 단체행동을 할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논의를 주도하는 법관들은 성향상 단체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가능성 있다고 기재함
-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① 핵심 세력, ② 움직임의 목적, ③ 세 결집 진행정도 및 고려 중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재야인사나 민

23) 그 외 네이버 여성 법관 전용 카페 ‘유스티티아’에 대해서도 익명게시판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온 것으로 보임. 기획조정실이 2016. 7. 작성한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 검토’라는 문건에서 ‘유스티티아’ 익명 게시글을 통해 확인한 법관 사회 여론 동향을 정리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네이버 여성 법관 전용 카페 유스티티아 게시글(2016. 5.)**

▶ ‘요즘 이슈투자사기 사건이나 가슴기 살균제 사건을 보면, 참 답답하다. 법원이 재판이 가해자와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피해자에게는 최소한의 구제만을 해준다는 또는 그마저도 안해준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자신있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다는 자괴감이 든다

(이하 생략)

▶ 육아·생활정보, 인사 정보의 교환이 중심이 된 위 카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게시되고, 댓글이 달리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었음

변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법관들의 자체적 움직임인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함

- 대응 방안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핵심 그룹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서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반대 의견을 가진 핵심 그룹을 참석하게 하여 입장 변화를 도모하며, 설득이 어려운 경우 압박책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함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5】 기재와 같음

## 6.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 가. 문건 개요

- 위 문건은 기획조정실이 2015. 8. 18. 작성하였음
- 차○○ 판사가 2015. 8. 11. 법원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 민사재판 커뮤니티, 국제인권법커뮤니티 등에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친분 있는 판사들에게 같은 글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의견을 구했는데, 상고법원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보이는 위 게시글이 높은 조회수를 보이면서 판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법원행정처가 그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임

### 나. 주요 내용

- 차○○ 판사의 코트넷 글 게시 경위와 게시글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 댓글의 분석, 상고허가제 등 차○○ 판사 주장 내용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차례로 정리함
- 차○○ 판사가 주장하는 상고허가제와 법관증원론이 공론화되는 경우 대법관 증원론으로 연결될 것이 우려되고, 차○○ 판사의 주장 및 이에 동조하는 법관들의 글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상고법원 입법전략에 피해가 클 것이라고 판단함
-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재판 준비태도, 일과 관련된 가정사, 고민하는 테마의 내용, 독일 유학 복귀 후의 동향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차○○ 판사의 주장은 코트넷 게시글 외에도 차○○ 판사가 다수의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sup>24)</sup>의 내용을 통해 정리되어 있음
- 차○○ 판사의 동향과 스타일 등에 관련된 부분은 '방대한 양의 충실한 해외연수 보고서', '재판 준비에 매우 철저한 성격의 소유자' 등 대체로 긍정적인 내용임
- '사전예방적 대응 필요', '행정처 경험 있는 부장판사를 통한 논리적 설득 필요', '차○○ 판사의 법관증원론에 대한 공감 표시 및 법관증원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됨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6】 기재와 같음

## 7.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 가. 문건 개요

- 위 문건은 기획조정실이 2015. 9. 22. 작성하였음
- 차○○ 판사는 2015. 8. 11.부터 코트넷에 게시글을 계속 게시하고 판사들과 토론을 하였음. 한편 주간지 시사인은 2015. 8. 31. 차○○ 판사의 코트넷 게시글을 요약 보도하였고, 차○○ 판사는 2015. 9. 21. 시사인 온라인 판에 판사 투고 칼럼 첫 회를 게재함
- 이에 법원행정처가 차○○ 판사의 언론 활동과 문제제기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임

### 나. 주요 내용

- 차○○ 판사 시사인 칼럼 중 문제되는 내용으로, 대법원의 월권적인 사실심 심리 관여, 법원행정처 사실심 충실화 대책의 비현실성, 고위직 법관들의 법관 수 증원에 대한 반대 언급 등을 지적함
- 차○○ 판사의 언론활동에 대하여는,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차○○ 판사의 언론활동과 문제제기는 계속

24) 이메일은 차○○ 판사가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포함된 다수의 판사들과 전체 메일의 형태로 주고받은 것이 인적 조사에서 확인됨

될 것이라 보인다'고 분석함

- 차○○ 판사가 본인의 facebook에 쓴 댓글 내용, 차○○ 판사가 2002년 고시공부 중 시각장애인의 사시합격을 도운 내용이 실린 동아일보 기사,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운동에 동참한 내용이 게시된 문화일보 기사 등이 차○○ 판사의 끈질긴 추진력, 비주류 활동가 성향의 근거 등으로 소개됨
- 여론의 역풍을 우려를 고려하여 선부른 개입은 자제하되, 공식적인 채널로 문제 부분에 대한 안내, 사태의 추이 예의 주시<sup>25)</sup>, 일선 판사들의 오해 불식을 위한 노력 계속 추진 등이 제시됨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6-1】 기재와 같음

## 8.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 가. 문건 개요

- 위 문건은 기획조정실이 2015. 1 ~ 2월경 작성하였음
- 송○○ 판사가 2009. 3.부터 2015. 1. 15.까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6개 글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함

### 나. 주요 내용

- 송○○의 프로필(문건에 기재된 프로필 첨부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과 함께 성향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기재함
- 송○○ 판사에 대해서는 ① 사법제도 및 인사시스템 등에 관심이 있고, ② 정세판단에 밝은 전략가형이며, ③ 법원 집행부에 대한 불신 및 의혹이 있고, ④ 선동가, 아웃사이드 비평가 기질이 있다는 평가가 기재됨
- 문건에 적시된 송○○ 판사의 게시글은 '사법부를 흔드는 두 가지 손(촛불 재판 의혹 규명 촉구)', '정기인사에 앞서 법원장님들께 올리는 글' 이외에 최○○ 부장판사의 FTA 강행처리 비판 글 게시 이유 윤리위 회부에 대한 비판,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한 의견(3건) 등임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7】 기재와 같음

25) 차○○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 친한 선후배 명단에 대한 취합, 관리의 필요성도 제시됨



## 9. 박○○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

### 가. 문건 개요

- 기획조정실이 2016. 7.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였음
- 당시의 여러 가지 대내외 상황에 비추어 법관 사회 내부 여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을 전제로 2016년에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실시방안에 대한 검토 등이 문건 작성의 배경으로 제시됨

### 나. 관련 내용

- 당시의 대법관 제청결과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정리함. 그 중 '박○○ 판사가 단독판사들과의 식사자리 등에서 위 주제에 관하여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박○○ 판사의 학생운동 경력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측면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추진 중인 좋은 재판연구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는 등, 박○○ 판사가 선출을 통해 취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이어서 법관 여론 주도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박○○ 판사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남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 법관 사회 여론 동향 및 간담회 필요성

##### 가. 최근 법관 사회 주요 이슈

##### ▣ 대법관 제청 관련 ⇨ 비판적 법관들도 공개 반발은 어려운 상황

##### ▣ 선출을 통해 취임함으로써 법관 여론 주도 명분을 가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박○○ 판사)의 경우 ⇨ 표면적으로 언급 없음

▶ 최근 서울중앙 단독판사들과의 식사자리 등에서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 없었음 ⇨ 자신이 추진 중인 '좋은 재판 연구회' 활동에 집중

- ※ 박 판사의 경우 학생운동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초임지가 서울중앙임에도 재판연구관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시 슬로건인 좋은 재판, 행복한 판사 관련 활동에 집중할 것' 이라는 평 있음

- 그 외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박○○ 판사 동향 파악」이라는 문건이 파일 형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위 문건은 삭제된 상태로 복구되지 않았음

## 10. 조사 결과

-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 등에 관한 비공식적인 정보수집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작성의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이라는 문건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법원사찰', '재판개입'의 비판을 받을 우려가 크므로 극히 자제되어야 함
-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사법행정 목적의 달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 보완 등을 이유로 가능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임
- 심의관 출신 등의 이른바 '거점법관'을 통하여 해당 법원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코트넷 게시판뿐만 아니라 법관들의 익명카페, facebook 등의 SNS에서까지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해 왔으며, 나아가 익명카페 등에 상고법원 설치 등 사법정책 현안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이 많이 게시된다는 이유로 익명카페 자진 폐쇄의 유도 방안까지 검토함
- 동향과 여론을 파악한 대상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회원 등 평소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 많았고, 그 외에 대법관 제청과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현안에 대하여 대내외 게시판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법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 사법정책 현안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은, 의견의 적극적 수렴과 사법정책에의 건설적인 반영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이른바 '선제적인 대응'으로 설득과 통제, 규제와 압박 수단의 검토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해당 정보수집의 목적과 의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문제됨

- 우리법연구회, 인사모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프로필 등 일반적인 신상정보 이외에도 성향과 스타일, 과거 연구회 활동이력, 코트넷의 비판적 게시글 이력, 최근 동향 등이 민감한 개인정보와 함께 수집되어 여러 문건에서 신중한 고려 없이 사용되었고,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 등 법관들의 성향을 부정적이고 단정적으로 규정한 용어 역시 합리적인 기준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V. 특정사건 담당재판부 등의 동향 파악

### - '원○○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1. 문서 정보

- 위 문건은 기획재1심의관 사용 컴퓨터 저장매체 중 '2014년 ○○○' 폴더의 하위 폴더인 '기조실'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었던 정상 파일임<sup>26)</sup>
- 위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을 파악하여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력한 주요 키워드 중 '김동진'<sup>27)</sup>, '동향'이라는 키워드로 추출되었음
- 위 문건은 원○○ 외 2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정원법위반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sup>28)</sup>)의 선고일 다음날인 2015. 2. 10. 작성되었음

#### 2. 주요 내용

- 피고인 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서 특정 외부기관(BH), 여야 각 당, 언론, 법원 내부의 동향과 반응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임
-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담당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한 경위와 내용, 위 판결 선고 이후에 외부의 여론 동향과 더불어 법원 내·외부의 인터

26) 위 폴더 명 '2014년 ○○○'에 기재된 ○○○ 당시 심의관은 위 문건을 작성한 바 없고, 본 적도 없으며, 위 문건의 양식은 행정처가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라고 진술함

27)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임

28)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전의 2심임

넷 공간에서 판사들이 위 판결의 평가 내지 감상을 게시한 글과 댓글의 내용이 기재됨

-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는, 외부기관(BH)의 문의에 대해 우회적·간접적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고,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기재가 있음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8】 기재와 같음

### 3. 검토

-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재판예규 제1306호)'는 사법행정지원이 필요하거나 사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각급 법원의 보고책임자가 접수 및 종국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sup>29)</sup> 보고된 중요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가 판결의 내용과 파장, 상소심 전망, 판결에 대한 대내외 여론 등을 검토, 분석하여 평가하고 내부 보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 업무의 일환으로 보임
- 그러나 위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원○○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 후에 걸쳐 특정 외부기관과 사이에 특정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는 외부기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정황,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내용이 담겨 있는바, 이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29) 위 예규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및 전·현직 법원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등이 피고인인 형사 사건 등을 필요적 보고 대상사건으로 규정하면서(제3조 제1항), 사안의 내용과 국민적 관심도 등에 비추어 신문과 TV 등 언론매체에 보도된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조 제2항)

## VI. 종합의견

### 1. 경과

- 위원회는 활동개시와 함께 조사대상 컴퓨터를 특정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관련 당사자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였음
- 공용 컴퓨터에서 사법행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개인적인 문서와 이메일 제외)가 조사의 대상이고, 문제된 시기에 작성된 문서를 현안과 관련한 키워드로 검색하여 해당 문서만을 선별하며, 조사 과정에 관련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면, 관련 당사자의 사적 정보가 누설되거나 비밀이 침해될 개연성이 거의 없고, 이러한 문서의 열람에 당사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조사에 착수하였음
- 문건에 나타난 대응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실행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은 위원회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문건과 관련된 인적 조사는 해당 문건 작성자, 작성 경위와 보고 관계 등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음

### 2. 문서 선별과 판단

- 법관이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들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와 행적 등을 분석·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러한 문서는 그 대응 방안이 실현되었는지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그러한 경위와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음
- 위원회는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작성한 문서 가운데 정보 수집의 절차와 수단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용이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를 보고서에 담았음

### 3. 조사 결과

#### 가. 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하여

-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한 동향파악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사법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 활동을 제한하고 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한 것 또한 방안의 실현 여부를 떠나 합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나. 판사회의 경선과 관련하여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출마한 법관의 인적 사항과 세부 동향을 파악하고 다른 판사의 선출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마련한 것은 대응 방안의 실행이나 성공 여부를 떠나 사법행정권의 판사회의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음

#### 다. 사법행정위원회와 관련하여

- 특정 연구회 회원인지, 이들과의 친소관계, 정치적 성향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핵심그룹과 주변그룹, 진보와 보수, 강성과 온건 등으로 법관을 분류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명단을 작성한 부분은 그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정 집단의 법관 내지 특정한 가치관을 지닌 법관을 특별히 취급하거나 배제의 요소로 이용할 여지가 있음

#### 라.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과 관련하여

-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의 활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들로서 인사나 검찰부서의 필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볼 여지가 있음. 그 내용 가운데 내부 게시판, 법관들의 익명카페, 페이스북 등의 SNS 및 행정처에 호의적인 법관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하고 익명카페의 자진폐쇄 유도방안까지 검토한 것은 수단

과 방법의 면에서 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특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그룹으로 분류하여 그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념적 성향과 행태적 특성까지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도 법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볼 수 있음

마. 특정사건 담당재판부의 동향 파악과 관련하여

- 법원행정처가 외부기관과 사이에 특정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외부기관의 문의를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부분은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 조사보고서 별지

2018. 1. 22.

추가조사위원회



##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 1. 검토 배경

#### 가. 사건 진행 경과

##### ① 1. 29.(금)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 [발표] ■○○ 판사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
- [참석] 사○○, 이○○, 정○○, 이○○, 김○○ 부장판사, 박○○, 홍○○, 이○○, 이○○, 김○○, 이○○, 신○○, 진○○, 류○○, 홍○○ 판사
  - [밀줄 표시] 우리법연구회 前, 現 회원(이하 같음)
- [내용] 발표문의 要旨
  - [헌법정신] 헌법상 법관 독립의 원칙은 ‘법관의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규정  
⇒ 수직적 사법행정체계는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음
  - [법원조직법의 개정 필요성]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관료적 사법행정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은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함 ⇒ 단, 현실적으로 개정은 쉽지 않음
  - [무엇을 할 것인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판사회의의 활성화** 및 **사실상 의결기구화**를 통하여 수직적,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수평적, 민주적 법원 운영방식으로 바꾸어야 함 ⇒ **사법행정위원회를 판사회의의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

##### ☑ 송○○ 판사(■기)

###### ▶ [특징]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리더
- 인사모 등 각종 소모임을 결성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現 활동방식은 송판사가 우리법연구회에서 구축한 활동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임

###### ▶ [주된 관심사]

- [요약] 송○○ 판사의 주된 관심은 ‘사법행정위원회의 활성화’보다는 ‘**판사회의의 활성화**’에 있음 ⇒ 사법행정위원회를 **판사회의의 활성화 수단**으로 삼는 것임
- [목적]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 ⇒ “**판사회의라는 회의체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으로 전환
- [수단] ① 각급 법원에서의 판사회의의 활성화, ② 미국 연방사법회의와 유사한 전국 단위의 전체판사회의의 결성 및 활성화

사진

② 2. 1.(월) 송○○ 판사가 코트넷의 '제도개선법관토론포럼' 게시판에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 게시

☑ 건의문 내용 요약

①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 선출 필요

- 위원의 2/3 또는 적어도 과반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해야 함

② 각 위원회를 총괄하는 전체회의를 만들어야 함

③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판사회의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각급 법원 판사회의의 내규 개정 필요

● 법관들의 반응 (건의문의 게시 범위: 법관 限定)

(해당 부분 요지는 개설 이후 조회수 636회로 5위, 댓글수 27개로 2위라는 취지이고, 나머지 부분 생략)

● 분석 ⇨ '댓글 작성' 등 조직적 대응의 분위기가 감지됨

(해당 부분 요지는 우리법연구회나 같은 방을 사용하는 법관들에게 댓글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고, 나머지 부분 생략)

③ 2. 15.(월) 김○○ 부장판사가 법률신문에 "판사와 사법행정"이라는 제목의 칼럼 기고하여 송○○ 판사의 주장 소개

● [기고 경위] 송○○ 판사 등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김○○ 부장판사는 2015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였음

- 송○○ 판사의 2. 1.자 코트넷 게시글이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지 않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법률신문 칼럼 필진인 김○○ 부장판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임

(이하 해당 부분 생략)

④ 2. 23.(화) 경향신문에 송○○ 판사의 주장 소개하는 기사 게재

● [게재 경위] 송○○ 판사 등이 코트넷 게시글을 경향신문에 전달한 것으로 추측됨 (기사 내용 생략)

⑤ 2. 26.(금)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개최 예정

(이하 해당 부분 생략)

나. 분석과 전망

▣ 사건 경과를 볼 때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분위기가 감지됨

● 핵심 그룹은 주로 우리법연구회 前, 現 회원이고, 주변 그룹은 주로 국제인권법

## 연구회 회원들임

### ▶ 핵심 그룹

[우리법] 이○○, 김○○, 정○○, 이○○, 유○○, 김○○ 부장판사, 박○○, 박○○, 송○○, 홍○○, 이○○ 판사

[인권법] 김○○ 부장판사

### ▶ 주변 그룹

[우리법] 이○○ 판사

[인권법] 이○○, 이○○, 신○○, 이○○, 문○○, 진○○, 류○○, 홍○○ 판사

## ■ 조직적 활동 분위기를 추정할 수 있는 징후들

(이하 해당 부분 생략)

## ■ 조직적 활동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 방안 확립 필요

- 현재 핵심 그룹은 ① 코트넷에 건의문 등 게시, ② 언론보도, ③ 토론회 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 중
-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으로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의의가 크게 반감될 우려 존재 ⇨ 치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통해 소수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이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음

## 2. 핵심 그룹 주장의 함의·파급효과 분석

(이하 해당 부분 생략)

## 3. [총론] 대응의 전제 조건·유의점

(이하 해당 부분 생략)

## 4. [각론1] 대응 방안

### 가. 가능한 대응 방안

- 1) 무시 전략 (이하 해당 부분 생략)
- 2) 일부 설명 전략 (이하 해당 부분 생략)

나. 검토 의견 ⇨ 2) 일부 설명 전략 (이하 해당 부분 생략)

## 5. [각론2] 일부 설명 전략에 따른 '대외적 설득 논리'

(이하 해당 부분 생략)

## 6. 향후 계획

### ▣ 2. 25.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코트넷 공지문 게시

(이하 해당 부분 생략)

### ▣ 2. 26. 통합실무지원단 구성

(이하 해당 부분 생략)

##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 1. 검토 배경

▣ 박○○ 판사(■기) ⇨ ██████████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 예정

- ██████████ 내규는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을 의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례적으로 최선임자가 의장이 되어 왔음  
(내규 생략)
- 2014년 김○○ 판사(■기, 現 ██████████ 지법 부장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에 출마하여 기존 관행을 깨고 투표에 의하여 최초로 의장으로 선출됨

#### 김○○ 판사 프로필

- ▶ 現 ██████████ 지법 부장판사 (■기, 생년월일)
- ▶ 現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 소신이 강하나, 절차를 중시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
  -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과 친분이 깊은 편은 아님
- ▶ [학력] ██████████
- ▶ [경력]
  - ██████████
  - ██████████
  - ██████████

사진

- 2015년에도 김○○ 판사는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투표로 선출되기를 원하였나, 지원자가 없어서, 관례에 따라 최선임자인 장○ 판사(■기, 現 ██████████ 지법 부장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었음
- 2016년 3월 중순에 있을 단독판사회의의 경우 최선임자는 ○○○ 판사(■기, 생년기재)이나, 박○○ 판사(■기, 생년기재)가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의 지지를 받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출마할 예정임

#### 박○○ 판사 프로필

- ▶ 現 ██████████ 부 단독판사 (■기, 생년월일)
- ▶ 前 우리법연구회 회원
  - 2015. 4. 16. 게시판에 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글 게시
- ▶ [학력] ██████████
- ▶ [경력]
  - ██████████

사진

- [REDACTED]
- [REDACTED]

■ 박○○ 판사의 의장 경선 출마 경위

-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을 ‘판사회의와 같은 회의체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상반기에 출범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이용하여 판사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법원조직법의 개정 없이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을 바꿀 수는 없으나, 판사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법원장이 권한을 스스로 일정 정도 내려놓는 관행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박○○ 판사의 경우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의 제안을 받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가, 최근 출마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고 함

■ 박○○ 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REDACTED] 단독판사회의 명의의 건의문, 성명서 채택
  -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면서, 단독판사회의 명의로 ① 그와 같은 주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거나, ② 만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원행정처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 [REDACTED]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 개정 시도
  - 김○○ 판사가 시도하였으나 좌절한 [REDACTED]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 개정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의 사법행정라인과 대립
  - ‘판사회의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각종 사법행정적 조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음

2. 대응 방안

■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 판사 적극 지원

- 현재 [REDACTED]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 판사(기, 생년기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음

○○○ 판사 프로필

- ▶ ■■■■■ ○○단독판사 (■■■기, 생년기재)
- ▶ [학력] (생략)
- ▶ [경력] (생략)

사진

- ○○○ 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핵심 그룹의 지원을 받는 박○○ 판사의 당선을 저지할 필요 있음

■ 구체적인 지원 방법

- 핵심 그룹의 주장에 무관심한 다수의 일반 판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선거 공약 발굴 필요

선거 공약 아이템

- ▶ 단독판사의 복지 및 실질적인 지위 향상
- ▶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라인과 단독판사 사이의 실질적인 가교 역할 수행 (반목과 대립 지양)

● 지원단의 구성

- 김○○ 기획법관, 정○○ 판사(○○○ 판사와 같은 방 사용)

■ 선거 전략

- 단독판사회의 경선 당일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 판사를 추천하고 지지 발언을 할 판사 섭외
- ○○○ 판사를 지지할 만한 단독판사들(예: 형사단독판사)이 가급적 회의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 ○○○ 판사의 경우 “단순히 최선임자로서 관례에 따라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단독판사들의 복지 및 실질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려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 1. 검토 배경

■ 현재 각 고등법원별로 위원 추천 절차 진행 중

- 위원 추천 기간: 3. 14.(월) ~ 4. 1.(금)

■ 핵심 그룹의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폼하 ⇨ 사법행정위원회가 '의례적 기구', '들러리'라는 프레임 구축 중

- 핵심 그룹 ⇨ 사법행정위원회가 실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지켜보지도 않은 채, 사법행정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폼하하면서 "의례적 기구", "들러리"로 명명하며 부정적인 프레임 구축 중

☑ 김○○ 부장판사의 3. 25.자 코트넷 게시물

- ▶ "사실 사법행정위원회가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추진하는 의례적 기구가 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은 ... "
- ▶ "현행과 같은 규칙 아래서는 법원행정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들러리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경과

(이하 해당 부분 생략)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 고등법원에 대한 지원 불가피

- 사법행정위원회가 실제 구성되면, 핵심 그룹은 위원 위촉 결과를 두고 다시 문제 제기를 할 것임
- 각 고등법원장이 이른바 '왕당파'로 불리는 법관(예: 행정처 심의관, 기획법관 · 공보관, 수석부 배석판사, 해외 유학 선발 경력 등을 보유한 법관) 위주로 위원 추천할 경우 ⇨ 핵심 그룹에게 공격 기회 제공하는 셈
  - ① 사법행정위원회의 출범 의의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② 핵심 그룹의 공격으로 위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
- 아래와 같은 법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고등법원장에게 정보 제공함으로써 핵심 그룹의 악의적 폼하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필요 있음
  - ①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가 있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
  - ② 법관 사회에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법관



- ③ 정치적 색깔이 없으면서도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법관

## 2. 후보자 추천 기준

### 가. 전제조건

-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

- 독선적이거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법관은 제외

### 나. 적극적 기준

- ①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 ⇨ 진보 성향 법관 그룹의 명단 분석

- 우리법연구회 前, 現 회원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 노동법 커뮤니티 회원

- ② 법관 사회 상징성 ⇨ 여성 법관 명단 분석 및 장애 가진 법관 포함

- 젠더법 커뮤니티 회원 명단
- 시각 장애를 가진 최○ 판사

- ③ 오피니언 리더 역할 ⇨ 행정처 심의관들의 추천 취합

- 특정 그룹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소속 법원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법관 발굴

### 다. 소극적 기준

- 특정 보직 경력 있는 법관은 가급적 배제

- 법원행정처 심의관
- 각급 법원 기획법관 · 공보관, 수석부 배석판사
- 미국 등 선호 하는 지역의 유학 경력 있는 법관

## 3. 후보자 추천 명단

### 가. 명단

- “별지”와 같음

■ 추천 순위

● 1순위 ⇨ 적색으로 표시

- ①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 ②법관 사회 상징성, ③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두루 고려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2순위 ⇨ 청색으로 표시

- 그 중요도가 1순위까지에 이르지 않는지만, 유리한 후보군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법관

● 3순위 ⇨ 흑색으로 표시

- 그 밖에 ①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 ②법관 사회 상징성, ③오피니언 리더 역할 중 어느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 법관

나. 법원문화개선위원회

1) 고등권역별/직급별 위원 배분

(표 생략)

2) 추천 후보자 배치(안)

(표 생략)

■ 윤○○ ■■■ 고등법원 부장판사(형사항소)

●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 3. 14.자 코트넷 게시글을 통하여 법원문화개선위원회의 고등부장급 위원은 대전 관내에서 선출할 예정임을 공지한 상태

- 고등부장급 위원은 사실상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됨

● 대전 관내 고등부장 중 “①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 ② 법관 사회 상징성, ③ 오피니언 리더”와 같은 요건을 갖춘 법관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

☑ ■■■ 관내 고등부장판사 명단

▶ ■■■ 고등] 명단 생략

▶ [특허법원] 명단 생략

● 위원장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여성’ 법관인 윤○○ 부장판사가 ■■■ 관내 고등부장판사 중 위원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됨

- ‘여성’ 법관이 위원장으로 위촉될 경우 ⇨ 핵심 그룹 및 그 지원 세력이 위원회 구성에 異議하기는 어려움

- 다만, 윤○○ 부장판사의 경우 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경력 및 ② 상대적으로 낮은 기수(기, 초임 고등부장판사)가 短點
- 代案으로는 ‘여성’ 고등부장판사 중 ① 민○○(기, 現 젠더법연구회 회장), ② 노○○(기, 前 우리법), ③ 여○○(기) 부장판사 고려 가능
  - ▣ 다만, 대안 택할 경우 이미 공지한 사항을 번복해야 한다는 부담 존재

▣ 윤○○ ████████지법 부장판사(민사합의)

-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상징성 보유 ⇨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어필
- 강경한 주장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문○○ ████████지법 부장판사(민사합의)

- 칼럼 투고, 저서 출판, 강연 등으로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인기
  - 우리법연구회 등 핵심 그룹도 반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인물
- 위원 위촉 자체로 사법행정위원회 흥행에 도움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경력, 우리법연구회와 관련 없음
  - 강경한 주장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정○○ ████████법원 판사(가사단독)

- 여성 판사의 대표로서의 상징성 보유
  - ████████ ████████ ████████ ████████
- 정치적 성향 없음 ⇨ 온건하고, 합리적인 주장할 것으로 기대
  - 제3기 법원문화연구반 참여 경력

▣ 지○○ ████████지방법원 배석판사(형사항소부)

- 특별한 대외활동 하지 않으나 평소 활발한 성격으로 모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
- 제도법관개선토론포럼에도 꾸준히 댓글 올리면서 사법행정에 많은 관심

다. 재판제도발전위원회

1) 고등권역별/직급별 위원 배분

(표 생략)

## 2) 추천 후보자 배치(안)

(표 생략)

### ■ 김○○ ■■■■ 고등법원 부장판사(행정항소)

-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한 '상징성' ☞ '진보' 성향 법관에게 어필
  - 송○○ 판사가 믿고 따르는 선배
- ■■■■
  - ■■■■기까지 진보 성향 법관에게 영향력(예: 홍○○ 판사)
-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 ☞ 강경한 주장 정리하여 합리적 결론 도출할 것으로 기대

### ■ 최○○ ■■■■ 지법 부장판사(민사합의)

-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한 '상징성' ☞ '진보' 성향 법관에게 어필
- 온건한 성향 ☞ 강경한 주장 정리하여 합리적 결론 도출할 것으로 기대

### ■ 장○○ ■■■■ 지방법원 ■■■■ 지원장

- 우리법연구회 그룹의 핵심 ☞ 송○○ 판사 등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 보유
- ■■■■ ■■■■ ■■■■ ■■■■
  - 전략적 사고에 능하나, 주장이 강경한 편은 아님

### ■ 박○○ ■■■■ 지방법원 판사(형사항소부)

- 정치적 성향 없고, 대외활동 하지 않음
-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 논리적으로 밝히는 오피니언 리더
  -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 신망 높음

### ■ 최○ ■■■■ 지방법원 판사

- 장애에도 불구하고 밝고 합리적인 성격
- ■■■■ 장애인으로서 상징성 보유 <끝>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적색 1순위, 청색 2순위, 흑색 3순위)

1	김○○					前 우리법 노동법	▶기본적으로는 보수 성향이지만,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 송○○ 판사가 믿고 따르는 선배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지도 교수(2004~2006) - 35~38기까지 진보 성향 법관에게 영향력(예: 홍○○ 판사)
2	노○○					前 우리법	
3	박○○					前 우리법	
4	오○○					前 우리법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온건한 성향
5	이○○					前 우리법	▶지역법관 → 지역 법관들에게 신망 두텁다고 함
6	박○○					젠더법 인권법	▶여성친화적 가치관과 소탈한 성품으로 여성법관들에게 신망 ▶
7	윤○○					젠더법	▶(-)사법정책심의관
8	고○○					인권법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여성법관들에게 신망 있음 ▶강한 리더십 발휘하거나 활동 범위 넓은 편은 아님 ▶夫 ○○○ 전 부장판사
9	이○○					젠더법	▶소장 법관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소장 법관들 의사를 대변 해 주는 젊은 스타일의 부장으로 신망 높음 ▶夫 ○○○ 前부장판사
10	윤○○					前 우리법	▶(-)법원행정처 공보관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11	김○○					前 우리법 인권법 노동법	▶(-)민사정책심의관,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12	김○○	■■■■	■	■	■	■■■■	前 우리법	▶(-)민사정책심의관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13	신○○	■■■■	■	■	■■■■	■■■■	젠더법	▶(-)사법연수원 정책연구교수, 夫 ■○○ 재판관 ▶여성 후배들 사이에 신망 두텁고, 여성문제에 있어 진보적 성향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진보적 성향 뚜렷하지 않음
14	최○○	■■■■	■	■	■■■■	■■■■	前 우리법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온건한 성향
15	문○○	■■■■	■	■	■■■■	■■■■	現 우리법	▶■■■■, 强性
16	문○○	■■■■	■	■	■■■■	■■■■	인권법 젠더법	▶(-)사법정책심의관 ▶소탈하고 젊은 리더십으로 소장 법관에게 인기 많음 ▶위원 위촉 자체로 사법행정위원회 흥행에 도움
17	장○○	■■■■	■	■	■■■■	■■■■	現 우리법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사법연수원 정책연구교수
18	김○○	■■■■	■	■	■■■■	■■■■	現 우리법 노동법	▶송○○ 판사와 가까움 ▶(-)夫 ■○○ 부장판사
19	이○○	■■■■	■	■	■■■■	■■■■	前 우리법	▶진보 성향 법관들에 대한 영향력은 弱함 ▶(-)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20	이○○	■■■■	■	■	■■■■	■■■■	現 우리법	▶2010년 우리법연구회 명단공개 무렵 가입하여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
21	이○○	■■■■	■	■	■■■■	■■■■	前 우리법 인권법	▶(-)■■■■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22	정○○	■■■■	■	■	■■■■	■■■■	現 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진보 성향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보유, 强性 ▶夫 ■○○ 변호사(■■■■) ▶(-)전략적 사고에 능함
23	장○○	■■■■	■	■	■■■■	■■■■	前 우리법	▶前 청와대 행정관 ▶(-)지원장, ■■■ 지법 기획법관 ▶우리법 연구회 그룹의 핵심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 보유 ▶전략적 사고에 능하나, 주장이 강경한 편은 아님

24	박○○	■■■■	■	■■■	■■■■	■■■■	現 우리법	▶우리법연구회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나, 온건한 편
25	권○○	■■■■	■	■■■	■■■■	■■■■	우리법	
26	신○○	■■■■	■	■■■	■■■■	■■■■	인권법 젠더법	▶■■■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젠더법 커뮤니티 학술 팀장
27	신○○	■■■■	■	■■■	■■■■	■■■■		▶출산 및 육아 관련 상징성(5자녀)
28	송○○	■■■■	■	■■■	■■■■	■■■■	前 우리법 노동법	▶부장된 후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평가
29	유○○	■■■■	■	■■■	■■■■	■■■■	現 우리법	▶■■■■
30	김○○	■■■■	■	■■■	■■■■	■■■■	現 우리법	▶■■■■ 強性
31	김○○	■■■■	■	■■■	■■■■	■■■■	인권법	▶서○○ 판사 연임 탈락에 반발하는 글 코트넷에 게시 ▶(-)민사판례연구회
32	박○○	■■■■	■	■■■	■■■■	■■■■	우리법	▶前 우리법연구회 간사, 強性
33	서○○	■■■■	■	■■■	■■■■	■■■■	現 우리법	▶(-)現 ■■■■ 기획법관, 공보관 ▶우산회 간사
34	곽○○	■■■■	■	■■■	■■■■	■■■■	現 우리법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나, 온건하고 조용한 편임
35	원○○	■■■■	■	■■■	■■■■	■■■■	前 우리법	▶妻 ■○○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6	정○○	■■■■	■	■■■	■■■■	■■■■	인권법 젠더법	▶■■■■ ▶前 젠더법연구회 총무 ▶여성 판사들 사이에서 대표성 있음 ▶■■■■
37	최○○	■■■■	■	■■■	■■■■	■■■■	인권법	▶활달하고 합리적인 성격

38	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적 성향 없고, 대외활동 하지 않음</li> <li>▶동료 법관들 사이에서 신망 높음</li> <li>▶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 논리적으로 밝힘</li> <li>▶(-)前 ■■■ 지방법원 기획법관</li> </ul>
39	임○○	■■■■	■	■■■	■■■	■■■■	前 우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前 ■■■ 법원 기획법관</li> </ul>
40	황○○	■■■■	■	■■■	■■■	■■■■	인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통의 창에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의견 제출 → 적절한 의견 개진 방식 준수하는 온건파</li> <li>▶■■■ 단독판사회의 경선에서 박○○ 판사 지지</li> <li>▶■■■</li> </ul>
41	문○○	■■■■	■	■■■	■■■	■■■■	現 우리법 노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법연구회 ■■■</li> </ul>
42	윤○○	■■■■	■	■■■	■■■	■■■■	인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인권법연구회 ■■■</li> <li>▶■■■ 단독판사회의 경선에서 박○○ 판사 지지(핵심)</li> <li>▶자유분방하고 직설적인 면은 있으나 선을 넘는 편은 아님</li> <li>▶동생 윤○○ ■■■</li> </ul>
43	김○○	■■■■	■	■■■	■■■	■■■■	인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극을 하는 등 자유분방한 성격 → 문화에 대한 상징성</li> <li>▶코트넷에 답글을 다는 등 사법행정위원회에 관심 많음</li> </ul>
44	이○○	■■■■	■	■■■	■■■	■■■■	前 우리법
45	차○○	■■■■	■	■■■	■■■	■■■■	前 우리법 인권법 노동법
46	홍○○	■■■■	■	■■■	■■■	■■■■	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밀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개설자</li> <li>▶우리법연구회 핵심 그룹, 强性</li> <li>▶夫 ■■■○○ 판사(재판연구관)</li> </ul>
47	최○○	■■■■	■	■■■	■■■	■■■■	인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밝고 차분한 성품, 합리적</li> </ul>
48	류○○	■■■■	■	■■■	■■■	■■■■	인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법연구회 활동 활발하게 함</li> <li>▶夫 ■■■○○ 부장판사</li> </ul>
49	오○○	■■■■	■	■■■	■■■	■■■■	인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사판례연구회</li> </ul>



50	전○○	■■■■	■	■■■	■■■	■■■	前 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夫 ■○○ ■■■■■ ▶젠더법커뮤니티 ■■■■■
51	박○○	■■■■	■	■■■	■■■	■■■	現 우리법	▶우리법연구회 활동 활발하게 하나, 온건한 성격
52	박○○	■■■■	■	■■■	■■■	■■■	인권법	▶활달하고 대외관계 폭이 넓음
53	윤○○	■■■■	■	■■■	■■■	■■■	現 우리법 인권법	▶우리법연구회 활동 활발하게 하나, 온건하고 겸손한 성격
54	이○○	■■■■	■	■■■	■■■	■■■	前 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국제인권법연구회 ■■■■■ ▶夫 ■○○ 판사
55	이○○	■■■■	■	■■■	■■■	■■■	인권법	▶妻 ■○○ 판사
56	윤○○	■■■■	■	■■■	■■■	■■■	인권법	
57	손○○	■■■■	■	■■■	■■■	■■■		▶특별한 대외활동 하지 않지만, 소속 법원의 모임 주도
58	이○○	■■■■	■	■■■	■■■	■■■		▶젊은 여성 법관들과 폭넓은 네트워크 보유 ▶(-)민사판례연구회, ■■■■■ 지법 민사수석부 근무
59	황○○	■■■■	■	■■■	■■■	■■■	우리법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나, 온건한 성향
60	류○○	■■■■	■	■■■	■■■	■■■	우리법 인권법 젠더법	▶소신 뚜렷하고 재치 있는 스타일로 신세대 법관 정서 대변
61	황○○	■■■■	■	■■■	■■■	■■■	인권법	
62	최○	■■■■	■	■■■	■■■	■■■	인권법	▶장애에도 불구하고 밝고 합리적 ▶■■■■ 장애인으로서의 상징성
63	지○○	■■■■	■	■■■	■■■	■■■		▶특별한 대외활동 하지 않지만, 소속 법원의 모임 주도
64	이○○	■■■■	■	■■■	■■■	■■■	인권법	▶적극적인 성격

##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 보고

### 1. 검토 배경

#### ▣ 판사들이 회원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장

- 다음(Daum) 포털사이트에 판사들이 회원인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개설
- 여러 판사들이 회원 가입하여 익명으로 사법부 관련 현안, 법관인사, 특정 판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 개진
-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지나치게 직설적인 표현 등 부적절한 게시 글 존재 (이하 생략)

### 2. 카페 현황

#### 가. 개요

#### ▣ 카페 개설

- [개설일] 2014. 10. 24.
- [개설 경위] ‘여성 판사 네이버 카페’의 회원이었던 몇몇 여성 판사들이 익명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 등을 목적으로 카페 개설
  - 네이버 카페에는 익명에 의한 글 게시 기능 부존재

‘여성 판사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이판사판 야단법석’ 다음 카페 개설 안내 글 일부(내용은 생략)

#### ▣ 카페 운영자

- 최초 카페 개설자는 ■■■지법 홍○○ 판사(여, 생년월일, 연수원기수, ○. ○.자로 ■■■지법 전보 예정)로 추측
- 현재 홍 판사 포함하여 7명의 운영자가 카페 관리
  - 운영자들이 신규 회원 가입 승인, 부적절한 게시글 삭제 등 권한 행사

#### ▣ 회원 현황

- 회원 수 2015. 2. 현재 384명
  - 카페 개설 당시 초기 회원 40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 여성 판사가 다수일 것으로 예측되나, 게시글 내용 등에 비추어 남성 판사 회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부분 평판사로 구성, 다만 극소수의 부장판사도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 완전 배제할 수 없음
- 회원 중 퇴직자는 운영자들이 강제로 카페에서 탈퇴시킴

● 회원 가입 절차

- ‘이판사판야단법석’카페 회원초대요청 게시판에 회원초대요청 댓글 게시(이때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기재)
- 운영자가 위 이메일 주소로 연수원 기수와 이름을 질문하여 법관 여부 확인 후 회원 가입시킴
- 회원 가입 후 1주일 내 운영자가 신규 회원 법관 코트넷 메일을 통해 회원 가입 여부 확인

■ 카페에서의 의사 소통

- [업무 Q&A], [인사연수정보], [정의의 플랫폼], [세상 보기], [잠수다게시판], [책창고], [도와주세요], [운영게시판] 등 7~8가지 게시판으로 구성
- 각 게시판에 1인이 글을 게시하면, 그에 대하여 다른 회원들이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의사 소통 및 정보 공유
- 모든 게시글과 댓글은 익명으로 게시하여, 운영자들도 특정 글 게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음
- 회원인 법관들 사이의 의사소통공간임을 명시하고, 게시글 등 내용의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주요 게시판 개요
  - [업무 Q&A 게시판] (이하 생략)
  - [인사연수정보 게시판] (이하 생략)
  - [정의의 플랫폼 게시판] ⇨ 상고법원 설치, 대법관 임명제청 등 사법부 관련 최근 이슈에 관한 의견 제시
  - [세상보기 게시판] (이하 생략)

나. 문제의 소지 있는 주요 게시 글 및 댓글

## ■ 상고법원 설치 관련

### ☑ '상고법원안의 미래' (2015. 2. 2.자 게시물)

#### [게시글 일부]

"상고심 개편, 넘어야 할 산은?... 몇가지가 있다... 먼저, 3심제 아래에서 **3심을 대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관념과 국민들의 인식은 그 자체로 헌법규범으로 승인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중간 생략) 다음으로, **'하급심 강화'라는 ○○○ 코트의 목표와도 배치될** 우려가 있다. (중간 생략)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간단히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렵고 일견 '뭐지?'라고 생각이 드는 제도는 도입하기 어렵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물었을 때 선뜻 답이 망설여진다면, 그 제도 역시 도입이 어렵다.... **상고법원은 어떤 제도인가? 우리 스스로가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댓글 19개] ⇨ 대부분 게시물 내용에 공감한다는 취지

### ☑ '상고법원안 다시보기2' (2014. 12. 3.자 게시물)

#### [게시글 일부]

(앞 부분 생략) 상고법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제도의 특성상 그곳은 '준대법원'으로 기능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소속 판사들은 대법관에 준하는 지위와 대우를 획득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판결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다.** (중간 생략) **상고법원은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대법원이 되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댓글 4개] ⇨ 대부분 게시물 내용에 공감한다는 취지

## ■ 원○○ 형사사건 선고 관련

### ☑ '원○○ 항소심 선고' (2015. 2. 9.자 게시물)

#### [게시글 일부]

"2시간 동안 판결을 읽고 계신 듯 한데, 그러면 결국 실형인가요? 지금까지 나온 속보 문구를 종합하면, 집행유예 선고하기엔 너무 이상한데..."

[댓글 22개] ⇨ 대부분 실형 선고에 찬성한다는 취지

"징역 3년 법정구속, 속이 시~원한다!!"

"간만에 속이 확 풀리는 소식이네요"

"김○○ 부장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판사답다..."

## ■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관련

### ☑ '대법관 임명제청되신 분에 대해 기사가 났군요' (2015. 2. 3.자 게시물)

#### [게시글 일부]

“이런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여러모로 가슴이 답답한 하루입니다”

**[댓글 13개]** ⇨ 대부분 대법관 임명에 부정적인 의사표시

“낙마에 한표요”

“이분이 대법관이 되신다면 같은 법관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질 것 같아요”

“전임과 후임이...”

#### ■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관련**

##### ☑ **‘쌍용 해고노동자들을 생각하며’ (2014. 11. 13.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저 역시 한명의 노동자로서, 노동 3권이 이리도 허망한 문구에 불과함을 새삼 확인한 하루인지라 오늘이 더더욱 씁스럽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더 할 수가 없는 건 강요된 침묵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일까요**”

**[댓글 14개]** ⇨ 대부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

“법이란게 원래 차가운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법을 운용하는 방식이 차가운 걸까요? **법조인으로서 이런 결말을 피해갈 길이 확실히 있긴 했던 걸까요?**”

#### ■ **법원인사 관련**

##### ☑ **‘판사임용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납득하지 못하는 시스템’ (2014. 12. 20.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법조계가 증오와 적대감이 가득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생존 문제, 매년 쏟아지는 변호사 문제, **판검사 임용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불합격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법조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증오와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댓글 9개]** ⇨ 대부분 법관임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 **‘사무분담’ (2014. 12. 17.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지원에서의 사무분담시장은 미니정치판을 뛰어넘어 동물의 왕국 수준의 스펙타클함을 보여주는 듯 (이하 생략)”

**[댓글 19개]** ⇨ 대부분 지원 사무분담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3. 대처 방안

#### 가. 대처 필요성

##### ■ **언론 등으로부터의 비판 소지 사전 차단**

- 최근 이○○ 부장판사의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법관의 인터넷상의 표현 행위**에 대하여 언론 등 국민의 관심 집중되어 있는 상황
- 법관이 회원인 인터넷 카페의 존재 자체가 알려질 경우, 그 게시 글 내용 등에 대하여 언론의 집요한 취재 예상 ⇨ 언론 등에 게시글 내용이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
  - 회원 가족이나 지인인 기자, 검사 등에 의해 카페 게시글 내용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 상존
  -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확보하면 언제든지 카페에 로그인하여 모든 카페 내 정보 취득 가능
- 부적절한 표현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카페 회원 법관들의 피해는 물론 사법부 전체의 이미지에 큰 손상 발생 우려 ⇨ 카페의 존재 사실 자체가 언론 등에 노출되기 전 선제적 신속 대응 필요

■ **사법부 현안 등에 관한 잘못된 정보 확산 억지**

- 사법부 관련 민감한 이슈에 관하여 지극히 주관적이고 논리 박약한 의견 난무 ⇨ 300여명의 회원 법관들이 상시 접근할 수 있어 **오도된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으로 법관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될 위험성 존재
- 특히 **상고법원 설치** 관련하여 카페 내 게시글과 같은 부정적 의견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법관 사회에서조차 반대하는 정책이라는 **뼈아픈 비판에 직면** ⇨ 관련 법안 심사에 매우 부정적 영향 미치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음

나. 구체적 대처 방안

■ **[자발적 조치] 카페 폐쇄 등 유도**

- ① 최근 법관의 인터넷 표현행위에 대한 사회의 우려 분위기 간접적으로 전달
  - 일선 법원장들을 통해 전국 법원에 이○○ 부장판사 사태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권고하면서, 간접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부적절한 의사표현 활동에 대한 자제 필요성 강조
  - 이미 카페 내 댓글을 통해서도 회원인 일부 법관들이 카페 활동에 대하여 걱정하는 분위기 감지

☑ **'외부유출시 문제의 소지가 큰 게시글에 대한 운영진의 관리기준을 요청합니다'**  
(2015. 1. 31.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 유출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운영진에서 일응의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편집해서 오용당하면 큰 사태가 날 수도 있는 위험이 다분하지 않을까요?”

**[일부 댓글]**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많아 해킹이 아니라도 유출의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판사의 양심은 믿지만 아이디 도용과 해킹의 사례도 많은 것은 유념해야 할 듯 합니다”

“언론에 유출되면 즉시 폐쇄가 좋을 듯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전체 의견을 조회해 보고, 나름의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② 회원으로 가장하여 카페 내 활동 중단에 대한 글 게시**

- 현재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 비밀번호 확보한 상태
- 이○○ 부장판사 사태 등을 강조하며 직접 카페 활동 자제 관련 게시글을 올려 카페 폐쇄 분위기 확산

● **③ 운영자의 자진 카페 폐쇄 유도**

- 소속 법원장이나 믿을 만한 선배 여성 법관 등을 통해 홍○○ 판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우려 의사 전달
  - 홍 판사를 운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원론적 의견 피력방식이 바람직
- 다만, 홍 판사의 평소 성향상 카페 폐쇄 조치 등을 쉽게 수긍할 가능성 높지 않음 ⇒ 오히려 반발심 유발로 상황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유연한 접근 필요
  - 1차적으로 최근 법관의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각과 카페 활동에 대한 소문 등을 언급하면서 반응 체크
  - 카페 활동의 역효과 등 고민의 흔적 엿보이는 경우, 부적절한 의사 표현 활동이라는 의사 던지시 전달
  - 표현의 자유 등 운운하며 강경하게 발언할 경우, 일단 더 이상의 설득 중지

■ **[강제적 조치]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에 따른 조치**

-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위반 여부

- 법관윤리강령 제2조의 품위유지의무, 제3조 제1항의 공정성 의심받을 행위 금지 의무 위반 검토 가능 ⇨ 포괄적 성격의 위 규정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에 의해 구체화됨**

- [권고의견 제3호 위반 여부]

❖ 의사표명의 ‘공개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위반 여부 단정하기 어려움 ⇨ ∴ 카페는 개설 당시부터 엄격한 법관 회원제를 바탕으로 외부에 대한 비공지를 전제로 의사표현 활동을 개진하고 있음

- [권고의견 제5호 위반 여부]

❖ 우리법연구회를 타겟으로 마련된 권고의견

❖ 인터넷 카페 활동을 사이버공간에서의 단체 활동으로 해석하여 의율 가능

❖ 다만, 의사표현 활동만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카페 구성을 부적절한 단체 활동으로 볼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론 제기될 수 있음

- [권고의견 제7호 위반 여부]

❖ 커뮤니티 성격을 갖는 인터넷 카페를 불특정 정보 전파성을 특징으로 하는 SNS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의사소통의 즉각성, 회원의 내부 규율 위반에 따른 정보 전파 가능성 등을 이유로 권고의견 제7호의 유추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 가능한 조치

- 설령, 법관윤리강령 등의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징계에 회부할만한 사항은 아님 ⇨ 자칫 공식 징계절차로 나아갈 경우, 법관 사회의 반발 야기될 수 있음

- 자발적인 카페 폐쇄 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 제7호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최후의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



##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 1. 검토 배경

- 최근 이 모 부장판사의 인터넷 익명 댓글이 공개되어 파장
- 유사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검토 필요
  - 현직 법관들로만 구성되고, 모든 글을 익명으로만 올리게 되어 있는 인터넷 카페(모임)가 활발히 활동 중임
  - 위 익명게시판의 내용이 유출, 공개될 경우 내용에 따라 이 모 부장판사 사건과 유사한 파장 예상됨
  - 수백 명의 법관이 활동 중이어서 이 모 부장판사 사건처럼 특정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논리로 방어할 수 없고, 해당 글이 법관 조직 전체의 인식과 언행을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치명적 위험성
- ①먼저 위 익명 인터넷 카페의 현황과 게시글의 전반적 성향을 살펴본 후, ② 政務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대응방안을 검토함

### 2. 카페 현황

- 명칭 : '이판사판야단법석'
  -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위치 [REDACTED]
- 개설 일자 및 운영진
  - 2014. 10. 24. 개설
  - 개설자는 [REDACTED]기 판사로 알려져 있음
  - 현재 카페지기(최고 운영자)로 8명의 판사가 등록되어 있음
- 가입자 수 및 활동 정도
  - 2015. 2. 15. 기준 총 가입 법관 384명
    - 실명과 코트넷 메일을 통해 현직 법관임을 확인한 후 정회원 자격 부여
    - 기존 법관회원이 다른 법관을 회원으로 초대하는 기능을 통해 회원수 급증
    - 개설 3개월만에 가입 법관이 300명을 넘고, 매주 가입 법관이 30명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증세에 있다가 2월 들어 1주당 10여 명 선으로 증가세 다소 둔화. 이

모 부장판사 사태 이후 가입자 증가 미미함

- 매주 250명 안팎의 법관이 위 사이트를 방문하고, 매주 300건 안팎의 게시글(댓글 포함, 댓글 제외한 본글은 매주 30건 정도)이 올라올 정도로 활발히 활동 중
  - 원○○ 판결, 상고법원, 대법관 제청 등 주요 사법부 이슈에는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림
  - 인터넷 아이디는 물론 닉네임, IP주소 등도 전혀 표시되지 않는 완전 익명게시판이기 때문에 글 작성자를 알 수 없음은 물론 동일한 사람이 작성한 글인지 여부도 확인 불가능함
- 1일 방문수가 1000건 이상으로 집계될 정도로 1일 수차례 방문하는 적극 활동 법관이 상당수로 보임 (대부분의 글이 근무시간 중 작성)

#### ■ 게시판 구성

- 정의의 플랫폼(사법부 관련 의견 개선) / 업무Q&A / 인사연수정보 / 책창고 / 세상 보기(사회 전반 의견 개선) / 도와주세요 / 잡수다 / 카페 운영 관련건의 게시판으로 구성됨
- 도서 소개하는 책창고 게시판 제외한 모든 게시판이 비교적 활성화

### 3. 게시글 분석

#### ■ 법원 내부의 내밀한 정서나 인식을 언급하는 내용이 많아 유출, 공개시 위험성 큼

##### ☑ 실제 게시글

- 전관예우에 관한 30여개의 댓글 중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많은 판사가 법원에 근무 중', '주변 부장님 심지어 단독 중에 있다', '부장이 대놓고 봐줘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불가능한 결론이 나왔다'는 취지의 댓글이 상당수 (전문은 별지 참조)
- 원○○ 사건 1심 재판장의 고등부장 발령에 관한 50여개의 댓글 중 '이 모 부장의 승진 사례가 다른 법관들의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위 법관들이 대법관 승진을 위해 여당, 야당의 눈치를 보며 미담사례로 소개될 판결을 일부러 만들어 내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
- 신○○ 대법관님 퇴임 관련 기사에 대한 50여개의 댓글 중 '개전의 정이 없다', '퇴임 후 대통령에 의해 정무직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
- 최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는 글
- 합의과정에서 부장과 견해가 다른 경우 대응방법에 관한 20여개의 댓글

■ **사회 및 사법부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드러내는 내용도 매우 많음**

- 소장 판사가 대부분이어서 사법부 정책이나 정부에 대하여 비관적인 견해도 상당 수 있으나, 표현과 수위는 대체로 정제되어 있음

■ **다만, 현재까지 저급한 '표현'이나 인신공격성 내용은 눈에 띄지 않고, 나름 건전한 수준의 표현과 자정력을 유지하고 있음**

■ **게시글 유출 가능성 관련 카페 내부 논의**

- 지난 달 카페 회원인 법관이 전관예우 관련 글을 언급하면서 '외부유출시 문제소지가 큰 게시글에 대해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

- 토론이 이루어졌으나, 다수 회원이 '동료법관을 믿자, 문제되면 그 때 폐쇄하자'는 정도의 입장을 보임
- 운영자도 '동료법관의 글의 내용까지 관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공지함

- 최근 이 모 부장판사 댓글 공개 사건 이후

- 위 카페의 익명 댓글도 위험한 것 아니냐는 염려의 글이 몇 개 달렸고, 유출경위 등에 관하여 가입자의 관심이 크나, 추가 논의는 없는 상황임

#### 4. 대응방안 검토

■ **기본 고려사항**

- 위 카페의 존재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함

- 언론에서 취재에 나설 경우 게시글이 유출될 가능성 큼

- 가입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가입 법관에 의한 유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외부 유출에 대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내가 알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심지어 좀 알려지면 어쩌라는 생각이다. 자체정화로 안되는 문제가 공론화되어 이참에 사법부 독립 및 신뢰회복이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으나'는 위험한 태도를 드러낸 글도 있었음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출되서 문제되면 그 때 카페를 폐쇄하자'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가입자가 상당수 있음

- 퇴직하는 법관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공지되어 있으나, 퇴직하면서 관련 글을 출력하거나 저장하여둘 가능성도 있음

- 이 모 부장판사 사건으로 카페 가입 법관들이 게시글 유출에 대한 우려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활용할 필요 있음
  - 현재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적기**에 마련되어야 함
- 특정 카페의 활동에 대한 개입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억압으로 비춰질 우려가 큼
  - **반발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시되어야 함

■ **참고사항 : 국내외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

- Senior Presiding Judge for England and Wales(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관할하는 항소법원장 격)가 2012년 제정한 법관을 위한 인터넷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규정
  - ‘익명으로 블로그 등 인터넷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신상정보가 밝혀지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관은 인터넷에 글을 게시함에 있어 자신이 법관임을 밝혀서는 아니되고, 법관임이 밝혀질 경우 법관의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의사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인터넷 사용 가이드라인이 익명 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함
  - 위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 규정에 반하는 기존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
  - 위 규정은 영국에서 일부 법관과 언론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함
  - 위 규정을 포함하여 외국의 유사 사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 및 연구 필요함 (국내에서는 공직자 또는 법관의 인터넷 익명 활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1. 11. 29.자 권고의견**
  -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도 요구되므로, SNS 사용시 신상정보와 **게시물 공개범위 설정 및 게시물 관리 등에 신중**하여야 한다.
  -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표명시 자기절제와 품위유지에 유의하고,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 미칠 우려가 있는 외관을 회피하여야 한다
  - SNS사용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공감하였으나, 아직 미제정
- **공직자 SNS 사용원칙과 요령**

-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 7.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
- 공론화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 기밀을 유지할 것, 정책 및 업무와의 일치성을 고려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대응방안①]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권유하는 방안** ⇨ **효과 미약**

- [개요] 공식 사법행정라인이 아닌 카페 운영진 소속법원의 선배, 동료 법관 등이 게시글 유출가능성과 위험성을 경고하고, 신중한 운영, 위험성 있는 글의 삭제 또는 실명화 등을 권유하는 방안
- 장점 : 사법행정권자가 직접 개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반발**이나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운영진 입장 변화시 일거에 문제 해결 가능
- 한계 및 위험성
  - 운영자가 이미 지난 달 ‘외부 유출에 대비하자’는 내부 제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운영진의 성향상 **입장 변화 가능성 희박**
  - 그간의 글에 나타난 운영진의 성향상 사법행정권자가 아닌 단순한 선배 법관의 권유 내지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반발할 가능성 있고, ‘가입 법관 다수의 제안 내지 동의’라는 명분이 없는 한 운영진 주도로 종전 운영방식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대응방안②]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 **실현 가능성 미미**

- [개요] 소장 판사가 운영 및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위 카페에 신중함을 갖춘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하여 게시글 유출가능성 및 위험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내부 변화 시도
- 장점 : 내부 구성원 설득을 통해 자연스러운 변화 가능함
- 한계 및 위험성
  - 실제 카페에 가입해 문제제기를 하는 역할을 맡을 선배 법관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소요됨
  - 위 카페가 선배 법관에 의해 주도된다고 느낄 경우 운영진이 소장 판사를 위한 또 다른 익명 카페를 새로 개설할 가능성도 있음

■ [대응방안③] **법관 전체에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 공지**를 하는 방안 ⇨ **추가**

## 검토 필요

- **[개요]** 법원장이나 수석부장 등이 위 카페를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채 최근 이 모 부장판사 사태와 관련하여 법관은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더라도 극히 신중하여야 한다거나 근무시간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함을 공지함으로써 현재 카페 가입자들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함
  - 카페를 언급할 경우 오히려 법관 사회의 관심을 불러 가입자가 급증하거나 외부에서 카페의 존재를 인지하여 취재를 시도할 위험 있음
- 장점
  - 이 모 부장판사 사태로 인해 카페 가입 법관 스스로 느끼고 있는 염려를 활용할 수 있음
  -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카페의 활동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아니한 채 카페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위 익명 카페 뿐만 아니라 다른 포털사이트에 운영 중인 여성법관 카페 등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도 신중함이 더해질 수 있음
- 한계 및 위험성
  - 익명 활동의 자제 및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의 메일만으로 위 카페의 활동이 현저히 신중해지거나 위축되지 않을 수 있어 효과 크지 않을 가능성
  - 신중해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종래의 활동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어서 일시적인 억제책에 불과함
  - 카페를 언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익명 카페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다소 민감한 사안이어서 각급 법원 공지메일의 '위당'에 따라 예상치 못한 반발 가능성도 있음
- **[대응방안4]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 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
  - **[개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SNS 사용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공감하고도 아직 제정하지 못한 가이드라인을 익명활동을 포함하여 제정
  - 장점 : 충분한 검토 후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명확한 해결책 제시
  - 한계 및 위험성

- 위 카페의 유출가능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방안은 될 수 없고, 가이드라인 추진 자체가 또 다른 논쟁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있음

■ **종합검토 : 3안을 중심으로 정무적인 측면까지 다각도로 고려하여 대응방안 추가 검토 필요**

- 2. 14. 이 모 부장판사 사표 수리 후 법관 조직의 여론 동향, 언론의 논조 및 위 카페의 변화 추이를 계속 관찰
- 위 특정 익명 카페에 대한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법관의 인터넷상 익명 및 실명 활동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외국에서 공직자 또는 법관의 인터넷 익명 활동에 대한 규제 내지 가이드라인에 관한 심도 있는 추가 연구조사 필요.
- 장기과제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검토 필요. 끝.

[별지] 전관예우 (세상보기 게시판) 조회수 559 작성일시 2015. 1. 29. 09:57(내용은 생략)

##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

### 1. 검토 배경

#### ▣ 상고법원안에 대한 내부 반대 움직임 포착

- 그간 상고법원 추진에 대하여 관망세를 취하던 일부 법관들이 최근 들어 입장을 표면화·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짐
- **[반대이유]** ①실질적으로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인사권 등 대법원장 권한 강화에 대한 반감 + ②명분상으로 승진보직 신설 등으로 인한 사법부 관료화 심화 우려일 것으로 추정됨
- **[핵심그룹]**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연구회 탈퇴 이후에도 교류지속하면서 논의의 주축이 되고 있음 ⇨ (이하 생략)
- **[표면화 배경]** ①최근 주요 (보수)언론의 일련의 우호적인 보도 및 ②야당 소속 반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 약화 등으로 입법환경상 긍정적 징표 ⇨ 상고법원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였을 것임

#### ▣ 우리법 연구회 2015. 5. 정기세미나

- ▶ 매월 열리는 정기세미나에서 상고법원을 주제로 다룸 ⇨ 국회 법사위 2015. 4. 상고법원 공청회 자료집에 수록된 논문 6개를 참석자가 소개한 후 전체 토론
- ▶ ■기 이하 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 ■기 평판사 8명 중 12명 참석
- ▶ 견해가 11대 1로 갈린 것으로만 알려짐

#### ▣ 선제적 대응 방안 검토 필요성

-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외부로 표출될 경우 ⇨ 입법 추진에 중대한 장애
  - 외부 반대세력 상대로 설득·여론전에 총력을 다해 왔음에도 상당한 반대세력이 엄존함 ⇨ 내부에서까지 반대 목소리가 표출될 경우 ⇨ ①내부 구성원의 큰 동요뿐 아니라 ②외부 반대세력에 대한 설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음
  - 특히 반대 법관들이 세 결집을 통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거나 단체행동을 할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음 ⇨ 현재 논의 주도 법관들은 단체행동에 나서본 경험이 있거나 성향상 단체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세 결집 자체를 방지할 필요성
  - 반대세력이 결집된 이후에는 설득 등을 통하여 일응 무마된 경우에도 향후 다



시 문제될 가능성이 높음

- 외부적 의사표출 여부와 관계없이 **상고법원 추진 및 정상적인 사법행정 시행에 불안요소가 됨**
- 핵심 그룹이 법관이어서 소통과 설득으로 조기에 오해를 해소하고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 대응할 필요성 있음**

## 2. 대응방안 검토

### ▣ [전제사항] 구체적인 정보 수집 필요

- 반대 법관들의 동향은 아직 첩보 수준 ⇨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①**핵심세력은 물론 ②움직임의 목적과 ③세 결집 진행정도 및 고려 중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법관들의 자체적 움직임 여부 ⇨ **재야인사 or 야당의 반대기류에 주된 영향을 미친 민변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파악할 필요**

### ▣ [접근방향] 강은 접근 여부 ⇨ **유화설득타협 방안이 바람직**

- 반대 법관들의 성향 및 핵심 그룹의 무게감에 비추어 **압박으로 느껴질 경우 반발로 인한 단체행동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 있음
- 반대 법관들이 구체적인 **단체행동을 목전에 두고** 있고 설득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압박책을 고려함이 타당함
- 비판 내지 문제의식에 대하여 수용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필요

### ▣ [접촉대상] 주변인들 통한 우회적 설득보다는 **핵심 그룹 상대로 직접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

- 재야인사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핵심 그룹 상대 직접 설득할 필요 있음**
- 유력한 지인 등을 통한 우회적 설득으로 ①**신중한 언행의 확률을 높이고, ②반대 활동 시기를 다소 늦추는 정도의 효과는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단계적 접근은 가능할 것임

#### ▣ **상고법원 관련 내부 세미나 등 우선 활용 방안**

- ▶ 사법정책연구원이나 사법연수원 등을 통해 세미나 등 개최 가능
- ▶ 핵심 그룹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함 ⇨ 다른 법관들의 상고법원 찬성의견을 통해

핵심 그룹의 입장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도모

- 단, 확률이 높지 않고, 특히 반대 움직임의 배경에 핵심 그룹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접촉주체] 법원행정처가 나설 필요 있음

- ①고위 법관을 상대로 한 접촉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서는 것에 별다른 부담 없음
- ②직접 설득하지 아니할 경우 핵심 그룹 입장에서 본심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음
- 행정처 실장급 이상

■ [접촉시기] 현황 파악 즉시 시행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제적 대응 필요하고 미룰 이유 없음

■ [설득수단 및 논리] ⇨ 추가 검토 필요

- 진솔한 접근과 의견교환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제거함
- 사법부 현안에 관한 내부 소통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대화의 장을 연 것이고, 특정 세력을 상대로 한 압박절차가 아님을 설명
- 법률안 발의 이후 수정, 보완된 내용을 중점 설명 ⇨ 대법원장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적극 수용하여 권한을 대폭 내려놓으려는 입장임을 소개
  - ex)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대안 제시 등

## 차oo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 1. 차oo 판사 프로필

사진	차oo (기) 생년월일	[Redacted]
----	--------------------	------------

- 장애인 관련 법률에 각별한 관심 ⇨ 다수 논문 집필
  -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와 친분 두터움
- [Redacted] 대학교 대학원 사회보장법 전공
- 現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회원
- 독일 장기해외연수(1년 6개월, 막스플랑크연구소) ⇨ 방대한 양의 충실한 해외연수 보고서로 행정처에서 호평을 받았음

### 2. 사건 경과

#### ■ 8. 11. 코트넷에 글 게시

- 8. 7. Facebook에 상고법원 및 사실심 충실화 문제에 대하여 고민 중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손○○ 교수(성균관대 로스쿨)의 글 링크
  - 손○○,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법률신문 연구논단
- 8. 11.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 커뮤니티 등에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 게시
  -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주요안건 게시판 중 토론마당(법관 외 직원들도 열람 가능), 민사재판커뮤니티,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 8. 11. 친분 있는 판사들에게 같은 글을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의견 구함
  - 이메일에 대한 전체회신의 방법으로 친분 있는 판사들과 활발한 토론 중

#### ■ 8. 11.자 코트넷 게시글의 주요 내용

(이하 생략)



제가 실험하는 모델에서 평균 근로시간은 일 8시간이 아닌 일 10시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기타 업무에 쓰지 않은 시간을 모두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실근로로 매일 10시간을 일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사실심 충실화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독일 유학에서 복귀한 후, 독일식 집중심리를 민사재판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재의 업무량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코트넷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임**

**☑ 8. 12.자 이메일**

**300건대 초반의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주 50-60시간의 근로와 반복적인 날샘근무.....** (이하 생략)

- **다함께 사건적체를 감수하자는 다른 판사의 주장에 대해 “사건적체를 감수할 용기가 없다”고 답변**

**☑ 8. 13.자 이메일**

(앞 부분 생략) **과로를 줄이고, 비정상적인 사건처리 관행을 버리자. 사건을 빨리 처리하자는 강박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중간 생략)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하 생략)

**■ 상고법원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 견지 ⇨ 법관증원 + 상고허가제**

- 상고법원이 핵심의제로 설정되면서 **하급심 법관 증원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 지적**

**☑ 8. 11.자 이메일**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1심 판사의 대폭 증원이 사실심 충실화의 가장 큰 과제라고, 판사들, 변호사들, 학자들의 상당수가 일치하여 이야기하지만, 상고법원안과 결합된 사실심 충실화 방안 건의문에서 단 한줄이라도 언급이 되었습니까? **부적절한 선을 넘나드는(예를 들어 칼럼의 사실상 대필작성 등) 입법로비의 치열함과 뻔뻔함**, 1심 판사 대폭 증원에 일부라도 쓸 수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고법원이 가장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지상역점 과제니까요.

- **대법원의 업무부담이 문제라면, 하급심의 업무부담도 문제라고 지적**

**☑ 8. 11.자 이메일**

대법관 1인의 사건부담 수가 너무 많아 상고심 판단이 약화되고, 느려지고,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대법관 1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심의 판사들에게도 공통된 문제입니다.** (중간 생략) **대법관 1인의 사건부**

**답 수를 줄이려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고심 사건 수를 늘리는 상고법원안**은, 주객이 전도된 논의가 아닐까요? 법률심으로서 상고심 비중의 정상성이라는 면에서, 상고법원은 비정상을 더 비정상으로 만드는 안이 아닌가요?

- **현재의 과도한 업무량이 비정상적 재판, 사법불신을 낳는다고 확신**

**☑ 8. 11.자 이메일**

(앞 부분 생략) **불충분한 심리**로(충분과 불충분의 기준은 개인 판사의 의견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 1심 재판의 평균적 수준은 불충분입니다) **통계에 맞추어 사건처리 속도를 빠르게 유지, 혹은 더 빠르게 만드는 방향으로 달려온 것이...** (이하 생략)

- 전형적인 이론가 ⇨ 본인 스스로 **상고법원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상태이고, 현재 대법원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 8. 11.자 이메일**

사실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만큼, 뛰어나면서,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진 엘리트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집단도 한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고법원에 사로잡힌 이 집단지성의 획일성과 의사소통의 경직성, 검증되지 않은 주입된 논리의 순응성 내지 자기내면화**는 왜일까요? 특히 **상고법원 안과 관련하여서도, 충실한 자기생각으로 고유한 사색을 행하여 답을 찾아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논리를 보여주는 판사님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 **심리불속행 폐지에 대한 반감이 가장 강함**

**☑ 8. 11.자 이메일**

상고법원 도입과 **심리불속행 폐지**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고심 비중을 더 올리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이 전 이상합니다. 이걸 상고심이 법률심이어야 한다는 명제에서 가장 먼저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 **법관 노조와 같은 법관 결사 단체의 결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8. 11.자 이메일**

(앞 부분 생략) **독일이나 프랑스는 법관노조**도 있지만, 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겠지요? (중간 생략) 한국 사법부의 의사결정 구조는, **행정처로 대표되는 사법행정 관료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법관 결사 단체의 부존재**로 인하여 더 왜곡된 측면이 큼니다. 거기에다가, 재판업무로 치어는 일선 판사의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고민한 여유는 더 없고, 견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 대법원은 판사 수의 대폭 증원을 바라지 않는다고 확신

☑ 8. 13.자 이메일

- ▶ 대법원은 판사 수의 대폭 증원은 바라지 않고... (중간 생략) **상고법원이 태풍의 눈처럼, 다른 중요한 이슈에 들일 노력을 먹어갑니다.**
- ▶ 지금 엄청난 통계압박으로 판사들을 관리하고, 감사 때마다 다양한 통계분석으로, 조금이라도 사건처리율이 내려가면 압박해가는, 이 시스템의 정점에는 대법원장님이 있는데... (이하 생략)

■ 대법관 증원론에도 호의적인 입장 유지

- 핵심적인 주장은 ① “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사실심 충실화”와 ② “상고허가제”이지만, ③ “대법관 대폭 증원”에도 호의적인 입장 유지 ⇨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론”을 동시에 추진하면 **대법원 재판이 더욱 충실해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됨 ⇨ **민변의 입장과 유사**(실제로도 차oo 판사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친분이 있음)

☑ 8. 13.자 이메일

- ▶ 대법관 증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법원만 OK하면 대법관은 금방 증원됩니다. (중간 생략) **3-4명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중간 생략)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무엇을 근거로 하신 것인지 궁금한데, 혹시 전원합의체의 문제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 ▶ **몇 개 안되는 전원합의체를 가지고 전원합의체의 어려움을 대법관 증원의 반대논거로 드는 것은 표면적이고, 대법원은 대법관 수가 느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법원 외부의 인사들이 다수 들어올 통로가 된다는 위기의식, 그래서 법원의 독립을 해할 수 있다는 논리...** (이하 생략)

☑ 8. 17.자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 게시글

- ▶ 주변의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가들부터 설득하고 토론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전 변호사 단체 고위 임원으로서는, 사실심 충실화 논의를 전제로 한 상고법원에 찬성한 분께 전화를 드려 40여분 정도 토론**을 해봤고, 사실심 판사 대폭(1.5배~3배) 증원으로 1심에서 모든, 주장, 입증을 다 심리하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증거발굴에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상고허가제 도입이 바른 방향이라는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정책의지의 진정성을 문제삼으면서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해봐라. 그러면 대법원의 진심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불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는 점도 사실대로 밝혀봅니다.

4. 대응 방안

가. [총론] 방향 설정

■ **관망 v. 사전예방적 대응 ⇨ 사전예방적 대응 필요**

- 차00 판사의 주장이 '상고허가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므로, 당분간 관망해 보자는 주장도 존재
- 차00 판사의 문제의식은 '상고허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핵심은 '상고허가제'가 아니라 '**법관증원**'이고 이는 서00 의원 등이 주장하는 '**대법관 증원론에 기초를 둔 상고법원 반대론**'과 맥락을 같이 함

☑ 서00, '**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한겨레, 7. 29.)

필자가 판사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법원이 일선 판사들에게 '충실한 재판보다는 신속한 재판'을 은근히 강요**한다는 것이다. 판사들의 근무점수를 주는 법원장들은 사건처리 건수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일선 판사들은 사건 처리 속도와 처리 건수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심지어 판사들에게 사건처리 통계표를 회람시키는 법원장도 있었다. (중간 생략) 이런 분위기에서는 판사들에게 있어 '사건'이란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절절히 묻어나는 '해소되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신속히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한다.

- 차00 판사가 제기하는 의문을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면, 오해에서 기인한 다소 과격한 주장을 하는 다른 판사들의 글들이 코트넷 게시판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생각이 정리되면 글을 하나 올리겠다는 판사들 여럿 있음), 만일 언론보도가 된다면 상고법원 입법전략에 가해지는 피해가 너무나 클 것임

■ **지원장, 법원장의 개별 면담 v. 논리적 설득 ⇨ 논리적 설득 필요**

- 차00 판사는 현재 상고법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완료된 상태 ⇨ 자신의 의문을 풀어줄 **논리적 답변**을 원함
- 논리적 설득 논거 없이 법원장, 지원장 등을 통한 개별 면담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많음

나. [각론] 구체적 대응방안

① [1단계] 행정처 경험 있는 부장판사를 통한 **논리적 설득**

- 차00 부장판사(0기, ████████ 지법, 前 사법등기국장) ⇨ 차00 판사와 사촌관계
- 차00 부장판사가 차00 판사에게 아래의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설명
  - 현재 심리불속행결정을 할 때에도 일반 상고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건기록을 검토하되, 결정문만 간이하게 작성하고 있을 뿐임 ⇨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



하더라도 판결문을 작성하여 **답변기능만 강화**될 뿐이고, **상고심의 업무부담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님**

- 차00 판사가 주장하는 **'상고허가제 + 법관증원론'**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경우 현재의 입법 상황에서 서00 의원 등이 주장하는 **'대법관 증원론'**으로 연결되어 **왜곡될 위험이 존재함**

**☑ 차00 부장판사의 설득 결과 ⇨ 실패**

▶ 차00 부장판사가 지난 주말 각 2시간 정도씩 2회에 걸쳐 차00 판사와 통화하였으나 차00 판사 설득에 실패

▶ 차00 판사의 답변 요지(지난 주말: 8. 16.)

- 상고심 기능 개선의 가장 이상적인 수단은 **상고허가제**인데, **상고법원**을 도입할 경우 **상고허가제 도입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업무경감**인데, **현재 대법원이 제시한 사실심 충실화 방안은 법관 대폭 증원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으므로 미봉책에 불과함**

▶ 답변 이후의 상황 ⇨ 차00 판사 8. 17. 코트넷 글 다시 게시

- 법관 증원을 위한 판사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변호사들에 대한 판사 개개인의 설득이 필요함
- 대법원이 마련한 사실심 충실화 계획은 상고법원안 통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함
- 상고법원안은 상고허가제로 연결될 수 없음
-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에서의 판사들의 토론 활성화를 위하여 차00 판사 본인은 당분간 글을 올리지 않겠음

**☑ [2단계] 법관증원론에 대한 共感을 통한 戰線 이동 필요**

**"법원행정처 v. 일반 판사" ⇨ "사법부 v. 법무부, 기재부, 국회"**

- 현재 차00 판사가 요구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법관 정원 증가에 대한 설명이 아님
  - 최대 500명의 법관 증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독일 수준의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1.5배 ~ 3배의 법관 증원을 요구
  - 많은 판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음
- 법원행정처가 8. 11. 실시한 서울동부, 수원지법 법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다수의 법관들이 **"상고법원 도입과 함께 하급심 법관의 업무부담도 줄여 나가겠다는 큰 틀의 정책이 같이 제시되면, 판사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음

- 대법원이 내심으로는 법관 증원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도 존재
-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법관증원론에 대해 공감을 표시할 필요 있음
  - 공감 표시만으로 판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음
  - 어차피 법관증원론은 법무부, 기재부, 국회의 반대로 실현이 쉽지 않음 ⇨ 대법원이 굳이 공감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판사들과 전선을 만들 필요 없음

**☑ 법관증원론에 공감을 표시하는 대법원의 글에 포함될 내용**

- ▶ 법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대법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 대법원은 그동안 법관 증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
- ▶ 법관증원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
  - 판사들은 고급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음 ⇨ **국회 입법조사관들도 알 수 있는 수준의 입법과정에 대한 공개된 정보(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1소위 회의록)는 과감하게 판사들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회 등이 법관 증원을 심사할 때 사용하는 각종 기준(예: 접수사건 증가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있음
- ▶ 법관 증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다만, 상고법원에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법관증원론 쪽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음

**③ [3단계] 집단적으로 사건 적체 결의하자는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이○○ 판사의 사망, 차○○ 판사의 코트넷 게시글 등으로 인하여 판사들 사이에서는 집단적으로 사건 적체를 결의하자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음
- 법원행정처가 법관증원론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법관 증원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경우, **상당수의 판사들은 그 대안으로 법원행정처가 사건 적체를 어느 정도 수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우려** 있음 ⇨ 대응 논리,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함 <끝>

## 차oo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 1. 검토 배경

- 차oo 판사 진보성향 주간지인 시사인에 칼럼 투고  
(이하 생략)

### 2. 사건 경과

- 8. 7. Facebook에 상고법원 관련 글 게시  
(이하 생략)
- 8. 11. 코트넷에 글 최초 게시 ⇨ 법률신문 인터넷판 기사화  
(이하 생략)
- 8. 16. 차○○ 부장판사의 차oo 판사 설득 ⇨ 실패  
(이하 생략)
- 8. 17. ~ 8. 31. 코트넷에 글 계속 게시 및 토론  
(이하 생략)
- 8. 31. 시사인에서 차oo 판사의 코트넷 게시 글 요약 보도
  - 진보성향의 시사인 편집팀은 상고법원에 확고한 반대 입장
- 9. 18. Facebook에 시사인과 법률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
  - 차oo 판사 자신의 노력이 언론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9. 21. 시사인 온라인 판에 차oo 판사 투고 칼럼 첫 회 게재
  - 판사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다음 익명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에 게시된 글 (9. 21.)

차oo 판사님께서 언론에 내신 글입니다. 웬지 혼자서 고군분투 하시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 생각하는 바를 추진하고자 하는 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53>

### 3. 차oo 판사 시사인 칼럼의 내용

- 전체적인 내용

(이하 생략)

▣ 차oo 판사 칼럼 중 문제되는 내용

- 대법원은 이미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사실심 심리 관여를 많이 해왔음
- **상고법원이 법률심으로서 가진 권한을 넘어 더 충실히 사실심의 사실 판단을 깨는 월권적 행위**를 해도, 사실심 판사들은 심리 강도를 높일 여유가 없음
-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사실심 충실화 대책은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변호사 단체 요구로 명목상 내놓은 것**으로서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임
- **판사 수 대폭 증원이 해결책**이나, **상당수의 법관, 특히 고위직 법관들은** 판사 수 증원이 판사의 희소성을 떨어뜨려 사회 지위를 낮출 거라고 우려해 **내심 반대**하기도 함

(이하 시사인 칼럼 해당 부분 기재 생략)

▣ 칼럼 중 시사인 편집팀의 편향적인 편집 의도가 보이는 부분

- 차oo 판사의 칼럼 앞부분의 [편집자 설명] 부분, 칼럼 중간에 실린 [사진 설명] 부분에서 **시사인 편집팀의 편향적인 편집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이하 생략)

4. 분석

① 부적절한 행동이나,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하 생략)

② 차oo 판사의 열정을 시사인 편집팀이 악용하고 있는 상황

(이하 생략)

③ 차oo 판사의 언론 활동과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논거①] 차oo 판사는 자신의 계속된 문제제기로 인하여 **의제를 설정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 차oo 판사가 자신의 Facebook에 쓴 댓글 (9. 19.)

▶내가 글 올리고 나서 나눈 많은 대화 중 현실성이 없다는 반론 외에 제대로 된 논박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글을 올린 후에 나온 법원 행정처 인사제도 개편안에 현재 업무 부담하에서 걱정판사수에 대한 용역연구를 내년 1월에 시작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그 진정성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의제로 만드는데는 성공한듯 하다. (이하 생략)

● [논거②] 차oo 판사의 **대학, 사법연수원 시절 활동 경력**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한 끈질긴 추진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인 차oo 판사는 **법대 학생회, 법대 동아리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었지만, ■■■■■ 도서관에서 **고시공부를 하던 중에도 학내 성폭력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하여 장문의 대자보를 쓰면서 논쟁을 하는 활동을 함** ⇒ **非主流 활동가 성향**

- 차oo 판사는 2002년 고시공부 중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후부터 **장애인 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

☑ 동아일보, "시각장애인 사시 합격 도운 차oo 씨 판사 임관 (2009. 9. 22.)

▶ 지난해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 씨(나이). 그의 아름다운 도전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차oo 씨(■■■■■·사진)가 1일 ■■■■■ 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차 씨가 시각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하 생략)

- 2003년에는 고시생 신분으로서 **이라크 전쟁 반대운동 동참**

☑ 문화일보, "반전운동 달아오른다" (2003. 3. 18.)

고시생들도 이라크전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 출신 **고시생으로 이뤄진 '고시생 대자보를 쓰는 모임'**은 지난 주부터 반전스티커 붙이기, 반전깃발 달기 등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차oo(■■■■■·법대 대학원)씨는 "공부시간을 빼앗기지 않고도 반전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생활 속 반전운동을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 5. 대응 방안

### 가. [총론] 전체적인 대응 방향

#### ■ 설부른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논거①] 차oo 판사가 시사인에 칼럼을 투고한 사실은 이미 **국제인권법연구회, 다음 익명 카페(이판사판 야단법석)** 등에 공지되어 많은 판사들이 알고 있음 ⇒ 법원행정처가 설부러 개입할 경우 **판사들 여론의 逆風**을 맞을 우려 존재

● [논거②] 많은 법관들이 이미 **법률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등에 칼럼 투고를 하고 있음 ⇒ 문제는 칼럼 투고 자체가 아니라 **칼럼의 내용**인데, 차oo 판사의 칼럼에 대해 설부러 개입할 경우 **법원에 불리한 칼럼을 투고하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 존재**

● [논거③] 차oo 판사의 칼럼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법관**

의 품위, 공정성, 자기절제, 균형잡힌 사고”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님  
⇒ 선부른 개입을 할 경우 법관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가능

### ■ 3가지 조치 필요

- ① 문제 부분에 대한 안내, ② 예의 주시, ③ 일선 판사들의 오해 불식

#### 나. [각론] 구체적 대응방안

##### ① 문제 부분에 대한 공식 안내

- 비공식적 채널(차oo 판사와 사촌관계인 차○○ 부장판사)을 통한 논리적 설득 전략은 이미 사용하였으나 실패
  - “차oo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를 찾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효용이 크지 않음
  - 다른 비공식 채널을 계속 가동할 경우, 법원행정처가 배후에서 계속 관여한다는 인상을 차oo 판사에게 줄 우려 존재

##### ● 비공식적 채널 ⇨ 공식 채널로 **방향 전환** 필요

- 공식채널인 ■■■ 지원장(최○○, ○기)이 차oo 판사의 칼럼 투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며, 문제 부분을 안내할 필요 존재

##### ● ■■■ 지원장 면담 시 포함될 대화 내용

- ① 칼럼 투고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 유지해야 함
- ② 5회 연속 칼럼을 게재하고, 수당을 받을 경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 [주의사항] 유용한 정보를 안내한다는 태도 유지 해야 함
- ③ 칼럼 투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관윤리강령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제7호의 취지를 유념하여 “법관의 품위, 공정성, 자기절제, 균형잡힌 사고”를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주의 사항을 격려 내지는 덕담 형식으로 전달
- ④ 시사인에서 차oo 판사의 칼럼을 게재할 때, “편집자의 설명” 부분과 “사진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차oo 판사의 의도와는 달리 시사인 편집팀의 시각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안내

##### ② 예의 주시

- 사태의 추이를 지켜 보면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 공식채널을 통하여 문제 부분에 대한 공식 안내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판사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 존재

● 차oo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 차oo 판사와 친한 선·후배 명단 취합·관리 필요

**③ 일선 판사들의 오해 불식을 위한 노력 계속 추진**

● 차oo 판사의 글이 호응을 얻는 것은 일선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갖는 불만이 크기 때문임 ⇨ 일선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대해 갖는 불만이 크지 않다면, 차oo 판사의 글은 조용히 사라질 것임

●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개입은 “차oo 판사”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선 판사들의 상고법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야 함  
⇨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법원행정처장님 명의의 코트넷 공지사항 게시 등 판사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함

● 법관 업무량 감소에 대하여 판사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제시 필요 <끝>

## 송00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 1. 프로필

#### ■ 연수원 00기(상세는 별첨 자료 참조)

(별첨 자료는 이번 조사의 검색에서 발견하지 못했음)

### 2. 성향

#### ■ 전체 사법제도, 인사시스템 등 관심 多

- 특히,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심 ⇨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

- 2012. 7. 김○○ 대법관 임명 제청의 철회를 요구하는 글 게시
- 2014. 8. 권○○ 대법관 임명 제청 당시, 최고엘리트 법관이 아닌 인권 등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법조인에게 문호를 개방했으면 한다는 글 게시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 게시

#### ■ 정세판단에 밝은 전략가형

- 속칭 ‘낄 때, 안낄 때’ 판단이 밝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침묵
- 동기인 유○○ 판사는 현장의 필드 플레이어 성격이 강하다면, 송 판사는 배후 기획, 정리, 분석, 전략수립 등에 더 밝음
-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었다가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자 우리법 연구회 탈퇴함

#### ■ 집행부에 대한 불신 및 의혹 多

- 수원지법 내 사무분담 편성시에도, 사부분담 하나하나에도 의혹제기

#### ■ 선동가, 아웃사이드 비평가 기질

- 이슈 발생시 주변 법관들을 선동하는 기질 다분

### 3. 자유게시판 게시글

#### ■ 2009. 3. ‘사법부를 흔드는 두가지 손’ (촛불재판 의혹 규명 촉구)

- “의혹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 ) 지법) 수석부장판사의 독



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 지법) 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

■ 2010. 1. 27. ‘정기인사에 앞서 법원장님들께 올리는 글’

- “(최근 사의를 표명한 법원장님들이) 사의를 거둬주시고 고법의 재판장으로 돌아가 주시면 안 되겠느냐”며 일정 기간 법원장을 지낸 뒤에는 다시 고법 부장으로 돌아가 재판을 맡다 퇴인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
- “대법관 제청도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고법 재판장으로 근무하시는 법관님들 중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렇게만 되면 법원장님들이 사법부 독립을 흐리는 일체의 세력, 그들의 낱선 비난에 단호히 맞서 후배 법관들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느냐”

■ 2011. 11. 29. 최○○ 부장판사의 FTA 강행처리 비판 글 게시 이유 윤리위 회부에 대해 비판 글 게시

- “최○○ ■■■ 지법 부장판사에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

■ 2012. 7. 24.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하여”(김○○ 대법관 임명제청 철회 요구)

- “후임 대법관의 임명을 위한 청문회를 거친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저는 사법부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 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올해 초 법원은 모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두고 커다란 흥역을 겪었다”, “일선 판사 한 명의 재임용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던 대법원이 현재 상황에서 왜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2014. 8. 권○○ 당시 차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한 글

- 2003년 ‘제4차 사법과동’은 법원 내부의 자발적인 역량들이 모여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거쳐 사법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으로 평가될 것”
- “다음 번 대법관 제청 때는 최고엘리트 법관이 아닌 인권이나 노동,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법조인에게 문호를 개방했으면 한다. 법원 내·외부의 이런 요청이 적극 반영되기를 호소한다”

■ 2015. 1. 15.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한 의견”

- “이번 추천 결과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강조했던 2011년 취임사

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인지 냉철한 자성과 반추가 필요하다”며 초심을 강조, 대법관 후보 제청을 위해 법원 안팎의 여론을 다시 수렴할 것을 요구

## 원○○ 전 국생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1. BH

#### ■ 판결 선고 전 동향 ⇨ 촉각을 곤두세움

- BH의 최대 관심 현안 ⇨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
- 법원행정처 ⇨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재판 결과에 관하여서는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알림
  - 위와 같은 내용 그대로 민정 라인을 통하여 보고됨

#### ■ 판결 선고 후 동향 ⇨ 내부적으로 크게 당황, 외부적으로는 침묵 속에 이○○ 청문회 주력

- 전반적 분위기 ⇨ 크게 당황하며 앞으로 전개될 정국 상황에 관하여 불안 해하는 상황
  - 특히 우○○ 민정수석 ⇨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 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 해줄 것을 희망
  - 이에 대하여 곽○○ 법무비서관 ⇨ 전원합의체 회부는 오히려 판결 선고 지연 을 불러올 가능성 있음을 피력
- 법원행정처 ⇨ 법무비서관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함
  - 법무비서관 ⇨ 법원행정처 입장을 BH 내부에 잘 전달하기로 함, 그리고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함
- 아직 “대응” 방향에 관하여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본적으로 ‘판결 자체에 대한 대응 방법’이 마땅한 것이 없다는 것이 민정 라 인의 답답한 입장인 것임
  - 단적으로, 유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찰을 채근할 수도 있겠으나,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 변호사를 채근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

- 게다가 민정 라인은 오늘 당장 닥친 이○○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더욱 급한 현안임

- 일단 법무비서관실로서는 청문회 전후로 이 사안에 대한 민정수석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 2. 여야 각 당

(이하 생략)

## 3. 언론 동향① [선고 직후~다음날 오전]

(이하 생략)

## 4. 언론 동향② [다음날 오후~현재]

(이하 생략)

## 5. 사법부 내부

### ■ 소장 법관

- 특히 1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고민하던 법관들은 항소심 판결 내용에 수긍하는 입장이 많음

○ 아래 내용은 최근 개설된 Daum 판사 카페에 익명으로 올라온 게시 글들임

- 결국 실형 3년이군요 ^^
- 오오!!!
- 징역 3년 법정구속...속이 시~원하다!!
- 실형 나왔네요!
- 간만에 속이 확 풀리는 소식이네요.
- 꼭 내가 형사피해자이고 가해자한테 실형 선고된 것 같은 기분예요.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요 : 이걸 애교섞인 과장임 ^^
-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우울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게 다 잊혀지고 막 기분이 좋아져요.!
-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 이처럼 당연한 말을...
- 박수를 보냅니다.
- 김○○ 부장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 저도 김○○ 부장님의 글이 생각났어요.
- (두리번) 선배님~ 이러면 어느 것이 "튀는 판결" 인가요... 종래 관념으로는 1심인 것 같은데, 윗분들 눈치를 보면 항소심일 것 같기도 하구... 나는 이 것(판사) 하나 뿐인데... "요즘 젊은 판사들의" 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에 비추어 두 분의 나이를 비교해야 하는지... 아... 어렵다. 휘리릭~
- '튀는 판결'이라는 워딩 자체가 편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파동에 관한 pd수첩 보도관련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튀는 판결이라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죠. 상급심에서 결론이 유지되었는데도요
- 판사님들 의견이 같네요. 밥조도 같네요
- 이게 상고심에서 깨지지 않길 기도합니다
- 저도 상고심에서 깨지지 않길 기도합니다
- \*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규범이 헌법적 의미 등에 대한 고려 필요성 : 위 금지규범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관여에 따른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한 국민의 강력한 규제 의사가 반영되어 입법된 것임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공직선거법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위 규정이 입법된 목적 및 공직선거법이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헌법규정의 정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제와 정답은 "헌법"이었던 듯 !!
- 아~ 판사 답 다....
-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판결과를 전해들은 뒤 "뭐 저런 판사가 다 있나?"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어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 ↳ 어제 재경지역 검찰 동기들과 송별회식하면서 들은 얘기와는 좀 다르군요 ㅎㅎ
  - ↳ 그런 검사도 있겠죠. ㅎㅎㅎㅎ 그렇지만 안그런 검사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 ↳ "고위 관계자"들 얘기죠...검사장 이상이거나 검사장 승진을 바라보는 사람들 마인드는 좀 다른 듯...

■ 코트넷 자유게시판

- 판결 선고 기사를 전제한 글과 ‘판사 김○○’의 제목으로 재판장을 두둔하는 글이 게시되었음
  - 각 글에 댓글이 10개 이상 달렸으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음

6. 향후 대응 방향

■ 판결 결과 분석 필요

● 항소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 ⇨ 신속 처리 추진

- 기록 접수 전이라도 특히 법률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 ⇨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3개월] 최대한 준수하여 신속 처리

◇ 상고심의 쟁점 예상

■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

-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너무나도 구체적임
-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항소심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단순히 ‘전제 법리’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비판
  - 법리 문제를 떠나, 항소심 판결의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구체적임

■ 이른바 ‘선거 트윗’ 과 ‘정치 트윗’ 의 구별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선거무효소송

■ 소 제기 기간 도과 ⇨ 新訴 제기는 불가능

- 공직선거법 222조 ⇨ 대선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후보자·정당),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

■ 다만, 이미 제기된 ‘제18대 대선무효확인소송’ ⇨ 영향 미칠 수 있음

- 대법원 2013수18호 사건
- 원고 측에서 이미 원 전 원장 사건 관련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했음

■ 향후 정무적 대응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계속하여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방안 vs. 수세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방향

-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질 수도 있음
-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 ⇨ 다만, 역풍 가능성이 극히 우려되므로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끝]

# 조 사 보 고 서

2018. 5. 25.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 목 차

I.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구성 및 활동	2
1. 특별조사단의 구성	2
2. 조사의 목적과 원칙	2
3. 조사의 기간과 장소	2
4. 조사 대상과 범위	3
5. 인적 조사의 범위	4
6. 물적 조사의 방법과 문서 파일의 선별 원칙	4
7. 암호의 확보와 물적 조사 동의	5
8. 물적 조사의 실행 경과	6
II. 의혹별 조사결과	19
1.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20
가.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20
나.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20
다.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21
라.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35
마.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36
1) 2015년 인사모 동향 파악 및 개입 관련	36
2) 2016년 인사모 동향 파악 및 개입 관련	38
3) 소결론	47
2.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49
가.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49



나.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51
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	52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	52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55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56
<b>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등 .....</b>	<b>60</b>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60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	64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	64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68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69
<b>4.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b>	<b>73</b>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73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	74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	74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83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84
<b>5.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b>	<b>88</b>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88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	92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	92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95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96
<b>6.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b>	<b>100</b>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100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101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101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107
3) 특별조사단의 검토	107
가)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관여 여부	107
나)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관여 여부	109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활동 및 단독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111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재편 관련	111
<b>7. 원세훈 사건 재판부 동향 파악 등</b>	<b>112</b>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112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113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113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124
3) 특별조사단의 검토	126
가) 제1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의 관여 여부	126
나)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의 관여 여부	130
다) 상고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 등의 관여 여부	131
라) 파기후 환송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의 관여 여부	141
마) 법원행정처와 BH와의 교감 여부	143
바) 종합 검토	146
<b>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b>	<b>148</b>
가.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148
나.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149
다. 특별조사단의 검토	149

9. 긴급조치 손해배상 1심 판결 관련 징계 검토 .....	151
가.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	151
나.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153
다. 특별조사단의 검토 .....	154
10.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이 뚜렷한 문건들 .....	157
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관련 제소 관여 검토 등 .....	157
나. 기타 .....	166
1)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	166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174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175
Ⅲ. 조사를 마무리 하며 .....	178
1. 사법권 독립의 헌법 규정과 그 의미 .....	178
2. 이번 사태의 배경과 원인 .....	178
3. 특별조사단의 총평 .....	182
4. 특별조사단의 제안 .....	184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 <서 언>

국민을 위한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할 사법행정 담당 법관들이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이나 동향을 파악하여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법관들의 자율적인 활동영역인 전문분야연구회, 인터넷 익명카페, 판사회의 경선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이러한 의혹에 관하여 철저한 인적, 물적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평가 과정에서 진영논리나 상황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이 시대 국민들이 사법부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각과 여망에 기초하여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과정이 비록 뼈아픈 고통이기는 하나, 이 모든 과정이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서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치유되고 통합을 이루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I.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구성 및 활동

###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의 구성

- 대법원장은 2018. 1. 24.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2018. 1. 22.)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약속함
-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위 기구의 구성을 지시하였고, 법원행정처장은 2018. 2. 12. 위 기구의 명칭을 결정하고, 조사단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단장), 노태약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당시 의장,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희 사법연수원 교수로 구성함
-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하여 조사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특별조사단에 위임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였음

### 2. 조사의 목적과 원칙

#### 가. 목적

- 사법부 스스로의 힘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이번 사안을 해결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

#### 나. 원칙

- 추가조사결과를 보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저한 물적, 인적 조사를 실시
-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 및 제시
- 법원 감사위원회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의 의견 청취도 고려

### 3. 조사의 기간과 장소

#### 가. 조사의 기간

- 1) 조사 준비 기간 : 2018. 2. 12. ~ 2. 23.

2) 물적 조사 기간 : 2018. 2. 26. ~ 4. 11.

3) 인적 조사 기간 : 2018. 4. 16. ~ 5. 11.

#### 나. 조사의 장소

○ 대법원 1506호 특별조사실

### 4. 조사 대상과 범위

#### 가. 주요 물적 조사 대상

○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하 '임종현 차장'),<sup>1)</sup>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이규진 상임위원'), 임○○ 전 기획재1심의관(이하 '임○○ 심의관'), 김☆☆ 전 기획재1심의관(이하 '김☆☆ 심의관')이 사용하던 저장매체 각 2개씩(HDD와 SSD) 전부

#### 나. 조사의 시적 범위

○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설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2011. 11.경부터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2017. 4.경까지

#### 다. 조사 대상 주요 의혹

- 1)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 2)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 3)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등
- 4)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 5)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 6)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 7)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 9) 긴급조치 손해배상 1심 판결 관련 징계 검토<sup>2)</sup>

1) 이하 호칭에서는 '법원행정처'는 생략하거나 '행정처'라고 함

10)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5. 인적 조사의 범위

가. 원칙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문서들의 작성자, 피보고자, 작성 경위를 파악하여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철저한 인적 조사를 실시

나. 실시 대상

- 대면조사 : 19명<sup>3)</sup>
- 서면조사 : 23명
- 방문청취 : 2명
- 기타 : 5명

※ 자세한 내역은 【첨부 1】 특별조사단 인적 조사 목록 기재와 같음

6. 물적 조사의 방법과 문서 파일의 선별 원칙

가. 원칙

- 원칙적으로 임종현 차장, 이규진 상임위원, 임●● 심의관, 김☆☆ 심의관이 사용하던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체 파일이 조사 대상임
-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지 못한 암호가 설정된 파일 760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실시
- 위 암호파일 외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검색어를 이용한 추출 방식을 기본적인 조사 방법으로 함
- 전수조사 또는 추출된 파일을 선별하는 기준
  -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성향, 동향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보관한 문서

---

2) 특별조사단 2차 회의에서는 8) 및 9) 의혹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외에도 조사 과정에서 법관 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경우 조사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10) 의혹은 그러한 결정에 기초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임

3) 대면조사의 경우에는 추가 서면조사를 시행한 경우도 있음

가운데 관련 자료 수집의 경위, 문서 작성의 동기와 목적, 이용 정황 등에 비추어 법관의 연구 활동과 판사회의 등예의 개입 및 재판예의 직·간접적 인 관여 등예로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훼손 할 우려가 있는 문서

- 다만 법관의 인사, 내부 보고와 기관 사이의 협조, 여론에 대한 대응 등 사 법행정상의 필요와 합목적성이 인정되는 문서는 제외함

#### 나. 1차 회의 후 조사 과정 중에서의 변경 사항

- 물적 조사 과정에서 추가조사위원회가 발견하였다고 보고한 760여 개의 암호 파일은 임●● 심의관이 사용하던 HDD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른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암호파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 암호 파일은 모두 전수조사

### 7. 암호의 확보와 물적 조사 동의

#### 가. 암호의 확보

- 특별조사단 1차 회의(2018. 2. 23.)가 있기 전에 임종현 차장, 김☆☆ 심의관, 임●● 심의관, 정◆◆ 전 기획조정심의관(이하 '정◆◆ 심의관')으로부터 함께 사용하던 암호(\*\*\*\*\*) (이하 '암호1')를, 이규진 상임위원으로부터 별도의 암호 (이하 '암호2')를 제공받음
- 인적 조사 진행과정에서 문□□ 전 사법정책심의관(이하 '문□□ 심의관')으로부터 사법정책실에서 일부 사용하던 암호(\*\*\*\*\*) (이하 '암호3')를, 임●● 심 의관으로부터 별도의 암호 2개(이하 '암호4')를 제공받음
- 그 외에도 인적 조사 진행과정에서 김☆☆ 심의관으로부터 별도의 암호(이하 '암호5')를 제공받음

#### 나. 물적 조사 동의

- 물적 조사 진행에 앞서 임종현 차장, 이규진 상임위원, 김☆☆, 임●● 심의관 은 각자가 사용하던 공용 컴퓨터의 저장매체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물적 조사 에 동의하였는데, 특별조사단은 공용 컴퓨터 내에 있는 공적 정보에 대한 조



사를 위하여 작성자 내지 보관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의 없는 물적 조사의 위법성 논란을 감안하여 관련자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은 것임

## 8. 물적 조사의 실행 경과

### 가. 대상

- 암호파일 : 전수조사
- 비암호파일 : 검색어 조사를 기본

### 나. 검색어 조사

- 특별조사단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조사위원회에서 검색어로 사용한 것에 일부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검색어로 파일의 제목 또는 내용에서 해당 검색어가 있는 파일들을 추출하였음
- 구체적인 검색어는 다음과 같음<sup>4)</sup>

[표 1] 검색어 목록

	1단계(15개)	2단계(1개)	3단계(11개)	4단계(22개)
<b>추가 조사위</b>	인권법,인사모,중복 가입,학술대회,우리 법,판사회의,사법행 정위원회,법원문화 개선위원회,재판제 도발전위원회	상고법원	대외비,성향,동 향,대책,대응, 와해,리스트,强 性,온건,핵심, 영향력	김♠♠,박○○,이○○,김 ○○,박○○,김○○,차○ ○,이○○,김○○,정○ ○,김○○,송♣♣,유○ ○,이○○,마○○,김○ ○,김♣♣,김○○,류○ ○,홍◇◇,이○○,이○○

4) 청와대를 의미하는 'BH'는 기술적인 이유에서 검색어를 이용한 일괄적인 파일 추출 과정에서 제외하였음 (짧은 영문으로 되어 있어 무관한 파일들이 대량 추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가 권유). 다만, 각 조사 대상 저장매체에 대하여 별도로 'BH' 검색을 통해 유의미한 파일들은 별도로 검토하였음. 【첨부 2】 '조사결과 주요파일 종합(410개)'에 BH 검색어로 검색하여 추출(파생 추출 포함)한 파일은 '구분'열에 'BH검색' 또는 'BH파생'으로 표시되어 있음

<b>특별 조사단 추가</b>	이판사판,이사야,유 스티티아,원세훈,국 정원,국가정보원			
--------------------------	--------------------------------------	--	--	--

## 다. 등급분류

### 1) 기준

- 재판 또는 법관 독립의 침해, 사법행정권 남용 정도

### 2) 구체적 분류

- A(강), B(중), C(약)
- D(암호를 알지 못하거나 파일손상으로 열어보지 못한 파일로서 암호 확인이 가능하거나 손상을 해결할 수 있으면 열어보기를 희망하는 것)<sup>5)</sup>
- E 또는 V(검토했으나 무관한 것)
- Z(2차 회의에서 의혹 관련 문건으로 추출하였다고 보고한 406개 파일 외에 인적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함시킨 4개의 파일)
- 2차 회의에서 의혹 관련 문건을 406개 추출하였고, 특별조사단에서 조사 편의상 부여한 A등급(173개), B등급(108개), C등급(119개), D등급(6개)으로 분류하였으며 그중 298개를 제외한 나머지 108개는 298개의 파일들 중 일부와 중복되거나 그 업데이트된 파일들임(여러 개의 저장매체에서 중복하여 추출된 경우나 하나의 저장매체에서 중복하여 추출된 경우가 다수 있음)
- A등급, B등급, C등급의 부여는 편의적이고 종국적인 평가라 할 수 없음(일부 23개의 파일은 조사팀 내에서도 등급분류를 다르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A, B, C등급의 분류는 편의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보고에서는 인용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등급분류의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님)

5) D등급은 뒤에서 보는 H4의 6개 파일이었는데, 파일이 깨져서 열 수 없는 3개의 파일 외에 2차 회의까지 암호를 알지 못했던 것 3개 중 2개는 암호를 알게 되어 해결하였고, 나머지 1개는 동일한 것으로 비암호 파일이 있어 실질적으로 해결되었음

### 3) 보고서에서 인용된 파일(174개)

- 2차 회의 후에 인적 조사 과정에서 필요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4개의 파일들(Z등급)이 더 추가되었는데, 총 410개(406개+4개)의 파일들 중 90개의 파일들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주요 파일로서 보고서에 인용되었고, 그 파일들과 중복되거나 그 업데이트된 파일들의 숫자가 84개임. 결국 410개의 파일들 중 174개(90개+84개)를 제외한 나머지 236개는 인용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중요도 높은 파일의 누락은 없음

### 라. 조사 가능 저장매체 및 유의미한 파일의 현황

#### 1) 조사 가능 저장매체와 조사 불능 저장매체 및 그 원인

- 8개의 저장매체는 임종현 차장, 이규진 상임위원, 김☆☆, 임●● 심의관이 사용하던 공용컴퓨터의 각 HDD(통상 D드라이브)와 SSD(통상 C드라이브)인데, 임종현 차장 사용 컴퓨터의 HDD와 김☆☆ 심의관 사용 컴퓨터의 HDD는 포렌식연구센터 감정결과 사용하지 않은 저장매체로 감정되었고, 이규진 상임위원의 HDD는 물리적 손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복구전문기관의 감정이 있었음
- 특별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도 김☆☆ 심의관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던 HDD는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하던 HDD가 아니고 새 HDD로 확인됨. 임●● 심의관은 기획제1심의관 컴퓨터를 인수받은 후 전산정보관리국(이하 '전산정보국')에 128GB의 SSD를 256GB의 SSD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전산정보국에서는 아예 256GB의 SSD가 포함된 새 컴퓨터를 제공하였음. 임●● 심의관은 김☆☆ 심의관이 사용하던 HDD를 새로 받은 컴퓨터에 옮겨 설치하고 전산정보국 직원들에게 김☆☆ 심의관이 사용하던 SSD 중에서 새 컴퓨터로 복사할 업무용 파일을 지정하여 복사한 후에 종전 SSD에 있던 해당 업무용 파일은 삭제하도록 하였음. 김☆☆ 심의관이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에 부착되어 있던 HDD는 새롭게 장착한 HDD로 보임
- 특별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기획제1심의관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저장매체에 있던 주요 파일은 상당 부분 임종현 전 차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SSD에서도 발견되었고 임종현 전 차장은 HDD(D드라이브)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은 위 감정결과에 부합함

- 추가조사위원회에서의 정재현 전산정보관리국장의 진술에 의하면, 이규진 상임위원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인수한 천대엽 현 상임위원은 인사이동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2017. 6.경 컴퓨터에 문제(HDD 쪽에서 소리가 나는 등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가 생겨 새 컴퓨터로 교체하고 기존의 HDD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함. 특별조사단은 물리적 손상에 관하여 감정을 하였으나 이규진 상임위원이 의도적으로 손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규진 상임위원이 의도적으로 물리적 손상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결국 특별조사단은 임중현 전 차장이 사용하던 SSD, 이규진 상임위원이 사용하던 SSD, 김☆☆ 심의관이 마지막으로 사용하였던 SSD, 임●● 심의관을 비롯한 기획제1심의관이 사용하던 HDD, 임●● 심의관이 2016. 2.부터 사용하던 SSD 이상 5개의 저장매체에 대하여 파일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음

## 2) 조사 가능 저장매체 5개 및 암호파일, 검색어 추출 파일의 현황

[표 2] 저장매체 포렌식 현황

사용자	디스크	조사	원본확보	이미징 <sup>6)</sup>	특이점	비고	암호파일		검색어 <sup>7)</sup> 추출 <sup>8)</sup>	전체 문서파일
							정상	유실		
임중현	HDD (H1) <sup>9)</sup>	×	○	○	사용 ×	안티 포렌식 <sup>10)</sup> ×	정상 <sup>11)</sup>			
							유실			
	SSD (S1)	×	○	○			정상	206개	6,037개	13,482개
							유실	80개 <sup>12)</sup>		
이규진	HDD (H2)	×	○	×	복구불능		정상			
							유실			
	SSD (S2)	○	○	○			정상	4개	598개	2,102개
							유실	6개		
김☆☆	HDD (H3)	○	○	○	사용 ×	안티 포렌식 ×	정상			
							유실			
	SSD (S3)	○	○	○			정상	○	499개 <sup>13)</sup>	2,363개
							유실	1개		

입●●●	HDD (H4)	○	○	○	특별조사 중 원본 확보	좌동	정상	376개	22,110개	305,255개
							유실	381개 14)		
	SSD (S4)	○	○	○	특별조사 중 원본 확보	좌동	정상	56개	6,389개	16,833개
							유실	2개		
합계							1,112개	35,633개	340,035개	

마. 추가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열어보지 못한 H4 약 760개의 암호파일

가) 암호파일의 숫자는 757개(정상 376개, 유실 381개)

나) 암호1로 열어본 파일 375개

(1) 유실파일 여부

○ 그중 171개는 정상파일, 204개는 유실파일임

- 6) 포렌식 조사를 위하여 저장매체를 복제장비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것을 이미징(imaging)이라 함
- 7) BH를 제외한 검색어를 이용한 일괄적인 파일 추출 결과임
- 8) 확장자가 hwp 파일이 아닌 MS Office, PDF 파일도 검색어 추출에 포함되었으나 남용의혹 관련 일부 hwp 파일을 PDF 파일로 전환한 것 이외에는 유의미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9) 이하 보고서에서 저장매체를 특정할 때 편의를 위하여 이 열의 이하와 같이 표시하기로 함
- 10)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지 못하도록 삭제하는 기술
- 11) 기본적으로 정상파일은 이미지 내부에서 손상되지 않은 파일을 의미하며 유실파일은 이미지 내부에서 손상된 파일을 의미함. 다만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는 윈도우즈 휴지통 내부 파일도 삭제된 파일이라는 취지에서 모두 유실파일로 분류함
- 12) 임종현 SSD 암호파일(유실) 80개는 모두 깨진 파일로 보임(79개의 파일은 암호창 자체가 깨져 있고, 나머지 1개의 파일은 암호창은 열리고 그 암호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위 79개의 파일이 깨져 있음에 비추어 암호를 확보하여 문서를 열더라도 그 내용이 깨져 있을 가능성이 높음). 임종현 SSD 암호파일(정상) 206개 중에서 10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파일로 아예 열어보지 않았고, 22개는 암호가 달라 열어보지 못하였으나 파일명으로 보았을 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파일은 없었으며, 암호로 열어본 나머지 174개 중에서 46개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문서로 추출되었음(a등급 17, b등급 7, c등급 22)
- 13) S3에는 문서 파일이 총 2,363개가 존재하거나 복구되었는데, 그 외에도 문서로서의 속성을 잃어버린 파일 500여개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는 무의미하므로 복구에서 제외됨.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는 S3가 128GB 용량으로 당시 40% 정도 사용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음
- 14) 추가조사보고서에서는 정상파일 약 460개, 유실파일 약 300개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휴지통을 거쳐 삭제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파일(80여개)들을 정상파일로 분류함에 따른 것이고,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파일을 유실파일로 분류하였음. 이는 분류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총합은 동일함(추가조사 보고서 약 760개, 이 보고서 757개). (표 9 '입●●● HDD 암호파일 개수 차이에 관한 의견서')

(2) 암호는 풀렸으나 다른 이유로 열어보지는 못한 파일

- 360~376(17개), 754, 755, 757(3개) 이상 합계 20개는 "pdf 파일, 문서를 열려면 네트워크 연결 필요"라는 이유로 열리지 않음
- 결국 암호를 풀어서 열어본 파일은 355개임

(3) 등급분류(355개)

- A등급 : 18개(cf. 임●● HDD 검색어 추출 파일 포함할 경우 56개)
- B등급 : 10개(cf. 임●● HDD 검색어 추출 파일 포함할 경우 31개)
- C등급 : 6개 (cf. 임●● HDD 검색어 추출 파일 포함할 경우 26개<sup>15)</sup>)
- E등급 : 321개

**다) 암호1로 열어보지 못한 파일 382개(2차 회의 당시)**

- 그중 205개는 정상파일, 177개는 유실파일(그중 146개는 파일명 식별 곤란)
- 205개의 정상파일 중에는 파일 이름, 원본 파일 경로로 보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파일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311] 파일 뿐이었음
- 177개의 유실파일 중 31개는 휴지통을 통하여 삭제된 파일로 파일명을 확인할 수 있었음
- 146개의 유실파일은 파일명이 식별 곤란한 것으로 그중 141개는 카빙<sup>16)</sup>으로 복구된 것이어서 경로, 생성 및 수정시각도 확인할 수 없으나, 나머지 5개는 카빙으로 복구된 것이 아니라 휴지통을 통하여 삭제된 파일로 경로와 생성 및 수정시각 확인이 가능하였으나(2016. 4. ~ 11. 생성된 파일) 이를 열어볼 수는 없었음
- 2차 회의 이후 추가로 확보한 암호3 내지 암호5로 29개의 파일을 더 열 수 있었는데, 위 정상파일 205개 중 1개, 파일명이 식별 가능한 유실파일 31개

---

15) 암호파일과 검색어 추출 파일은 분류 기준이 다르므로 중복 가능함

16) 파일 목록에 없지만 컴퓨터 상에 남아있는 실제 파일을 복구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에서 사용하는 복구방법임.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 복구 도구에서 파일명을 임의로 기록하며 시간 정보는 복구된 시점으로 기록됨(표 9의 '파일명이 깨진 유실 파일의 특성에 관한 의견서')

중 12개, 파일명 식별 곤란한 유실파일 146개 중 16개가 암호로 열렸음(암호3으로 16개, 암호4로 4개, 암호5로 9개)

- 추가로 열린 29개의 암호파일들 중 25개는 모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이 없어 E등급으로 추가 분류되었고, 나머지 4개는 종전에 D등급으로 분류되었다가 열린 2개(표 3의 순번 2, 3), 파일명이 식별 곤란하였으나 열어본 결과 표 3의 순번 2, 3과 같은 파일 2개임
- 파일명이 식별 곤란한 유실파일 146개 중 추가암호로 열린 16개를 제외한 나머지 130개 중에서 카빙으로 복구하여 경로, 생성 및 수정시각도 확인할 수 없는 파일이 125개(카빙 아닌 방법으로 복구한 위 5개 제외)인데, 그중 67개는 2005년 한글버전으로 작성되었고, 58개는 2010년 한글버전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67개는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에 의하면 2010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고, 나머지 58개는 일응 조사 대상 기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 그러나 암호가 달라 결국 열어볼 수는 없었으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정상 파일 204개 중에는 원본 파일 경로로 보았을 때 작성시기가 2010년 이전으로 보이는 13개, 2011년 이전으로 보이는 134개, 2012년 이전으로 보이는 1개, 2013년 이전으로 보이는 46개 합계 194개가 2013년 이전에 작성된 파일들로 보이고, 임●● 심의관의 진술에 의하면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옛날 암호를 알지 못하여 문서를 열지 못한 적이 제법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다른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58개의 문서들은 대부분 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 작성되었거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성이 없을 개연성이 높음
- 물적 조사 과정에서 파일명으로 보았을 때, 유의미한 파일은 다음의 3개로 2차 회의에서 D등급으로 보고되었으나 인적 조사 과정에서 2개는 김☆☆ 심의관의 개인 암호로 풀렸고, 하나는 암호를 풀지 못했으나 정◆◆ 심의관이 작성한 다른 비암호파일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정됨<sup>17)</sup>

---

17) 이와는 별도로, 임●● HDD 검색어 추출 중 파일 중 D등급이 3개 있음(파일이 깨져 있으나 의혹이 뚜렷해 보이는 파일)

[표 3]

순번	파일명	정상/유실	암호	검토
1 [311]	(141203) 전교조 집행정지 취소+1.hwp	정상	해결 ×	S1의 (141203)전교조효력정지.hwp[151/암호 없음/정◆◆ 심의관 작성]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됨(다만, 작성자인 정◆◆도 암호를 기억하지 못함)
2 [312]	(170124)인사모 관련 검토+1 [박■■■].hwp	유실	해결 ○ (김☆☆ 심의관 개인 암호로 풀림)	이규진 USB의 'o(170124)인사모관련검토(7).hwp'와 동일 파일임 *문서 제목 : 인사모 관련 대응 방안 검토
3 [313]	기획조정실 심의관 후보군.hwp	유실	해결 ○ (김☆☆ 심의관 개인 암호로 풀림)	후보군에 이탄희 판사 포함

바.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의혹 관련(1~7) 파일 요약

[표 5]

번호	의혹	비고	
		a	b
1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a	9
		b	1
		c	2
		d	1
2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a	30
		b	4
		c	7
3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등	a	16
		b	13
		c	1

[표 4]

순번	등급	파일명	비고
1	D	우리법 연구회 회원 분석	파일이 깨져 있어 열어볼 수 있는 방법 없음
2	D	박○○ 판사의 향후 동향	파일이 깨져 있어 열어볼 수 있는 방법 없음
3	D	박○○ 판사의 향후 동향[1]	파일이 깨져 있어 열어볼 수 있는 방법 없음



4	이관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a	15
		b	0
		c	0
		d	0
5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차○○/송♣♣/박○○ 등)	a	11
		b	5
		c	2
		d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a	17
		b	6
		c	4
7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	a	7
		b	6
		c	4
합계		164	

#### 사. 추가 의혹 관련(8~10) 파일 요약

[표 6]

번호	의혹	비고	
		a	4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b	0
		c	1
		z	3
		a	0
9	긴급조치 손해배상 1심 판결 관련 징계 검토	b	3
		c	1
		z	1
		a	64 <sup>18)</sup>
10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b	70
		c	97 <sup>19)</sup>
		d	2
		합계	246

18) 36개는 김☆☆ 심의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기록한 체크리스트임

아. 조사대상 디스크 주제별 주요 파일(총 410개) (A등급 173개 / B등급 108개 / C등급 119개 / D등급 6개 / Z등급 4개)

[표 7]

저장매체	암호파일		검색어 추출 (hwp)	등급	파일수	비고
	정상	유실				
S1	정상	206	6,037	a	75	
				b	73	
	유실	80		c	77	
				d	0	
				z	3	
S2	정상	4	598	a	0	
				b	2	
	유실	6		c	1	
				d	0	
S3	정상	0	499	a	37	1개를 제외하고 체크리스트
				b	0	
	유실	1		c	11	
				d	0	
H4	정상	376	22,110	a	56	
				b	31	
				c	26	
	유실	381		d	6	
				z	1	
S4	정상	56	6,389	a	5	
				b	2	
	유실	2		c	4	
				d	0	
합계	0		35,633		410	디스크 상호간 중복 파일 다수 있음

19) 9개는 김☆☆ 심의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기록한 체크리스트임

## 자. 시점복원디스크와 파일의 대량 삭제

### 가) 시점복원

- 파일의 삭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3개의 저장매체에 대하여 시점 복원을 시도해 보았으나 대량 삭제시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 특별한 점은 없었음

### 나) H4(복원 시점 : 2015. 3. 3.)

- 2017. 2. 20. 06:52 ~ 08:00까지 24,500여 개 삭제. 김☆☆ 심의관이 인사이드 당 일 새벽에 인수인계할 파일을 추려낸 후 남은 대량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보임
- 이때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주목했던 아래 암호파일 5개도 모두 삭제됨(이상 표 9 '임○○ 하드디스크 파일삭제기록에 대한 수정 감정서')

[표 8]

파일명	발견 매체	S1(정상파일)에 존부 및 휴지통에의 존부	작성자	비고
(170124)인사모 관련 검토+1[박■■■].hwp(최종 수정: 2017. 2. 6.) [312]	H4/유실(휴지통)	×	박■■■	암호5로 해결
(160408)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최종수정: 2016. 4. 11.) [278]	H4/유실(휴지통)	×	박■■■	암호1로 해결
(160315)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임종헌 수정].hwp(최종 수정: 2016. 4. 15.) [280, 283]	H4/유실(휴지통) <sup>20)</sup>	×	임종헌 (최종 수정) 추정	암호1로 해결
(160310)국제인권법 대응방안 검토 (인사).hwp(최종 수정: 2016. 4. 15.) [281, 282]	H4/유실(휴지통) <sup>21)</sup>	×	인사총괄 심의관실	암호1로 해결
(160407)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최종수정: 2017. 1. 12.) [284]	H4/유실(휴지통) S4/시점복원	○ (160407)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인사모관련추가)[박■■■].hwp <sup>22)</sup> <유실/휴지통/암호> (최종 수정: 2016. 4. 17.)	박■■■	암호1로 해결

20) H4 내에 두 개의 경로에 존재하나 모두 휴지통으로 삭제됨(휴지통을 통하지 않고 삭제되었다가 카빙으로 복구된 파일 4개가 더 존재함[286, 288, 289, 292])

21) H4 내에 두 개의 경로에 존재하나 모두 휴지통으로 삭제됨(휴지통을 통하지 않고 삭제되었다가 카빙으로 복구된 파일 4개가 더 존재함[286, 288, 289, 292])

다) S4(복원 시점 : 2017. 10. 24.)

- 특이점 : (160407)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H4, 284]이 여기에 존재하였음.  
이 파일은 S4에서는 유실파일로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는 유실파일의 복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과거 시점으로 복원했을 때 확인되는 파일이 일반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함

라) S3(복원 시점 : 2017. 2. 16.)

- 특이점 없음

차. 감정서 등

[표 9]

순번	종류	문서명	작성자
1	의견서1	임○○ HDD 암호파일 개수 차이에 관한 의견서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2	의견서2	파일명이 깨진 유실 파일의 특성에 관한 의견서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3	감정서1	임○○ 하드디스크 파일삭제기록에 대한 수정 감정서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4	감정서2	김☆☆ 하드디스크 사용기록에 대한 수정 감정서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5	감정서3	임종현 하드디스크 사용기록에 대한 감정서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6	감정서4	하드디스크 감정서	(주) 명정보기술
7	내역서	데이터 복구 작업 내역서	(주) 명정보기술

로 복구된 파일 2개가 더 존재함[287, 291])

22) H4에는 존재하지 않음

## 카. 첨부자료

1. 특별조사단 인적 조사 목록
2. 조사결과 주요파일 종합(410개)
3. H4 암호파일 분석표(757개)

## II. 의혹별 조사결과

### <조사의 개요와 평가의 기준>

2018. 1. 24. 발표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특별조사단은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추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컴퓨터 파일에 기초하여 파일의 작성자, 지시자, 논의자, 피보고자와 그 문서의 내용이 실제 실행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 행위, 그 작성 지시 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이 남용행위를 저지른 개인에게 있는 것인지, 함께 논의를 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한 자들에게도 있는 것인지, 나아가 법원행정처 자체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평가 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이후 인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서 더욱 공정한 접근을 할 수 있기 위한 임시적인 기준이며,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해당 절차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 1.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 가.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행정처가 평소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의 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였으나 주로 인권법연구회 회장인 이규진 상임위원을 통하여 인사모 활동의 부작용 등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외에 인사, 예산 기타 부분에서 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음 ➡ 행정처의 평소 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활동에 대한 부당한 견제나 압박 의혹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규진 상임위원이 회장으로 있는 동안 인권법연구회 운영진과 인사모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행정처의 우려를 전달하고 비협조시의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행정처나 인권법연구회의 입장과 우려를 서로에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 노력한 측면이 있고, 인사모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규진 상임위원이 재임기간 동안 부당한 견제나 압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나.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1) 관련 문서 등 주요 내용

##### 가) 2015년 인사모 활동내역 파악 보고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5. 7. 초순경 박병대 당시 행정처 처장(이하 '박병대 처장')으로부터 인사모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인사모 모임에 참석한 일부 회원들로부터 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으로 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한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박병대 처장 등에게 보고함
- 보고서에는 1, 2차 예비모임, 1차 정식모임의 참석자와 논의 주제, 논의 결과 등 코트넷 게시판에 일반적으로 게시되는 내용을 넘어서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특히 특정 주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한 법관과 발언 내용)과 취지, 모임 분위기와 토론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에 합류한 법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간략하게 기재되었음

- 2015. 7. 21. '사법제도소모임 관련 보고'(1차 예비모임 관련)
- 2015. 8. 11. '사법제도소모임 관련 보고'(2차 예비모임 관련)
- 2015. 9. 14. '인권과 사법제도소모임 관련'(1차 정식모임 관련)

#### 나) 2016년 인사모 활동내역 파악 보고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6년에도 인사모 모임 중 민감한 주제를 다룬 논의와 그 결과 등을 파악하였는데, 특히 2016. 4. 8. 제7회 모임(논제 :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의 향방) 이후 그 모임에 참석한 법관을 통해 강경발언을 한 법관의 발언내용 및 특정 법관의 역할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였고, 그 무렵 인사모 카톡방이 개설되어 있음도 확인하여 보고함

#### 2) 검토 요지

- 이규진 상임위원이 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던 2015년과 2016년에 인사모 회원들의 모임 및 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행정처에 보고한 문건들이 확인되었음. 위 문건들에는 인사모 모임에서 특정 주제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과 결과를 포함해서, 발언자들의 구체적인 발언내용과 취지, 모임의 분위기와 토론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 상황 등에 이르기까지 모임에 참여한 법관들의 동향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
- 이규진 상임위원의 인사모 활동 내역 보고는 인사모 설립 당시인 2015. 7.경의 예비 모임부터 2015. 9.경의 정식 첫 모임 때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2016년에는 정기적인 보고가 거의 없다가 2016. 말경에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무렵부터 다시 행정처에서 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이 긴밀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한 동향 파악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임

#### 다.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 1) 2015년 인사모 동향 파악 및 개입 관련

##### 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의 방향'<sup>23)</sup>[1]

23) 문서의 명칭은 오타 여부, 띄어쓰기 준수 여부 등과 상관없이 문서 첫머리에 기재된 바에 따름. 문건 자체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인사모 2차 예비모임이 개최된 이후인 2015. 8. 19. 당시 인권법연구회 회장 이던 이규진 상임위원이 작성하여 박병대 처장 등에게 보고함
- 이 문건은 박병대 처장이 2015. 7. 초순경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인사모를 챙겨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데에 따른 것임

(2) 주요 내용

- 2015. 8. 11. 개최된 인사모 2차 예비모임에서의 '상고법원 관련 끝장 토론' 경과 등을 정리하여 보고함
- 인권법연구회의 성격을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기재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발기인 대표 김명수 부장판사 등 초기의 주요 회원들이 1988년 이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이 깊음
- 우리법연구회가 2009년 말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어 활동이 어렵게 되자 2011년 새로이 창설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사모의 활동이 윤리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sup>24)</sup> 상고법원 관련하여 '대법원과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 우려'를 인사모의 문제점으로 검토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인사모는 상고법원 관련 논의 내용을 커뮤니티 내 게시판에 올릴 예정인바, 찬반양론의 각 논거를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고법원에 대한 찬반 거수 결과까지 게시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외부에서 볼 때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인사모의 외부 의견표명 문제는 현재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나, 나중을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연구회 회장 등이 제어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공론화하여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의 '연구회 자체 대책'을 제시함

에서 굵은 선 처리나 밑줄 표시가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표시하고 사람 이름은 비실명 처리함. 이하 같음

24) 이규진 상임위원은 인사모에 대한 윤리감사관실의 2015. 7. 8.자 검토자료('커뮤니티 소모임 개설에 대한 검토')를 참조하여 이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함(이 보고서 36쪽 참조)

- 대법원 차원의 대책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하였음

<p>■ 제1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경 案 : 대법원이 인사모의 논제 선택 및 활동 내용의 문제점을 내세워 공식적으로 연구회의 성격 및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에만 충실할 것을 연구회에 정식으로 요구</li> </ul> <p>■ 제2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충 案 : 대법원이 연구회에 대하여 인사모의 성격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커뮤니티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몰라도 커뮤니티 내에서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li> </ul> <p>■ 제3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화 案 : 상고법원이라는 최대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연구회 및 인사모 소모임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외부로의 의견 표출이나 과격한 활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이를 통제하고, 상고법원 현안이 마무리된 이후에 정식으로 문제를 해결</li> </ul>
--

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2, 3, 180]<sup>25)</sup>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인사모 2차 예비모임에서의 '상고법원 관련 끝장 토론' 결과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된 이후인 2015. 8. 24. 박■■■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이 문건은 [1] 문건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임종헌 차장이 지시한 데에 따른 것임

(2) 주요 내용

- 인사모의 문제점을 ① 논의 주제가 연구회와 관련이 없어 관련 예규에 위배되는 점, ② 인적 구성 및 정치적 성향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와 유사하여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원 내·외부에 표출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소장 판사들에게 대법원의 정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점으로 분석함
-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검토하면서 단계적 접근방식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

25) 내용이 동일한 문서이거나 업데이트 한 문서를 의미하고, 이하 한번 기재한 이후에는 맨 앞선 숫자만 기재함

- ② 우선 공론화하지 아니한 채 인사모 주도세력 상대 원만한 설득 시도
- ③ 인사모 적정성 여부 공론화는 행정처가 아닌 연구회장이 주도할 필요
  - 행정처가 주도하여 문제 제기할 경우 '행정처가 연구회 활동에 개입한다'는 반발 가능성
- ④ 규정상 연구회 평가기구인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 활용 가능
  - 관련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의 의견 개진이므로, 심정적 거부감이 덜 할 것임
- ⑤ 활동 중단 유도 과정에서 해당 법관들 절차적으로 배려할 필요
- ⑥ 자발적 활동 중단 불응시 제재 방안 및 반발 무마 방안
  - 인사모 활동 부분에 대하여만 예산 및 전산자원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일반 회원과 분리 전략 필요
  - 인사모에서 연구회 명칭 계속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규 및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으로 징계 가능 ⇨ 단 실제 징계에는 신중할 필요

2) 2016년 인사모 동향 파악 및 개입 관련

가) '우리법연구회'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 검토'[307, 310]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심의관이 2016. 3. 7.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2016.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우리법연구회 주최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에 대하여 정치 편향성 논란을 우려한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

(2) 주요 내용

-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안에서 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발표자만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된 세미나라는 정부, 여당 및 보수 성향 언론의 공격이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분석함
- 상정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하면서, 그중 '회의실 사용 불허안'의 장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함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에 대한 시그널
  -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법연구회의 前, 現 회원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상황
  -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아무런 제지 없이 법원 청사 내 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사실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를 통하여 우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검토함

#### 나)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16, 334, 335]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심의관이 2016. 3. 8.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임종헌 차장이 김☆☆ 심의관에게 개편방안의 구체적인 세부목차까지 알려주면서 기조실에서 작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김☆☆ 심의관이 지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간략하게 초안 형식으로 정리하고 관련 주제별로 기조실 심의관들 사이의 역할분담 내역 정도만 추가 기재한 문건이 [16, 334] 문건임
- 임종헌 차장이 [16] 문건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김☆☆ 심의관에게 다시 송부한 문건이 [335] 문건임

##### (2) 주요 내용

-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및 인권법연구회의 과잉 성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기재함
- 전문분야연구회 현황 점검이 필요하고, 구조 개편에 필요한 구체적 검토과제로 ① 연구회 중복 가입 기준 점검 등 연구회 활동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강화, ② 기존 연구회 중 법관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떨어지는 연구회 폐쇄, ③ 합리적 예산지원 방안, ④ 젊은 법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회 발굴 및 신설, ⑤ 롤모델 역할을 할 존경받고 신망받는 선배 법관들의 각 연구회별 배치 추진 등을 제시함
- [16] 문건에서는 기조실 심의관 4명의 주제별 역할분담을 아래와 같이 명시함

##### ● 역할분담

- 구조 개편 방안 ⇨ 박■■■, 조◆◆◆, 임◎◎
- 취합, 정리, 보고서 초안 작성 ⇨ 박■■■
- 수정 ⇨ 김☆☆

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281, 282, 287, 291]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2016. 3. 10.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였고, 임종헌 차장은 이 문건을 기조실에 전달하면서 아래 마)항 문건 작성에 참조하라고 함
- 이 문건은 임종헌 차장이 2016. 3. 초순경 김●●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한 데 따른 것임
- 이 문건 파일은 H4에서 발견되었으나, S1에서는 발견되지 않음
- 이 문건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제목만으로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나 암호를 알지 못하여 열지 못한 5개의 파일'로 보고한 문건 중 하나임<sup>26)</sup>

(2) 주요 내용

- 인권법연구회의 개요 란에서 연구회의 핵심 그룹을 추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재함

● 간부진,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창립멤버 등이 핵심그룹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 (첨부2 참조) ☞ 주로 우리법연구회 회원 또는 운동권 경력 있는 법관들임

- 문건 말미에서 첨부한 핵심 회원 명단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그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음

**1.간부진**  
2016년 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구성(2016. 3. 1. 기준)  
운영위원 6명, 간사 1명, 총무(팀장) 5명, 분과위원회(소모임) 위원장 8명, 편집위원회 위원장 1명, 지역위원회(지역분과위) 위원장 2명  
명단에는 이름과 사법연수원 기수, 연구회에서의 직책 및 업무 등이 기재됨

**2.인사모 회원**  
가. 최초 주도 : 13명  
명단에는 이름과 사법연수원 기수, 소속 법원, 비고란에 우리법연구회 회원 여부, 인사모에서의 직책, 사회적 이목을 끈 판결의 선고 전력, 논란이 되는 글의 코트넷 게시 전력 등이

26) '(1603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인사).hwp'

기재됨

나. 후속 가입 : 3명

명단에는 이름과 사법연수원 기수, 소속 법원, 비고란에 징계 전력, 사회적 이목을 끈 판결의 선고 전력, 논란이 되는 글의 코트넷 게시 전력 등이 기재됨

특히 이○○ 판사의 경우에는 "사법행정 책임자들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는 2015년 평정 기재"가 비고란에 기재됨

다. 동조그룹(추정) : 3명

### 3.창립회원 : 31명

명단에 이름과 사법연수원 기수, 가입일, 소속 법원, 비고란에 우리법연구회 회원 여부가 기재됨

- 인사모에서 국제인권법과 무관한 사법행정 논의들을 진행하고,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핵심 그룹이 김명수 당시 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하거나 측면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면서 이를 전문분야를 이탈하여 사법행정에 개입하는 문제 상황으로 분석함
- 핵심 회원이 연구회를 주도하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인사모 폐지 및 관리를 통한 인권법연구회 정상화'를 제시함
-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시작 전에 인사모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인사모 폐지 방안은 연구회 전반 및 분과 재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시함
- 인사모 폐지 방안으로, ① 자발적 해산, ② 운영위원회 결의로 폐지, ③ 총회 결의로 폐지, ④ 행정처 폐지권고 및 회장 수용의 안을 상정하면서, 그중 ①안을 시도하되, 불응 시 ②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검토함
- 인권법연구회 정상화 방안으로, ① 연구회 내 주요 의사결정 라인 확보, ② '우리법연구회 후신'이라는 부정적 성격 부여를 통해 비핵심 그룹의 이탈을 유도, ③ 연구회 주제 및 구조의 간소화, ④ 경쟁 연구회의 활성화, ⑤ 중복가입 금지 원칙 적용 강화를 포함한 법원 커뮤니티 재편, ⑥ 핵심 회원에 불이익 부과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그중 '핵심 회원에 불이익 부과'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 바. 핵심 회원에 불이익 부과

- ▣ 인사모 등 핵심 회원에게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 ⇨ 법관 사회 내 거리낌 증가
- ▣ 다만 간접적 방법이고 우수자원 활용에 제약 초래 ⇨ 개별적이고 신중한 접근 필요

라)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280, 283, 286, 288, 289, 292]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임종헌 차장이 2016. 3. 15. 직접 작성하였거나, 타인이 작성한 초안을 임종헌 차장이 검토하여 최종 수정하였을 것으로 보임<sup>27)</sup>
- 임종헌 차장은 이 문건을 김☆☆ 심의관에게 전달하면서 아래 마)항 문건 작성에 참조하라고 함
- 이 문건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제목만으로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나 암호를 알지 못하여 열지 못한 5개의 파일'로 보고한 문건 중 하나임<sup>28)</sup>

(2) 주요 내용

- [281] 문건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인사모 폐지 방안' 및 '인권법연구회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역효과 내지 부작용 등을 평가하여 분석함
- 인권법연구회 회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인사모의 자진해산을 권유함이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인 방안이고, 연구회 정상화 또한 회장과 간사를 통한 자체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검토함
- 문건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사모'의 자발적 해산 방안<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회장이 인사모의 자진해산을 권유함이 가장 적절</li><li>● 운영위원회 결의, 총회 결의 등에 의한 폐지는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희박</li><li>● 행정처 차원의 인사모 폐지권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함이 타당</li><li>● '언론 활용을 통한 거리낌 증대로 말미암은 폐지'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 규정' 방안은 역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li></ul></li><li>■ 연구회 정상화 방안<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회장과 간사를 통한 정상화 시도가 가장 바람직함</li><li>● 현실적으로 예산의 차등지급 등의 방안은 정상화를 유도하기 어려움</li><li>● 코트넷 커뮤니티를 통해 연구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공식적 문제 제기도 별다른 호응을</li></ul></li></ul>
--

27) 작성 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문서의 파일명이 '(160315)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임종헌 수정].hwp'인데, 임종헌 차장의 평소 파일 저장 방식에 따를 경우 위 '[임종헌 수정]'은 임종헌 차장이 최종 수정했음을 의미함

28) '(160315)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임종헌수정].hwp'

얻지 못할 가능성 있음

▣ 장기적 대응방안

- 문제의 핵심은 '전문분야연구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회 임원진 구성에 대하여 행정처가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임
- 최소한 행정처에서 커뮤니티 활동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신설 필요
- 중복가입 금지원칙 적용 강화, 연구회별 회원수 제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마)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181]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심의관이 기조실 심의관들과 협업으로 2016. 3. 25. 작성하여 임중헌 차장에게 보고함
- 이 문건은 임중헌 차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앞서 본 [335] 문건의 완성분에 해당함
- 문건상 작성명의자는 '법원행정처'이고, 표지에 5쪽에 걸친 요약본이 붙어 있음

(2) 주요 내용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문분야연구회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가.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점검 필요

나. 특정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 ▣ 외형적 급속·과잉 성장에서 드러난 전문분야연구회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필요
- ▣ 연구회 주도 세력의 편향성 및 영향력 증대로 인한 위험성 관련 대응책 마련 필요
-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핵심세력이 법관사회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활동하는 정황이 감지됨

다. 종합적 대책 검토 필요

- ▣ ①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시스템 점검 및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의 대응방안은 물론 ② 특정 연구회 과잉 성장 관련 위험 방지를 위한 정무적 대응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인권법연구회 회원 급증 원인을 분석하면서 ① "인권"이라는 전문분야 주제의 보편·포괄성 및 상징성, ② 우리법연구회 출신 다수의 창립멤버 등 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활동, ③ 회장 경선 등 자유롭고 개성있는 문화, ④ 자유로움



속 사조직적 특성 유지, ⑤ 연구회의 지역별 모임 시스템, 사조직적 특성 및 회장-운영위원-팀장-지역위 등으로 이루어진 운영진 구성 체계 등을 비롯한 운영방식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한 것으로 기재함

○ 전문분야연구회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①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
- ② 중복가입 금지 규정 形骸化
  - 중복 가입 현황
    - 인권법연구회가 중복가입 인원수도 가장 많고(227명), 중복가입자 비중도 가장 높음(53%)
    - ⇒ 시습 등 핵심세력에 의한 포섭활동으로 중복가입한 법관이 많은 것으로 해석됨
- ③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이하 생략)

○ 인권법연구회 활동 관련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① 허가받은 전문분야 이탈·무시
  -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의 논의 영역도 이탈하는 수준임
- ② '인사모'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 등에 조직적 개입 시도
  - 상고법원, 사법행정위원회, 판사회의 활성화,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하여 조직적 개입 시도
- ③ 일부 강경·핵심세력에 의한 연구회 및 사법부 전체 여론 호도
  - 우리법연구회의 내부결속 강화 시스템을 모방하여 일부 핵심세력을 중심으로 유대관계 형성

○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구조 개편 등 개선방안으로, ①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인사모'와 '이사야(다음 익명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다수 법관들의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커뮤니티 혹은 전문분야연구회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가칭 '사법국제화 연구회',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를 신설, ② 연구회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작업을 명분으로 실질적으로는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는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 시행, ③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 ④ 사법부 전체 차원에서 연구성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중복가입금지 규정의 엄정한 시행에 따른 불만 내지 부작용 완화 차원에서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방안 등을 제시함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에 대하여, 연구회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작업을 명분으로 실질적으로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

서,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장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상술하여 기재함

-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장점**
- ▶ ① [법관들 상대로 명분 있음]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경우 ① 중복가입금지규정의 규범력 회복, ②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③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법관들의 피해 방지 등의 명분 있음 ⇨ 규범 준수 및 편법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을 중시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
- ▶ ②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임]
  - 중복가입금지 해소방안의 경우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공지 및 시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나 저항 없음 ⇨ 그 시행방안에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음**
- ▶ ③ [‘인사모 해소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임]
  - 행정처가 ‘모든 연구회는 전문분야와 무관한 소모임 활동을 정리하라’는 식으로 정공법을 택할 경우 인사모를 표적으로 한 조치임이 쉽게 드러나고 강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 있음
  - 중복회원 해소방안은 다소 기술적인 커뮤니티 정비방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전정국장이 현행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회원 해소방안을 공지하면서 그 밖의 커뮤니티 관련 규정 역시 소개하고 이에 위반하는 활동을 자제하여 달라고 안내한다면 법관 사회 반발이나 인사모측의 반발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음**
- ▶ ④ **별다른 사전 준비 작업 없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즉시 시행할 수 있음**
  -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를 위하여 어느 정도 유예기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공지와 동시에 직권으로 정리할 것인지 여부 정도만 결정하면 됨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시행에 따라 인권법연구회에 미치는 위축 효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함

- 한명의 법관이 가입한 여러 연구회 중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복가입으로 탈퇴 처리할 경우, 연구회별 회원수 변동내역을 분석
- 인권법연구회(431명 → 204명)
- 도산법연구회(449 → 283명)
- 지적재산권법연구회(374 → 209명) (이하 생략)

○ 특정연구회 과잉 확장 관련 대응방안으로, ① 연구회 논의 주제를 허가받은 전문분야 범위로 제한, ② 핵심세력과 다수 법관 간 분리 방안 등을 제시함. 특히 ②항의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재함

- ① 인사모가 연구회의 설립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회장의 문제제기
- ② 회원 가운데 법원의 '주류 중 주류'로 인식될 수 있는 경력의 선배법관들 다수임 ⇨ 적절한 시기와 명분을 갖추어 탈퇴하도록 유도
- ③ 인권법연구회가 그 시스템 및 인적 구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사정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각될 경우 회원들의 상당한 동요가 있을 것임 ⇨ 구체적 방법론은 추가 검토 필요

○ 검토의견을 종합한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새로이 출범된 사법행정위원회의 활동을 고려하여 ① 사법행정위원회 종료 후 실시 방안과 ② 위원회 종료 전 조기 실시 방안을 두고 시기적·정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다만 사법행정위원회 종료 전 조기 실시방안을 전제로 인사모의 자연 소멸을 목표로 하는 대응방안의 로드맵을 아래와 같이 예시함

시기	방안 예시
4월 초	<p><b>전정국장 명의 공지</b></p> <p>'① 커뮤니티 활동 중 특별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활동에 대하여 특별 예산 지원 방안 도입 (본래 기초실장 명의 공지사항이나 한 번에 공지함이 효율적일 수 있음)</p> <p>②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 예정 (일반법관들 피해 명분)</p> <p>③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로 전환 (사법부 전체 역량 강화 등)</p> <p>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하면서 연구회 목적과 무관한 소모임 해소 당부'</p>
4월 중순	<p><b>국제인권법 회장의 문제제기</b></p> <p>'인사모의 경우 연구회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데, 이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함'</p>
4월 하순	<p>㉠<b>새로운 대안적 연구회</b>(ex. 엔터테인먼트법 연구회 및 사법국제화연구회) <b>발굴·신설</b> ⇨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이벤트 등 공지 및 활동 개시</p> <p>㉡<b>다른 기존 연구회 활동 활성화</b> (밴드 및 지역별 모임 등)</p>
5월 초순	<p>인사모 소모임이 <b>존치 입장을 고수할 경우</b>⇨ <b>고법부장 등 명망 있는 선배 법관들</b>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b>대거 탈퇴</b></p>
5월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 다수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인사모의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

**바)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12, 277, 285, 293, 294]**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심의관이 2016. 4. 7.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임종헌 차장이 [181] 문건을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과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으로 내용을 나누어 2개의 문건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임(전자가 본 문건이고, 후자가 아래 사)항 문건임)
- 작성명의자가 표지에는 '법원행정처', 본문에는 '기획조정실'로 표시되어 있으나 [181] 문건의 내용에서 일부 업데이트된 후속 문건이라는 점에서 작성명의자는 '법원행정처'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 '특정 연구회 과잉 성장 관련 정무적 대응방안은 별도 보고'라고 기재하면서 별도의 문건을 예정하고 있음<sup>29)</sup>
- [181] 문건 중에서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개선방안'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문건에서 예시한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로드맵이 제외된 것 외에는 관련 내용이 대동소이함

**사)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5, 182, 278, 284]**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위 [12] 문건과 같은 경위로 2016. 4. 7. 작성되어 박■■■ 심의관이 임종헌 차장에게 함께 보고함
-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종헌 차장이 [181] 문건의 내용을 분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고, 문건 상 작성명의자는 '법원행정처'로 기재되어 있음
- 위 문건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제목만으로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나 암호를 알지 못하여 열지 못한 5개의 파일'로 보고한 문건 중 2개에 해당<sup>30)</sup>

29) 별도 문건은 아래 사)항 문건을 의미함

30) '(160407)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 '(160408) 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를 의미하고, 2개 문건의 내용은 동일함

(2) 주요 내용

- [181] 문건 중 '특정 연구회 과잉 성장 관련 정무적 대응방안'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인사모 발족 경과, 인사모 활동 내역이 일부 추가된 것 외에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함
- [181] 문건에서 예시한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로드맵은 시행일자만 변경되어 그대로 첨부됨

아)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 논의 보고'[6]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인사모 7차 정식모임을 앞둔 2016. 4. 7. 이규진 상임위원이 작성하여 고영환 처장, 임종헌 차장 등에게 보고함

(2) 주요 내용

- 인사모 설립 경과 및 그간 모임 활동 내역을 기재함
- 이규진 상임위원이 2016. 4. 3. 인사모 신임 회장으로 예정되어 있던 이○○ 부장판사와 오찬 자리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보고함
- 인사모가 인권법연구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고, 인사모가 연구회 내에 잔존하는 경우 커뮤니티 관리 차원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추후 인사모에 대한 공식적 경고 방안,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관리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함

자) '미디어 분야 연구회 신설 추진 전략'[309]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심의관이 2016. 5. 31.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이 문건은 [181], [12] 문건에서 제시한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방안에 대한 후속 문건으로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

(2) 주요 내용

- 특정 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이슈를 독점하는 현행 연구회 판도에 단기간에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9월 이전에 '미디어 분야 연구회'가 설립 완료되도록 행정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법관 중에서 유력한 회장 및 회원 후보군을 분석하고 권유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구회 신설 추진 전략을 기재함
- 문건의 말미에 시기별 시행방안을 기재한 로드맵이 제시됨

## 라.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가) 대면조사

- 임종헌 차장
- 이민걸 당시 기획조정실장(이하 '이민걸 기초실장')
- 이규진 상임위원
- 김●● 당시 인사총괄심의관
- 김☆☆ 심의관
- 박■■■ 당시 기획조정심의관(이하 '박■■■ 심의관')
- 임◎◎ 심의관
- 노◆◆ 당시 인사제1심의관(이하 '노◆◆ 심의관')
- 방△△ 당시 인사제2심의관(이하 '방△△ 심의관')

### 나) 서면조사

- 심준보 당시 사법정책실장
- 홍승면 당시 사법지원실장
- 조◆◆ 당시 기획조정심의관
- 임◎◎ 심의관

### 다) 기타

- 고영한 대법관 방문청취

- 박병대 처장 서신
- 임종헌 차장 이메일(2018. 4. 30.자, 2018. 5. 8.자 및 2018. 5. 10.자)
- 인사총괄심의관실 회신(2018. 5. 14.자 및 2018. 5. 24.자)

#### 마.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 1) 2015년 인사모 동향 파악 및 개입 관련

###### 가) 특별조사단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 (1)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의 방향'[1]

- 박병대 처장은 인사모 출범 무렵인 2015. 7. 초순경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인사모가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모임이니 잘 챙겨보라'고 한 것 외에 '윤리감사관실의 검토도 거쳐보라'는 취지의 지시도 하였음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5. 7. 4.경 윤리감사관실에 인권법연구회의 인사모 개설에 대한 윤리규정 위반 여부의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윤리감사관실에서는 2015. 7. 8.경 '연구회 내 해당 소모임 개설만으로는 법관윤리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커뮤니티 소모임 개설에 관한 검토')를 작성하여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였음
- 인사모는 2015. 8. 11. 개최된 2차 예비모임에서 '상고법원 관련 끝장 토론'을 하였는데, 토론 결과 상고법원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가 다수였고 다만 코트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할지 여부를 두고서는 추후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음
- 커뮤니티 게시 여부를 두고 인권법연구회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8. 19. 이규진 상임위원은 이 문건을 작성하여 박병대 처장 등에게 보고하였음
- 당시 행정처에서는 인사모가 상고법원 등 대법원 정책에 반대되는 입장을 외부에 표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차장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이하 '실장회의')에서 그와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으며, 이규진 상임위원은 그 논의 내용을 참조하여 이 문건을 작성하였음

- 처장이 주재하는 차장·실장들 간의 주례회의(이하 '처장 주례회의')에서도 이 문건을 회의자료로 하여 관련 논의를 하였는데, 논의 결과 인사모와 관련하여 인권법연구회 회장인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일단 맡겨 놓고 지켜보기로 의견이 모아졌음
- 이규진 상임위원은 인사모 1차 정식모임을 앞둔 2015. 9. 9.경 인사모 일부 주요 회원들과 가진 모임에서 '연구회 내 소모임에서 인사 등 사법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인사모의 커뮤니티 외 활동을 권유한다'는 취지로 행정처의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었음

(2)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2]

- 임종헌 차장은 인사모가 상고법원 관련 끝장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을 우려하여 [1] 문건을 박■■■ 심의관에게 전달하면서 인사모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박■■■ 심의관은 2015. 8. 24. 이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였음
- 인사모 2차 예비모임에서의 '상고법원 관련 끝장 토론' 결과가 2015. 8. 19.경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되었는데, "다수가 현행 상고제도를 유지하면서 심리불속행제도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현재의 상고법원 논의에 회의적이었다"는 것이 게시 내용이었음
- 한편 당시는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의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시기였음. 2015. 5.경 개최된 우리법연구회의 상고법원 관련 정기세미나를 계기로 행정처에서는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을 포착하고,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외부로 표출될 경우 입법 추진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으며, 기초실에서는 2015. 7. 6.경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이라는 [35, 346] 문건을 작성하였음
- 당시 법원 외부의 상황 살펴보면, 상고법원 설립 입법안<sup>31)</sup>이 의원들간 의견차이로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2015. 8.경 민일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하여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오찬 회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행정처에서는 이를 돌파구로 삼아 19대

31) 홍일표 의원 등 168명의 국회의원이 2014. 12.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국회 만료 전에 상고법원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모든 역량을 상고법원 도입 추진에 집중하던 시기였음

## 나) 검토

- 인사모 설립 당시인 2015년 7월경 예비 모임부터 2015년 9월경 정식 첫 모임 까지 집중적으로 인사모 동향 파악이 이루어졌다는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더 나아가 2015년 8월경부터 이미 행정처에서는 처장 주례회의, 실장회의에서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시작한 문건들이 확인되었음
- 당시는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하여 법원 내·외부적으로 중차대한 시기여서 상고법원 관련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내부 의견이 외부에 표출되는 것을 처장을 비롯한 사법행정의 주요 담당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이었고, 그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인사모에 대한 견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당시 행정처가 인권법연구회 회장인 이규진 상임위원을 통하여 연구회 운영진과 인사모 회원들에게 인사모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정도에만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이 실행되었다고 볼 만한 상황이나 자료를 찾을 수 없었음. 관련 문건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개괄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이었고, 제재 방안 등이 실행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규진 상임위원을 통하여 설득하는 방식으로 인사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행정처 방침이 잠정적으로 정해졌고, 당시 행정처로서는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 도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던 시기여서 내부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더 이상 실행에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 2016년 인사모 동향 파악 및 개입 관련

### 가) 특별조사단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 (1)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281]

- 임종헌 차장은 2016년 3월 초순경 김●●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다른 한편 같은 달 8.경 기조실에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음<sup>32)</sup>

-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하여, 임종현 차장은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법관 정기인사 업무가 완료되어 시간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평소 보고서 작성 실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한 노◆◆ 심의관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지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인사총괄심의관 및 노◆◆ 심의관은 '당시 임종현 차장이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기인사 이후여서 인사총괄심의관실이 여유있다고 생각하여 지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함
-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는 이규진 상임위원한테서 인권법연구회 회원명단 등을, 김☆☆ 심의관한테서 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 관련 종전 검토자료 등을 전달받았고, 이들 자료와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보유하고 있던 평정서 등 인사자료 일부를 활용하여 이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김●● 인사총괄심의관은 2016. 3. 10. 임종현 차장에게 보고하였음
- 인사모는 개설 이후 정기모임에서 재판업무 관련 주제들에 관하여 토론을 하다가 2016. 1. 말경부터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그 토론 결과를 코트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그간 인사모의 정기모임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제1회 : 2015. 9. 14. '바람직한 합의부의 조직과 운용'(재판장과 배석의 관계) 중 업무적 측면
- 제2회 : 2015. 10. 19. '바람직한 합의부의 조직과 운용'(재판장과 배석의 관계) 중 생활적 측면
- 제3회 : 2015. 11. 13. '사실심 충실화' 1차 토론회
- 제4회 : 2015. 12. 11. '사실심 충실화' 2차 토론회
- 제5회 : 2016. 1. 29.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
- 제6회 : 2016. 2. 26. '사법행정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 제7회 : 2016. 4. 8.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의 향방'

-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는, 당시 인사모 회원들이 전문분야를 이탈하여 대법관 제청 등 사법행정에 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관련 글을 코트넷에 게시하는 등 인사모의 조직적 움직임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는 상황 인식 하에

32) 전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 [281] 문건, 후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 [181] 문건임. 임종현 차장은 당시 동일 주제에 관하여 여러 실·국 혹은 심의관들에게 중복하여 검토를 지시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고 함

이 문건을 작성하였음

-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이 문건을 보고한 이후 임종헌 차장한테서 추가로 지시 받은 사항이나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자들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함
- 이 문건에 기재된 '인사모 등 핵심 회원에게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와 관련하여, 위 문건을 작성한 인사제1, 2심의관은 '소관업무가 아님에도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인사부서에서 작성하는 이상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일부라도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정적으로 검토하면서도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위 문건을 검토하여 보고한 인사총괄심의관 또한 '실행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함

(2)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181]

- 박■■■ 심의관은 기초실 심의관들과 협업으로 2016. 3. 25.경 이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 이민걸 기초실장에게 보고하였음
- 이 문건 작성시 앞서 본 [281], [280] 2개 문건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고, 보고서 양이 29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편이며, 통상 기초실 문건과 달리 문건의 작성명의자도 '법원행정처'로 되어 있어 상당한 무게를 두고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이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행정처는, 당시 인권법연구회 회원이 급증한 데에는 중복가입 금지 규정의 형해화로 인해 인권법연구회가 편법적 중복가입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는 한편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인사모 등 연구회 핵심세력의 적극적 확장 활동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인사모 등이 이를 활용하여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 등에 조직적 개입을 시도하면서 법관 사회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음. 임종헌 차장도 '당시 인사모가 행정처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인사모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 또한 당시 인사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구조 개편이라

는 큰 틀에서 접근하면서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음. 임종헌 차장도 '이 문건의 작성 배경과 관련하여, 당시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과 인사모 견제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으나, 인사모에 대한 견제에 좀 더 주안점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 특히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이하 '중복가입 해소 조치')는, ① 연구회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작업(중복가입자 정리)을 명분으로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이 가능한 방안이어서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를 숨길 수 있는 점, ②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복가입으로 보고 탈퇴 처리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회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등 인권법연구회에 미치는 위축 효과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혀 인사모에 대한 대응방안 중 최우선 고려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음

○ 예시로서 언급되기는 하였지만 행정처에서 '인사모의 자연 소멸'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이 문건에서가 처음임

○ 한편, 송○○ 판사는 2016. 2. 1.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방 게시판에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에서의 선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을 게시하였고, 기초실은 2016. 2. 24.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음

(3)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12],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5]

○ 임종헌 차장이 [181] 문건을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과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2개 문건<sup>33)</sup>으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지시한 배경에 대하여, 박■■■ 심의관은 '아무래도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은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주제여서 문건의 내용을 분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임종헌 차장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함

(4) '미디어 분야 연구회 신설 추진 전략'[309]

33)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이 [12] 문건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이 [5] 문건임

- 박■■■ 심의관은 미디어 분야 연구회 신설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참여 후보 법관들의 호응도가 낮고 행정처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여 더 이상 진행 되지 못하였음

## 나) 검토

- (1) [281] 문건에서 언급된 '인사상 불이익 부과' 방안이 실행 및 검토되었는지 여부
  - [281] 문건에서 인권법연구회 정상화 방안으로, 개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기는 하였지만 '인사모 등 핵심 회원에게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바, 특별조사단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그러한 인사상 불이익 방안이 어느 정도 검토되고 실행되었는지 면밀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의혹을 불러일으킨 [281] 문건의 관련 내용을 보면, 인사상 불이익 방안에 대하여 '간접적 방법이고 우수자원 활용에 제약을 초래하므로 개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문건의 작성자는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방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81] 문건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역효과 등을 평가한 [280] 문건에서는 '인사'와 관계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방안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분석하여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반면에, '인사상 불이익 부과'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업무는 기본적으로 기초실 소관업무에 속하고,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281] 문건은 기초실에 전달되어 기초실의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인 [181] 문건 작성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는데, 심층 종합보고서의 성격을 갖는 [181] 문건에서도 인사상 불이익 부과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후에도 기초실의 인사모 내지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는 계속 이어져 종전 논의를 종합한 결정판인 [5], [12], [312] 문건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데, 위 문건 어디에도 인사상 불이익 부과 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281] 문건을 작성한 당시 인사제1, 2심의관은, '문건의 성격상 인사총괄심의

관실 소관업무가 아님에도 임종현 차장이 지시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인사 부서에서 작성하는 문건인 이상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일부라도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비록 부정적으로 검토하였지만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문건을 검토하여 보고한 인사총괄심의관 또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음

- [281] 문건의 내용 대부분은 인사와 관련성이 없는 것들이어서 '인사상 불이익 부과' 부분을 제외하면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문서로서의 특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련 내용 또한 문건 말미에 4줄 정도 기재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 문건이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심의관들의 진술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음
-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하여 선발성 인사 등에서 불이익 부과하는 방안은 그 실행 여부를 떠나 논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부에 알려지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명백함. 임종현 차장은 그러한 성격의 문건을 인사총괄심의관실로부터 보고받은 후 해당 파일을 기초실 일부 심의관들에게도 전달하여 [181] 문건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였음<sup>34)</sup>
- 특별조사단은 2018. 5. 11. 인사총괄심의관실에 [281] 문건의 명단에서 언급된 판사들에 대한 2016. 3.경부터 2017. 하반기까지의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선발 등 인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자료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그 확인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2018. 5. 14. 해당 기간에 있었던 2017년 2월 정기인사, 2016년 9월 및 2017년 9월 해외연수 선발 관련한 내용 등을 회신받았음
- 인사와 관계된 부분의 적절성 여부를 사후에 검증하는 데에는 그 업무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인사총괄심의관실의 회신자료 및 당시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심의관들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종합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음

34) [281] 문건 파일이 H4에서는 발견되었으나 S1에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통상 임종현 차장은 보고받은 문서를 저장매체인 S1에 저장하였는데, S1은 임종현 차장이 사용하던 SSD로서 저장매체의 특성상 복구 불능이 생길 가능성이 HDD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임종현 차장이 이 문건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먼저 해당 기간의 이른바 '선발성 인사'에 관한 인사총괄심의관실의 주요 회신 내역은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에 대한 선발성 인사에서 통상적인 인사원칙 및 기준 등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선발성 인사인 '고법부장' 보임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기부터 24기까지 13명의 고법부장 신규보임(22기 1명, 23기 5명, 24기 7명)</li> <li>-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 중 해당 기수는 5명(22기 1명, 23기 2명, 24기 2명), 일부는 2017년 2월 정기인사 당시 퇴직하거나 고법부장 보임 불희망</li> </ul> </li> <li>● <b>선발성 인사인 '고법판사' 보임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가능 기수는 29기부터 31기까지 14명의 고법판사 신규보임(29기 4명, 30기 8명, 31기 2명)</li> <li>-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 중 해당 기수는 19명(29기 4명, 30기 7명, 31기 8명), 일부는 고법판사 미지원</li> </ul> </li> <li>● <b>선발성 인사인 지법부장급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 심의관' 보임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장 재판연구관 7명(29기 3명, 30기 4명), 부장 심의관 3명(27기 1명, 29기 1명, 30기 1명) 신규보임</li> <li>-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 중 해당 기수는 14명(27기 3명, 29기 4명, 30기 7명), 일부는 퇴직하거나 해당 보직 미지원</li> </ul> </li> <li>● <b>선발성 인사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 심의관' 보임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판연구관 21명(32기 1명, 33기 20명) 및 심의관 17명(32기 1명, 33기 2명, 34기 7명, 35기 7명) 신규보임</li> <li>-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 중 해당 기수는 13명(32기 5명, 33기 3명, 34기 2명, 35기 3명), 일부는 퇴직하거나 해당 보직 미지원, 34기 이하는 당시 재판연구관 보임대상 기수 아님</li> <li>-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 중 일부는 당시 재판연구관 또는 심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거나, 2017년 정기인사에서 재판연구관 또는 심의관으로 보임</li> </ul> </li> </ul>
--

- 특별조사단은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추가로 ①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 중 해당 선발성 인사에 지원하여 선발되거나 선발되지 않은 판사의 수, ② 선발되지 않은 이유를 포함한 선발성 인사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하여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은 인사상 기밀에 속하거나 개인의 인사상 정보가 드러날 위험성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 외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에 대한 선발성 인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었음

- 해당 기간의 '전보 인사', '해외연수 선발'<sup>35)</sup>에 관한 인사총괄심의관실의 주요

회신 내역은 '2017년 정기인사, 2016년 9월 및 2017년 9월 해외연수 선발 과정에서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에 대하여 통상적인 인사원칙 및 기준 등에 따라 인사 내지 선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전보 인사 관련
  -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 중 2017년 정기인사에서 31명 전보
- 해외연수 선발 관련
  - 2016년 9월 일반해외연수 지원가능 기수 36~39기, 중견연수는 32~35기
  - 2017년 9월 일반해외연수 지원가능 기수 37~40기, 중견연수는 32~36기
  -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 중 일부는 퇴직하거나 해외연수 경험자이거나 미지원
  - 명단에 기재된 판사들 중 일부는 2016년 9월 및 2017년 9월 공고된 해외연수에 선발됨

- 특별조사단은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추가로 ①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 중 해외연수 선발에 지원하여 선발되거나 선발되지 않은 판사의 수, ② 선발되지 않은 이유를 포함한 해외연수 선발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하여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은 인사상 기밀에 속하거나 개인의 인사상 정보가 드러날 위험성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 외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 내지 해외연수 선발에서 통상의 인사기준을 벗어나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었음
- 이 문건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안을 소극적인 취지로 검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인사상 불이익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후속 문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처장 주례회의이나 실장회의에서 논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고영한 대법관도 이

35) 참고로 2018. 5. 9. 코트넷에 공지된 '해외연수 선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어학성적이 기준점수[영어 : 학위과정 iBT TOEFL 92점, 연구과정 iBT TOEFL 90점, 제2외국어 : FLEX 60점(100점 만점 환산점수), 단 어학시험 성적분포 등에 따라 조정가능성 있음]를 넘는 신청자 중에서 선발함
- 구체적인 배점기준은 어학성적, 소속법원장 의견, 근무평정을 비슷한 비율로 고려하되, 선발대상자들의 분포에 따른 표준점수제를 채택하고 있고, 해외연수의 필요성, 연수계획의 충실성도 위 평가요소들보다 비중은 낮으나 배점 요소임(단, 어학성적, 소속법원장 의견, 근무평정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평가항목	어학성적	법원장 의견	근무평정	연수필요성	연수계획 충실성
배점	표준점수(평균 5, 표준편차 1)			1.2	0.8

- 연수대상자 선정은 해외연수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힘(고영한 대법관 방문청취)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문건 상 '인사상 불이익 부과' 방안은 여러 가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단서 하에 짧게 언급되었을 뿐이고, 실현가능성이 낮고 부작용의 우려도 커서 더 이상의 검토나 실행에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편 임종헌 차장이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데에는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부과 방안을 검토하라는 숨은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함. 이에 대하여 임종헌 차장은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법관 정기인사 업무가 완료되어 시간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검토를 지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심의관들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그 의도 부분을 추단할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었음

(2) 특별조사단 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밝혀진 점

- 행정처에서는 기초실을 주축으로 하여 인사모에 대한 대응방안을 2015. 8.경 부터 이미 논의하기 시작하여 2016년 3월경 무렵에는 기초실 심의관들뿐만 아니라 인사총괄심의관실까지 동원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음
- 당시 행정처에서는 인사모라는 특정 연구회의 소모임을 견제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연구회의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끝에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문건 말미에 예시이기는 하지만 '인사모의 자연 소멸'을 목표로 한 로드맵까지 기재하였음<sup>36)</sup>
- 특히 '중복가입 해소 조치'의 경우에는 2016. 3. 25.경 이미 인사모에 대한 대응방안 중에서 최우선 방안으로 고려되어 세부 시행방안까지 검토를 마쳤으나, 그 무렵 출범한 사법행정위원회의 활동 및 법관 사회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정책결정을 위한 더 이상의 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계기가 되어 이때 검토된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결과적으로 2017년 2월경 시행되게 됨
- 당시 행정처에서는 인사모가 2015년 상고법원 도입 논의나 특정 대법관 제청

36) 이에 대하여 문건을 작성한 박■■■ 심의관은, 임종헌 차장에 대한 보고서의 경우는 실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문서 말미에 항상 시행을 전제로 한 로드맵을 첨부하는 것이 당시 업무 관행이었다고 진술함

과 관련하여 반대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다가, 2016년에도 계속하여 사법행정위원회, 판사회의 등 사법제도와 사법행정 전반에 관하여 개입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었음. 특히 인사모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인권법연구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심각한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는 인사모를 시스템 및 인적 구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인권법연구회 내지 인사모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인 [181], [12], [5] 문건에 기초하여 처장 주례회의, 실장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임종현 차장은 '이 정도 사안이면 처장 주례회의에서 논의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이민걸 기초실장은 '당시 관련 논의를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심도 깊은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에, 고영한 대법관, 이규진 상임위원, 심준보 사법정책실장, 홍승면 사법지원실장은 모두 '당시 회의에서 그러한 문건을 본 적이 없고 관련 논의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 임종현 차장, 이민걸 기초실장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그 밖에 당시 처장 주례회의나 실장회의에서 위 문건들에 기초하여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었음

### 3) 소결론

- 인사모 설립 당시인 2015년 7월경 1차 예비모임부터 2015년 9월경 1차 정식 모임까지 집중적으로 인사모 동향 파악이 이루어졌고, 2016년에는 정기적인 보고가 거의 없다가 2016. 말경에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무렵부터 다시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이 긴밀하게 논의되었다는 것이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임
- 여기에서 더 나아가 2015년 8월경부터 이미 박병대 처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6년 3월경 무렵에는 임종현 차장의 주도 하에 기초실 등에서는 전문분야연구회의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특히 '중복가입 해소 조치'의 경우에는 이때 이미 최우선 방안으로 고려되어 세부 시행방안까지 검토를

마쳤음이 특별조사단 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됨

- 이와 같이 특정연구회의 소모임이 사법제도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종헌 차장 등 사법행정 담당자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견제 내지 압박을 하기 위한 대응방안까지 마련한 것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함
- 한편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에서 개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기는 하였지만 '인사모 등 핵심 회원에게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바, 문건 작성의 초기 단계에서 일종의 아이디어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인사총괄심의관실 심의관들이 공정성에 현저한 의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것은 부적절한 행위임. 아울러 임종헌 차장이 인사총괄심의관실에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방안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자체도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라고 판단됨

## 2. 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 가.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1) 관련 문서 등 주요 내용

- 2016년 12월경부터 인사모가 주축이 되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법관인사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본격 논의함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6. 12. 24.경 외부와 연계된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인권법연구회 주요 회원들을 통하여 공동학술대회 발제자와 논의주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함
- 당시는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의 정치 일정, 국회 개헌특위에서의 대법원장 권한 축소와 관련된 개헌 논의 등으로 인해 행정처로서는 인권법연구회가 외부와 연계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법관인사 등 사법제도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음
- 이후 이규진 상임위원은 인사모 대표, 이○○ 부장판사 등에게 외부기관과의 법관인사제도 논의는 부적절하고 연구회 내 소모임이 전체 연구회의 이름으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서 학술대회의 부적절성을 지적함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7. 1. 3.경 실장회의에서 인권법연구회의 공동학술대회 추진경과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략한 1차 메모를 작성하여 보고함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7. 1. 11. 1차 메모의 내용을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1)'이라는 문건으로 정리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① 제1안

운영위원회 및 팀장들의 의사결정체 구성원을 회장이 일대일로 접촉함으로써 '인사모 공동세미나' 안이 부결되도록 한 후 법관들이 개인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 ■ ② 제2안

위 의사결정체 구성원들을 설득하여,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명칭으로 공동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

추가 방안

#### ■ 연기案

세미나 개최를 7~8월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는 방안

■ 자체 행사 案

커뮤니티 “자체” 세미나로 행사를 축소하고, 이미 섭외한 교수 2명은 발표에만 참여시키는 방안

- 이규진 상임위원은 그 후 알게 된 연구회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다시 정리하여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2)'라는 문건을 작성하였고,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인사모 측 제안 案 (대표 이○○ 부장판사 제안)

-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전원의 공동학술행사 개최 대신 「연구회 자체 학술행사」로 개최하는 안
- 주제도 “각국의 법관인사제도 연구”와 같이 학술적으로 네이밍함
- 장소도 중앙법원 동관 4층 중회의실로 하고, 교수들은 발표자로만 참여시킴

■ 위 案의 문제점

- 인사모는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법관사회 전반에 개최사실을 알리려 할 것으로 예상됨

■ 결론

→ 인사모 측 案을 제시하면서 코트넷 공지를 묵인하는 방안

② ‘대책’ 아닌 ‘조치’를 논의하고 적극 대처하는 방안

- 커뮤니티 전체 차원으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7. 1. 13. 처장 주례회의에서 위 2건의 대책문건을 가지고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을 보고함
- 2017. 1. 15. 인권법연구회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 개최 여부와 시기에 대하여 논의 끝에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고, 같은 달 23. 개최된 온라인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 시기를 2017. 3. 25.로 최종 결정함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7. 1. 24. 연구회 기획팀장인 이탄희 판사에게 전화하여, 이탄희 판사 등 연구회 회원 2명의 심의관 추천을 거론하고 행정처에서 같이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탄희 판사가 연구회에서 발언권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 '공동학술대회가 법원 내부행사로 치러지도록 하고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함
- 2017. 2. 13.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원칙에 따라

법관들에게 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를 정리하고, 만약 정한 기한 후에도 중복가입되어 있을 경우 뒤에 가입한 연구회는 탈퇴하는 것으로 전산상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전산정보국장 명의의 코트넷 공지가 있었음

- 2017. 2. 20. 임종현 차장이 '전문분야연구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코트넷에 공지하여 결국 위 조치의 시행이 유보됨

## 2) 검토 요지

- 이규진 상임위원이 2017년에는 연구회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회가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실장회의 및 처장 주례회의에서 조치가 필요함을 보고하고 연구회 관계자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공동학술대회의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은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로 보임
- 이규진 상임위원이 보고하여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된 공동학술대회 관련 대책들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행정처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비록 기존 예규에 따른 집행이기는 하나 그 시기와 방법, 근거, 내용과 시행 과정 등에서 시급성과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해소조치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인권법연구회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제재로 볼 만한 의심스런 정황이 많으므로, 이는 행정처가 예규의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인권법연구회 또는 공동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제재조치로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나.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1) 관련 문서 등 주요 내용

-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문건으로 이규진 상임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제출한 '대책문건 (1), (2)' 외에 기초실 심의관 등이 작성한 5개의 추가 대책문건이 확인되었음

- 인사모 관련 고려사항
- 2017. 1. 12자 인사모 대응방안
- 2017. 1. 16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경과

● 2017. 1. 23.경 인사모 대응 방안

● 2017. 1. 말경 인사모 관련 대응 방안

- 위 추가 대책문건들은 임종현 차장의 지시로 주로 기조실 심의관들에 의해 회의자료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위 문건들은 실장회의와 처장 주례회의 등에 제시되어 위 문건들에 기재된 대응방안이 논의되었음

## 2) 검토 요지

- 행정처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초기 대응은 주로 공동학술대회를 연구회 내부 행사로 축소시키고 외부 발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었으나,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로는 기조실에서 마련한 '공동학술대회 대응을 중심으로 한 단기 방안'과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를 중심으로 한 중기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중기 대응 방안 중 일부인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실행되었음. 그 이외의 중기 대응 방안으로 인권법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 다른 전문분야연구회 등의 인권 관련 대형행사 개최로 인사모를 고립시키거나 견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사법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 활동을 제한하고 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한 것 또한 방안의 실현 여부를 떠나 합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 가)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181]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심의관이 2016. 3. 25. 작성하여 임종현 차장에게 보고함

##### (2) 주요 내용<sup>37)</sup>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에 대하여, 연구회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작업(중

37) 이 보고서 29~32쪽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내용은 기재를 생략하고, 다만 '중복가입 해소 조치'와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함

복가입자 정리)을 명분으로 실질적으로는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복가입으로 탈퇴 처리할 경우 인권법연구회 회원 수의 감소폭(431명→ 204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함

- 특히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장점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이 보고서 31쪽 참조

#### 나)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312]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의 개최일자가 최종적으로 의결된 다음날인 2017. 1. 24. 박■■■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 등에게 보고함
- 이 문건은 임종헌 차장이 위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기별 구체적 대응방안이 담긴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임
- 이 문건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제목만으로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나 암호를 알지 못하여 열지 못한 5개의 파일'로 보고한 문건 중 하나이나, 추가조사위원회 보고서 11~13쪽의 '2017. 1. 말경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과 내용이 동일함

##### (2) 주요 내용<sup>38)</sup>

- 공동학술대회 대응 중심의 '단기 방안'과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 방안 중심의 '중기 방안'이 기재됨
- 인사모 해소 방안으로서 '중복가입 해소 요구'는 규범 준수 요구라는 명분이 충분하고, 중복가입자 일제 해소시 인권법연구회 회원 50%가 넘는 200명 이상이 급감하여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현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기재함
- 중복가입 해소 요구 방안의 장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 形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임

- 특히 중복가입금지 해소 요구는 다소 기술적인 개선 사항이므로,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 공지로 충분 ⇨ 그 공지의 기회에 목적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 자제 권유도 함께

38) 추가조사위원회 보고서 11~13쪽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자세한 기재는 생략하고 '중복가입 해소 조치'와 관련된 부분만 언급하기로 함



-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정책결정 사항이라기 보다는 기존 규정 준수 및 집행 관련 문제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그 시행에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를 표적으로 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음
- 인사모측의 반발 명분도 크지 않음

○ 말미에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 로드맵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시기	예시
1월 하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법 회장 등이 회원 상대 공식 문제제기</li> <li>'인사제도 외부학술행사는 국제인권법의 전문분야 연구범위와 무관함에도 연구회 공식 행사로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으로서 부당하고, 인권법연구회 명의를 아니라 인사모 명의로 행사 개최 가능한데, 이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함'</li> <li>-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지지 의사 밝힐 우군 필요함</li> </ul>
2월 초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인 일반 법관들이 인사모 의견에 동조할 경우 ⇨ 연구 주제 한정하는 방안 관련 협의</li> <li>-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주제로 심도 깊은 세미나 개최</li> <li>- 사법부 예산 관련 논의도 상정 가능</li> </ul>
2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하 협의 불발시) 회장등 사퇴 및 탈퇴</li> <li>- 선배 법관들 회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차원에서 동반 탈퇴</li> <li>- 법관들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방안 인사모의 활동에 심리적 거리감 발생</li> </ul>
인사 이동 후 3월 초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정국장 명의 전문분야커뮤니티 운영 관련 안내 말씀 공지</li> <li>- 중복가입 금지 규정 형해화로 선량한 법관들이 피해받고 있으므로, 모든 커뮤니티 및 회원들은 3월 중순까지 자율적으로 해소해주시기 바람</li> <li>- 커뮤니티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해주시기 바람</li> <li>- 중복가입 금지로 인한 학술정보 접근 제한 해소 등을 위하여 커뮤니티의 모든 게시글은 커뮤니티 회원이 아닌 법관에게도 공개됨</li> <li>◆ 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사법정책연구원 등의 인권 관련 대형 행사 검토 및 준비 착수</li> </ul>
3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반 회원들 동요 및 탈퇴</li> <li>- 선배법관들 대거 탈퇴 및 중복가입 금지 해소 조치 등의 영향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꺼리는 분위기 형성</li> </ul>

3월 하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관 인사제도 관련 연세대 법전원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li> <li>- 인사모 등 강성 세력 중심 개최, 고립화 분위기 조성</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li> <li>- 인사모에 대한 자연스러운 활동 중지 여론 조성</li> <li>◆ 대안적 인권 대형 행사</li> <li>- 인권 관련 법관들의 관심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닌 다른 연구회 등으로 이동</li> </ul>

##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가) 대면조사

- 임종헌 차장
- 이민걸 기초실장
- 이규진 상임위원
- 김☆☆ 심의관
- 박■■■ 심의관
- 임●●● 심의관

### 나) 서면조사

- 심준보 사법정책실장
- 홍승면 사법지원실장
- 이진만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조◆◆ 심의관
- 임●●● 심의관

### 다) 기타

- 고영한 대법관 방문청취
- 임종헌 차장 이메일(2018. 4. 30.자, 2018. 5. 8.자 및 2018. 5. 10.자)

###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가) 특별조사단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 (1) 전문분야연구회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종전 논의

- 2012년 1월경 기조실에서는 전문분야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연구회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만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문분야연구회 운영을 개선하기로 하는 논의를 하였으나 시행하지는 않았음
- 이와 같은 논의는 이후 시행된 중복가입 해소 조치와 전문분야연구회 운영방식의 방향성 측면에서 배치됨

##### (2) 당시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시행된 이유나 배경

- 2016년 3월경 행정처에서는 인사모라는 특정 연구회의 소모임을 견제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연구회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하였고, 그중에서 명분이나 실리 측면에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마련하였음. 다만 그 무렵 출범한 사법행정위원회의 활동 및 법관 사회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을 보류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음
- 행정처는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제가 대두되었던 2016년 12월 말경 당시 인권법연구회 회장이던 이규진 상임위원을 통하여 행사 개최의 부적절성을 경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였음
- 2017. 1. 23.경 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의결함에 따라 행정처에서는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견제조치를 강구하게 되었고, 실장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7. 2. 10. 처장 주례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 과정에서 부장회의와 같이 일선 법관의 정서를 상대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sup>39)</sup>

39) 고영한 대법관, 임종현 차장, 이민걸 기조실장, 이규진 상임위원은 모두 '중복가입 해소 조치 시행에 앞서 부장회의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는 취지로 진술함

### (3) 전산정보국장 명의의 코트넷 공지 관련

- [181] 문건의 내용에 의하면, 기조실에서 2016. 3. 25.경 중복가입자 해소 조치를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함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미 검토한 바 있음

수백명 가입법관의 연구회 활동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방안 등의 경우 그 성격상 행정처장 또는 차장의 공지가 필요할 수 있는데, 중복가입금지 해소방안은 커뮤니티 관리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공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음

- 위와 같은 종전 검토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2017. 2. 13.경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코트넷에 공지하게 된 것임
- 임종헌 차장도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공지하는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실장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함

### (4) 중복가입 해소 조치의 시행 방식 관련

- 행정처에서 2016. 3. 25.경 인사모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검토하면서 그 시행에 따른 연구회별 회원수 변동내역을 분석한 바 있음
- 한명의 법관이 가입한 여러 연구회 중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복가입으로 보고 탈퇴 처리할 경우, 가장 늦게 신설된 인권법연구회 회원 수의 감소폭(431명 → 204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나) 소결론

- 행정처가 2016년 말경에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제로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하다가, 이후 학술대회 개최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17. 2. 13. 인사모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당초 논의된 대응방안 중 하나인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실행하였다는 것이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임
-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임종헌 차장이 기조실 등을 통하여 2016년 3월경부터 이미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 중 우선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한 문건들이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음

- 특히 위 문건들에 의하면,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 중복가입 연구회에서 탈퇴 처리하는 방식에 의할 경우 전문분야연구회 중에서 가장 늦게 설립된 인권법연구회의 회원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게 되는 점,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공지하는 방안이 특정 연구회의 소모임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든지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제재조치라는 행정처의 의도를 숨길 수 있어 법관 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2016년 3월경 이미 면밀한 검토를 마쳤는바,<sup>40)</sup> 행정처가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서도 인권법연구회에 가장 큰 위축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정무적 판단 하에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중복가입 해소 조치와 관련하여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의 준수를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 예산 중복집행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 등 당시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들고 있는 주장들은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대외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본 조사위원회, 추가조사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하였음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었음
- 더불어 임종헌 차장은 기초실 등을 통하여 2016년 3월경부터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 내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검토하였고, 결과적으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계기로 2017년 2월경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시행되었는바, 이는 법관들의 학술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이와 관련하여 당시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
-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형법상 직권남용죄<sup>41)</sup>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는 ①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임종헌 차장의 사법행정권의 범위에 속하고, 관련 예규(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

40) 이러한 점이 배경으로 작용하여 평심의관, 부장심의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41)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 내지 와해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견해, ② 관련 예규를 오랜 기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예규가 사문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처장 주례회의를 통하여 예규에 따른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회원들에게 일정 기간 선택권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직권남용 혹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특별조사단 내에서는 ①항에 해당한다는 견해, ②항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모두 있었으나 특별조사단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적극적 조치로 나아가기에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었음

###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등

####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1) 관련 문서

##### 가)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229, 325]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심의관이 2016. 2. 24.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함
- 송○○ 판사는 2016. 2. 1.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방 게시판에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에서의 선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을 게시하였음
- 송○○ 판사의 건의문 게시 이후 ① 김♣♣ 부장판사가 2016. 2. 15. 법률신문에 송○○ 판사의 주장을 소개하는 내용의 '판사와 사법행정'이라는 칼럼을 기고하였고, ② 2016. 2. 23. 경향신문에 송○○ 판사의 주장을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③ 인사모가 2016. 2. 26.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함

##### (2) 주요 내용

- 핵심 그룹은 주로 우리법연구회 전, 현 회원이고, 주변 그룹은 주로 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명단을 작성함

<p>▶핵심 그룹</p> <p>[우리법] 이○○, 김○○, 정○○, 이○○, 유○○, 김○○ 부장판사, 박○○, 박○○, 송○○, 홍◇◇◇, 이○○ 판사</p> <p>[인권법] 김○○ 부장판사</p> <p>▶주변 그룹</p> <p>[우리법] 이○○ 판사</p> <p>[인권법] 이○○, 이○○, 신○○, 이○○, 문○○, 진○○, 류○○, 홍○○ 판사</p>
--

-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행정처의 대응 방안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현재 핵심 그룹은 ① 코트넷에 건의문 등 게시, ② 언론보도, ③ 토론회 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 중
-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으로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의의가 크게 반감될 우려 존재 ⇨ **치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통해 소수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이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음

나)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327, 402, 328<sup>42)</sup>, 326]<sup>43)</sup>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심의관이 2016. 3. 28.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다른 심의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보고함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검토할 필요성, 후보자 추천 기준, 후보자 명단 등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가 각 고등법원별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핵심 그룹이 사법행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폄하하고 있으므로, 사법행정위원회 추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고등법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사법행정위원회가 실제 구성되면, **핵심 그룹은 위원 위촉 결과를 두고 다시 문제제기를 할 것임**
- 각 고등법원장이 이른바 '왕당파'로 불리는 **법관(예: 행정처 심의관, 기획법관, 공보관, 수석부 배석판사, 해외 유학 선발 경력 등을 보유한 법관) 위주로 위원 추천할 경우** ⇨ **핵심 그룹에게 공격 기회** 제공하는 셈
  - ① **사법행정위원회의 출범 의의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② 핵심 그룹의 공격으로 위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
- **아래와 같은 법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고등법원장에게 정보 제공함으로써 핵심 그룹의 악의적 폄하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필요** 있음
  - →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가 있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
  - ② **법관 사회에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법관**
  - ③ **정치적 색깔이 없으면서도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법관**

42) [327], [402] 문건은 본문과 후보자 추천 명단이 함께 있고, [328] 문건은 본문만, [326] 문건은 후보자 추천 명단만 존재함. [328] 문건을 일부 수정한 것이 [185], [327], [402] 문건의 본문임

43) S1에서 같은 문서인 [185] 문건이 발견됨



- 후보자 추천 기준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핵심 그룹과 유대관계', '법관 사회의 상징성',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제시함
- 후보자 추천 명단과 관련하여,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법관을 1순위로, 1순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유력한 후보군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법관을 2순위로, 그 밖에 후보자 추천 기준 중 어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법관을 3순위로 분류하여 작성하였고, 후보자 추천 명단의 개별 후보자마다 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함
- 후보자 추천 명단에 포함된 후보자를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에 어떻게 나누어 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함

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331, 401, 352(작성 중 파일)]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심의관이 2016. 4. 4.경 작성함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함

(2) 주요 내용

- 고등법원장에게 [327] 문건의 후보자 추천 기준에 따른 법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3. 28.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 고등법원에 대한 지원

-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핵심 그룹의 악의적 폄하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고등법원장에게 아래와 같은 법관에 대한 정보 제공**
- →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가 있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  
(예)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노동법연구회 등 소속 법관
- ② 법관 사회에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법관
- ③ 정치적 색깔이 없으면서도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법관

▣ 고등법원장에게 추천한 법관

▶[법원문화] 윤○○, 문○○, 정○○ 등, [재판제도] 김○○, 최○○, 장○○ 등

- 재판제도발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함

▣ 문제점

- 여성 부장판사 없음
- 주류 법관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장판사 부족
  - [진보] 이○○, 장○○, 유○○
  - [일반] 구○○, 이○○, 조○○ → 구○○, 이○○ 부장판사가 强性이라는 평가

○ 개선 방안에 관하여 주류의 입장을 대변할 실력 있는 법관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음

2) 주류의 입장을 대변할 실력 있는 법관 확보

▣ 가능한 견해

- 고등법원장에게 부장판사급 위원 1명씩 추가 추천 요청
  - 교체 대상 후보군  
[재판제도] 조○○, 구○○, 이○○ 부장판사  
[법원문화] 최○○ 부장판사(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 추가 추천 후보군  
황○○, 호○○ 부장판사, 신○○ 고법판사 등

▣ 검토 의견 ⇨ 현상 유지

- 부장판사급 위원 추가 추천 요청을 할 경우 법원행정처가 고등법원장의 추천권 행사에 깊게 관여한다는 오해 발생 가능
-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의 경우 예민한 안건이 상대적으로 적음 ⇨ 부작용 발생 가능성 낮음

라)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sup>44)</sup>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6. 4. 8.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에서 작성함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의 문제로 향후 사법행정위원회 운영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운영계획 검토 시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사법행정위원회의 향후 진행 일정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44) S1에서 같은 문서인 [21], [22] 문건이 발견됨

- 사법행정위원회의 향후 진행 일정 중 통합실무지원단의 회의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음

**▣ 회의자료 작성에 충분한 시간 필요**

-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수렴 취합·정리 결과 철저 분석 ⇒ 실제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의견, 주장들을 정리하여 대비책 마련 필요 (리스크 최소화)
- 충분히 검토한 후 기존 연구자료 등을 참작하여 회의자료 작성

**▣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및 대응방안 검토 필요**

-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통해 실제 회의의 논의방향, 결론 등에 대한 예측(건의안의 수용가능성 등) 및 그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회의의 논의방향, 결론 등이 수용 불가능한 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정리하는 노력을 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

**2) 추가조사위원회의 검토 요지**

- 특정 연구회 회원인지, 특정 연구회 회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지, 정치적 성향 등을 기준으로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 등으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은 일정 집단의 법관 등을 특별히 취급하거나 배제의 요소로 이용할 여지가 있음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① 정치적 성향, ② 특정 성향의 다른 법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③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등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 행정처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각 고등법원장에게 후보자 추천 기준에 따른 법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각 고등법원장의 추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가) '송○○ 판사 건의문 검토'[19]**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심의관이 2016. 2. 2.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함
- 송○○ 판사가 2016. 2. 1.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포럼 게시판에 '법관의 사법 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을 게시하자 해당 건의문의 내용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이 문건 중 '송○○ 판사의 건의문 게시 경과' 부분에 송○○ 판사의 특징, 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음

▣ 송○○ 판사의 특징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리더**
- 인사모 등 각종 소모임을 결성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現 활동 방식**은 송○○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에서 구축한 활동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임

▣ 1. 29.(금)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

- 발표: 송○○ 판사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
- 참석: 사○○, 이○○, 정○○, 이○○ 부장판사, 김○○, 박○○, 홍前前, 이○○, 이○○, 김○○, 이○○, 신○○, 진○○, 류○○, 홍○○ 판사
- [밀줄 표시] 우리법연구회 前, 現 회원(이하 같음)

- 송○○ 판사의 건의문 중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의 2/3 또는 적어도 과반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법원행정처 확정안의 내용

- ① 법원행정처가 심급.권역.직급별 대표성 반영하여 권역별로 배정 ⇨ ② **권역별로 고등법원장이 위원 추천** ⇨ ③ 법원행정처장이 위원 위촉
- 각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 '추천', '선출' 등 다양한 구성방식을 적절하게 혼합
  - 오피니언 리더, 사법행정 관심 법관 포함

▣ 검토의견

- 논란 가능성이 높은 예민한 문제
- 건의사항(과반수 이상 판사회의 선출방식) VS 법원행정처 안(권역별 고등법원장 추천방식)

나)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329, 330, 332, 403, 333<sup>45)</sup>]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45) [333] 문건은 [329], [330], [332], [403] 문건에 일부 내용이 추가된 것임

- 2016. 4. 2.경 기초실 심의관들이 나누어 작성한 것을 김☆☆ 심의관이 취합함
-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앞서 본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327] 문건의 후보자 추천 명단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함

(2) 주요 내용

-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로 나누어 정리하였음
-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적색: 1순위 검토, 청색: 2순위 검토, 굵은 흑색: 3순위 검토, 얇은 흑색: 검토하지 않은 추천자<sup>46)</sup>'로 분류하였음

**다)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297, 298, 299, 301, 302, 303]**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6. 4. 4.경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기초실의 요청으로 작성하여 기초실에 전달함
-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하여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329]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사용하던 양식으로 새로 작성함

(2) 주요 내용

-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하여 소속, 기수, 생년, 직위, 출신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기재하고, 특기사항으로 기초실 추천군 포함 여부, 성향 등을 기재함.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327] 문건의 후보자 추천 명단에 비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이 문건 중 일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권○○  
 ▶국제인권법연구회 ☞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은 것일 뿐 성향이 강한 것은 아님  
 ▶국제거래법연구회 총무

46) 해당 문건에 기재된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임

- ▶ 해외시찰 5회 ✉ 사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음
- ▶ 업무수행이 합리적이고 균형감도 있음. 동료 법관들 및 직원들과 관계가 아주 원만함
- ▶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경청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평

- 조○○
- ▶ 해외연수 경력 없고, 주요 선발성 보직 거친 바 없음
  - ▶ 대법원 증거채부연구반 활동, 전국민사법관포럼 발표, 15' 춘천지법 근무 당시 대 언론기관 협력업무 담당 ⇨ **사법행정**에 **협조적**인 것으로 보임
  - ▶ 대인관계 원만하여 교제범위가 넓고, 소탈한 성격으로 동료 및 후배 판사들로부터 호평

- 송○○
- ▶ 영어실력 우수하여 **국제재판소, 국제기구**에 관심 많음
  - ▶ 당돌하고 예절감각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도 있음
  - ▶ 08' ○○○ 부장 배석 당시 과도한 스트레스로 업무지장 호소

- 박○○
- ▶ 재판진행에 대한 재야의 평가가 매우 우수함
  - ▶ **사법행정**에 **협조적·적극적**인 것으로 보임
  - ▶ 성실하고 밝고 명랑한 성품. 늘 웃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판사
  - ▶ 가사소년전문법관
  - ▶ 08'02 임용 이래 부산 시내에서만 근무

- 백○○
- ▶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술을 하지 않음(회식자리에서 잘 어울림)
  - ▶ 부드럽고 원만한 성품
  - ▶ **별다른 특색이 없는 평범한 판사**임

라) '사법행정위원회 안건제출 활성화 관련 보고'[20]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 간사인 임○○ 심의관이 2016. 4. 5.경 작성하여 임중헌 차장에게 보고함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특정 성향의 법관이 상당수 참여하여 향후 논의방향

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었다는 전제에서 기존에 마련한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할 것인지 검토함

(2) 주요 내용

○ 이 문건 중 검토 배경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p>■ 2016. 4. 1. 각 고등법원장의 위원 후보자 추천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특정 성향의 법관 상당수 참여</li><li>● 이에 반해 다수 법관의 의사를 대변할 위원은 소수</li><li>● ⇒ 특정 성향 법관이 논의를 주도할 우려</li></ul> <p>■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 저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특정 성향의 법관이 ① 무리한 안건 제출하면서 ② 논의 주도할 경우</li><li>● ⇒ 사법행정위원회의가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① 법관의 의견대립의 장 내지 ② 특정 성향 법관의 주장 발표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 존재</li></ul>
---

○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은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측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기존에 마련한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히면서, '코트넷 전용공간을 통한 안건 제안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안건 제출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프레임이 설정가능하다고 판단함

마) '우리법 연구회 회원 분석'[349]

○ H4의 휴지통에서 '우리법 연구회 회원 분석.hwp'이라는 파일을 복구하였으나, 파일명만 보이고 파일 내용은 깨져서 확인할 수 없었음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가) 대면 조사

- 임종헌 차장
- 이민걸 기초실장
- 김●● 당시 인사총괄심의관
- 김☆☆ 심의관
- 노◆◆ 심의관

○ 방△△ 심의관

#### 나) 서면 조사

○ 심⊗⊗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임●● 심의관

###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가) 특별조사단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 '송○○ 판사 건의문 검토'[19]

- 송○○ 판사는 2016. 2. 1.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포럼 게시판에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판사회에서의 선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을 게시하였는데, 이 문건에는 '2. 1. 자정 기준 댓글 1개, 조회수 121'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김☆☆ 심의관은 송○○ 판사가 건의문을 게시한 당일 검토를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김☆☆ 심의관은 송○○ 판사의 특징 관련 부분은 평소 송○○ 판사와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 알게 된 사실을 기재함
- 임종헌 차장은 이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추가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229]

- 문건에 특정 판사들을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핵심 그룹은 주로 우리법연구회 전, 현 회원이고, 주변 그룹은 주로 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 임종헌 차장은 '핵심 그룹', '주변 그룹'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명단을 관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추가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327]



- 김☆☆ 심의관은,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송○○ 판사의 위 건의문 등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개혁적인 성향의 위원들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 문건을 작성하였고, 후보자 추천 명단에 포함된 후보자를 어느 위원회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었다고 진술함
  - 김☆☆ 심의관은 우리법연구회, 노동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다른 심의관들에게 전달하며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자와 추천사유를 정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sup>47)</sup>
  - 임종헌 차장은 이 문건 중 후보자 추천 명단은 1회용 참고자료로서 그 전후에 별도로 다른 목적으로 관리하거나 악용한 사실이 없고, 각 고등법원장에게 후보자 추천 명단 자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329],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297]
- 기조실에서 추천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총괄심의관실에 검증을 요청하였음
  - 인사총괄심의관실은 기조실로부터 송부받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명단에 관하여 개별 위원들에 대한 평정 자료 등을 확인하고 특기사항 일부를 추가하여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사용하던 양식으로 새로 작성하여 다시 기조실에 송부하였음
  - 노◆◆ 심의관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은 처장에게 있으므로 본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위원 위촉에 관한 절차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나, 기조실에서 사법행정위원회에 관한 실무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기조실에 이 문서를 송부하였고, 이 문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인사상 기밀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함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331]
- 이 문건 중 '고등법원장에게 아래와 같은 법관에 대한 정보 제공', '고등법원장에게 추천한 법관'이라는 부분에 비추어, 고등법원장들이 사법행정위원회

47) 김☆☆ 심의관은 이 과정에서 '우리법 연구회 회원 분석'[349] 문건을 참조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함

위원 후보자 추천을 확정하기 전에 준비하였던 후보자 추천 명단의 일부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임

- 임종헌 차장은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요청이 왔는지, 고등법원장에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심축 역할을 할 만한 분들을 추천하기는 하였으나 후보자 추천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

○ '사법행정위원회 안건제출 활성화 관련 보고'[20]

-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은 예측가능성 저하를 우려하여 기존에 마련한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밝혔으나, 안건 제출기간 마지막 날에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모두에 20건 이상의 안건이 제출되었음

○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21]

-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장이던 심⊗⊗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2016. 4. 8.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함
- 이 문건 중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및 대응방안 검토' 부분에 관하여,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임종헌 차장, 심⊗⊗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임●● 심의관 모두 실제로 시행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

나) 종합 검토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각 고등법원장에게 후보자 추천 명단 자체가 제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 다만, 고등법원장들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확정하기 전에 명단에 있는 일부 후보자의 정보를 소속 고등법원장들에게 제공하였다고는 보임
- 사법행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하여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는 예상되나, 사법행정권자가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사법행정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한 목적을 의심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음
- 실제로 작성된 후보자 추천 명단에 기재된 성향, 다른 법관들에 대한 영향력,

특정 연구회와의 관계 등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고, 후보자 추천 명단에 필요 최소한의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후보자 추천 명단에 기재된 내용이 추후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처장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므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 검증 자체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법행정위원회 추천법관 검증'[297] 문건에서 사법행정예 협조적인 것을 인사 검증의 요소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가 기재된 명단이 작성되었다고 보임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명단을 작성하고 추천권자에게 일부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보임
- 행정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관하여 '위원 중 주류 법관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장판사 부족', '특정 성향의 법관 상당수 참여' 등을 이유로 사법행정위원회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었다는 전제에서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적절한 지침 제공',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 미시행' 등을 검토하였음
- 행정처의 위와 같은 검토 사항 중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적절한 지침 제공'이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확인되지 않았고 '안건제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다수의 안건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검토 사항은 사법행정위원회를 행정처의 의도대로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것으로서 이를 검토한 것만으로도 사법행정위원회의 일선 법관의 자발적 사법행정참여라는 당초 출범 취지에 위배되는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보임

#### 4.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1) 관련 문서 :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 보고'[344]

###### 가)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시▲▲ 심의관이 2015. 2. 14. 작성함
-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이하 '이사야')의 현황, 문제의 소지 있는 주요 게시글 및 댓글을 정리하고, 이사야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함

###### 나) 주요 내용

-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요 게시글 및 댓글로, 상고법원 설치, 원세훈 사건 선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법원 인사 등에 관한 게시글 및 댓글을 들고 있음
- 대처 방안으로 ① 카페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고, ②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설득 및 업포용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제시됨
- 이 문건 중 대처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나. 구체적 대처 방안

###### ▣ [자발적 조치] 카페 폐쇄 등 유도

(중략)

###### ● 2 회원으로 가장하여 카페 내 활동 중단에 대한 글 게시

- 현재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 암호 확보한 상태

(중략)

###### ● 3 운영자의 자진 카페 폐쇄 유도

(중략)

###### ▣ [강제적 조치]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에 따른 조치

(중략)

- 자발적인 카페 폐쇄 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 제7호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최후의 설득 및 업포용 카드로 활용

## 2) 추가조사위원회의 검토 요지

- 이사에 상고법원 설치 등 사법정책 현안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이 많이 게시된다는 이유로 카페 자진 폐쇄의 유도 방안까지 검토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이 합리적이거나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 가)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sup>48)</sup>[355, 356]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2015. 2. 15.경 임종현 기조실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정◆◆ 심의관을 통하여 보고함
- 이사에의 현황을 정리하고, 게시글의 유출·공개시 위험성이 크다는 전체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함

###### (2) 주요 내용

-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①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신중한 운영, 위험성 있는 글의 삭제 또는 실명화를 권유하는 방안, ②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③ 법관 전체에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 공지를 하는 방안, ④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등을 검토하였음

##### 나)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추가 검토'[186, 187, 188]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판사가 2015. 2. 15.경 작성한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355] 문건에 대하여 임종현 기조실장이 제3자에게 검토를 지시하여 2015. 2. 21.경 보고받은 문서

48)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이 문건이 언급되었으나 이 문건의 보고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여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포함하여 검토함

(2) 주요 내용

-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355] 문건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수정·보완한 대응방안을 제시함
- 이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 표현의 자유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큰 기본권으로서, 익명 게시판 자체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그 표현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굳이 '선배 법관'을 확보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법관 중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는 법관을 통하여 '이 모 부장판사 사건을 통하여 법관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 역시 매우 조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도록 함(철저히 익명으로 운영되는 카페이므로 위 글을 게시하는 법관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음) → 위 글의 게시 자체로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나아가 운영진을 알고 있는 동료 및 선배 법관에게 이 사건 카페의 게시글이 유출될 경우 운영진 역시 직·간접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주의 환기를 시킬 필요 있음 → 그 경우 카페 폐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운영진 스스로 생활 정보 공유, 업무 처리 관련 노하우 공유 정도로 그 주제를 축소시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음

다) '이사야... 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26]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정◆◆ 판사가 작성하여 2015. 2. 26.경 임종현 기초실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함
- 문서의 파일명은 '(150226)이판사판게시글초안[정◆◆].hwp'로서 이사야에 게시할 글의 초안이라고 보임

(2) 주요 내용

-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 하자(이른바 '핑 하자')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그 전문은 아래와 같음

제목: 이사야...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

1. 새뱃돈 사건

네이버에 소위 중산층 이상 사는 엄마들이 정말 거리낌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시판이 있어요. 남의 눈, 귀 의식하지 않고 쇼핑, 육아, 시월드 문제에 관해 노골적인 수다를 나누는데, 특히 그 정보력이 엄청나서 중독성이 대단하답니다.

근데 그런 노골적인 수다가 가능한 원동력은 바로 엄격한 회원제 비공개 카페라는 점이에요. 기존 회원의 초대와 시삽의 승인을 통해서만 게시판 접근이 가능한데, 흠... 우리랑 많이 닮았죠? 암튼 그런 공간 속에서 맘들은 남편 욕, 시어머니 욕도 후련하게들 쏟아내는 표현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설 연휴에 맘들을 발각 뒤집어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기사를 보신 판사님들도 계실 텐데요. 카페 게시판에 어떤 맘이 올린 속풀이 글이 '새뱃돈 차액 돌려달라는 시댁 형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거예요.(<http://issueviewer.tistory.com/449>)

게시판은 발각 뒤집혔죠. 아니, 우리끼리 속풀자고 한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떡하냐...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집 사람들은 알 텐데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냐... 대체 누구냐, 색출해서 쫓아내자 등등... 하지만 유출 경로는 추측만 난무할 뿐이었어요. 사실 유출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저도 기사화되었으니 옮기는 거지만, 맘만 먹으면 우리 카페에 그 글을 퍼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맘들은 '핑'을 해요. 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 2. 법복 입은 가면무도회

탐 크루즈가 나온 '아이스 와이드 셋'이란 영화 아시죠? 유명한 가면무도회 장면이 있어요. 좀 야한!... 저는 요새 그 이미지가 종종 떠올라요. 우린 이 카페에서 가면무도회를 즐기고 있는 거죠. 서로 누구인지 모르는 채 속이야기를 편히 풀어놓죠.

근데 최근의 이 모 부장님 상황을 보면서 전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즐기는 무도회는 아이스 와이드 셋에서처럼 밀폐된 저택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우린 뺨 뚫린 들판에서 또는 대로 옆 공원에서, 가면은 썼으되 법복을 입고 우리 신분은 노출시킨 채라는 것을... '이판사판 야단법석'이라는 타이틀을 단 게시판 아래에서는 우리는 판사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장 보세요. 조선일보 기자가 저희 게시판 주위를 킁킁거리고 있어요. 우린 이 공간이 밀폐된 방음시설이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유리박스 같은 곳이에요. 인터넷에서 '익명'이란 건, 사실 ISP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면 심한 표현일까요? 여기 들어올 때 로그인 안 하셨어요? 요새 '로그인 유지' 기능 때문에 점점 무감각해져요. 심지어 기자들이 '귀대기'까지 시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전관예우가 어떻고, 이 모 부장님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걸 들여보려고요.

유스티티아도 있지 않냐구요? 거긴 달라요. 거긴 실명을 걸고 활동해요. 그래서 책임감이 남다르죠. 소곤소곤 기능이 있어봤자, 어차피 서로 실명을 걸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나온 이야기는 일부 익명글이라도 '다함께 책임'이란 생각이 있어요. 거기선 최소한 동료였던 이정렬 전 부장님 호칭을 '이 사무장'으로 하니 마니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올 거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려고 익명인 걸까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린 가면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사단이 나도 다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법복을 입고 있으니까 '판사'는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럼 여기 모인 우리들 때문에 또 우리 동료, 선후배들이 괜시리 욕을 먹고. 그럼 그 분들은 우리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할 거예요. 밥조에서

시침 똑 떼고 있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냥 그래도 될까요?  
우리가 탄 뗏목은 그냥 뗏목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은요. '판사호'라고 버젓이 쓰여진 뗏목이에요.  
그건 기자들이 이미 알고 세상이 아는 일이 되어있어요. 그냥 뗏목 갈아타고 말 일일까요?

3. '소 잃으면 외양간 버리자' 대신에 우리도 평?

지난번에 민감 정보에 관해서 우리 카페가 내린 결론은 '우리 양식을 믿자,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게시판을 닫자'였어요. 고상한 결론이긴 했지만 달리 표현하면 '소 잃으면 외양간 버리자'뿐이에요. 고칠 수도 없고 버려야 한다니요. 너무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언급한 맘들 카페에선 '평'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연애피라시 올리고 나서 주로 하던 건데, 이제는 보편화되었어요. 뭐냐면 좀 민감한 글은 글을 올리면서 올리는 사람이 '이 글은 몇 분 후에 평합니다'라고 예고해요. 그럼 그 한정된 시간동안만 다양한 댓글, 의견을 주고받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글쓴이가 글을 자삭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욕, 19금 이야기, 연애편지 이야기도 그래서 가능해요.

우리도 스스로 보기에 '판사가 이러이러한 글을 올렸다'라고 기사가 난다면 뭐하든 싶은 글은 평하기로 하는 게 어떨까요. 꼭 이 게시판에 우리 생각들을 축적시켜 놓을 필욘 없잖아요. 나중에 추억삼아 볼 일도 없고.

글구 운영진도 스스로 평하지 않는 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세요. 전 제가 이 공간의 일원으로 멍하니 있다가 괜시리 동료들한테 미안해지는 상황은 싫습니다.

다들 한 번 생각해주세요. 이런 글 '운영건의' 게시판이 맞지만, 거긴 아무도 안 들여다볼 거 같고. 우리 카페 유지하려면 지금처럼은 어려울 거 같아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거 같아요.  
T.T

**라)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2749]**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정◆◆ 판사가 2015. 3. 2.경 작성하여 임종현 기초실장에게 보고함
- [26] 문건 기재 게시글 초안을 2015. 2. 27. 및 2015. 3. 1. 이사에 게시한 이후 카페의 동향을 분석함

(2) 주요 내용

49) 파일명은 '(150302)이판사판카페동향보고.hwp'임



-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그 취지에 공감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라고 평가하고, 구체적인 댓글의 내용을 정리함
- 이 문건에 [26] 문건 기재 게시글 초안이 첨부되어 있음

마)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2850]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정◆◆ 판사가 2015. 3. 3.경 작성하여 임종현 기초실장에게 보고함
- [26] 문건 기재 게시글 초안을 2015. 2. 27. 및 2015. 3. 1. 이사야에 게시한 이후 카페의 동향을 분석함

(2) 주요 내용

- [27] 문건의 후속 보고 문서
- 이 문건 중 [26] 문건 기재 게시글 초안을 이사야에 게시한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 한편, 제안 글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으로 보임

- **적극적** 목표 ⇨ 민감한 글에 대한 **자진 삭제 문화 정착**
- **소극적** 목표 ⇨ 게시 글의 **유출 가능성에 관하여 자각**하고 지나치게 민감한 사안에 대한 **무분별한 글 작성 자제 분위기 조성**

바)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29]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 심의관이 2015. 3. 9.경 임종현 기초실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함
- 법관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의결을 앞두고, 민감 게시글 삭제에 관한 카페 내부 논의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이사야의 주간 게시글 등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50) 파일명은 (150303)이판사판카페동향보고2.hwp임

	카페 전체 총페이지뷰	민감 본글 (댓글)수	주제
1월 3주	1,302	7(50)	대법관 제청, 기업인 가석방, 검찰비판
1월 4주	2,010	4(57)	땅콩회항, 판사구속, 상고법원
1월 5주	3,209	5(58)	전관예우, 법원내 세대간 갈등, 상고법원
2월 1주	4,245	8(106)	신영철 대법관 퇴임, 대법관 제청, 부의 세습, 상고법원
2월 2주 (이모 부장사건 보도)	3,137	4(36)	원세훈 사건, 대법관 제청, 검찰비판, 언론과재벌
2월 3주 (기자 취재 시도 공개)	642	0	
2월 4주 (처장님 당부사항 공지)	1,160	0	
3월 1주 (민감글 삭제 내부제안)	통계미제공	1(9)	김영란법(전문 별지1 첨부) 부장 기록 미검토 글 1건 삭제

- 대응방안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법관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권고의 권 의결 이후 이사야 운영진에게 운영방식 개선을 권유하기로 하면서, 권유 주체, 시기 및 방법을 검토함
- 이 문건 중 이사야 운영에 관한 구체적 권유 방안 부분은 아래와 같음

**● 카페 운영에 관한 구체적 권유 방안 검토**

- 문제 소지가 있는 글의 유출을 차단하는 운영방안으로는 → 카페 운영진이 문제될 글을 **선별하여** 직권으로 또는 가입 법관의 건의 등을 통하여 **삭제하는 방안**, ② **모든 게시글에 대하여 일정기간(예 : 1주) 경과하면 자동으로 일괄 삭제**되도록 하는 방안, ③ **모든 게시글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과하면 자동으로 일괄 비공개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함  
(중략)

▣ 종합검토 :骸안을 중심으로 적극적 효과 기대가능한 다각적 방안 검토 필요

- 현재의 위축 효과 지속 여부를 포함한 카페 활동의 지속적 추이 관찰 필요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수준 및 강도에 따라 보다 강경하고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검토 할 여지도 있음

사) '이사야 익명 카페 동향 보고'[30]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심의관이 2015. 4. 6.경 임종현 기조실장의 지시로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29] 문건을 업데이트 하여 보고함
- 2015. 3. 11.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제10호 의결 이후 이사야 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이사야의 주간 게시글 등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전체 글수 (댓글포함)	민감 본글 (댓글)수	민감글 비율	주제
1월 3주	1,302	7(50)	3.8%	대법관 제청, 기업인 가석방, 검찰비판
1월 4주	2,010	4(57)	2.8%	땅콩회항, 판사구속, 상고법원
1월 5주	3,209	5(58)	1.8%	전관예우, 법원내 세대간 갈등, 상고법원
2월 1주	4,245	8(106)	2.5%	신영철 대법관 퇴임, 대법관 제청, 부의 세습, 상고법원
2월 2주	3,137	4(36)	1.1%	원세훈 사건, 대법관 제청, 검찰비판, 언론과재벌
2월 3주	642	0	0%	
2월 4주	1,160	0	0%	
3월 1주	872	1(9)	1.0%	김영란법, 합의부장 기록 미검토(자진 삭제)
3월 2주	751	1(4)	0.5%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
3월 3주	708	1(8)	1.1%	법관 평가와 법관의 독립
3월 4주	840	1(12)	1.4%	변협의 전 대법관 개업신고 반환

○ 이사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추가 대응방안 시행을 전제로 향후 계획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3. 향후 계획

▣ 카페 활동 반등 여부 면밀히 계속 관찰

- 최근 가입자수 및 게시글의 총수에서 미약하나마 반등 기미 있음
- 양적인 추이 외에도 민감한 글의 내용 및 카페의 분위기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모니터링 지속할 필요 있음

▣ 카페 전반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 시행 시까지 신속보고 태세 유지 필요

아) '익명카페 설득논리 및 대응방안 검토'[33, 34]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5. 7. 24.경 기조실에서 작성하여 임종현 기조실장에게 보고함
- 2개의 파일이 존재하나 첫 페이지에 '2015. 7. 26.', '기조실'을 추가한 것 외에는 동일함
- 이사야의 개설자인 홍◆◆ 판사를 상대로 카페 운영방식 개선을 직접 권유할 예정이라면서 설득논리와 대응방안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이사야 게시글의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는 물론, 일종의 해방구로서 이사야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경우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냉소,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율적인 문제제기와 공격이 있기 전에 스스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심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함

-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법관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약 1주간 자유롭게 논의한 후 적어도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함으로써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권유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카페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개설자 등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커 바람직하지 아니함은 기검토와 같음
- ▣ 이판사판 익명 게시판의 코트넷화 방안
  - →행정처 심의관, 각급 법원 기획법관, 나아가 부장판사 이상 선배 법관 및 수석부장판사 등이 대거 **이판사판에 가입** ⇨ 한 두 명이 아니라 다수가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법관의 부담 적음
    - 카페 운영진 '스스로 제한 없는 가입'의 원칙을 선언한 바 있어 가입 거부할 명분 없고, 실제 거부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어서 거부하기 어려움
    - 실제로는 4~5명의 가입자만으로도 아래와 같은 효과 기대할 수 있음
  - ②카페에서 사법정책 현안에 대한 오해, 선배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 등이 이루어질 경우 **적극 나서서 설명** ⇨ **자신의 직무를 밝히고 해명하는 것도 적극 검토**
    - ⇨ 가입법관들로서는 자신의 게시글이 사실상 공개된다는 부담감을 느껴 공격적이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글을 작성하는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임
    - ⇨ 결국에는 **실명이 드러나는 코트넷과 비슷한 수준의 의견표명만이** 이루어지거나 (코트넷에서도 공개글을 올리던) 일부 성향의 법관만이 민감한 글을 올리게 될 것임
  - ③나아가 위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이후에는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게시글에 대하여도 비공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글 게시 ⇨ 익명 게시판 존재로 인한 사법부 피해 가능성 원천 봉쇄
  - ④이판사판 카페의 동향 파악 등에 과도한 사법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됨

#### 자) '법관 익명 카페 개설자와 소속 법원장 면담 후속조치'[31]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심의관이 2015. 8.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작성하여 보고함
- 2015. 8. 12. 홍◆◆ 판사와 소속 법원장인 인천지방법원장의 면담 결과를 정리하고, 홍◆◆ 판사에게 제공할 이사야 공지글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이사야 회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지글 초안을 작성하여 홍◆◆ 판사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은 공지글 초안을 작성함(삭선 부분은 원문에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전재함)

이사야를 아껴주시는 판사님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최근 법원의 어른인 선배법관으로부터 우리 이사야에 관한 부탁 말씀 내지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선배법관도 주변의 다른 법관들과 많이 상의하고 고민하신 끝에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의 요지는,

우선 이사야가 법관의 품위에 어긋나는 저속한 표현은 찾기 어렵고, 나름의 건전한 자정작용과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알고 있고, 익명 카페의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게시글이 대부분이라고 하여 국민들이 그러한 카페의 존재나 게시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먼저 법관만 가입되는 폐쇄공간이라 하여도, 언젠가는 유출을 피할 수 없다. 카페 회원이었다가 퇴직한 변호사, 카페 회원의 가족인 기자, 검사, 변호사 등을 통한 유출에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 그리고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400명이 넘는 회원 중에 한 두 명은 동료 법관 못지 않게 거자와 가까운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이정열 전 판사도 이사야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법관이 직접 유출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언론의 집요한 취재가 있으면 어차피 공개를 막을 수 없다. 모든 글은 언젠가는 국민이 날 것 그대로 읽게 된다고 봐야한다.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예를 들어 올 초에 이사야에서 전관예우 논의를 하면서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많은 판사가 법원에 근무 중', '주변의 부장님 심지어 단독 중에도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사람 있다', '부장이 대놓고 봐줘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불가능한 결론이 나왔다'는 댓글이 있었다. 이런 글이 공개될 경우 국민들이 갖게 될 극도의 사법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모든 법관들이 앞으로 수십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재판을 하면 그 엄청난 충격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동안 언론이나 변협 등의 일부 문제제기는 '그들의 편향된 정보 내지 일부 사례의 과장'이라고 방어할 여지라도 있었지만, 법관들이 스스로 위와 같이 말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그냥 모든 사건에서 전관예우에 따라 불가능한 재판을 하는 조직이 되고 만다.

이사야 회원 대부분도 대부분의 법관처럼 법원을 정말 아끼고, 재판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연히 카페 글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합리적인 토론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방치하다가 저런 내용이 유출되면 뒤늦게 크게 후회하지 않을까.

전관예우 말고도 '부장판사가 기록은 전혀 보지 않으면서 사건처리 통계만 압박한다', '내 주심 아닌 사건일 때 법정에서 낙서하거나 딴 생각한다', '지원에서 사무분담은 정치판을 뛰어넘어 동물의 왕국 수준이다'라는 등 수많은 내용과 표현들이 우리 법관들끼리 토론하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단 하나라도 국민이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묵묵히 일하는 법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밖에 없다.

카페 회원 중에 '유출되면 그때 카페를 폐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유출되는 순간 법관의 명예와 재판에 대한 신뢰는 돌아킬 수 없지 않을까.

물론 이러한 불신들이 카페 회원인 법관분들의 책임 때문은 아니지만,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의혹을 확산으로 바꾸고, 법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신을 촉발하는 데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법관들이 관심 주제에 대하여 일정기간(예를 들어 일주일) 자유롭게 논의를 하고 난 후, 해당 글을 삭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함으로써 외부 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을 권유하셨습니다. 삭제하는 것에 비하여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하면서도 유출로 인한 동료 법관 및 이사와 법관들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하십니다.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해당 글을 다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글이 영원히 사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그 밖에도 위와 같이 자유롭게 논의가 진행되는 기간 중 (상당수 다른 카페들이 하고 있듯이) 모든 본글 및 댓글에 대하여 복사 방지, 폼 방지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 역시 법관들의 논의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안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복사 방지 기능 등까지 제안하시는 걸 보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정말 염려하셔서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취지로 이해되었습니다.

유출 방지를 위한 삭제 제안에 관하여 종전에도 카페에서 논의가 있었고(운영게사판을 참조해주세요^^), 당시 운영진은 동료 법관의 글을 선별하여 삭제하는 것은 운영진의 권한을 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글을 선별하지 말고, 삭제하지도 말고, 모든 글에 대하여 일정기간 후에는 비공개로 전환하되, 필요한 회원은 운영진에 열람을 요청하여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운영진은 판사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 가) 대면 조사

#### ○ 임종헌 차장

- 정◆◆ 심의관
- 시▲▲ 심의관
- 박■ ■ 심의관

나) 서면 조사

- 홍◆◆ 판사
- 김▣▣ 판사

다) 기타

- 김동오 당시 인천지방법원장 이메일(2018. 5. 23.자)

3) 특별조사단의 검토

가) 특별조사단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 임종현 기초실장은 2015. 2.경 이○○ 부장판사의 정치편향, 막말 익명 댓글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법관들만으로 구성되고 익명으로만 글을 올리게 되어 있는 이사야의 민감한 게시글이 유출, 공개될 경우 이영한 부장판사의 경우보다 더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음
- 임종현 기초실장은 2015. 2.경 시▲▲ 심의관과,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부임 전인 박■ ■ 판사에게 이사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따로따로 지시하였음
- 시▲▲ 심의관은 2015. 2. 14.경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 보고'[344] 문건을 작성하였으나, 임종현 기초실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던 중, 박■ ■ 판사가 2015. 2. 15.경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355] 문건을 작성하여 정◆◆ 심의관을 통하여 임종현 기초실장에게 보고하자, 시▲▲ 심의관은 [344] 문건을 임종현 기초실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344] 문건은 S1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 임종현 기초실장은 박■ ■ 판사가 작성한 [355] 문건을 제3자<sup>51)</sup>에게 검토하도

51) 임종현 차장은 누구에게 검토를 지시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정◆◆ 심의관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함

록 지시하여 2015. 2. 21.경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추가 검토'[186] 문건을 보고받았음

- 2015. 2. 21.경 임종현 기조실장에게 보고된 [186] 문건에서 익명 카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는 법관을 통하여 익명 활동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이사에 게시함으로써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 정◆◆ 판사는 행정처를 떠난 이후 2015. 2. 26.경 임종현 기조실장과 통화하면서 임종현 기조실장에게 이사에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자(이른바 '평 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보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임종현 기조실장은 정◆◆ 판사에게 알아서 해 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
- 정◆◆ 판사는 2015. 2. 26. 임종현 기조실장에게 이사에 게시할 글 초안인 [26] 문건을 이메일로 전달하였음
- 정◆◆ 판사의 배우자인 김▣▣ 판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하여 이사에 임종현 기조실장에게 이메일로 전달되었던 [26] 문건 기재 게시글 초안이 2015. 2. 27. 및 2015. 3. 1. 나누어 게시되었는데, 김▣▣ 판사는 2015. 2. 3. 이사에 가입신청을 하였음
- 정◆◆ 판사와 김▣▣ 판사는, 익명으로 작성하는 글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여 게시글 유출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26] 문건 기재 게시글 초안을 카페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sup>52)</sup>. 그러나 김▣▣ 판사가 이사에 가입신청을 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익명으로 작성하는 글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갔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움
- 정◆◆ 판사가 [26] 문건 기재 게시글 초안이 이사에 게시된 직후 2차례에 걸쳐 [27], [28]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현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글들의 게시가 오로지 정◆◆ 판사와 김▣▣ 판사 부부가 함께 인식하였던 문제의식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임

52) 다만, 김▣▣ 판사는 정◆◆ 심의관이 임종현 기조실장에게 게시글 초안이 기재된 [26]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함



- 박■■■ 심의관은 2015. 3. 9.경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29] 문건을 작성하면서 이사야 운영진에게 권유할 운영방식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
- 박■■■ 심의관은 2015. 4. 6. '이사야 익명 카페 동향 보고'[30] 문건을 작성하면서 이사야에 게시된 민감한 글 및 댓글의 수와 민감한 글의 주제를 주단위로 분석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카페 전반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 시행 시까지 신속보고 태세 유지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사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대응방안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임종현 기조실장은 2015. 7.경 이사야 개설자인 홍◆◆ 판사를 상대로 카페 운영방식 개선을 직접 권유하기 위하여 홍◆◆ 판사에 대하여 이사야 게시글 유출되는 경우 사법부의 신뢰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글은 일정기간 논의한 후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설득 논리를 검토하고, 홍◆◆ 판사가 카페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 심의관, 각급 법원 기획법관 등이 카페에 가입하여 카페를 코트넷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홍◆◆ 판사는 2015. 8.경 소속 법원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카페 운영방식에 관한 조언을 들었음
- 박■■■ 심의관은 임종현 차장의 지시로 홍◆◆ 판사에게 전달할 이사야에 게시할 공지글 초안을 작성하였음('법관 익명 카페 개설자와 소속 법원장 면담 후속조치'[31] 문건의 공지글 초안 부분<sup>53)</sup>)
- 홍◆◆ 판사는 소속 법원장과 면담한 이후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이사야에 게시할 공지글 초안을 전달받았으나, 실제로 카페에 게시하지는 아니하였음

#### 나) 종합 검토

- 법관들만으로 구성되고 익명으로만 글을 올리게 되어 있는 이사야의 특성상 전관예우, 합의부 내부 사정, 법관 인사 등에 관한 민감한 내용의 게시글이 유출되는 경우 세간의 관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53) 임종현 차장은 위 문서 공지글 초안 부분에 표시된 삭선은 자신이 표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함

- [344] 문건이 실제로 보고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야 자진 폐쇄 유도 방안까지 검토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고, [355] 문건에서 이사야에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역시 그 수단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음. 위와 같은 방안들을 검토한 것은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할 것임
- 나아가 행정처 전·현직 관계자들이 이사야의 분위기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할 것을 논의하고, 마치 이사야 회원이 자발적으로 올린 것처럼 하여 그와 같은 글을 실제로 게시하며,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이후 이사야의 동향을 파악한 일련의 행위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어,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이사야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위계로 이사야를 관리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사야가 익명 카페로서 게시글의 명의자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 판사가 이사야 회원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한 것은 아니며,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글이고, 이와 같은 글을 장기간 지속적·연속적으로 게시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소속 법원장이 이사야 운영자에게 민감한 내용의 게시글 유출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것 자체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처가 이를 넘어서 카페 운영자에게 게시할 공지글 초안까지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서 부적절한 행사라고 할 것임

## 5.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1) 관련 문서

##### 가)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354]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6. 8. 24.경 기조실에서 작성함
-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고, 법원장에 의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점검 대상, 점검 범위 및 주기, 점검 및 조치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함

###### (2) 주요 내용

- 주기적 점검을 위하여 공식, 비공식적 방법을 망라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하되, 비공식적 정보 수집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검토함
- 이 문건 중 점검 및 조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착안 사항 및 정보 수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4. 점검 및 조치 시스템 구축

##### 가. 착안 사항

(중략)

###### ▣ 공식/비공식의 정보 수집 + 공식적 점검의 외관

###### ● 공식/비공식 방법을 망라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필요

- 공식적 정보수집이 주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함
- 가용한 비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 ● 「공식적」 점검의 외관 필요

- 비공식적 정보수집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 필요
-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점검이 진행된다는 외관 필요함

##### 나. 정보 수집

###### 1) 공식 라인을 통한 정보 수집

(중략)

## 2)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

### ▣ 거점법관을 통한 정보 수집

- 신뢰할 수 있는 거점법관(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을 통한 해당 법원의 동향 주기적 파악

### ▣ 특이통계 추출 전산 시스템 개발을 통한 조기 경보체계 구축 (중략)

### ▣ SNS, 게시판 리서치를 통한 정보 수집

- 법관들 대상으로 한 익명게시판(이판사판) 점검
- 여성법관들이 가입한 '유스티티아'의 동향 주기적 점검
-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법관 관련 공개된 SNS(가령 facebook) 점검
  - 당사자 본인의 SNS 점검
  - 부장판사인 경우 그 배석판사나 참여관, 실무관의 SNS 점검

## 나)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34654]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5. 7. 6.경 기조실에서 작성함
- 상고법원에 대한 내부 반대 움직임이 있고, 그 핵심 그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로, 상고법원 입법추진 및 정상적인 사법행정 시행에 불안요소가 되므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그 대응 방안을 검토함

### (2) 주요 내용

- 상고법원에 대한 내부 반대 법관들의 반대이유, 핵심그룹에 대하여 검토하고, 내부 반대 목소리가 외부로 표출될 경우 상고법원 입법추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내부 반대 세력이 결집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 대응 방안으로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상고법원에 대한 내부 반대 법관에 대한 접근방향, 접촉대상, 접촉주체, 접촉시기, 설득수단 및 논리 등에 대하여 검토함

54) S1에서 같은 문서인 [35] 문건이 발견됨

다)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31855]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심의관이 2015. 8. 18.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함
- 차○○ 판사가 2015. 8. 11. 코트넷에 게시한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 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이라는 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이 문건에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재판 준비태도, 일과 관련된 가정사, 고민하는 테마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차○○ 판사가 다수의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이 포함됨
- 차○○ 판사는 상고법원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검토함

라)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320, 32156]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심의관이 2015. 9. 22.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함
- 차○○ 판사가 2015. 8. 11. 코트넷에 게시한 글에 이어 계속 코트넷에 글을 게시하고, 2015. 9. 초순경 시사인에 5회 분량의 연재 칼럼을 투고하자, 그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차○○ 판사의 대학, 사법연수원 시절 활동 경력에 비추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한 끈질긴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고시공부를 하던 중 학내 성폭력 관련 대자보 작성,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 동참 등을 들고 있음
- 공식채널을 통하여 문제 부분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판사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고, 차○○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 차○○ 판사와 친한 선·후배 명단을 취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55) S1에서 같은 문서인 [37] 문건이 발견됨

56) S1에서 같은 문서인 [38] 문건이 발견됨

판단함

**마) '송순순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343, 342(작성 중 파일로 추정)]**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5. 1. ~ 2.경 기조실에서 작성함
- 송순순 판사가 2009. 3.경부터 2015. 1. 15.까지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글 6개의 내용을 정리하고 송순순 판사의 성향을 분석함

(2) 주요 내용

- 송순순 판사의 성향에 대하여 ① 전체 사법제도, 인사시스템 등 관심이 많고, ② 정세판단에 밝은 전략가형이며, ③ 법원 집행부에 대한 불신 및 의혹이 많고, ④ 선동가, 아웃사이드 비평가 기질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바)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324, 39957]**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6. 7. 기조실에서 작성함
- 법관 사회 내부 여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2016년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및 실시방안에 대하여 검토함

(2) 주요 내용

- 당시 대법관 제청 관련 법관 사회와 언론의 동향을 정리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박○○ 판사에 대하여 선출을 통하여 취임하여 법관 여론 주도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한 언급이 없고, 자신이 추진 중인 '좋은 재판 연구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박○○ 판사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재함

**사) '박○○ 판사의 동향 관련'[393, 394]**

- H4의 휴지통에서 '박○○ 판사 향후 동향.hwp', '박○○ 판사의 향후 동향 (1).hwp'이라는 파일을 복구하였으나, 파일명만 보이고 파일 내용은 깨져서 확

---

57) S1에서 같은 문서인 [161] 문건이 발견됨

인할 수 없었음

## 2) 추가조사위원회의 검토 요지

- 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사법행정 목적의 달성 등을 이유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한 것으로 보이고, 주로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회원 등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이나 상고법원 도입, 대법관 제청 등 사법부의 현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그 동향을 파악하였음
- 위와 같은 동향 파악은 법관들 의견의 적극적 수렴과 사법정책에의 반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이른바 '선제적 대응'으로 설득과 통제, 규제와 압박 수단의 검토를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문제됨

##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 가)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36]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임종헌 기초실장의 지시로 2015. 7. 6.경 기초실에서 작성함
  -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를 고취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함
- (2) 주요 내용
  -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으로 계층별·직급별 일선 법관들의 의문점을 파악하여 Q&A 자료집을 준비하는 것을 검토함
  - 일부 법관의 반대 입장 외부 공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일부 법관의 반대 입장 외부 공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돌출 행동 위험성 높은 법관들의 상고법원 관련 입장 등 사전 점검하여 선제적 설득 작업 착수 필요

- 내부 설득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반대 의견 표방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위기 대응체제 가동
  - 사전 분위기 감지 긴급요 ⇨ 해당 법관 소속 법원장, 친분 있는 법관 등을 통한 자제 권고
  - 언론사 기자 등과의 접촉을 통해, 보도 자제 또는 수위 툰다운 요청
- 보수 언론을 통해 대응 논리 유포 ⇨ 반대 입장 폄하·고립화 전략 추진
  - 종래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돌출성 언행 전력 등 부각
- 후속 보도 제지로 부정적 분위기 확산 차단

나) '김♠♠ 부장판사 징계결정 후 대응방안'[40]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4. 11. 6.경 윤리감사관실과 기조실에서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임종현 기조실장에게 보고함
- 2014. 11. 7. 김♠♠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징계결정 이후 법관들 사이에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일반적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 있어 논란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결정 이후 대상별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함
- 이 문건 중 법관 및 법원직원에 대한 대응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p>2) 법관 : '표현의 자유'제한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1] 법원 내부 분위기 지속적 파악</p> <p>[2] 법원장, 수석부장 통한 비공식적·간접적 내부 설명, 설득</p> <p>[3] 코트넷 게시글에 대한 적절하고 신중한 대응</p> <p>[4]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적 문제제기 시 법원 내부의 자연스러운 논의 유도</p> <p>[5] 논란이 확산되는 최악의 경우 연구회 연구주제로 논의 가능</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3) 법원 직원(노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코트넷 게시글에 대한 적정하고 신중한 대응</p> </div> <p>▣예상</p>



- 원세훈 판결 결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코트넷 게시판에 비판적 취지의 글을 올릴 가능성 있음
- 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현안이 있어 크게 이슈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파급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대응

- 법관의 코트넷 게시와 동일한 방안으로 대응
- 법원 직원들의 경우 법관들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명예훼손 등 코트넷운영지침에 위배되는 격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의 글이 올라올 가능성이 큼 ⇨ 코트넷운영지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또다른 논란이 촉발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

다) '차○○ 판사 언론사 기고 관련 검직허가'[45]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5. 9. 21. 윤리감사관실에서 작성하여 임종현 차장에게 보고함
- 차○○ 판사가 2015. 9. 초순경 시사인에 5회 예정으로 연재 칼럼을 기고하자, 검직허가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조치 방안, 기고 내용의 법관윤리 위반 여부를 검토함

(2) 주요 내용

- 차○○ 판사의 시사인 칼럼 기고와 관련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기고가 5회 정도 계속될 예정이라면 검직허가 대상이라고 판단함
- 기고 내용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공정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 문건 중 검직허가에 관한 조치 검토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라. 조치 검토

▣ 검직허가 신청을 하도록 요구 시 당사자의 반발 예상

- 검직허가가 요구되는 계속적 기고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그에 관한 기준이 법관들에게 사전에 안내된 바도 없음
- 검직허가를 받지 않고 법률신문 등에 계속적 기고를 한 법관들이 다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차 판사에게 검직허가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 수 있고, 상고법원에 관한 법원 내부의 반대의견을 탄압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예상됨
- ▣ 차 판사가 검직허가 신청을 하고 이를 불허하는 경우 언론, 국회 등의 비난 예상
  - 차 판사가 검직허가 신청을 하고 이를 불허하는 경우 차 판사 본인은 물론, 언론, 국회 등 외부에서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의 반대의견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음
    - ▶ 得보다는 失이 많을 수 있음
- ▣ 대안
  - 법원장, 지원장 등을 통해 자제를 권고하는 방법
  - 검직허가 신청을 허가하면서 법관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방법 등

**라) '차○○ 판사 재산관계 특이사항 검토'[39]**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2016. 4. 6.경 윤리감사관실에서 작성한 문서함
- 차○○ 판사가 2009. 4. 법관으로 임관한 이후 재산변동 내역에 대하여 검토

(2) 주요 내용

- 차○○ 판사의 특이사항으로 차○○ 판사가 2015년, 2016년에 코트넷에 게시한 9개 글의 제목과 시사인에 투고한 5회분의 연재 칼럼의 제목을 정리함
- 차○○ 판사의 재산내역 중 사인간 채무에 관하여 2014. 12. 31. 기준 신고시 제출한 소명자료를 확인하여 검토하고, 차○○ 판사의 연도별 재산 총액에 관한 그래프를 작성하여 첨부함
- 차○○ 판사의 재산관계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함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가) 대면 조사**

- 임종헌 차장
- 김☆☆ 심의관
- 박■■■ 심의관

**나) 서면 조사**

- 김■■■■ 전 윤리감사관

○ 김■■■ 전 윤리감사관

○ 임●● 심의관

#### 다) 기타 자료

○ 차○○ 판사의 2016. 3. 4.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방 게시글 '법관 사법행정 참여 관련 연구, 검토 자료 공유요청'

○ 차○○ 판사의 2016. 3. 21.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방 게시글 '다른 법원의 판사회의 개최, 선고 등 경험과 자료 공유 요청'

###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가) 특별조사단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354]

- 임●● 심의관이 2016. 8.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를 김☆☆ 심의관을 통하여 전달받아 작성하였음

- 임●● 심의관은 2016. 8. 25.경까지 작성한 이후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2016. 9. 18. 김☆☆ 심의관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음

- 이 문건은 S1에서 발견되지 아니하고, 임종헌 차장도 이 문건을 사실상 반려하여 그 실행에 필요한 추가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장회의에서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 이 문건에 기초한 '구체적인 점검 및 조치 시스템 구축'의 실행이나 결과에 관한 문서가 S1 등에서 발견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문건에 기초한 '구체적인 점검 및 조치 시스템 구축'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이 문건은 김☆☆ 심의관이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반려되었다고 보임

○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346]

- 박■■■ 심의관이 2015. 7.경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문서의 주된 부분을 작성하였음

- 이 문건에서 검토된 대응 방안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임종헌 차장도 같은 취지로 진술함. 박■■■ 심의관 역시 이 문건의 보고 이후 추가적인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함
  - 이 문건은 인사모 예비모임 제안 무렵인 2015. 7. 6.경 작성된 것으로서 이 문건에 기재된 대응 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는 상고법원안에 반대하는 내부 동향을 파악하여 왔다고 보이고, 인사모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그와 같은 내부 동향 파악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임
-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36]
- 박■■■ 심의관이 2015. 7.경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문건의 일부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음
- '차○○ 판사 언론사 기고 관련 검직허가'[45]
- 김■■■■ 당시 윤리감사관이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함
  - 당시 계속적 기고에 대하여 검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직허가의 필요성 여부, 기고 내용의 품위유지의무, 공정성 유지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한 번에 모두 검토한 것은 차○○ 판사의 언론사 기고에 대하여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차○○ 판사 재산관계 특이사항 검토'[39]
- 임종헌 차장은 차○○ 판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판사를 오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2016. 4.경 김■■■ 당시 윤리감사관에게 차○○ 판사의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함
  - 임종헌 차장 스스로도 차○○ 판사 외에는 윤리감사관실에 특정 판사의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보라고 지시한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함
  - 차○○ 판사는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평에, 2016. 3. 4.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법관의 사법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행정처의 자료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고, 2016. 3. 21. 다른 법원의 판사회의 개최, 선거 등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함

- 차○○ 판사의 재산관계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이유에 관한 임종헌 차장의 주장은 믿기 어려움. 차○○ 판사가 2015년 코트넷에 상고법원에 반대하면서 법관 증원을 통한 하급심 충실화 방안에 관한 글을 게시하고, 시사인에 하급심 충실화 등에 관한 칼럼을 투고하며, 2016년 코트넷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자 차○○ 판사에 대한 뒷조사 차원에서 재산관계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임

○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324]

- 박■■■ 심의관이 2016. 7.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함

나) 종합 검토

- 추가조사위원회에서는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354] 문건에 기초한 '구체적인 점검 및 조치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354] 문건에 기초한 '구체적인 점검 및 조치 시스템 구축'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음
- 그러나 [354] 문건에 기초한 '구체적인 점검'의 실행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문건들에 나타난 여러 정보 수집 정황(이사야 게시글 인용 등<sup>58)</sup>)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처 기조실에서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을 하였다고 보임
- 또한 [354] 문건에서 실제로 검토한 주기적 점검방안은 비공식적인 정보수집 방법을 체계화하려 하였고, 이른바 '거점법관'을 통한 정보 수집은 법관 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방안으로서, 위와 같은 주기적 점검방안을 검토한 것은 그 자체로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보임

58) ①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320] 문건의 차○○ 판사의 시사인 투고에 관한 이사야 게시글, ② '상고법원 관련 법관 인식 점검'[41] 문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106] 문건의 상고법원 반대에 관한 이사야 게시글, ③ '합의부 중심 조직문화 리빌딩 방안'[42] 문건, '중요 사법정책 추진기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 검토'[109] 문건의 법원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사야 댓글, ④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59] 문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 선고에 관한 이사야 게시글, ⑤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 방향 이행방안'[112] 문건의 탄력근무제에 관한 이사야 게시글 등

- 행정처는 주로 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향을 파악하였다고 보이고,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 그룹이라고 분류하면서 그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동향을 파악하거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고 보임
- 이와 같은 행정처의 동향 파악이나 대응방안 검토는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생각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기 위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리스크 센싱의 관점 즉, 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장애가 된다고 보이는 것은 모두 위험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동향 파악이나 대응방안 검토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임
- 특히 차○○ 판사의 게시글, 기고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기고의 겸직허가 필요성, 품위유지의무, 공정성 유지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재산관계 특이사항까지 검토한 것은 특정 판사에 대한 뒷조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로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할 것임
- 행정처의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에 전제된 위와 같은 인식이나 관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처의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행정처 심의관들이 다른 법관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이사야 게시글을 확인한 것은 그 수단의 적정성 역시 인정하기 어려워, 행정처의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은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 할 것임

## 6.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1) 관련 문서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32259]

##### 가)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심의관이 2016. 3. 7. 작성함
-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출마 예정인 박○○ 판사의 프로필, 출마 경위, 당선시 예상되는 문제점, 대응방안을 검토함

##### 나) 주요 내용

- 대응방안으로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정○○ 판사를 적극 지원하되, 선거 공약 아이템 발굴, 지원단의 구성 등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선거 전략을 검토함
- 선거 공약 아이템 발굴에 관하여, 핵심 그룹의 주장에 무관심한 다수의 일반 판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선거 공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선거 공약 아이템을 제시함

#### 선거 공약 아이템

- ▶ 단독판사의 복지 및 실질적인 지위 향상
- ▶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라인과 단독판사 사이의 실질적인 가교 역할 수행 (반목과 대립 지양)

- 지원단의 구성에 관하여, 김★★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법관, 정◆◆ 판사를 지원단의 구성원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함

#### 2) 추가조사위원회의 검토 요지

- 행정처가 특정 법원의 판사회의 의장 경선과 관련하여 출마 예정자의 프로필과 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경선 출마의 경위와 지원 법관들의 세부 동향까지 파악하고, 그 대응 전략으로 다른 출마 예정자의 의장 경선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대응방안의 실행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임

59) S1에서 같은 문서인 [46], [191] 문건이 발견됨

##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 가) '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50, 189]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법관(이하 '김★★ 기획법관')이 2015. 3. 12.경 현안보고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함
- 2015. 3. 16. 개최 예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분석함

##### (2) 주요 내용

-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김○○ 판사가 2015년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을 추진한 경과를 보고함
- 이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 ■ 전망

- 장●● 판사, 또는 실질적인 독장이라고 할 수 있는 30기 최선임자 정○○ 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제3의 후보가 입후보한다면 작년과 같이 경선이 예상됨
- 소수의 의사가 다수 의견인 것처럼 호도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판사회의 당일 적극적인 출석을 독려 중

#### 나) '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51, 190]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기획법관이 2015. 3. 17.경 현안보고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함
- 2015. 3. 16. 개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전망을 분석함

##### (2) 주요 내용

-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장●●, 이○○, 정○○ 판



사가 추천되었으나 모두 사퇴의사를 밝혔고, 이후 장○○ 판사가 단독후보로서 만장일치로 당선됨

- 투표 결과 만장일치 찬성이어서 관례대로 박수에 의해 추대하는 형식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결과로서 경선을 추진한 김○○ 판사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여 지지기반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함
- 이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입후보자 추천 결과 ⇨ 장○○, 이○○, 정○○ 판사 추천됨</li><li>■ 장○○ 판사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여 장○○ 판사 추천 추진하였고, 장○○ 판사가 사퇴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 판사도 추천 추진하였음</li><li>■ 김○○ 측은 제3의 후보들에게 입후보 의사를 타진 ⇨ 별다른 성과 없자 이○○ 판사를 추천한 것으로 보임</li><li>■ 결과</li><li>● 추천된 후보자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주변의 설득, 최선임자로서의 책임감 등으로 가장 선임자인 장○○ 판사가 결국 단독후보로 남게 됨</li><li>● 회의일 찬반 투표 실시 ⇨ 참석자 만장일치로 장○○ 판사 당선</li></ul>
--

#### 다) '민사부 인사 관련 문제 점검'[52]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5. 8.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문서인데, 구체적인 작성자는 확인되지 아니함
- 민사부 인사 관련 문제로 ① 부장판사 업무 관련, ② 전담법관의 역할 문제, ③ 인사 및 사무분담에 대한 단독판사들의 정서, ④ 합의·항소 부장과 단독부장, 단독과 배석 사이의 사무분담 교류 문제, ⑤ 일반직 사무분담 문제, ⑥ 2016년 정기인사 운용방향에 대하여 검토함

##### (2) 주요 내용

- 이 문건 중 '인사 및 사무분담에 대한 단독판사들의 정서' 관련 부분에서 일부 단독판사들의 동향을 개별적으로 언급함
- 이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 단독판사 동향

- 김○○ 판사(30기, 중액단독): 2014년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서 사무분담 내규 개정 추진하다가 좌절. 올해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을 추진하였다가 좌절된 이후, 박○○ 판사(30기, 폐암 투병 중) 모금활동에 관여하는 외에는 별다른 활동 없음
- 허○○(30기), 신○○(32기) 판사: 2014년 사무분담 내규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김○○ 판사의 지지세력 형성. 김○○ 판사가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올해에는 별다른 활동 없음
- 이○○ 판사(29기, 신청단독): 서기호 의원 법원 재직 시절 함께 법관인사제도나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관하여 문제 제기한 적 있으나,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올해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도 추천을 거부하는 등 별다른 활동 없음
- 이○○ 판사(31기, 중액단독): 박○○ 판사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단 적 있으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별다른 활동 없음
- 박○○ 판사(31기, 파산·회생단독): 4. 16. 코트넷 자유게시판에 박상옥 후보자 임명 반대 글을 게시. 현재 별다른 활동 없으나, 돌발 행동 배제 못함

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 검토'[192, 279, 290]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정◆◆ 판사가 2016. 3. 24.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함
-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 결과 및 전망, 대응방향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박○○ 판사가 직선으로 선출되었고,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 2014년 김○○ 판사의 의장 재직 당시보다 훨씬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된다는 전제에서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검토함
-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결과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음

■ 선거 결과

- 재적 133인
- 출석·투표 102인(투표율 76.7%)
- 박○○ ⇨ 65표(득표율 63.7%), 정○○ ⇨ 35표(34.3%), 무효 ⇨ 2표

■ 결과 분석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인원 분포

- 민사단독 87인, 형사단독 22인, 파산단독 22인

● 고려 사항

- 박○○ 측 우호 세력

- 파산단독(현원 23인) ⇨ 현재 박○○ 판사가 파산단독임
- 신청단독(현원 8인) ⇨ 주요 우호 인사들이 다수 포진

- 정○○ 측 우호 세력

- 민사재정단독(현원 6인) ⇨ 현재 정○○ 판사가 민사재정단독임
- 형사단독(22인) ⇨ 행정처 심의관 출신 법관 등 주요 우호 인사들이 다수 포진

● 분석

- 우호 세력은 전체 투표율보다 다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을 것임

- 박○○ ⇨ 약 21표 예상
- 정○○ ⇨ 약 19표 예상

- 따라서 나머지 득표는 대부분 민사단독으로부터 이루어졌을 것임

- 박○○ ⇨ 약 44표 예상(73.3%)
- 정○○ ⇨ 약 16표 예상(26.7%)

- 또한 우호 세력의 투표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 기존에 형성된 생각 등에 따라 사전에 그  
향방이 결정되어 있었을 것 ⇨ 결국 중앙지법 단독판사 그룹의 여론의 현재 위치는 위에서  
본 나머지 득표 상황을 참고하여야 함

- [착안점①] 표면적인 투표 결과보다 여론은 더 좋지 아니한 상황으로 추측
- [착안점②] 제한된 상황과 정보하에 형성된 여론이고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린 결과일 수  
있으므로 향후 개선의 여지는 매우 큼

○ 대응방향의 전체 기조로 '박○○ 판사에게 불필요하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  
을 각종 판단의 최우선적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하고, 존재감을 부여하지 않도  
록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고 검토함

○ 이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 2014년 김○○ 판사의 의장 당선 후 2015년에는 단독판사 의장 직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서울중앙지법 기획 라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후보를 내는 것조차 실패하였음  
(중략)

骸 '사무분담내규 개정 건의 추진'에 대한 대응  
(중략)

- 중요 대응 논리를 사전에 오피니언 리더 법관들에게 주지시키고 판사들에게 충분히 전파하여 신중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사전에 여론 조성 활동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음 ⇨ 선거와 달리 '사전선거운동'의 부담이 없음, 2014년에 이미 이슈화된 바 있어서 사전에 문제 제기와 논의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도 아니함
- 의장 선출의 경우와 달리 보이콧 등의 방식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한다면 의장 선거 시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임

마) '서울중앙 수석부장판사 재편 방안'[193]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노◆◆ 심의관이 2016. 3. 26.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함
- 법관 사회 내부 소통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여 수석부장판사의 내부 소통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임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비대화로 3인 수석부장판사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전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재편 방안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의 재판업무 및 소속법관 과다로 인하여 내부 소통 한계, 평정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이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문제 1] 내부 소통 한계**

▣ 단독판사회의 활성화 ⇨ 내부 소통 필요성 증가

- 기존 사법행정예 비우호적인 박○○ 판사(회생단독)가 경선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판사회의 활성화 예상
- 판사회의를 통해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견제하려는 시도(예컨대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무분담 기본원칙 의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에 사법행정 현안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집단적으로 제시할 가능성 있음
- 수석부장이 단독판사들과 회식 자리 등을 자주 가지면서 단독판사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슈에 관하여 대응논리를 적절히 설파함으로써 판사회회가 집행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바) '서울중앙 수석부장 재편 실행방안'[194, 195]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노◆◆ 심의관이 2016. 4. 5.경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고, 2016. 4. 12.경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이원화(증원)가 결정된 이후 각각의 수석부장판사의 명칭, 권한 및 역할 분배, 시행시기 등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이원화(증원)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2016년 8월을 제1안으로, 2017년 2월을 제2안으로 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함
- 이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IV. 시행시기**

**1. [1안] 2016년 8월**

■ 장점

- 서울중앙 민사단독판사 조기에 장악 ⇨ **2016년 하반기 단독판사회의 제어**
  - 2016년 하반기에 '희망 최우선'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관한 판사회의 개최 예상  
(중략)

■ 단점

-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시점에 민사수석부장이 2인으로 늘어날 경우 민사단독판사들에 대한 장악 시도로 오해할 가능성
  - ⇨ 사전에 법률신문을 통해 서울중앙 민사부의 비대화를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방안 검토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 연구반 개요 -가칭 「충실한 재판 연구반」-[199]**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김★★ 기획법관이 2016. 5. 13.경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가 구성한 '충실한 재판 연구반'의 개요를 정리함

(2) 주요 내용

- '충실한 재판 연구반'의 구성원, 목적, 운영일정을 정리함

○ 이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1. 구성(9명)**

**▣ 운영진(의장 1, 간사 4) 모두 연구반원으로 참여**

- 의장: 박○○ 판사(31기, 개인회생단독)
- 간사: 김○○ 판사(32기, 중액단독), 이○○ 판사(33기, 형사단독), 윤○○ 판사(34기, 신청단독), 문○○ 판사(37기, 소액단독)

**▣ 그 외 연구반원(4명) 섭외**

- 최○○ 판사(33기, 신청단독), 안○○ 판사(34기, 중액단독), 김○○ 판사(36기, 개인회생단독), 홍○○ 판사(38기, 소액단독)

**▣ 김○○, 이○○ 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가) 대면 조사**

- 임종헌 차장
- 김●● 당시 인사총괄심의관
- 김☆☆ 심의관
- 정◆◆ 심의관
- 노◆◆ 심의관
- 김★★ 기획법관

**나) 서면 조사**

- 장●● 부장판사(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다) 기타**

- 고영한 대법관 방문청취
- 정○○ 부장판사 이메일(2018. 5. 8.자)

**3) 특별조사단의 검토**

**가)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관여 여부**

(1) 특별조사단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 김★★ 부장판사는 2013. 2.부터 2015. 2.까지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이었고, 2015. 2.부터 2017. 2.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법관이었음
- 김★★ 기획법관은 '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50] 문건 중 '소수의 의사가 다수 의견인 것처럼 호도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판사회의 당일 적극적인 출석을 독려 중' 부분은 현안보고를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할 수 없어 기재한 것으로서,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하여 단독판사회의 일정 공지를 하면서 판사회의에 참석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한 것 외에 별도로 출석을 독려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
- 김★★ 기획법관은 '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51] 문건 중 '장●● 판사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여 장●● 판사 추천 추진하였고, 장●● 판사가 사퇴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 판사도 추천 추진하였음' 부분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선임 기수인 사법연수원 제29기, 제30기 단독판사들이 장●●, 정○○ 판사의 추천을 추진하였다는 것으로서, 당시 자신이 장●●, 정○○ 판사의 추천을 추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
- 그러나 [51] 문건의 위 부분은 그 문언의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문건의 작성자인 김★★ 기획법관이 '장●●, 정○○ 판사의 추천을 추진하였음'이라고 봄이 상당함
- 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 검토'[192] 문건 중 '서울중앙지법 기획 라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후보를 내는 것조차 실패하였음' 부분은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함
- 이에 대하여 임종헌 차장은 2015년 당시 작성된 [50], [51] 문건들에 의하면 2015년 단독판사회의 의장 후보로 장●●, 이○○, 정○○ 판사가 추천되었는데, 모두 사퇴하여 의장 선출이 무산될 위기였고, 주변의 설득으로 최선임자인 장●● 판사가 단독 후보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192] 문건 중 '서울중앙지법 기획 라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후보를 내는 것조차 실패하였음' 부분은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함

- 2015년 단독판사회의 의장이었던 장●● 부장판사는 당시 후보자로 추천된 과정이나 후보자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김★★ 기획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김★★ 기획법관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192] 문건 중 관련 '2014년 김○○ 판사의 의장 당선 후 2015년에는 단독판사 의장 직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서울중앙지법 기획 라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후보를 내는 것조차 실패하였음' 부분은 그 문건의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2015년 단독판사 의장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 라인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2014년 의장인 김○○ 판사 측에서 의장 후보를 내는 것조차 실패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51] 문건에 의하더라도 김○○ 판사 측에서 추천한 이○○ 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사퇴하였다가, 최선임자인 장●● 판사가 단독후보로 남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김○○ 판사 측에서 의장 후보를 내는 것에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임

(2) 종합 검토

- '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50] 문건 중 '소수의 의사가 다수 의견인 것처럼 호도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판사회의 당일 적극적인 출석을 독려 중' 부분과 관련하여 김★★ 기획법관이 판사회의 당일 적극적인 출석을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획법관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임
- [51], [192] 문건 등 관련 문건에 김★★ 기획법관이 2015년 단독판사회의 의장 후보와 관련하여 장●●, 정○○ 판사를 추천 추진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라인이 2015년 단독판사 의장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법행정담당자가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대한 부적절한 관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sup>60)</sup>

나)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관여 여부

(1) 특별조사단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60) 다만, 이 부분 부적절한 관여는 제3자로 하여금 장●●, 정○○ 판사를 의장 후보로 추천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장●●, 정○○ 판사와 상호연락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음



- 김☆☆ 심의관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322]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원단의 구성', '정○○ 판사가 의장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음' 부분을 임종현 차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함
- 김★★ 기획법관, 정◆◆ 판사 모두 [322] 문건 중 '지원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고, '정○○ 판사가 의장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음'을 행정처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임종현 차장은 김★★ 기획법관, 정◆◆ 판사에게 '지원단의 구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김☆☆ 심의관에게 '정○○ 판사가 의장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고 전달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
- 정○○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후보 출마의 변으로 ① 다른 법원에서 단독 판사 또는 배석 판사 중 가장 연장자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② 어떠한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겠으며, ③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분들이 있다면 앞장서서 돕겠다고 밝혔음

## (2) 종합 검토

-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과 관련하여 '지원단의 구성' 등을 검토한 것은 그 실행 여부를 떠나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할 것임
-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직후 작성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 검토'[192] 문건 중 의장 선거의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192] 문건의 작성자인 정◆◆ 판사가 2016년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관여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으나, 정◆◆ 판사가 지원단으로서 의장 경선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음
- 김★★ 기획법관이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음

- 결국 [322] 문건 중 '지원단의 구성'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음
- 한편, 정○○ 부장판사가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과정에서 밝힌 출마의 변의 내용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322] 문건에서 제시한 선거 공약 아이টে으로부터 유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정○○ 부장판사의 2016년 의장 경선 출마에 사법행정담당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음

####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활동 및 단독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의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인사 및 사무분담에 대한 단독판사들의 정서 관련 부분'에 관하여 특정 단독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행정처에 전달하였으나, 이와 같은 동향 파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김★★ 기획법관은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가 구성한 '충실한 재판 연구반'의 구성원들 중 인권법연구회 회원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표시하여 보고하였으나, 연구반 구성원의 특정 연구회 회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와 같은 단독판사회의의 활동 및 단독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은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할 것임

####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재편 관련

- 서울중앙지방법원 비대화로 3인 수석부장 체제가 한계에 달하여 민사수석부장판사 제도를 재편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다만, 관련 문건에 나타난 '판사회의가 집행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2016년 하반기 단독판사회의의 제어' 등의 표현에 비추어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의 의장 경선 결과에 따른 대응 필요성'에 기초하여 재편 여부를 검토한 부분과 단독판사 회의 제어를 고려하여 실행시기를 검토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7.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

### 가. 추가조사위원회의 보고 요지

#### 1) 관련 문서 -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59, 360]

##### 가) 문서 개요 및 주요 내용

- 기획재1심의관 사용 컴퓨터 저장매체 중 '2014년 정◆◆' 폴더의 하위 폴더인 '기조실'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정상파일이나, 정◆◆ 심의관은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 원세훈 외 2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정원법위반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의 선고일 다음날인 2015. 2. 10. 작성됨
- 이 문건 중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BH

- 판결 선고 전 동향 ⇨ 촉각을 곤두세움
  - BH의 **최대 관심 현안** ⇨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
  - 법원행정처 ⇨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재판 결과에 관하여서는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알림
    - 위와 같은 내용 그대로 민정 라인을 통하여 보고됨
- 판결 선고 후 동향 ⇨ 내부적으로 크게 당황, 외부적으로는 침묵 속에 이완구 청문회 주력
  - 전반적 분위기 ⇨ **크게 당황**하며 앞으로 전개될 정국 상황에 관하여 불안해하는 상황
    -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
    - 이에 대하여 **곽▼▼ 법무비서관** ⇨ **전원합의체 회부는 오히려 판결 선고 지연을 불러올 가능성** 있음을 피력
  - 법원행정처 ⇨ 법무비서관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함**
    - 법무비서관 ⇨ 법원행정처 입장을 BH 내부에 **잘 전달하기로 함**, 그리고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함**

(중략)

## 6. 향후 대응 방향

### ■ 판결 결과 분석 필요

#### ● 항소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 ⇨ 신속 처리 추진

- 기록 접수 전이라도 특히 법률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 ⇨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3개월] 최대한 준수하여 신속 처리  
(중략)

### ■ 향후 정무적 대응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 계속하여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방안 vs. 수세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방향

-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질 수도 있음
-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 ⇨ 다만, 역풍 가능성이 극히 우려되므로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나) 추가조사위원회의 검토 요지

- 행정처가 원세훈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특정 외부기관과 사이에 특정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는 외부기관의 문의를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정황,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것은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 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 1) 특별조사단에서 추가로 발견한 관련 문서

#### 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7] 공판진행상황'[64]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원세훈 외 2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정원법위반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7, 이하 위 사건 전체를 일컬을 때는 '원세훈 사건', 심급에 따라 구분하여 일컬을 때는 '원세훈 제1심 사건', '원세훈 항소심 사건', '원세

훈 상고심 사건', '원세훈 파기환송후 사건'이라 각 칭함.)의 2014. 1. 27.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박○○○ 당시 사법지원실 형사심의관(이하 '박○○○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 등에게 보고하였음

- 이 문건의 작성은 기조실의 요청에 따른 것임

(2) 주요 내용

- 원세훈 제1심 사건의 진행 중 1차 및 2차 공소장 변경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히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일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 실체적 쟁점, 절차적 쟁점, 증거법적 쟁점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고, 공판기일 별로 특이사항 내지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함
- 검찰이 공소사실을 정리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당분간 중단되어 있고, 법관 정기이동시기 이전에 판결 선고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고 보고함

나) '원세훈[전 국정원장] 사건 개요'[61]

(1) 문서 작성 관여자

- 원세훈 제1심 사건이 2014. 7. 14. 변론 종결된 후 2014. 9. 11.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앞두고 2014. 8. 23. 박○○○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 등에게 보고하였음
- 이 문건의 작성 역시 기조실의 요청에 따른 것임

(2) 주요 내용

- 이전에 보고된 2차례의 공소장 변경에 이어 2014. 6. 16.에 있는 3차 공소장 변경과정을 간략히 보고함
- 공판기일 중에 재판부에서 증거능력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특히 이메일 첨부 문서<sup>61)</sup>가 진술증거라는 이유로 전문법칙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한 점을 보고함
-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특히 이메일 첨부

---

61) 425지논 파일(425지논.txt)과 시큐리티 파일(sssecurity.txt)을 말함

부 문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검찰이 입증하려던 트위터 계정 중 약 70%에 관한 직접증거가 날아갔다고 평가함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규범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2013도4146 등)를 소개하면서 인터넷 게재 내용이 전부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을지 여부는 행위 태양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함
- 한편 이 문건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라. 재판부 관련 참고사항

- 해당 재판부 (서울중앙 형사21부)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 담당 재판부였음
- 김용판 사건에서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여 무죄선고한 바 있음.

#### 다) '원세훈 사건 1심 판결 관련 분석 및 설명자료'[56]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원세훈 제1심 사건이 2014. 9. 11. 선고된 다음 날인 2014. 9. 12. 박○○ 심의관이 작성하여 박병대 처장, 임종현 기조실장 등에게 보고하였음<sup>62)</sup>
- 이 문건은 임종현 기조실장이 박병대 처장으로부터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법사위 국회의원을 상대로 원세훈 제1심 사건의 선고결과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박○○ 심의관에게 이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임

##### (2) 주요 내용

- 원세훈 제1심 사건의 선고결과를 간단히 소개하고,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내용을 정리함
-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한 다음 그중 선거운동법리 적용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62) 이에 앞서 박○○ 심의관은 선고 당일인 2014. 9. 11. 오후에 통상적인 주요사건의 보고로서 '1심 선고 보고'[파일명, (2014)국정원 선거개입(원세훈) 사건 1심 선고 보고]를 임종현 기조실장 등에게 하였는데 (박○○ 심의관 서면조사 결과), 이에 관한 문서는 발견되지 아니함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구분되는 선거운동 해당 여부

■ 유사한 구조의 평가가 김용판 사건의 항소심(2014노530)에서 있었음

- 한편, 이 사건 재판부는 김용판 사건의 1심 재판부임
- 김용판 사건의 1심에서는 권은희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선거운동의 법리에 입각한 평가는 없었음)
- 김용판 사건 항소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구분되어야 함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운동(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목적성이 명백하지 않다면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음
  -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실관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재판부는 당해 재판부가 판결한 김용판 사건의 상급심이었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이 사건에 유사하게 적용한 것임.

○ 또한 재판부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데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는, 법원으로서 더 중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함

라) '원세훈 사건 1심판결 분석 및 항소심의 쟁점 전망'[57]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원세훈 제1심 사건이 2014. 9. 11. 선고된 후 2014. 9. 18. 박ⓉⓉ 심의관이 작성하여 박병대 처장, 임종헌 기조실장 등에게 보고하였음.
- [56] 문건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음

(2) 주요 내용

- 원세훈 제1심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함
- 항소심 재판의 쟁점으로서 '현재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선거운동의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증거능력이 부인된 이메일 첨부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검찰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으로 공소장변경을

할 경우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제시함

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58]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5. 2. 9.로 예정된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둔 2015. 2. 8. 정  
◆◆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현 기조실장에게 보고하였음
- 임종현 기조실장은 원세훈 항소심 사건이 선고되기 전에 항소기각의 경우, 파  
기 및 유죄선고의 경우 등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음

(2) 주요 내용

- 항소심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연수원 기수, 출신 대학, 출신 고등학교를 기재하  
고, 이 재판부가 최근 나꼼수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취지  
를 보고함
- BH·여권, 야권의 최근 정세, 언론기관, 사법부 내부의 분위기를 분석하고, 원  
세훈 제1심 사건 판결 선고 당시의 반응을 보고하였는데, 그중 BH의 반응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2. 최근 정세 분석  
가. BH·여권  
(중략)  
■ 원세훈 1심 판결 당시 반응 ⇨ 환영·안도  
● BH ⇨ 비공식적으로 사법부에게 감사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후문

-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항소기각 판결의  
경우 파장이 최소화된다고 분석함. 특히 사법부 내부의 예상반응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3.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  
가. If 항소기각 판결[1심 결론 유지] ⇨ 파장 최소화  
(중략)  
■ 사법부 내부 ⇨ 큰 갈등이 촉발되지는 않겠으나 기존 불만 세력의 불만은 심화 가능성



-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음에 따라 1심 판결 당시와 같은 논란·갈등 양상이 **재발되지는 않을 것임**.
- 게다가 금주 내 법관 정기 인사가 이루어지면 **관심은 크게 분산·약화**될 수밖에 없음
- 하지만, 1심 판결 당시 불만을 가졌거나 그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을 가졌던 구성원들은 **불만이 더욱 응축·심화**될 가능성 있음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한 불만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표출 여부가 결정될 것임
- 다만, 김♠♠ 부장판사 징계로 인한 교육 효과에 따라 실제로 불만 표출에 나서는 데에는 **상당히 조심·자제**할 것으로 보임

○ 파기 및 공직선거법위반 유죄 판결시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하면서, BH·여권은 정권의 정당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어 국면 전환 조치의 방향이 사법부를 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특히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 나. If 파기·공직선거법 유죄판결[1심 결론 번복] ⇨ 상당한 파장  
(중략)
- 국면 전환 조치의 방향이 사법부를 향하게 될 가능성이 큼  
(중략)
  - [시나리오②:간접적·소극적 조치] 중점 추진 사법정책 반대, 사법부 예산 편성 비협조
    - 적극적 가능성 ⇨ 특히 대법원의 중점 추진 사법정책인 상고법원안의 경우 설치 시 김상환 부장판사<sup>63)</sup>와 같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상고법원 법관의 중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연상 작용을 일으켜 극도의 불신을 받게 될 것임, 사법부에 대한 불만 제기 시 예산 편성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BH의 전통적인 사법부 견제 방법이었음

○ 상황별 대응방안에 관하여도 보고하고 있는데, 그중 항소기각 판결의 경우 사법부 내부에 대한 방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4. 대응 방향
- 가. If 항소기각 판결[1심 결론 유지] ⇨ 사법부 내부 분위기 결속 중심  
(중략)
- 사법부 내부 ⇨ 불만·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 필요
  - 코트넷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 게시 글 작성·등록 여부 **지속적 확인**
    - 특히 코트넷운영위원회 간사[정보화심의관]는 당분간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

63)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임

큼 ⇨ 문제 있는 글이 게시될 경우 **즉시 임시조치** 여부를 검토·집행하여 파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법관 정기 인사는 최대한 조속한 시점에** 실시할 필요 있음

- 정기 인사 발령 시 새로운 임지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하여 **법관들의 관심이 크게 분산될 수밖에 없음**

○ 파기 및 공직선거법위반 유죄 판결의 경우 대응 방안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나. If 파기·공직선거법 유죄 판결[1심 결론 번복] ⇨ BH·여권 대응 중심

(중략)

● **形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 신속 처리**

- 전교조 집행정지 인용 결정 후 BH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 ⇨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한 것으로 입장 정리
- 지금까지도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만일 대법원의 결론이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법부에 대한 불만 완화 효과 + 원세훈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 제공** 효과

● **骸본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조속한 시점에 선고**

- 상고심을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여 만일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조속히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불만·오해 기간 최소화

● **化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입장 전달**

-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에 법무비서관실 등 적당한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설득 절차를 거침

바)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362]

(1) 문서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선고가 있는 2015. 2. 9. 오후 4시경 박ⓉⓉ 심의관이 채동수 당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아 이를 기초로 작성하여 다음 날인 2015. 2. 10. 임종헌 기조실장 등에게 보고함
- 박ⓉⓉ 심의관은 원세훈 사건이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관심을 갖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건이었던 관계로 구체적 지시 없이 현안보고 차원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함

(2) 주요 내용

- 원세훈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비교 분석함. 특히 항소심 판결이 이메일 첨부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논리구조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함
- 특히 증거능력 판단의 차이가 가장 핵심이고 사실인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면서 이메일 첨부문서의 의미는 사건 전체를 좌우할 만큼 크다고 판단함. 상고심에서도 결국 이메일 첨부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이라고 예상함
- 이 문건은 아래 [368] 문건과 함께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보고연구관에게 전달됨으로써 보고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문건의 목차, 박ⓉⓉ 심의관의 판단 내지 의견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사건진행 개요</li><li>2. 1심 판단의 요지 (공직선거법 한정)<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증거능력과 사실인정</li><li>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한 재판부의 평가(사실의 인정)</li></ul></li><li>3. 항소심 판단의 요지 (공직선거법 한정)<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증거능력과 사실인정 판단의 차이</li><li>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 유죄 인정<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전제된 법리 : 논리구조가 1심과는 다소 다름</li><li>2) 사실관계의 인정과 판단</li></ol></li></ul></li><li>4. 항소심 양형의 이유</li><li>5. 참고법리 : 디지털 파일의 증거능력<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전문법칙의 문제 (이 사건 판단과는 무관 - 1심, 2심 부정됨)</li><li>나. 315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증거의 문제(이 사건 쟁점)</li></ul></li><li>6. 종합 검토 (형사심의관)<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심각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 사건에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원세훈에 대한 비난) 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li><li>▣ 2심이 독립적인 증거조사를 광범위하게 한 것은 아님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li></ul></li></ul></li></ol> |
|---|

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르게 판단하였음

▣ 대법원의 구성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된다는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음

나. 1심과 2심의 판단차이의 핵심

- 1) 전제 법리의 차이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
- 2) 증거능력 판단의 차이 - 가장 핵심 ☞ 사실인정에 지대한 영향
- 3)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 판단 차이
- 4) '대선국면' 이론의 도입

다. 상고심의 쟁점 예상 (사건)

▣ 1심과 2심이 기본적 전제법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기 보다는, 서로 파악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논리구조를 다르게 취한 것으로 보임

● 여전히 핵심 법리는 선거운동의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

▣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

-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너무나도 구체적임
-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항소심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단순히 '전제법리' 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비판
  - 법리 문제를 떠나, 항소심 판결의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구체적임

▣ 원세훈 지시 내용에 대한 판단은 다소 애매함

▣ 대선국면 이론의 정당성 문제

-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본 것과 같이, 한쪽 정당 후보자 선출일을 대선국면 시작점으로 볼 수 있을지
- 1개의 포괄일죄로 기소된 범죄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도양단으로 잘라서 유죄와 무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 오히려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유죄 또는 전부 무죄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결국 어느 쪽으로도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작성권자 인정여부, 통상업무 따라 작성 여부, 특별 신빙 정황 여부

## 사) '원세훈 사건 항소심 판결 분석보고[요약]'[368]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362] 문건과 같은 경위로 함께 작성됨
- [362], [368] 문건은 2015. 2. 10.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보고연구관인 신▽▽ 재판연구관(이하 '신▽▽ 연구관)에게 전달됨(박⓪⓪ 서면조사 결과, 신▽▽ 연

구관 대면조사 결과)

(2) 주요 내용

- 28쪽 분량의 [362] 문건을 14쪽 분량으로 줄인 요약본임

아) '1. 425지는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내용'[67]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원세훈 상고심 사건이 2015. 7. 16. 선고된 후 2015. 7. 23. 신▽▽ 연구관이 작성하여 홍승면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이하 '홍승면 수석')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홍승면 수석은 이를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음
- 이 문건의 작성은 임종헌 기조실장이 홍승면 수석에게 언론 등에서 제기한 비판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원세훈 상고심 사건 판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쉽게 요약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홍승면 수석이 신▽▽ 연구관에게 그 요청을 전달한 데에 따른 것임

(2) 주요 내용

- 선장의 항해일지나 상인의 가계장부에 개인적인 내용이나 조악한 낙서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 트위터 계정을 담고 있는 시큐리티 파일은 낙서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일기장이라고 볼 수 없는 형식이라고 보고함
- 시큐리티 파일이 이른바 통상문서가 아닌 이상 심리전단 직원의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직원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현행 법 해석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하면서 업무상 작성된 문서임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판례들을 거시함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판결 관련'[66]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5. 7. 23. [67] 문건을 토대로 작성된 문건으로 작성자는 확인되지 아니함
-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에 따라 언론 대응용으로 [67] 문건의 내용을 2쪽 분량으로 요약한 것으로 보임

(2) 주요 내용

- 항소심에 책임을 전가한 이례적 판결이라는 지적,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결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내용임

차) '원세훈 사건 환송 후 당심(서울고법 2015노1998호) 심리방향'[60]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원세훈 파기환송 후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2015. 10. 6.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그 작성자는 확인되지 않음. '당심'이라는 제목에 비추어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로 추정됨.<sup>64)</sup> 이 문건은 임종헌 당시 차장에게 보고됨
- 임종헌 차장은 재판과정에 불협화음이 있어 누군가에게 공판진행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작성된 문건이라고 진술함

(2) 주요 내용

- 원세훈 파기환송 후 사건의 심리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동안 쟁점화되지 않은 공모관계에 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 이에 대한 재심리가 불가피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함
- 3회의 석명준비명령의 요지를 정리함
- 현재 상태에서 향후 심리 범위와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고하면서 문서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음

재판장과 주심판사(최○○ 고법판사, 28기)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카) '[원세훈 재판 현장 스케치]'[65]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원세훈 파기환송 후 사건의 2016. 7. 18. 공판기일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재판장의 재판 진행방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의원들이 위 공판기일에 방청하겠다고 하는 등의 상황 하에서 임종헌 차장이 이○○ 당시 서울고등법

64) 문서 양식은 사법지원실 양식으로 보이나(임종헌 대면조사 결과), 그것만으로 사법지원실 소속 심의관으로 단정키는 어려움

원 공보관(이하 '이○○ 공보관'), 김▣▣▣ 당시 행정처 홍보심의관을 통하여 들은 내용 등을 토대로 직접 작성하였음

(2) 주요 내용

- 2016. 7. 18.자 공판기일에서 진행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함
- 재판부와 검사가 상호 공방하는 모습은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나 법사위에서 재판진행에 대한 공격성 질의가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이○○ 공보관의 판단을 기재함
- 파기환송 후 14회 공판기일인데 증인 한명을 신문하지 않고 처음 재판을 하는 것처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기자들의 전반적인 반응을 소개함

타) '서울고법 원세훈 사건 보고(7. 18. 재판)'[62]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원세훈 파기환송 후 사건의 2016. 7. 18.자 공판기일이 진행된 다음날인 2016. 7. 19. 이○○ 공보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이 문건의 작성은 진행상황을 정리해달라는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라 이○○ 공보관이 직접 법정에 참석하여 알게 된 내용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임

(2) 주요 내용

- 2016. 7. 18.자 공판기일에서 진행된 내용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자세하게 보고함
- 위 공판기일에 참석한 국회의원, 기자들의 명단을 기재함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가) 대면조사

- 임종헌 기조실장 또는 차장(문건 작성 당시의 직책에 따라)
- 이▷▷ 당시 제1심 재판장(이하 '이▷▷ 부장판사')
- 신▽▽ 연구관
- 정◆◆ 심의관

- 광▼▼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하 '광▼▼ 비서관')
- 조■ ■ 당시 대법원 접수행정관(이하 '조■ ■ 행정관')

#### 나) 서면조사

- 홍승면 수석
- 김시철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장(이하 '김시철 부장판사')
- 조●● 당시 대법원 공보관(이하 '조●● 공보관')
- 이∅∅ 공보관
- 최㉞㉞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법관(이하 '최㉞㉞ 기획법관')
- 김ㅍㅍ 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 또는 행정처 홍보심의관(이하 '김ㅍㅍ 공보관')
- 정㉞㉞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관(이하 '정㉞㉞ 공보관')
- 최㉞㉞ 당시 파기환송심 주심판사(이하 '최㉞㉞ 고법판사')
- 이㉞㉞ 당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이하 '이㉞㉞ 공보관')
- 박㉞㉞ 심의관
- 이㉞㉞ 당시 제1심 주심판사(이하 '이㉞㉞ 판사')

#### 다) 기타

- 민일영 전 대법관 방문청취
-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서신
- 임종현 기조실장 이메일(2018. 5. 1.자 및 2018. 5. 8.자)
- 김상환 당시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이하 '김상환 부장판사') 이메일 (2018. 5. 10.자)
- 김○○ 당시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주심판사(이하 '김○○ 부장판사') 이메일 (2018. 5. 11.자)
- 이▷▷ 부장판사 이메일(2018. 4. 25.자)



-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이하 김현석 수석') 이메일(2018. 5. 11.자)
- 신▽▽ 연구관 이메일(2018. 4. 25.자)
- 대법원 사건배당부
- 행정처 전산정보국 보고서(이하 '전산정보국 보고서')
-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6, 서울고등법원 2014노5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대법원 2015도2625)
-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검토보고서 및 추가보고서
- 사법지원실 업무분담내역(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가) 제1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의 관여 여부

##### (1) 제기될 수 있는 의혹

- [59] 문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미리 결과를 알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제1심 판결의 결과 예측이 어떠한 이유에서 상대적으로 쉬웠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61], [64] 문건에서 공소장 변경과정, 실체적·절차적·증거법적 쟁점, 이메일 첨부문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를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으므로, 제1심 재판부에서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 선고 결과의 사전 인식 내지 예측 여부에 관하여

- [59] 문건의 문구에 의하더라도 '제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1심 결과는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쉬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함. 재판장이었던 이▷▷ 부장판사와 주심판사였던 이⊖⊖ 판사는 제1심 진행과정에서 재판진행상황이나 재판의 잠정적 판단에 관하여 행정처 등 사법행정 담당자가 직·간접적으로 문의를 한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외 사법행정 담당자가 제1심 결과를 선고 전에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음

-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59] 문건의 작성을 부인하였던 정◆◆ 심의관은 이 문건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고, BH 동향 관련 부분은 임종헌 기조실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진술함
- 임종헌 기조실장은 원세훈 제1심 사건의 재판부는 김용판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를 하였던 적이 있고, 재판진행 과정에서 이메일 첨부문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으며, 당시 재판을 방청한 기자 다수가 무죄를 예측하고 있어서 제1심에 관하여 그러한 표현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함
- 원세훈 제1심 사건의 재판부는 2014. 2. 26. 김용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6)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당시 핵심증인이던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입증 부족으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규범적으로 엄격해석하는 법리를 실시하지는 않았음
- 그런데 김용판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530)에서는 2014. 6. 5. 항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그 전제법리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위하여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실시하였는데, 원세훈 제1심 사건의 재판부가 위 항소심 판결에서 실시한 '선거운동'의 법리를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본 임종헌 기조실장의 추측은 경험칙상 어느 정도 수긍됨
- 원세훈 제1심 사건의 재판부가 김용판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라는 사실을 [56], [61] 문건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실은 당시 임종헌 기조실장이 제1심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음
- 또한 특정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는지 여부는 법정 방청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로 진행된 원세훈 제1심 사건에서 핵심증거인 이메일 첨부문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된 점은 재판부를 통하지 않고서도 획득할 수 있는 정보임
- [362] 문건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메일 첨부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사실인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이므로, 이메일 첨부문서

의 증거능력이 부인된 이상 '선거운동'에 관한 공소사실의 인정이 용이하지 않으리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임종현 기조실장은 원세훈 사건 제1심 재판부와의 연락을 통하여 선고 결과를 알았거나 예측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종전 사건에서의 선고 결과, 공판진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 등을 통하여 선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 (3) 관련정보 제공 여부

- [61], [64] 문건을 작성한 박○○ 심의관은 2013년 10월경 검찰의 1차 공소장 변경신청을 둘러싸고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는 등 파동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공소장 변경의 가부가 큰 이슈가 된 상황 하에서 당시 진행 중이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에 관한 질의가 쏟아지고 있었던 관계로 공소장 변경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국정감사에 대비한 답변을 준비하여야 하였는데,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의 구조를 파악하기 부족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에게 요청하여 공소장 사본을 제공받았던 것 외에는 언론보도, 재판상황을 기록한 인터넷 사이트, 코트넷 사건검색 등을 참조하였을 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다른 자료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진술함
- 현안보고는 국회 등 대외기관에 대하여 활동하는 법원행정처 처·차장 등의 사안 파악을 위하여 준비하는 설명자료인데,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심의관들이 내부적인 사무분담 분장에 따라 유형별로 담당함(사법지원실 업무분담내역). 국회의원의 경우 재판의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거나 재판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압박의 일환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데, 재판 사항 자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안 자체는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박○○ 심의관 서면조사 결과). 박○○ 심의관이 현안보고 차원에서 원세훈 사건의 진행경과, 선고 결과 등을 보고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임
- [61], [64] 문건에 나타난 공판진행 상황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예컨대 당시 참여연대 홈페이지(65)에

서는 원세훈 사건의 공판진행 상황을 공판기일별로 피고인이 한 주장, 검찰이 제시한 증거, 공소장 변경, 증인신문 등을 통해 공판에서 밝혀진 사실 등을 정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었음

- 법원 내 전산망인 코트넷 사건검색을 통하여도 공판기일,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또한 당시에는 언론에서도 원세훈 사건의 재판 진행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판기일이 진행될 때마다 기사가 보도되는 상황이었음
- 재판장이었던 이▷▷ 부장판사와 주심판사였던 이⊖⊖ 판사는 행정처 등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보낸 적이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함. 다만 이▷▷ 부장판사는 2013년경 임종현 기조실장에게 주심판사를 통해 검사가 보낸 공소장 변경 관련 이메일을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공소장변경신청서 등이 함께 송부되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 판사는 2013. 10. 18. 이▷▷ 부장판사와 상의 하에 임종현 기조실장에게 공판검사로부터 받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이메일을 전달한 적은 있으나, 그 이메일의 내용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사실, 공소장변경신청에 검찰 내부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 등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자체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함<sup>65)</sup>
- 따라서 [61], [64] 문건의 작성근거에 관한 박ⓁⓁ 심의관의 진술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음
- 박ⓁⓁ 심의관이 공소장 사본을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세훈 사건은 '중요사건의 접수와 중국보고'(재판예규 제1306호) 상 중요사건에 해당함. 보고책임자, 즉 해당사건의 주무과장은 중요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재판사무시스템에 필요적 입력사항을 간략히 전산입력한 후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데, 사건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

65)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068832>

66) 이⊖⊖ 판사는 원세훈 사건과 같이 민감한 사건에서 굳이 재판부가 알 필요가 없는 사항까지 포함된 이메일을 송부받은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장판사와 상의하여 공판검사에게 향후 이러한 이메일을 통한 자료 제공은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공판검사로부터 관련 이메일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함. 이▷▷ 부장판사도 이후 종전의 진술이 부정확하였다는 취지로 특별조사단에 알려 옴

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해당 요지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고, 공소장 등을 전산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 등을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음<sup>67)</sup>

- 따라서 박○○ 심의관이 원세훈 사건의 공소장 사본을 취득하는 것은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고, 이는 형사심의관이 현안보고를 위하여 관련자료를 취득하는 정당한 방법에 해당함

## 나)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의 관여 여부

### (1) 제기될 수 있는 의혹

- [59] 문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이라는 기재에 비추어 사법행정 담당자가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재판부에 직접 연락을 취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다고 판단됨. 다만 '우회적·간접적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공판진행 상황에 관하여 보고한 문건은 따로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 67) ◆ 중요사건의 접수와 중국 보고(재일 83-1)

### 제2조(보고책임자)

보고책임자는 해당 사건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단서 생략.

### 제3조(보고 대상사건)

② 보고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중 사법행정 지원이 필요하거나 장기적인 사법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건을 중요하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1. 신문,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 제4조(보고의 방법)

① 보고책임자는 중요사건이 접수되거나 종국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재판사무시스템에 필요적 입력사항을 간략히 전산입력한 후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되, [전산양식 A2730] 중 사건요지, 중국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공소장 첨부)를 입력한 후 공소장,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해당 요지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공소장,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공소장 첨부)를 입력한 후 출력한 보고서에 공소장,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고(FAX번호 : 02-533-9496), 이 경우 법원행정처는 공소장,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을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한다.

(2) 우회적·간접적인 관여 여하

- 앞서 본 바와 같이 [59] 문건의 BH 동향 관련 문구는 정◆◆ 심의관이 임종현 기조실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임. 정◆◆ 심의관은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 임종현 기조실장은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은 수사학적 표현으로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진술함. 이 진술은 실제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으면서도 BH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한 거짓표현이라는 취지로 이해됨
- 김상환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의 이메일에 의하더라도 항소심 재판 당시 법원 내부 및 외부에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정황은 느끼지 못하였거나 기억에 없다고 함
- [58] 문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 주심판사의 출신 고등학교, 나꼼수 사건에서의 무죄판결 선고 등의 사정은 재판부의 의중에 관한 간접적인 정황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외 임종현 기조실장 등 사법행정 담당자가 재판부의 의중을 알기 위해 노력한 우회적·간접적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아예 거짓표현에 불과하였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움

다) 상고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 등의 관여 여부

(1) 제기될 수 있는 의혹

- [58] 문건에서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선고결과가 파기 및 공직선거법위반 유죄일 경우 '대법원 판결 조속한 시점에 선고. 상고심을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여 만일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조속히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59] 문건에서도 '기록 접수 전이라도 특히 법률상 오류 여부 면밀히 검토하여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재판기간을 최대한 준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기재가 있으므로,<sup>68)</sup> 상고심이 비정상적으로 신

68)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300] 문건에서도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는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한 사안의 예로서 원세훈 사건을 들고 있음

속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59] 문건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기재하고 있고,<sup>69)</sup>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음에도 소수의견 없이 전원일치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BH의 주문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 특이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2018. 1. 23.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인이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음에도 청와대의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배당과정, 연구관 보고과정 등 상고심 사건 진행 전반에 걸쳐 특이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법원조직법 제65조에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부 및 전원합의체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합의과정은 조사대상이 될 수 없음

(2) 비정상적인 신속 처리 여하

- 원세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2015. 2. 12. 있었고, 그로부터 4일 뒤인 2015. 2. 16. 대법원에 기록이 접수되었음. 그 다음날인 2015. 2. 17. 3부로 재판부 배당이 이루어졌고, 공동피고인 이종명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송달불능되어 주심 배당이 지연되다가 2015. 3. 20. 위 접수통지가 송달되었고, 2015. 4. 10. 주심으로 3부 소속 민일영 전 대법관에게 배당되었음(코트넷 사건검색, 전산정보국 보고서)
- 당시는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하여 전산상 관리되지 않아 3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언제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전산정보국 보고서), 신▽▽ 연구관이 2015. 5. 8. 전원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신▽▽ 연구관 대면조사 결과), 그 이전에 회부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 전원합의체 합의는 2015. 5. 21.과 2015. 6. 25. 두 차례 이루어졌고(신▽▽ 연

---

69) [79] 문건에서도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이 원세훈 사건에 대하여 적어도 전원합의체의 판단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음

구관 대면조사 결과), 2015. 7. 16.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음

- 이와 같이 원세훈 상고심 사건은 접수된 지 5개월 만에 전원합의체를 거쳐 선고되었는데,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 비하여 상당히 신속하게 선고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음
-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70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sup>70)</sup> 원세훈의 구속만기가 2015. 8. 8.인데(코트넷 사건검색) 그 직전에 하계 휴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주심인 민일영 전 대법관의 임기 만료일이 2015. 9. 16.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원세훈 상고심 사건이 5개월 만에 선고되었다 하여 비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임종헌 기초실장도 [59] 문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록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오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다만 [362], [368] 문건은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보고연구관인 신▽▽ 연구관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달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신▽▽ 연구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지만 초반에 사건을 파악하거나 이 문건들에 포함된 표정도는 도움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 (3)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의 특이사정 여하

-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는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하여 전산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시기이었으므로(전산정보국 보고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산상 확인하기는 어려움
- 민일영 전 대법관은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이상의 구체적인 합의과정은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조사의 대상이 되기 어려움
-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그 부에

---

70) 위 기간을 넘겼다고 하여 재판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규정은 강행 규정임(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434 판결 참조)



서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3부에서는 이 사건의 난이도로 보아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규정에 따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으로 판단됨

- 민일영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행정처 처장 또는 차장으로부터 관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박병대 처장은 당시 중요사건 재판 진행결과를 담당 심의관 또는 사법지원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을 뿐, 재판부에 대하여 어떠한 관여나 의사전달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 이처럼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당시 주심 대법관과 사법행정 책임자는 일치하여 관여를 받았거나 한 적이 없다고 하며, 그 외 전원합의체 회부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응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사법부 내외의 관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4) 배당과정에서의 특이사항 여하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세훈 상고심 사건은 소송기록이 접수된 다음날인 2015. 2. 17. 재판부 배당이 실시되었고,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2015. 3. 20. 마지막으로 공동피고인 이종명에 대하여 송달됨으로써 완료되었으며, 공동피고인 이종명이 답변서 제출기간인 2015. 3. 30.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2015. 4. 9.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자 2015. 4. 10. 주심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배당시기는 형사소송 및 배당 관련규정에 부합함<sup>71)</sup>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2015. 11.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배당의 시기)

- ① 상고본안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이후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

- 일반적으로 형사상고사건에 대한 재판부배당은 사건종류에 따라 공직선거법위반사건, 불구속형사상고사건(이하 '불구속사건'), 구속형사상고사건('이하 구속사건') 등 14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각 분류된 사건종류별로 실시되는데(김현석 수석 이메일), 원세훈 상고심 사건은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공소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재판부 배당과정에서 구속사건으로 분류되어 배당되었음(전산정보국 보고서, 이하 배당에 관한 사실은 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는 한 전산정보국 보고서에 근거함)
- 2015. 2. 17. 당시 재판부 배당 현황을 보면 총 110건이 공직선거법위반사건 2건, 불구속사건 44건, 구속사건 64건으로 분류되어 배당되었는데, 원세훈 상고심 사건이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되었다면 공직선거법위반사건 3건, 불구속사건 44건, 구속사건 63건으로 분류되어 배당되었어야 하고, 만일 그렇게 분류되어 배당되었다면 다른 부로 배당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런데 상고심 사건의 배당과정을 보면 배당담당자가 배당할 사건을 14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해당 군에 속하는 사건을 특정하여 배당시스템의 사건종류 메뉴에서 해당 군을 선택하여 등록한 후 배당결재를 올리면, 배당주관자가 배당시스템상 자동배당실행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작위로 배당함(김현석 수석 이메일)<sup>72)</sup>
- 즉 배당주관자가 자동배당실행 프로그램상 배당실시 버튼을 누르면 그중 가장 먼저 배당할 사건을 전산시스템이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사건을 1순위로 하여 이후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배당순위번호가 부여됨.<sup>73)</sup> 이후 배당순위번호에 따라 전회 사건배당에서 마지막으로 배정받은 재판부에 이어서 배당이 이루어짐.<sup>74)</sup> 즉 1순위로 배당될 사건을 전산시스템이 무작위로 선정하므로, 사

72)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7조에서는 사건배당 관여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17조(사건배당 관여자) 사건배당시스템에서의 사건배당에 관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건배당 주관자 :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배당 주관자로서, 사건배당시스템 중 자동배당실행 프로그램과 배당결과삭제 프로그램은 사건배당 주관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4. 사건배당 담당자 : 사건배당업무를 담당하는 민·형사과의 담당 직원

73) 예컨대 사건번호가 11, 22, 33, 44, 55, 66, 77, 88, 99인 사건 9건이 배당할 사건이고, 전산시스템이 77사건을 1순위 사건으로 선정하였다면, 이후의 배당순위번호는 77→88→99→11→22→33→44→55→66의 순서가 됨

74) 대법원에는 3개의 소부가 있는데, 만일 직전 배당이 2부까지 이루어졌다면 77사건은 3부, 88사건은 1

건종류의 분류를 의도적으로 틀리게 하더라도 특정 사건을 특정 부로 배당되게 할 수는 없음<sup>75)</sup>

- 2015. 2. 17. 당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되었던 2건의 사건은 사건번호가 2529, 2629이었고, 전산시스템이 2629사건을 1순위로 선정함에 따라 2629사건은 3부로, 2529사건은 2부로 배당되었음. 만일 원세훈 상고심 사건(사건번호 2625)이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전산시스템이 동일하게 2629사건을 1순위로 선정하였다면,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소속된 부에는 배당되지 아니하고<sup>76)</sup>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이인복 대법관은 1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3건의 사건은 2629사건(3부)→2529(2부)→2625(3부)의 순서로 배당되었을 것임. 말하자면 원세훈 상고심 사건은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의 가정적 배당결과와 실제 배당결과가 동일함<sup>77)</sup>
-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심 배당은 2015. 4. 10. 이루어졌는데, 이때에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되어 배당된 사건이 전혀 없었던 반면, 2015. 4. 9.과 2015. 4. 14.에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되어 배당된 사건이 존재하였음(대법원 사건배당부)
- 주심 배당은 배당된 재판부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만일 주심 배당 당시 원세훈 상고심 사건이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다면 3부에 소속된 다른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될 수도 있었음
- 그런데 사건종류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재판부 배당 시에 정해지고 도중에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의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정해진 사건종

---

부, 99사건은 2부, 11사건은 3부, 22사건은 1부, 33사건은 2부, 44사건은 3부, 55사건은 1부, 66사건은 2부로 배당되게 됨

75)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된 사건이 1건에 불과하다면 그 사건은 특정 부로 배당되게 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배당할 구속사건은 64건이었으므로, 여기에 작위가 개입할 여지는 없음

76)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7조(배당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은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는 배당하지 않는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대법관이 있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사건과 관련 신청사건

77) 물론 3건을 배당할 경우에도 2629사건이 1순위로 지정된다는 전체는 가정에 불과함

류는 주심 배당 시에도 그대로 적용됨(조▣▣ 행정관 대면조사 결과). 따라서 2015. 4. 10.에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배당된 사건이 없었던 이유는 당일 배당할 사건 중에 재판부 배당 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지 당일 의도적으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할 사건을 그렇게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님

- 요컨대 재판부 배당 시에 원세훈 상고심 사건을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분류하지 않고 구속사건으로 분류한 잘못은 확인되나, 이러한 잘못이 의도적으로 특정 재판부 내지 특정 대법관에게 배당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음. 당시 배당담당자였던 조▣▣ 행정관, 배당주관자였던 홍승면 수석은 배당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요청을 받았거나 특정사건에 대한 배당방식을 변경한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음<sup>78)</sup>

(5) 연구관 보고과정에서의 특이사항 여하

- 원세훈 항소심 사건이 2015. 2. 9. 선고되고 그 상고심 기록이 2015. 2. 16. 접수되기 전에 상고심 사건의 보고연구관으로 신▽▽ 연구관이 정해짐
- 그런데 형사상고사건의 경우 일정 분량 이상으로 기록이 방대한 사건은 복잡사건으로 분류되고, 복잡사건은 기록이 접수되기 전에 보고연구관이 지정되기도 하는데, 원세훈 상고심 사건은 공판기록만도 100책 가까이 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복잡사건으로 분류되었고, 그에 따라 대법원 형사근로조의 심층조에서 복잡사건을 담당하던 신▽▽ 연구관이 항소심 선고 직후 보고연구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임(신▽▽ 연구관 대면조사 결과, 홍승면 수석 서면조사 결과, 김현석 수석 이메일)
- 신▽▽ 연구관은 보고연구관으로 지정되자마자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판결 분석에 착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박ⓂⓂ 심의관이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작성하였던 [362], [368] 문건을 전달받아 검토보고서 작성에 참조하기도 하였음(신▽▽ 연구관 대면조사 결과)

78) 민일영 전 대법관은 2015년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원세훈 상고심 사건이 배당되어 홍승면 수석에게 난감함을 표시한 적이 있고, 실제로도 사건 처리 때문에 퇴임 전에 할려고 계획하였던 일정을 취소하기도 하였다고 소회를 밝힘

- 신▽▽ 연구관은 정확한 경위는 기억나지 않으나 어떤 경위로 [362], [368] 문건을 보게 되었고, 검토보고서 작성 시 위 문건들에 기재된 제1심과 항소심 판결의 요약내용이나 표 등이 도움이 될까 하여 박㉠㉠ 심의관에게 이 문건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함(신▽▽ 연구관 이메일). 홍승면 수석은 임종현 기조실장이 참고하라면서 자신에게 이 문건들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하여 이를 당시 형사근로조의 심층조를 담당하던 유해용 당시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다시 전달하였다고 진술함. 이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신▽▽ 연구관은 유해용 당시 선임재판연구관, 또는 그로부터 이 문건들을 다시 전달받았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유진현 당시 형사근로조 조장을 통하여 이 문건들을 보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신▽▽ 연구관은 [362], [368] 문건이 검토보고서의 작성에 미친 영향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신▽▽ 연구관 대면조사 결과), 이 문건들의 주된 내용이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상고심의 쟁점 예상에 관한 박㉠㉠의 심의관의 의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을 분석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반면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검토보고서는 총 270쪽(별지 22쪽 포함)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로서 28쪽과 14쪽에 불과한 [362], [368] 문건과는 폭과 깊이에 있어서 전혀 다른 문건임. 따라서 이 문건들로 인하여 신▽▽ 연구관이 초기에 원세훈 사건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움
- 그러나 보고연구관이 사법행정 담당자가 작성한 문건을 검토보고서 작성에 참조한다는 것은 사법행정 담당자가 가지고 있던 사건에 관한 지식 내지 시각이 소송외적인 통로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부적절함. 특히 임종현 기조실장이 위 문건들을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한 것은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BH의 희망과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삼갔어야 할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됨
- 신▽▽ 연구관은 주심배당이 실시된 2015. 4. 10. 주심으로 지정된 민일영 전

대법관에게 검토경과보고를 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민일영 전 대법관에게 원세훈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보고한 적이 없었음

- 신▽▽ 연구관은 2015. 4. 16. 재판연구관들의 토론을 거쳐 2015. 4. 21. 민일영 전 대법관에게 원세훈 상고심 사건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보고함. 그 과정에서 신▽▽ 연구관은 민일영 전 대법관으로부터 언제까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고, 홍승면 수석으로부터도 작성기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음(신▽▽ 연구관 대면조사 결과,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검토보고서)
- 신▽▽ 연구관은 소부 합의가 있는 후 '전원합의체 준비를 하라'는 민일영 전 대법관의 지시에 따라 2015. 5. 8. 검토보고서에서 재판연구관들의 토론 내용을 빼는 방식으로 전원합의체용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이러한 사실은 소부합의가 있기 전에는 원세훈 상고심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기로 결정된 바가 없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음

(6) 전원합의체 합의과정에서의 특이사항 여하

-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원합의체 합의는 2015. 5. 21.과 2015. 6. 25.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1차 합의가 있는 후 신▽▽ 연구관은 민일영 전 대법관의 추가 보고 요청에 따라 이메일 첨부문서의 증거능력이 배척될 경우 남은 트위터 계정만으로 항소심과 같은 방식을 거쳐 대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경우 대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이메일 첨부문서 중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물인 서면으로 보아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추가보고서를 보고하였음. 신▽▽ 연구관은 민일영 전 대법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보고서에서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파기환송 안으로 5가지의 의견서<sup>79)</sup>, 상고기각 안으로 한가지의 의견서를 첨부하였음(원세훈 상고심 사건 추가보고서)
-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1차 합의에서는 추가보고서에서 보고한 쟁점에 관하여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즉 전원합의체 합의과정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1차 합의과정에서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2차 합의에서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상할 수 없었던 것

---

79) 상고심 판결 초고를 말함

으로 추정됨

- 2차 합의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원일치의 의견이 모아졌는지는 기본적으로 비공개 대상인 합의의 영역임. 다만 원세훈 상고심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걸맞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관하여는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 서명의 유무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진정성을 탄핵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작성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상관없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바, 그 나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몰라도 해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실정법의 명문조항을 달리 확장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설시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2차 합의에서도 위 설시에서 언급하는 유력한 견해가 있었으나, 입법적 해석이라는 비판에 그 견해를 철회한 것은 아닌지 추측만 해볼 뿐임
-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판결에서는 이메일 첨부문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서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서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추가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판단방식은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sup>80)</sup>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없음
- 나아가 민일영 전 대법관, 신▽▽ 연구관 모두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떠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음
- 박병대 처장은 당시 중요사건 재판 진행결과를 담당 심의관 또는 사법지원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을 뿐, 재판부에 대하여 어떠한 관여나 의사전달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임종헌 기조실장 역시 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

80) 예컨대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히 관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 원세훈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후 신▽▽ 연구관은 홍승면 수석의 요청에 따라 판결상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쉽게 요약한 [67] 문건을 작성하였고, 이 문건이 홍승면 수석을 거쳐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전달된 적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상고심 재판이 종료된 후 상고심 판결의 공보차원에서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상고심 판결의 법리를 요약 정리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연구관의 정상적인 업무과정으로 판단됨
- 그 외 전원합의체 재판과정에 대하여 사법행정 담당자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음

#### 라) 파기후 환송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의 관여 여부

##### (1) 제기될 수 있는 의혹

- [60] 문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 진행 상황, 향후 심리 범위 등에 대한 예측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적인 주요사건의 현안보고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그와 같은 보고내용이 재판장과 주심판사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재판의 연결성이 훼손된 적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62], [65] 문건은 사법행정 라인을 통하여 현안보고 차원에서 보고된 문서이거나 보고내용을 정리한 문건으로, 의혹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 현안보고 과정에서 재판부의 관여 여하

- 원세훈 파기환송 후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접수된 이후로 여러 차례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고등법원 공보관과 함께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판진행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 또한 김시철 부장판사는 재판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에 관한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공보관이 소송관계인의 발언이나 언론보도의 성격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이 고지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자료를 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함

- 원세훈 파기환송 후 사건의 당시 주심판사이었던 최○○ 판사는 당시 동료 판사 몇 사람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고충을 호소하였는데, 그들 중 누군가가 기획법관에게 그 내용을 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할 뿐이고, 달리 서울고등법원 사법행정 담당자와 통화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함
- 당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이었던 이㉠㉠ 공보관은 [60]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고, 원세훈 파기환송 후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과는 두세 번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주심판사와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이㉠㉠ 공보관은 당시 김시철 부장판사가 기자들이 문의할 경우 공보관이 재판 진행 과정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주로 재판부에서 어떠한 이유로, 왜 당사자들에게 석명을 요구했는지를 조서를 출력하여 주면서 설명해주었고, 기자들이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함
- 위 진술들을 종합해보면 [60] 문건은 김시철 부장판사와 이㉠㉠ 공보관이 나눈 대화 및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단정키 어려움
- 재판장이 소속법원 공보관에게 계속된 언론 보도에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공개된 법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것으로서 재판부 스스로가 생성한 문서, 예컨대 조서, 석명준비명령 등을 제공하는 것은 재판부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정당한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법관으로서의 재판 자체를 통해 공정성과 적정성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확한 홍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재판 정보에 관한 당사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60] 문건의 작성자는 재판부가 정확한 홍보를 위해 소속 법원의 공보관에게 제공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위로 지득하여 이를 행정처에 대한 현안보고의 내용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재판에 관한 정보

가 재판부가 당초 의도한 정보 제공의 목적과 다르게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유출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안보고자로서는 보고 당시에 재판부에게 그러한 용도로 제공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음. 이 문건의 작성자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제공된 정보를 함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부적절한 행위임

#### 마) 행정처와 BH와의 교감 여부

##### (1) 제기될 수 있는 의혹

- 이미 [59] 문건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행정처가 원세훈 항소심 사건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BH와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판결 선고 전에는 BH의 문의에 따라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정황, 판결 선고 후에는 BH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BH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추가조사위원회의 판단은 문건만을 통한 판단이므로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보고할 필요가 있음

##### (2)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

- 앞서 본 바와 같이 [59] 문건은 정◆◆ 심의관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고, BH 관련 부분은 자신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모두 임종현 기조실장이 알려준 것을 그대로 문건에 포함시켰다고 진술함
- 임종현 기조실장은 원세훈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BH 법무비서관실에서 본인에게 항소심의 전망을 문의한 것은 맞으나 항소기각을 기대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 선고 후에 당시 법무비서관이었던 곽▼▼ 비서관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불만 등 청와대의 동향을 파악한 것 같다고 진술함. 또한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말은 곽▼▼ 비서관으로부터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입장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의

'진의'는 행정처가 해당 재판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함. 그리고 '행정처 입장을 BH 내부에 잘 전달하기로 하고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은 꺾▼▼ 비서관의 말이라고 진술함. 한편 임종헌 기조실장은 일부 언론에서는 본인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잦은 통화를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우병우 민정수석은 카운터파트너를 법원행정처장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본인과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 꺾▼▼ 비서관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부임한 직후인 2015. 2. 5. ~ 6.경 부임인사차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전화한 적이 있고, 항소기각을 기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함.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렵고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맹이가 없어 하나하나한 보고가 될 수 있고, '민정 라인'은 통상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의미하므로 법무비서관인 본인이 그러한 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진술함. 판결 선고 후에도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시 행정처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결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싶고, 마치 행정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진의'를 곡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술함
-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임종헌 기조실장과 꺾▼▼ 비서관은 원세훈 항소심 사건 판결 선고 전후에 전화 통화를 하였고, 과거 임종헌 기조실장과 꺾▼▼ 비서관이 기조실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부임인사차 전화를 하였다는 진술에 수긍되는 점이 없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원세훈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한 것으로 판단됨
- 판결 선고 전에 법무비서관실에서 항소기각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점은 임종헌 기조실장과 꺾▼▼ 비서관의 진술이 일치함. [59] 문건 자체의 표현에 의하더라도 '전망을 문의'한 것이고 '항소기각을 기대한다'는 표현은 문의를 할 당시의 법무비서관실의 태도나 분위기에 관한 것으로 보임
-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렵고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내용을

BH 민정라인을 통해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임종헌 기조실장과 꺾▼▼ 비서관의 진술이 일치함. 그러나 전망을 문의하였다면 그 전망에 관한 대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은 임종헌 기조실장 특유의 워딩 경향, 즉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문구의 선호를 감안하더라도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잘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대답 정도는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BH에 민정 라인을 통하여 보고되었는지는 통상적인 민정 라인의 구성에 비추어 불확실하나, 적어도 임종헌 기조실장과 꺾▼▼ 비서관 사이의 위 통화내용은 BH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 원세훈 항소심 사건 판결 선고 후 우병우 수석이 불만이 있었고, 행정처가 해당 재판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임의로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힘 내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임종헌 기조실장과 꺾▼▼ 비서관의 진술이 일치함
- 이러한 점에서 '진의를 곡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오해를 푸는 것이라는 임종헌 기조실장과 꺾▼▼ 비서관의 진술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도 함. 그러나 '진의를 곡해'하지 말라는 것은 '행정처가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항소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임종헌 기조실장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재판에 관한 사법부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됨
- 일부 언론에서는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함'이라는 표현을 두고 행정처가 BH에게 대법원의 향후 내부 동향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음.<sup>81)</sup> 그런데 [59] 문건에 의하더라도 주어는 법무비서관이고,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도 법무비서관이 향후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임종헌 기조실장과 꺾▼▼ 비서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문구는 법무비서관이 향후 행정처에 BH의 내부 동향을 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함

81) 예컨대 mbc 뉴스투데이 2018. 1. 23.자([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507177\\_22609.html](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507177_22609.html)).

- 또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59]의 문건 중 '상고심 판단이 남아 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므로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쫓 수도 있음.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이라는 문구를 두고 대법원 내지 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재판관을 이용하려 하였다는 비판을 하였음. 이와 같이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처리를 사법부 현안과 연결시키는 내용은 [58] 문건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 [58], [59] 문건의 문구 자체를 두고 볼 때 언론의 비판은 일응 타당함
- 그런데 임종현 기조실장은 [58], [59] 문건은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후 박병대 처장에게 보고하였지만 박병대 처장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고(임종현 차장 대면조사 결과), 박병대 처장은 행정처로서는 상고가 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을 기다리고 지켜 볼 뿐 다른 어떤 관여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때도 '그냥 그렇게 지켜보자'고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밝힘
-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58], [59] 문건은 처장에게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58], [59] 문건의 대응방안이 행정처의 정책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결론은 앞서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처의 관여를 거의 발견할 수 없었던 것과도 부합하는 것임
- 그럼에도 [58], [59] 문건에서와 같이 재판관의 처리를 사법현안의 목표 달성과 연결시킨다는 발상이 행정처 고위간부인 기조실장에 의하여 제안되고 그것이 처장에게 보고되었다는 자체가 재판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도 있는 제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바) 종합 검토

- 제1심,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이 재판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음
- 상고심의 처리기간,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배당 과정, 연구관의 보고 과정, 전

원합의체 합의과정 등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음

- 다만 상고심 보고연구관이 초기에 사건을 파악하면서 사법행정 담당자가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아 참조하기는 하였지만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 파기후 환송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이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음
- 임종헌 기조실장이 원세훈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ㅁㅁ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통화하면서 해당 판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 가.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 1)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69, 391]

##### 가)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정◆◆ 심의관이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2013. 12. 19. 작성 및 보고함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시킴)이 선고된 후 청와대 등 각계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임

##### 나) 주요 내용

- 문서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p>I. 정치권</p> <p>1. 청와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외적] 입장 표명 자제 (중략)</li><li>■ [대내적]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준 것으로 평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민정 라인을 통하여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전달되었음</li><li>● ②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봄</li><li>● ③판결 선고 결과에서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하여 준 것으로 받아들임</li></ul></li></ul> <p>2. 여야 각 당 (중략)</p> <p>3. 기타 (중략)</p> <p>I. 재계 (중략)</p> <p>II. 노동계 (중략)</p> <p>III. 언론계 (중략)</p> <p>IV. 기타 (중략)</p>
---

#### 2) '통상임금 경제적 영향 분석'[409]

##### 가)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정◆◆ 심의관이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2013. 8. 22. 작성 및 보고함

- 통상임금 관련 사건 2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 같은 해 9. 5. 변론 기일의 공개 및 생중계가 결정되자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판단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각 경제주체 주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함

#### 나) 주요 내용

- 재계의 분석 결과는 과대 계상이고, 노동계의 분석 결과는 과소 계상이며 국책 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평가한 후 현실에 전액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고 효과는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고 검토함

#### 나.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대면)

- 정◆◆ 심의관
- 임종헌 기초실장

#### 다. 특별조사단의 검토

- 노회찬 의원이 2018. 3. 20. 국회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위 통상임금 전합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있었고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이 문서를 확인하고도 조사결과 발표에선 누락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H4에서도 발견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391] 문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문건에는 '흡족'이라는 표현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대내적으로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준 것으로 평가하였다는 기재는 있음
- 임종헌 기초실장, 정◆◆ 심의관의 대면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종헌 기초실장이 정◆◆ 심의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청와대의 동향에 대해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이고, 임종헌 기초실장은 당시 카운트파트너인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동향을 들은 것으로 짐작되나 2013년 12월은 청와대 법무비서관 교체시기로 전임자 및 후임자<sup>82)</sup> 모두와 최근 전화통화를 해 보았음에도 정확히 누구로부터 어떤 식의 표현으로 들은 것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함

82) 2013년 12월 이해진 법무비서관이 사임하고, 2014년 1월 김종필 법무비서관이 취임함



- [391] 문건의 내용과 임종헌 기조실장, 정◆◆ 심의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임종헌 기조실장은 법무비서관 등을 통하여 민정수석실(당시 민정수석: 홍경식)에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대내적 평가를 알게 된 것으로 보임
- [409] 문건에 관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은 대면조사에서 차한성 당시 행정처 처장에게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함.
- [409] 문건은 각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어느 한 쪽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문건은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 현안질의에 관한 답변에 사용할 참고자료로서 작성되었다고 보임. 다만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곧 있을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391] 문건과 관련해서 비록 사후적이긴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하여 청와대측에 별도의 설명을 하고 그 평가를 알게 되는 과정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부적절한 행위임

## 9. 긴급조치 손해배상 1심 판결 관련 징계 검토

### 가.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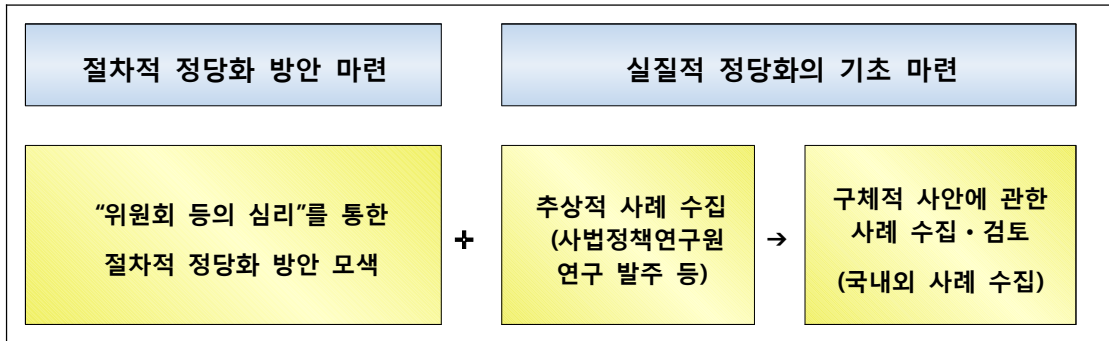
#### 1)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412]

##### 가)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최○○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이하 '최○○ 심의관')이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2015. 9. 19. 작성 및 보고함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그 후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15444 판결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선고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3가합544225 판결 외 1건(재판장 김♣♣)이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동일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된 문건임.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검토계획'(2015. 9. 18.)[396]은 그 초안에 해당함

##### 나) 주요 내용

-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논란이 된 사례[김♣♣ 부장판사(22기), 이○○ 전 부장판사(27기)]를 비롯하여 법관의 재판상 판단이 문제가 되어 국민과 여론의 비난과 비판을 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잘못된 재판결과가 사법부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직무감독을 행할 필요성 자체는 있음. 다만, 재판의 독립이라는 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의 가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직무감독권 행사 시 부정적 영향 발생을 최소화할 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명백'할 뿐 아니라 '중대'한 잘못으로서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물의가 야기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절차적으로 정당·투명하게 행사
- 직무감독권 행사 방안



## 2)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73, 395]

### 가) 문서의 작성 관여자

- 김☆☆ 심의관이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2015. 9. 22. 작성, 보고한 문서임

### 나) 주요 내용

- 문서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바. 김♣♣ 부장판사 사례에 대한 판단**

-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중략)
- [검토] 김♣♣ 부장판사 사례의 경우에 대한 판단
  - 김♣♣ 부장판사는 ①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에 명백하게 불합리한 부분(단순한 의견 차이만으로는 부족)이 존재하지 않고, ② 위 대법원 판례 선고 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③ 해당 사건을 대법원 판례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윤리 위반의 가능성 존재

**3. 대응방안**

- ▣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징계 ⇨ 소극
- ▣ 대법원 판례를 따를 수 없어 (중략) 직업적 양심을 우선시키기 어려운 경우 ⇨ 회피 및 재배당 이용 가능
- ▣ (항소심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선정
- ▣ 법관 연수 강화 ⇨ 법관들에게 판례의 구속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 ▣ 한국형 선례 구속의 원칙 확립을 위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 3) '상고법원입법추진을 위한 BH설득방안'[80]

- 시▲▲ 심의관이 상고법원의 입법추진과 관련하여 임종헌 기초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기초실의 다른 심의관들과 협업으로 2015. 7. 28. 작성·보고함
- 임종헌 기초실장은 정◆◆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자신의 지시로 작성, 보고한 문건인 '현안 관련 말씀자료'(2015. 7. 27.)[70],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2015. 7. 31.)[71]를 시▲▲ 심의관에게 교부하였고, 시▲▲ 심의관은 이를 [80]문건의 내용에 포함시킴
- 이 문건 중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 시▲▲ 심의관은 임종헌 기초실장에게 긴급조치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을 청와대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로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청와대의 설득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는 임종헌 기초실장에 의하여 수긍된 바 있음

Ⅲ. BH 설득의 구체적 방안

1.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 제시

가. 판결을 통한 과거 왜곡의 광정

▣ ①과거사 정립

-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정파간 소모적 대립·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옴 ⇨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

(중략)

●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나.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1) 대면조사

- 임종헌 기초실장
- 김☆☆ 심의관

- 시▲▲ 당시 기획제1심의관
- 정◆◆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 서면조사

- 최⊙⊙ 심의관
- 김▣▣▣ 당시 윤리감사관(이하 '김▣▣▣ 감사관')
- 모□□ 당시 사법정책연구원(이하 '모□□ 연구위원')

## 3) 기타

- '재판상 잘못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의 한계'<sup>83)</sup>
- '재판상 과오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와 그 한계'<sup>84)</sup>
- '2016년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추천(후보)'<sup>85)</sup>
- '2016년도 연구과제 선정, 2014년도 및 2015년도 연구과제 폐지'<sup>86)</sup>

## 다. 특별조사단의 검토

- 경향신문이 2018. 3. 22. 보도한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고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징계한 전례가 없다는 내부 보고가 올라오자 해외에 연수중인 판사들에게 법관 징계 사례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기사에서 언급한 문건은 H4에서 발견된 [395] 문건과 [396] 문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김▣▣▣ 윤리감사관, 김☆☆, 최⊙⊙ 심의관의 진술을 종합하면, 임종헌 차장은 김♣♣ 부장판사의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 위 사례를 비롯하여 잘못된 재판결과에 대하여 직무감독을 행할 필요성과 행사방안을 검토하도록 윤리감사관실에 지시하였으나 최⊙⊙ 심의관이 직무감독권 행사 시 부정적 영향 발생을 최소화할 수 방향으로 엄격한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396] 문건과

83) 수시부과과제 요청 자료로 윤리감사관실 내부 자료임

84) 2016. 3. 31. 사법정책연구원 모□□ 연구위원이 작성한 자료로 윤리감사관실 내부 자료임

85) 사법정책연구원 내부 자료임

86) 사법정책연구원 내부 결재(2016. 2. 19.) 자료임

[412] 문건을 2015. 9. 18.과 같은 달 19. 차례로 보고하자 보고를 중단시키고 기조실의 김☆☆ 심의관으로 하여금 김♣♣ 부장판사의 위 판결을 지목하여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함

- 김☆☆ 심의관은 김♣♣ 부장판사 사례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윤리 위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한 후 일반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징계는 소극적으로 봄이 타당하고 회피 및 재배당 제도 이용,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선정, 법관 연수 강화, 한국형 선례 확립을 위한 사법정책 연구원 연구를 제안함
- 윤리감사관실 및 사법정책연구원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윤리감사관실은 2016. 1. 13. 인사총괄심의관실에 해외 연수 법관들에게 수시부과 과제로 각 국(또는 주)에서의 재판상 잘못(법정언행, 잘못된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권리 미보장, 재판의 지나친 지연, 악의적인 판단, 기타 명백한 법률적인 잘못 등, 가급적 다양한 범주)에 대한 직무감독(주의촉구 등) 및 징계청구의 사례, 그 근거 규정, 판단기준에 관한 관련 논문 등을 수집하여 줄 것과 각 국(또는 주)에서 재판상 잘못에 대한 직무감독(주의촉구 등) 또는 징계청구가 부정된 사례나 근거 규정, 관련 논문 등도 수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른 한편, 정지영 당시 윤리감사제1심의관은 사법정책연구원에 재판상 잘못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의 방법 등을 연구내용으로 하는 '재판의 독립과 관련된 사법행정권의 한계'를 연구과제로 추천하였으나 이는 2016. 2. 18. 개최된 제3회 연구과제 심의 위원회에서 2016년도 연구과제로 선정되지는 않았음
- 다만, 모□□ 연구위원은 2016. 3. 31. '재판상 과오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와 그 한계'라는 20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인 윤리감사관실로 보냈는데, 이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내부적 보고서였으며 사법정책연구위원이던 양시훈 판사가 윤리감사관실로부터 미리 의뢰받아 작성 중이던 연구보고서 초고를 넘겨받아 계속 작성한 것이며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바는 전혀 없다고 진술함

- 최⊙⊙ 심의관의 검토 방향이 직무감독권 행사가 엄격한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극적 방향이고, 김☆☆ 심의관의 검토 방향도 김♣♣ 부장판사 등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인 방향이긴 하였으나, 임종헌 차장은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80]에서 과거사 정립의 주요 판결로 인용한 긴급조치 관련 대법원 판결이 그 선고 후 6개월도 되기 전에<sup>87)</sup> 김♣♣ 부장판사의 1심 판결에 의하여 부정되자 윤리감사관실의 최⊙⊙ 심의관에게 직무감독권 행사를 검토하게 하고 그 방향이 소극적으로 제시되었음에도 재차 기조실의 김☆☆ 심의관에게 위법성, 징계 가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한 것은 재판의 결과를 두고 담당 판사에 대한 불이익을 검토한 것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고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징계한 전례가 없다는 내부 보고가 올라오자 해외에 연수중인 판사들에게 법관 징계 사례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언론의 보도내용은 일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징계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 수준이었고, 해외 연수 법관들에 대한 수시과제 부과나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징계의 가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아니며 특정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법관의 재판상 잘못에 대한 직무감독권(징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한 조치로 평가될 여지도 있음

87) 김♣♣ 부장판사의 위 1심 판결은 행정처가 2015. 8. 6.에 있었던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오찬회동을 통해 상고법원 입법안의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때{(150820)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1.hwp[358]의 기재}로부터 불과 1달 정도 후에 선고된 것임

## 10.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 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관련 제소 관여 검토 등

#### 1)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 가)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74]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4. 12. 19.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결정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인의 의원직 상실결정이 있는 후에 통진당 소속 전 국회의원이 2015. 1. 6.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호로 선관위를 상대로 국회의원지위 확인청구를 하자 이진만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이진만 상임위원'), 김○○ 당시 사법정책심의관(이하 '김○○ 심의관') 등이 TF(연구반)를 구성하여 당시 상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함과 함께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을 검토한 결과물임
- 김○○ 심의관은 정무적 분석을 담당하고 작성 부분을 취합, 정리를 하여 2015. 1. 7. 문건을 완성하여 보고함

###### (2) 주요 내용

- 당시 상황을 유·불리 공존으로 보고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기회이자 GS칼텍스 사건 등 재판소원 사건에서 재판취소 방지를 위한 압박카드로 활용 가능한 점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 처리 모양새를 형성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정무적 분석을 거침
-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은 각하는 부적절이고, 기각 또는 인용이 바람직하나, 기각인 경우에도 정당해산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권한이고, '의원직 상실 여부는 정당해산결정의 부수적 효과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며, 바람직한 기각 이유 설시례, 인용 이유 설시례, 일부 인용 이유 설시례를 제시하고, 각 주문 및 이유 설시례에 따른 영향 및 파장을 분석하였음



나)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내부용·대외비)'[75], '통진당 지역구 지방  
의회의원 상대 제소'[175]<sup>88)</sup>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 김○○ 심의관은 임종현 기초실장 또는 이진만 상임위원의 지시로 2015. 2. 12.경 임종현 기초실장 또는 이진만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진만 상임위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진술함
- 이진만 상임위원은 서면조사에서 이 문건들을 본 적이 없고 양형위원회 근무를 마친 후 작성된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만일 본인이 지시를 하였다면 본인이 보고를 받아야 할 터인데 문서작성일은 2015. 2. 12.에는 이미 서울고등법원으로 전근간 이후라서 보고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 임종현 기초실장은 이 문건들을 보고받았을 것이고, S1에 있었다면 봤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헌법재판소 관련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관이므로 정책결정이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지 못하며 [75] 문건은 김○○ 심의관이 작성을 한 것이 맞으며 김○○ 심의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며, [175] 문건도 김○○ 심의관이 작성하였고 김○○ 심의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함
- [75] 문건은 2015. 2. 13. 14:26에, [175] 문건은 2015. 2. 13. 14:25에 당시 임종현 기초실장 컴퓨터에 저장되었다가 임종현 기초실장이 차장으로 직위를 옮기기 전날 저녁인 2015. 8. 11. 20:07에 S1에 복사된 것으로 보임

(2) 주요 내용

-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각급 선관위가 퇴직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나 지역구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의원들이 패소할 경우 지역구 지방의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행정소송을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제기하도록 하는 방안 및 그 소제기 후보지역까지 검토하는 내용의 내부용·대외비 문서

88) 이 [175] 문건은 아래에서 나오는 [174], [176] 문건과 제목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으나 작성일자는 [175]는 2015. 2. 12., [176]은 2015. 6. 12., [174]는 2015. 6. 15.로 모두 다름

[75]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제소방법(청구취지 및 이유 포함)을 제시하는 설명자료[175]까지 보고함

○ [75] 문건

- 비례대표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의 행정소송이 기각될 경우에도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나 기각의 논리를 일관되게 공직선거법 제 192조 제4항<sup>89)</sup>의 해석(퇴직사유에서 제외되는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과 정당해산제도의 취지에 입각하는 것을 취한다면 결국 지역구 지방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큼
- 논리일관성을 유지할 경우 의원직 유지에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는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 현재 상태를 뒤집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지역구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현상 유지 방안(1안)과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방안(2안)이 있으며 2안에 의할 때의 방안의 개요, 문제점, 소제기 후보지역 검토를 함
-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방안(2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p>2) 제2안 :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시키는 방안</p> <p>▣ 방안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구 지방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끔 하는 방안</li><li>●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지방의원 사이에 세비 지급, 사무실 제공 등 많은 권리관계가 있으므로, 단체장이 지역구 지방의원 상대로 의원직취 부존재 확인 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게끔 하여 의원직이 상실되었음을 소송으로 확인하는 방안</li></ul> <p>▣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원 판결의 논리일관성을 유지하고,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법원의 의도대로 사건을 풀어갈 수는 있으나, 현재 지역구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경우 새로운 분란이 야기될 수 있음</li><li>●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제소를 하게 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이 개입한</li></ul>
---

89) ◆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 소제기 후보지역 검토

-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여당이 단체장인 지역 우선 검토 → 울산과 경남 지역(경기, 충북, 광주전남 배제)
  - 울산광역시 9명
  - 경남 6명
  - 부산 1명
- 다만, 울산의 경우 의원수가 많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 등 진보진영의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부적절할 수 있음
- 경남 지역 중 한 곳이 가장 적절해 보임

○ [175] 문건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음

1. 제소 필요성

-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의원직 상실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근거로 퇴직을 통보하였음
- ◆ 의원직 상실은 소속정당 해산의 본질적 효과로서 헌법재판소의 상실결정이 없더라도 정당해산의 당연한 결과임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구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고, 지방의회 사무실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음
-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고 각종 지원 등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음

2. 구체적인 제소 방법

- ◆ 소송의 종류 : 공법상 당사자 소송(지방의원지위 부존재확인소송)
- ◆ 원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예, 경상남도 △△△시)
- ◆ 피고 :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
- ◆ 청구취지 : 000는 경상남도 △△△시의회 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청구이유 (이하 생략)

다)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상대 제소'[176]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2015. 2. 12. 부임한 이규진 상임위원은 임종현 기초실장으로부터 [175] 문건에 2015. 6. 10.자 문화일보 보도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제소 방법에서 청구이유 주장 1, 2 중 1은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유사하므로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여 이 [176] 문건을 작성하여 2015. 6. 12.경 임종현  
기조실장에게 전달함

(2) 주요 내용(제소 필요성 중 추가되거나 수정된 부분)

-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을 이유로 사유로 당적 이탈 시 퇴직하지 않고, 그 밖의 사유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산'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하므로, 통합진보당과 같이 강제해산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는 것임.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행정직 성격이 강하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면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역시 강제해산으로 당연 퇴직  
(중략)
- ◆ 통진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치조직이 잇따라 결성되고 있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진보진영 원로들이 '민주주의 국민행동'(민주행동) 발족 ⇨ 통진당 재창당 여부에 관심 쏠림(2015. 6. 10. 자 문화일보 보도)
  - 2015. 3. 31. '민주와 노동' 결성 ⇨ 김종훈 전 울산동구청장 등 주축
  - 2015. 4. 29. 경남 민주행동 결성, 2015. 5. 27. 창원민주행동 결성,
  - 2015. 6. 10. 민주행동 창립 총회
    - 공동대표 : 함세웅(신부), 이창복(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철(전 국회의원),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 강병기 전 경남부지사 등 통진당 인사들도 참여
- ◆ 해당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고 각종 지원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창당 움직임 사전 억제 필요
- ◆ 지역구 지방의원 의정활동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의 제소방법이 적절함

라)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174]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 이규진 상임위원이 [175] 문건을 작성한 지 3일만인 2015. 6. 15.경 작성된 문서로서 이규진 상임위원이 작성하여 임종현 기조실장에게 전달하였거나 임종현 기조실장이 스스로 수정한 문건으로 추정됨
- 이 문건의 파일명은 '(150615)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행정소송[bh관련].hwp'임

(2) 주요 내용

- 제소 필요성 부분이 [176] 문건 대비 ◆ 현황, ◆ 법리적 필요성, ◆ 현실적 필요성, ◆ 결론으로 체계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다만 「'통진당의 우회적 재창당' 여부에 관심이 쏠림」, 「해당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창당 움직임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부분이 강조됨

**마)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76]**

(1) 문서의 작성 관여자와 작성 배경

- 문□□ 당시 사법정책심의관이 작성하고 당시 행정처 내에서 헌법재판 관련 부분을 책임지고 있던 이규진 상임위원이 수정하여 2015. 9. 15.경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2) 주요 내용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에 관하여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던 심⊗⊗ 부장판사가 담당재판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용판결을 예상하고 인용판결 시 예상되는 각계의 반응을 예측하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그 대응방안의 하나로 지방 언론의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 공보관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함

(3) 이 문서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p>2. 판결 결과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청구인용'이 예상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안에 대한 직접적 판단 예상됨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적법하게 제기</li> <li>●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 확인(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연수원 동기)</li> <li>● 2015. 9. 14. 오후 늦게 선고기일 변경</li> </ul> </li> <li>▣ 예상되는 '인용' 이유 구성(상세한 내용은 별지 1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소정의 '해산'에는 '자진해산'은 물론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강제해산'도 포함됨</li> <li>● 지방의원의 행정적 성격</li> <li>● 법무부 역시 통진당 해산청구 당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청구를 하지 않았음</li> <li>● 독일의 사회주의제국당 해산 판결 당시에도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위가 상실되지 않았음</li> </ul> </li> <li>▣ 청구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기각' 이유의 실시예는 별지 2 참조)</li> </ul>
--

**바)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200]**

○ 문□□ 심의관은 이규진 상임위원의 지시로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여 2016. 6. 8.경 위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였고, 이규진 상임위원은 이를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

○ 주요 내용

다. 검토

- ▣ 기념비적인 법리를 선언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전합 판결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임
- ▣ 헌법재판소 계속 중인 전합 판결 관련 사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
- ▣ ⇨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는 데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할 것임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

**가) 대면조사**

- 임종헌 당시 기초실장(또는 차장)
- 김○○ 당시 사법정책심의관
- 이규진 상임위원
- 문□□ 심의관

**나) 서면조사**

- 이진만 당시 상임위원
- 심○○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하 '심○○ 총괄심의관')
- 방⊕⊕ 부장판사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74] 문건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이은 국회의원 제기의 지위확인 청구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행정소송 사건에 관하여

전략적·정무적 분석을 거쳐 법원의 판단 방향을 인용 또는 기각이 아닌 각하는 부적절하고 기각의 이유 중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권한을 인정하는 취지의 구성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보고서는 후에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 또는 유사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다만, 국회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재판부는 2015. 11. 12. [74] 문건에서 부적절하다고 제시하였던 소각하 판결을 하였고, 이는 항소기각된 후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속 중인바, [74] 문건이 위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음

- [75], [175] 문건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의 행정소송에서 의원들이 패소할 경우 지역구 지방의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할 경우 지역구 지방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한 후 의원직 유지에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는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행정소송을 행정처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방안으로 검토하고 그 소제기 후보지역까지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제소방법을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까지 제시하고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문건들임
- 이 문건들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이 모두 지위를 상실하게 될 때 남은 지역구 지방의원도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법원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적정한 검토사유로는 수증하기 어려움. 파일명이나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임종헌 기초실장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이 있고, 재판소원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위상과 관련한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중요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사법부 위상의 제고를 도모하면서도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는 통진당의 재창당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청와대 측에 제시함으로써 청와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지위부존재확인소송이 실제로 제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행정소송 제소 관여 문건들이 청

와대에 전달되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그 전달이나 실행 여부를 떠나서 행정처 고위 간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개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75] 문건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는 행위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 할 것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카운터파트너 역할을 하던 임종헌 차장은 위 문건들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검토하는 [176], [174] 문건의 작성도 주도하였음. 다만 이진만 상임위원이 김○○ 심의관에게 [75], [175]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보고받았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음

- [176], [174] 문건은 [175] 문건 중 제소 필요성 부분을 추가 또는 수정하고 통진당의 재창당을 억제할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건으로서, [176] 문건은 이규진 상임위원이 임종헌 기조실장의 요청으로 작성한 문건이고, [174] 문건은 역시 이규진 상임위원이 임종헌 기조실장의 요청으로 작성·전달하였거나 임종헌 기조실장이 직접 수정·작성한 문건으로 보임. 특히 [174] 문건의 파일명에 '[bh관련]'이라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175] 문건에 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적절한 시점에 제시하기 위해서 이 문건들을 작성·보관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 이규진 상임위원도 임종헌 기조실장으로부터 작성 요청을 받을 때 [176] 문건이 대외용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였다고 진술함
- [76] 문건과 관련하여, 임종헌 차장, 이규진 상임위원, 심○○ 총괄심의관, 방○○ 부장판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규진 상임위원은 전주지방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서 '사법부에게 판단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게 얘기를 하여 방○○ 부장판사에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심○○ 총괄심의관은 방○○ 부장판사의 심증을 파악하여 인용될 가능성이 많음을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였고, 이는 임종헌 차장에게도 보고되었음. 방○○ 부장판사는 연수원 동기인 심○○ 총괄심의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응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얘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구체적인 사건



의 담당재판장에게 판결에 어떠한 취지의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는 요청을 하거나 정무적 판단에 기초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재판장에게 연락하고 그 과정에서 재판의 결론에 대한 심증을 파악한 것은 사법행정에 의한 재판 개입사례로서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임

- 심⊗⊗ 총괄심의관은 2015. 9. 16.로 예정된 선고기일 전에 방⊕⊕ 부장판사와 연락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76] 문건과 이규진 상임위원, 방⊕⊕ 부장판사의 진술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움
- [200] 문건과 관련하여, 임종헌 차장과 이규진 상임위원이 사법행정담당자로서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심에 대하여 사법정책심의관으로 하여금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게 한 것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자로서 부적절한 것임. 행정처 차장과 실장이 대법원장에게 조언을 하기 위하여 그러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행정처의 행정작용과 대법원의 재판작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만 재판작용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의 위와 같은 관여는 전원합의체 회부 권한을 가지는 담당 소부 소속 대법관의 재판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큼

## 나. 기타

### 1) 특별조사단에서 발견한 관련 문서

#### 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151]

#####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정◆◆ 심의관이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2014. 12. 3. 작성·보고함. 정◆◆ 부장판사의 진술에 의하면 H4에서 발견된 "(141203) 전교조 집행정지 취소+1.hwp"[311]도 같은 파일일 것으로 보임
- 서울고등법원이 2014. 9. 19.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4. 9. 30. 대법원 2014무548호로 재항고한 상황에서 재항고 사건 진행 방향 예측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 등을 한 문건임

(2) 주요 내용

- 재항고 인용 여부와 시점 등에 따른 득실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서울고등법원의 위 인용 결정 후의 청와대의 입장을 '크게 불만을 표시',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으로 분석하면서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의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에 대한 견제·방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후 재항고 기각은 양측에 모두 손해가 될 것이고, 재항고 인용은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될 것이며 결정 시점은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으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음
- 본안사건의 결론은 해당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도출하면 될 것이고 설령 대법원의 잠정적 결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본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심증이 집행정지 사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이상 청와대의 동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대법원에 의한 하급심 판결 교정 기능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청와대가 대법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만한 사항들로 상고법원의 입법 추진에 적극 협조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음

나)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204, 205, 295, 296]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정◆◆ 심의관은 2015. 2.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전보된 후에도 임종현 당시 기초실장의 지시로 2015. 3. 15. 작성, 보고함
- 2015. 3. 12. 이완구 총리가 '부정부패와 전면전'을 선언하는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였는데 이후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한 문건임

(2) 주요 내용

- 대응 방향 검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의혹이 있음

4. 대응 방향 검토 가. 소극적 측면
--------------------------

(중략)

나. 적극적 측면

- [착안점②] 상고법원안 입법<sup>90)</sup> 등 주요 사법정책 추진 시기를 면밀하게 조율하여야 함
  - '부정부패와 전면전'을 통하여 다소나마 BH와 여권이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은 상고법원안 입법 등 주요 사법정책 추진에 유리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 특히 **검찰·법무부의 득세**로 사법부가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임
  - 하지만 이와 같은 司正 국면은 항상 '양날의 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특히 **검찰·법무부가 실책을 저지르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므로 타이밍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함**
    - 아래에서 언급하는 주요 사건의 처리 시기와의 연관시킬 필요도 있음
- [착안점③] 주요 사건 처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검찰권 적절한 견제 vs. 정권과의 적정한 관계 유지'라는 틀 속에서 **사법부가 적정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 특히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BH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함 ⇨ 관련 사건 처리 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함**
  - **관심 사안의 신속 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끝]

다)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79, 359]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시▲▲ 심의관이 임종현 기조실장의 지시를 받아 2015. 3. 26. 작성하였는데, 아래 내용 중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원세훈 사건에 관한 부분은 임종현 기조실장이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임종현 기조실장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것으로 보임
-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므로 청와대의 입법 협조 획득이 절대적이라는 인식하에, 사법부의 공식적 청와대 접촉창구는 민정수석실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접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봄

(2) 주요 내용

90) 홍일표 의원 등 168명의 국회의원이 2014. 12.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 민정수석의 영향력 약화를 위한 입체적 대응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발상을 전환하여 비서실장, 특보를 설득, 활용하는 우회 전략을 제시함
- 문건 중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재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4. 구체적 접촉·설득 방안

- ▣ 대상자별 성향과 관심사, 정치적 입장, 특보단 회의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접촉·설득 방안 수립
- ▣ 이병기 비서실장
  - (중략)
  - [HOW]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시급성 등 강조
    - (중략)
    - 주요 **관심사항** 관련 원론적 차원에서의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피력**

- ☑ 최대 관심사 ⇨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
  - (중략)
  -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외교적 해결 노력 중 ⇨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대하여 4. 15.까지 결정 보류 요청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대법원 20013다61381, 2013다67587)에 대하여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 (중략)
- ☑ 원세훈 사건
  - ▶적어도 전원합의체의 판단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라) '성완중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152, 300, 304]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박■■■ 심의관이 임종헌 기초실장의 지시로 2015. 4. 12. 작성·보고함
- 2015. 4. 9. 성완중 전 회장이 자살 전 인터뷰 및 유서에서 허태열 전 비서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홍준표 경남지사 등 8명의 정치인에게 금품제공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리스트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한 후 정국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대응방향을 검토하는 문건임

(2) 주요 내용

- 성완중 리스트가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청와대와 협조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리스트 수사와 관련하여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이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주요 관심사건의 처리에서 청와대 측의 입장을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청와대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하며, 관련 사건 처리 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 등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서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4. 對사법부 영향 및 대응방향 분석

가.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한 기본적 영향 ⇨ 부정적

▣ 국정 이슈에서 후순위화

- 입법부 및 BH의 관심 우선순위에서 '성완중 리스트' 및 대선자금 등의 이슈에 압도될 가능성 큼
- 상고법원 등의 이슈가 ①현재로서는 여론의 높은 지지를 등에 업은 것은 아니고, ②국민 실생활에 당장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정치권 인식도 미흡하기 때문임
- 급박한 정치지형하에서 합리적인 장점 설명 및 설득에도 어려움 예상

(중략)

라. 對BH 및 對입법부 협조 및 우호관계 유지 방안

▣ 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협조 방안 ⇨ 당분간 한계

-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 없음

▣ 이미 계속 중인 주요 관심사건 처리 ⇨ BH측의 입장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로 우호적 관계 유지

**☑ 최근 관심 판결**

-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한 판결**
- ▶ **VIP의 세월호 합동분향소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는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명한 판결**

- '검찰권의 적절한 견제 vs. 정권과의 적정한 관계 유지'라는 틀 속에서 사법부가 적정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 특히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BH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함
- ⇨ 관련 사건 처리 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함

● 관심 사안의 적정한 처리 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세계일보 사장 사건 등

마)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80]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시▲▲ 심의관이 기조실 심의관들이 각각 작성한 부분을 취합하여 완성한 문서로서 작성 지시자인 임종현 기조실장에게 2015. 7. 28. 보고함
- 임종현 기조실장은 상고법원 입법안에 대한 청와대 내 견제·반대 분위기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 설득의 최종 골든 타임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청와대 내 부정적 인식 및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2) 주요 내용

- 청와대 설득의 구체적 방안의 첫 번째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중에서도 첫 번째가 '판결을 통한 과거 왜곡의 광정'으로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는데, ①과거사 정립, ②자유민주주의 수호, ③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4대 부문 개혁 중 ④노동, ⑤교육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고 기재함. 이 부분은 정◆◆ 판사가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자료'(2015. 7. 27.)[70],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2015. 7. 31.)[71]의 내용이 그대로 삽입된 것인데, [70] 문건은 【별지 3】 기재와 같음. 여기에는 긴급조치 발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를 부인한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5. 6. 3.자 2014무548호 결정)도 포함되어 있음
- 구체적 설득전략과 관련해서는, 사전 고려사항으로 ①최근의 우호적 분위기 등을 적극 활용하고, ②민정수석을 우회한 비서실장과 특보단 접촉·설득전략은 민정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전폭적 신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궤도 수정이 필요하고 민정수석을 돌파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1

단계로 이명재 민정특보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2단계로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위한 대통령 면담 일정을 활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위 내용 중 '㉠최근의 우호적 분위기 등을 적극 활용' 부분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의혹이 뚜렷이 있는 부분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근의 우호적 분위기 등 적극 활용

-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결과 ⇨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
- 특히,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원세훈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실체 판단 문제가 남아 있어, BH 관심 대상에서 완전 소진되지 않은 상태

☑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평가, 향후 예측 등

- ▶[긍정적 평가] 형소법 제315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명시하는 등 형사법의 증거법리에 충실한 판결
- ▶[부정적 평가] 선거 개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정치적 고려에 기한 회피성 판결, 일부 언론에서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규명
- ▶[향후 심리 및 결과 예측]
  - 원심은 심리전단의 인터넷, 트위터 활동 범위를 확정된 다음, 그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통계적 분석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진 시점과 당시 상황, 게시글의 내용 및 당시 상황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 범위를 판단
  - 대법원 판결로 심리전단의 활동 인정범위가 달라진 범위 내에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종합적, 통계적인 상황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음 ⇨ ∴ 파기환송심에서의 검찰 및 변호인의 추가입증에 의해서 tweet 글의 인정범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결정될 것

- 향후 예정되어 있는 정치인 형사 사건에도 BH의 관심과 귀추 주목될 것 ⇨ 사법부에 대한 강경 일변도 입장보다는 주요 현안 관련 점점 모색을 위한 유화적 태도 보일 가능성 충분

☑ 정치인에 대한 주요 형사사건 현황

-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 ⇨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대법원 계속 중
- ▶박지원 의원 알선수재 사건 ⇨ 2심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상고 제기
- ▶조현룡 의원 뇌물 사건 ⇨ 1심 징역 5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
- ▶박상은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 ⇨ 1심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
- ▶송광호 의원 뇌물 사건 ⇨ 1심 징역 4년 선고, 항소기각

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82]

(1) 문서의 작성 관여자 및 작성 배경

- 임종헌 차장이 2015. 11. 19. 직접 작성하였음
- 19대 국회가 12. 9. 정기국회 종료로 사실상 활동 종료로 예상되고 청와대, 법무부의 반대 기조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입법 성공을 견인할 수 있는 최후의 협상 전략을 모색하되 반대 입장의 진양지인 청와대 극복을 위한 효과적 협상전략 수립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민정수석은 사법부 관련 업무 창구이자 주요 정책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상고심법관 임명권 침해를 이유로 확고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민정수석의 고착된 인식을 변경할 수 있는 특단의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정수석의 기존 반대 입장을 번복시킬 합당한 명분과 계기 또는 실효적 압박 카드가 없으면 부정적 입장 선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명분과 계기로는 법원과 법무부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기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상고법원 안의 문제점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대안으로는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 설치하는 안, 대통령의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실제 검증하기 위한 한시법 제정을 하는 안 등을 제시하고 압박카드로는 '청와대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여기에는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압박 카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

●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옴 ⇨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 3]<sup>91)</sup>



-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 그러나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 비록 원론적 차원의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방이라 하더라도,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상고제도 개선 관련 민정수석이 취해 온 그간의 반대 행보, 이로 인해 제도 개선 좌절로 사법부 및 국민 전체가 입게 될 피해와 충격, 그리고 향후 사법부의 결연한 의지 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법부의 입장을 계속 호소해 나갈 것임을 경고하여, 심리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2) 특별조사단에서 실시한 관련 인적 조사 등(대면)

- 임종헌 기초실장(또는 차장)
- 정◆◆ 심의관
- 박■ ■ 심의관
- 시▲▲ 심의관
- 광▼▼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

## 3) 특별조사단의 검토

- [151] 문건과 관련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 관하여 임종헌 기초실장의 지시로 정◆◆ 심의관은 재항고인용 여부와 재판 시점에 관하여 청와대의 입장을 분석한 후 상고법원의 입법 추진 등을 위하여는 재항고를 인용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고 그 결정시기는 통진당 위헌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하여야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바, 이 문건은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재항고인용의 결론이 있게 되면 후에 대법원의 본안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결론이 유지될 것으로 함부로 관측하고 있는바 이러한 검토는 실행 여부를 떠나 검토 그 자체로 사법행정권

91) 앞서 본 [71]문건과 같은 내용임

의 남용이라 할 것임

- [152] 문건과 관련하여, 성완중 리스트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이것이 상고법원의 입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관측하고 청와대와 협조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영장의 적정한 발부를 통한 협력', '계속 중인 관련 사건 처리 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의 적극 가동'을 들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 등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는 것은 그 실행 여부를 떠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이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저버리고 청와대와 적절하지 못한 유대·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임
- [80] 문건에 사용된 [71] 문건과 관련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은 '이 문건을 2015년 8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민일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회동에서의 말씀자료로 준비한 것은 아니다. 평소 대 국회 업무를 담당하면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고 법원은 꼭 정부 운영에 반대하는 판결만 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 심의관에게 법원이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아니고 국정운영에 도움이 됐다고 인식될 수 있는 판결들을 취합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그 판결들 중에는 상고법원 설립 입법안 발의 도입 이전의 것도 있고 평소 주관이 강한 이인복, 이상훈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인 사건도 있어 행정처가 영향력을 미쳐 그러한 판결을 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좋아할 만한 판결들만 취합한 것이다. 요컨대 BH에 부정적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에 적합한 판결들을 선별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 정◆◆ 심의관은 '2015년 7월경 임종헌 기조실장으로부터 행정부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은 판결들의 예를 정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임종헌 기조실장의 요청에 따라 과거 왜곡의 광정이라는 제목 하에 보고를 하였다. 당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말하면서 현안에 관하여 말씀자료로 사용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고 임종헌 기조실장이 여당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여당 쪽의 입장을 맞춰주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인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 임종헌 기조실장과 정◆◆ 심의관의 이러한 진술들과 더불어, 거론된 대법원 판결들의 주심 대법관 및 선고 시기, 이 문건이 대법원장이나 처장에게 보고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문건은 임종헌 기조실장이 대국회 관계에서 당시 여당측 국회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 정도였던 것으로 보임
- 그밖에 상고법원 입법 추진 관련 문건들과 관련하여 보면, 임종헌 기조실장은 기조실의 심의관뿐만 아니라 기조실에 있다가 일선 법원으로 전보된 정◆◆ 판사 등에 대하여도 상고법원 입법안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성완종 리스트 사건, 대법원장의 대통령 면담 등 중요 이슈 또는 전환점마다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 최종 시점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직접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주요 재판사건 처리 시 청와대와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 '사법부가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에서는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와대가 선호할 만한 재판의 결론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이 있는 후에는 이를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하고, 원세훈 사건처럼 아직 파기환송심에서 실체 판단 문제가 남아 있거나 향후 예정되어 있는 정치인 형사사건 등에서 청와대의 관심과 귀추가 주목되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 대한 설득 또는 압박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기조 역시 유지하고 있었는바 이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할 것임
- 2015. 11. 19.의 임종헌 전 차장 직접 작성의 [82] 문건에서는 그와 같은 조율 역할까지 수행해 왔는데 상고법원 입법안이 좌절될 경우 더 이상 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고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의 표방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다고 분석 및 보고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의 임종헌 전 차장이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 왔고 비우호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령 그러

한 협력이나 압박카드 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대법원이나 행정처가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믿게 하고 앞으로 더욱 심한 재판 관여 내지 간섭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한 문건을 당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것임

### Ⅲ. 조사를 마무리하며

#### 1. 사법권 독립의 헌법 규정과 그 의미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재판에서의 독립을,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함
- 이들 규정은 표현상 차이는 다소 있었지만 제헌헌법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는데, 이는 법관의 특권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임. 즉,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회적·정치적 단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소송당사자, 나아가 사법부 내부로부터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
- 어떠한 사법행정상의 목표도 재판을 수단으로 삼을 수 없고, 사법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재판을 지원하는 데에 있는 것임. 사법행정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재판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재판에 관련된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법관의 신분보장을 헌법으로 선언하면서까지 추구하려고 하였던 재판의 공정성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것임

#### 2. 이번 사태의 배경과 원인

##### 가) 관료제적 경향의 심화

- 대법원은 2010. 12. 6.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2011년부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구분해서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2017년도에 완전 폐지하기로 함. 이는 승진을 의식한 법관이 인사권자에게 종속되고 유능한 법관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서 탈락하면 중도 사직하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관인사 이원화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종래대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인사가 유지되

있음. 그로 인해 일선 법관들이 승진을 위해 대법원의 눈치를 보고 판결하게 된다는 지적이 잇달았음

-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사법부 안팎의 일관된 요청이었음.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의 외형적 다양성이 필요하지만 연간 36,000건 넘게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선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밝힌 이래 업무 효율과 조직 안정을 우선시 하는 종래의 대법관 제청 관행이 되풀이되었고, 그로 인해 대법원의 다양성은 위축되었음. 그 과정에서 일선 법원장들은 대법원장이 제시하는 사법행정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였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음
- 한편 행정처 출신 법관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행정처 차장의 대법관 제청이라는 인사패턴이 점점 강화됨. 그에 따라 차장을 비롯하여 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이라는 구심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주어진 업무에 기능적으로 함몰되는 관료로서의 성향이 강해짐
- 이처럼 사법부의 관료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사법부 내부, 즉 법관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법 상층부로부터의 개별 법관의 독립이 크게 도전받게 되는 상황이 전개됨. 이른바 '튀는 판결'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면서 행정처에서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다 하여 그 판사에 대한 징계 내지 직무감독권의 발동이 검토되기도 하였음
- 한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법원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전문분야연구회의 하나로서 발족되었고, 2015년 7월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의 하나로 이른바 인사모가 제안되었는데, 인사모의 창립멤버 중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 다수 포함됨. 인사모는 재판제도, 사법행정 등 다양한 주제를 비판적으로 토론하는 모임으로 지속하였는데, 2015년 8월에는 상고법원 끝장토론 모임을 갖고 이를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결론을 내기도 하였음
- 이후 인사모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 야심차게 추진하던 상고법원 입법화,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에 대하여 번번이 반대여론을 형성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행정처는 인사모에 대한 동향 파악, 인사모 구성원에 대한 성향 파악 등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보고되고, 인사모의 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로드맵

이 제시되기도 하였음. 결국 인사모에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문제 삼는 공동학술대회를 추진하자 인사모의 폐지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위축을 목적으로 하는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였음.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역시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법행정상의 목표를 최우선시하는 관료제적 성격이 심화된 맥락 하에서 이해될 수 있음

#### 나) 무리한 상고법원 입법화 추진

- 2012년 기준으로 대법원이 처리한 상고사건 수는 36,233건으로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이 1인당 연간 3,000여 건을 처리함. 이는 5년 전인 2008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600건 이상 증가한 것임
- 그로 인해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모순이 심화되자,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2013년 9월경에는 실무지원단에서 상고법원안,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상고심 강화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고법원안이 상고심 강화안으로 채택됨
- 그에 따라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한 각종 TF가 구성되었고, 2014년 6월에는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상고심 기능강화 방안으로 상고심 법원 즉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건의문을 의결함. 그 무렵부터 상고법원 입법화는 행정처의 최우선 순위 정책목표가 되었고, 행정처의 역량이 이를 위해 집중 투입됨
- 행정처는 상고법원안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상고법원안을 찬성하는 칼럼을 언론에 기고하도록 하는 등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은 기울였으나 상고법원안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작 사법부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진정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상고법원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내부에서 등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이를 통제하려 함
-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4년 행정처의 인적 구성을 정비하여 상고법원 입법화 추진에 나섬. 그 노력의 결실로 2014년 12월 국회의원 168명이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된 6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으나, 당초 계획하였던 2014년 내 입법화에는 실패함

- 19대 국회의 임기를 고려할 때 2015년이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한 마지막 해임을 인식하고 2015년에는 행정처의 입법화 전략과 추진이 더욱 치열해짐.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2015년 8월에는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을 차장으로 승진시켜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상고법원 관련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됨
- 임종헌 기조실장 내지 차장은 오랫동안 최고 수준의 실무책임자로서 상고법원 입법화에 관여하여 왔음. 그러나 상고심의 개선 내지 강화라는 정책목표가 너무나 시급하고 절박한 것이라는 점에만 몰입한 나머지 원칙에 위배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그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학술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법관의 기본권이 침해되기도 하였음

#### 다) 행정처 고위 간부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폐단

- 임종헌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기조실장으로, 그 이후부터 2017. 3. 퇴직할 때까지는 차장으로 총 4년 7개월 남짓 행정처에서 근무함. 그 이전에도 임종헌 차장은 1997년과 1998년에는 송무국 송무심의관으로, 2005년에는 기조실 기획조정심의관으로, 2006년과 2007년에는 등기호적국장으로서 근무하기도 하였음
- 임종헌 차장은 행정처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면서 남다른 열정과 강한 추진력으로 근무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오랫동안 사법행정 업무에만 종사함으로써 일선 재판현장에서 근무하는 법관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재판의 사법행정'에 대한 우위'라는 원칙, 즉 사법행정은 재판을 지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사법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수단으로 삼거나 법관의 동향을 파악할 수도 있으며 특정 연구회의 활동을 통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임
- 또한 임종헌 차장은 기조실장에서 곧바로 차장으로 승진하였던 관계로 종래 자신과 함께 기조실에서 근무하던 심의관들에 대하여 기조실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지



원실,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다른 부서의 심의관들에 대하여도 주저 없이 지시 하기도 하였음. 나아가 기조실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법원으로 전근간 전 심의 관들에 대하여도 보고서의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였음. 그러한 과정에서 임종 현 차장이 가지고 있었던 사법행정 우위의 사고는 기조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 서에도 점차 확산된 것으로 보임

- 특히 임종현 차장이 차장으로 보직변경된 뒤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패턴에 비추어 볼 때 임종현 차장이 대법관으로 제청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심의관들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 그에 따라 심의관들은 임종현 차 장으로부터 보고지시를 받게 되면 임종현 차장이 선호하는 문서 스타일, 예컨 대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문구, 정세 분석과 정무적 판단, 극단적인 방안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대응방안 검토, 로드맵의 예시 등을 보고서에 넣 으려고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의관들이 평소 생각하였던 헌법적 가치나 원칙은 무시되거나 외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이번 사태에 서 확인된 문서들 중 실제 실행된 사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지만 작성된 문서들이 주는 충격이 큰 이유는 이와 같은 임종현 차장이 선호하는 문서 스 타일과 무관치 않음

### 3. 특별조사단의 총평

- 특별조사단은 법관이 가지는 보편적인 가치와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를 철저 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하였음.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진영 논리는 배제하려 하였고, 사법부 안팎의 환경이 바뀌더라도 보편적으로 관철 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였음. 근거 없이 선부르게 의혹관련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자들의 책임을 단정하지 않았고, 의혹 관련자들에 대 하여도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였으며, 강제력이 없는 조사이긴 하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사방법을 시도하려고 하였음
-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의혹은 행정처가 법관들의 뒷조사를 한 파일이 기조실 컴퓨터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였고, 조사한 결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 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하였음은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들에 대하여 조직

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음

- 그러나 재판과 관련하여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나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하였다는 점만으로도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사법부는 과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외압에 저항해온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때마다 그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 내에 견고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 왔음.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선 재판 현장에 있는 판사들을 지원하여야 할 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하였고, 아무리 보고서에 불과하더라도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였음. 또한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미명 하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음
- 사법부의 권위는 좋은 재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에 근거하는 것임. 이번 사태는 주권자인 국민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며 사법부에게 부여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사법부 자신이 부인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그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킨 것이라고 할 것임
-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출발은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의혹을 남김없이 국민에게 밝히고 가혹한 질책과 비판이 있더라도 낮은 자세로 받아들이며 깊은 반성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민이 소망하는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외에는 사법부가 국민의 용서와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기록이어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 모

두가 공감하고 공유하는 기록이어야 함. 앞으로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관 모두가 이러한 참회에 동참하여야 하고,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임

#### 4. 특별조사단의 제안

##### 가) 사법부 관료화의 방지책이 추진되어야 함

- 이번 사태의 배경은 사법부의 관료화가 심화되었다는 데에 있음.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상고법원의 입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정처의 의사결정 구조는 더욱 수직적으로 변화했음
- 사법부 주요 정책의 결정은 수평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오류가 줄어들고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며, 하급심의 풍요롭고 다양한 판단을 통해 대법원 판례는 사회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임
- 앞으로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조직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사법부 관료화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나)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법행정권 남용사례를 분석하여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실체적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사법행정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권고의견을 제시할 것을 제안함

##### 다) 재판의 독립이 침해된 경우 이를 시정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임. 따라서 일선 법관들의 재판상 독립이 침해된 경우 이를 다투고 시정할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난 2009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개입 파문이 있을 후 설치할 것이 검토된 바 있는 '재판독립위원회'에 관하여 보다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일선 재판현장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나가야 할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제안함

**라) 재판의 독립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이번 조사를 통해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재판의 독립에 관해서는 법관들 사이에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 법관연수 등을 통해 재판의 독립에 관해서 자율적으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마) 의혹관련자들에 대한 인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 특별조사단은 조사대상이 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대하여 형사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와 관련한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인터넷 익명게시판 게시글과 관련한 업무 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사항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함
- 특별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혹에 관련된 행위자 별로 관여 정도를 정리하여 징계청구권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예정임
-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과거 잘못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가지는 한편 치유와 통합을 통해 사법부의 미래를 함께 개척하자는 의미도 가짐. 이를 위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원 감사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적절한 조치로 나아갈 것을 제안함

## <결 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로 반드시 지켜야 할 불가침의 영역이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권으로부터 이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을 다해온 선배 법관들의 땀이 배어 있는 신성한 영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가 법관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기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에 안주함으로써 관료제적 경향을 더욱 심화시킨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① 대법원장 임기 내에 달성할 최고 핵심과제로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 과정에서 목표 달성에만 몰두하여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에는 눈 감아버린 점, ② 그 입법 추진 과정에서 내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를 수렴하여야 할 의사로 보기보다는 걸림돌로 보고 비판의 핵심그룹인 법관들을 분류하여 제어·통제하려 하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의 태도를 보이는 청와대에 대해서는 오히려 입법 과정에서 협조를 얻어야 하는 동반자로 보고 재판의 결과를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을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 점, ③ 법관들의 자발적인 학술단체와 그 소모임에 대하여 지나치게 경계하고 해당 법관들의 학술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관여함으로써 법관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를 한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의 지나친 장기간 근무로 인한 폐단은 이와 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조사단은 법관이 가지는 보편적인 가치와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의혹은 행정처가 법관들의 뒷조사를 한 파일이 기조실 컴퓨터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였고, 조사한 결과 사법행정에서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하였음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

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 관련하여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나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성향 등을 파악하였다는 점만으로도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나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사법행정과 재판 작용의 엄정한 구분을 유지하는 한편, 재판의 독립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관 사회 전체가 재판의 독립을 위해 서로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와 함께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법부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아감으로써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그리고 ‘좋은 재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신 법원 구성원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조사 보고서 (별지)

2018. 5. 25.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첨부2. 핵심 회원 추정 자료**

1. 간부진

**2016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구성(2016. 3. 1.기준)**

			업무	무리미	비고
<b>회장</b>	이규진	18			
<b>운영위원 (6) 가나다순</b>	이	16	연구회 운영 방안 제시, 논의		
	고	23			
	최	28			
	박	30			
	방	33			
	진	39			
<b>간사</b>	정	27			
<b>총무(팀장) (5) 가나다순</b>	나	32	학술	이 (34), (35), 유 (39), 강 (41), 최 (41), 박 (42), 박 (43)	팀장에게 팀 구성 자율성 보장
	김	32	기획	윤 (34), 김 (36), 박 (37), 이 (37), 홍 (38), 공 (40), 조 (40), 김 (37)	
	진	36	홍보	윤 (38), 문 (37), 김 (42), 김 (40)	
	이	31	정책	김 (30), 송 (38)	
	이	37	대외협력	정 (39), 김 (42), 서 (39), 이 (41)	
<b>분과위원회 (소모임) 위원장 무순</b>	강	35	법판론	오 (39)	○분과위원회의 수는 제한 없음 ○5인 이상 구성, 신고 시 승인 ○위원장, 무리미는 자체 협의 결정
	강	35	독서모임	박 (39)	
	임	25	인산회	오 (39)	
	안	34	난민	하 (38)	
	김	32	표현의 자유	류 (40)	
	김	25	소수자 인권	윤 (38)	
	강	35	문화예술	여 (42)	
김	30	인사모	박 (31)		
<b>편집위원회 위원장</b>	박	36	재판자료집 발간	임 (32)	○위원장, 편집위원은 운영위 거쳐 임명 ○위원장에게 구성 및 운영 자율권 보장
<b>지역위원회 (지역분과위) 위원장 무순</b>	송	24	광주전남	공 (40)	○지역위원회의 수는 제한 없음 ○5인 이상 구성, 신고 시 승인 ○위원장, 무리미는 자체 협의 결정
			대전	조 (40)	
	김	29	부산	김 (37)	
			서울중앙	○매뉴얼모임: ○점심모임:	
		서울남부			



2. 인사모 회원

가. 최초 주도

순번	법관	기수	소속	비고
1	김○○	24기	서울중앙	·인사모 총무(사퇴) ·우리법연구회 회원
2	이○○	26기	서울동부	·인사모 최연장자(좌장격)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 ·우리법연구회 동조
3	이○○	27기	수원	
4	이○○	27기	서울고	·우리법연구회 회원
5	정○○	27기	연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6	김○○	30기	광주	·인사모 분과위원장 ·우리법연구회 회원
7	김○○	30기	대구	
8	김○○	30기	전주	·연구회 창립 주도 ·우리법연구회 동조
9	박○○	31기	서울중앙	·인사모 총무 ·15.04.16. 코트넷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퇴 요구 게시 ·우리법연구회 회원
10	박○○	31기	서울고	·인사모 결성 최초 제안 ·우리법연구회 회원
11	신○○	31기	서울중앙	
12	이○○	31기	대법원	
13	송○○	34기	서울중앙	·16.02.01. 코트넷에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화 건의문 게시 ·우리법연구회 회원

나. 후속 가입

순번	법관	기수	소속	비고
1	김♠♠	25기	인천	·14.12.15. '횡성한우' 판결 비판으로 정직 2월 ·14.09. 원세훈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글 게시
2	이○○	32기	서울중앙	·사법행정 책임자들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는 2015년 평정 기재

순번	법관	기수	소속	비고
3	류○○	40기	춘천	·15.05.17. 박○○ 판사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퇴 요구 게시글에 대한 지지글 게시

다. 동조그룹(추정)

순번	법관	기수	소속	비고
1	사○○	23기	서울중앙	·16.02.22. 의원면직 ·우리법연구회 회원
2	문○○	37기	서울중앙	
3	홍○○	38기	서울중앙	

라. 창립회원

순번	법관	기수	가입일	현 소속	비고
1	김○○	14	2011-08-31	대구	
2	김○○	15	2011-08-31	춘천	우리법연구회 회원
3	김○○	22	2011-08-31	서울중앙	우리법연구회 회원
4	김○○	24	2011-08-31	서울중앙	우리법연구회 회원
5	문○○	26	2011-08-31	서울남부	우리법연구회 회원
6	이○○	26	2011-08-31	서울동부	우리법연구회 동조
7	이○○	26	2011-08-31	서울동부	
8	이○○	26	2011-08-31	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9	이○○	27	2011-08-31	서울고등	우리법연구회 회원
10	김○○	28	2011-08-31	대전	
11	선○○	28	2011-08-31	수원	
12	박○○	28	2011-08-31	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13	허○○	28	2011-08-31	의정부	
14	최○○	28	2011-08-31	인천	
15	이○○	29	2011-08-31	광주	
16	최○○	29	2011-08-31	서울가정	
17	신○○	29	2011-08-31	청주	
18	이○○	30	2011-08-31	대법원	
19	김○○	30	2011-08-31	부산가정	
20	한○○	30	2011-08-31	부산	
21	김○○	30	2011-08-31	전주	우리법연구회 동조
22	김○○	31	2011-08-31	대전가정	

23	강○○	31	2011-08-31	서울중앙	우리법연구회 회원
24	이○○	31	2011-08-31	서울중앙	
25	박○○	32	2011-08-31	대구가정	
26	이○○	32	2011-08-31	서울중앙	
27	정○○	33	2011-08-31	서울남부	우리법연구회 회원
28	김○○	33	2011-08-31	서울중앙	
29	서○○	35	2011-08-31	춘천	
30	전○○	36	2011-08-31	수원	우리법연구회 회원
31	남○○	39	2011-08-31	전주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중략)

## 3. 결정 내용 ⇨ 재항고 인용 여부

### 가. BH 입장 분석

가) 인용 결정 후 BH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

(1)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 ⇨ '비정상적 정상화' 필요한 것으로 입장 정리

나)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현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함

다) 만일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측

(1)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ex.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에 대한 견제·방해가 예상된다

### 나. 대법원 입장 분석

가)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지는 않고 있음

(1) 분명 중요 사건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기도 하나, 사법부 입장에서 최대 현안으로 보는 것은 아님 ⇨ 많은 사건 중 하나(one of them)에 불과함

나) 현재 대법원의 최대 현안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 ⇨ 이에 대한 BH를 비롯한 각계의 협조·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1) 특히 BH 주요 보좌 라인의 親검찰·법무부 성향으로 인하여 BH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가) 법무부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 다. [검토] 재항고 인용 결정 ⇨ 양측에 원인의 결과가 될 것임

		BH	대법원
재항고 기각 결정 시	전교조	- 최대 현안 ⇨ 상당한 손해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상고법원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 최대 현안 ⇨ 상당한 손해
재항고 인용 결정 시	전교조	- 최대 현안 ⇨ 상당한 이득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상고법원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 최대 현안 ⇨ 상당한 이득

가) 재항고 기각은 양측에 모두 손해가 될 것이고, 재항고 인용은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될 것임

(1) 재항고 인용의 경우 양측에 손실은 크지 않을 것임

(가) BH ⇨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지원하는 데에 별다른 손해·출혈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 아님

(나) 대법원 ⇨ 전교조 사건 선고로 인하여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것 아님

#### 4. 결정 시점

##### 가. 고려 사항

가)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에 관한 분석 필요

(1) 결정 시점에 따라 劇的 效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임

(2) BH는 대법원과 헌재라는 두 사법최고기관이 어려운 국정 현안에 얼마나 조력·협력하는 지 여부에 따라 양 기관을 평가할 것임 ⇨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가) 평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부정적 반대급부가 주어질 것임

나) 주요 사법 현안의 처리 일정 최우선적 고려

(1) 특히 함께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상관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2)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음 ⇨ 그러나 연내 선고 가능성 높음

(가) 다만, 12. 11.~14.경에 강일원 재판관의 해외 방문 일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 또는 직후의 목요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12. 18.(목) 또는 다소 이례적이지만 12. 10.(수)이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됨

(나) 한편,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선고기일 통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데, 선고기일 얼마 전에 통지를 하는지에 관하여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함 ⇨ 일단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확인해주기로 하였고, 여타 비공식적인 확인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음

(3) 한편, 본 사안과 관련 사건인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결정 시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가)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결정 시점보다 늦어질 경우 효과 반감 우려

다) 기타 주요 정치 일정 고려

(중략)

##### 나.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가) 최우선 고려 요소인 현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선고기일 이전과 이후를 대상으로 분석함

(1) ①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은 12월 중순[12. 10.(수) 또는 12. 18.(목)]일 가능성이 높고, ②그 결론은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제함

나) [I안]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

(1) 아직 현재의 선고 이전이므로 대법원의 긍정적 이미지가 독자적으로 부각될 수 있음

(가) 단,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일수록 주목도도 높아지는 것임[High Risk, High Return] ⇨ 지나치게 빠른 시점에 결정하는 것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2) 다만, 이후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에 가리어 긍정적 효과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가) 하지만 逆으로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측의 반발도 통진당 선고와 함께 가라앉을 가능성이 큼 ⇨ 오히려 통진당 선고에 임박한 직전 시점으로 결정 시점을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이 됨

(3) 또한 국회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12월을 넘어서지 않는 시점에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야당의 조직적인 반발을 피할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함

다) [2안]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후에 결정

(1) 만일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 결과가 BH·법무부의 기대와 달리 기각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 이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더욱 극적 효과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음

(가) 현재 현재 수뇌부는 검찰 출신, 특히 이른바 ‘공안 검사’ 출신임 ⇨ 박한철 소장, 안창호 재판관

(나) BH·법무부와 상당한 교감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

(2)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 사건의 무게·중요도 등을 고려하면,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 이후에는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 결정이 그다지 주목받기 어려움

(3) 또한 국회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12월 이후에는 이전에 비하여 야당의 조직적인 반발 가능성이 높아짐

(4) 게다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재가 교원노조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서둘러 선고할 수 있음 ⇨ 그 선고 이후에는 아무런 주목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현재의 결정에 대법원이 기속되는 듯한 매우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할 수 있음

다. [검토]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 ⇨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가) 선고 시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 있음

## 5. 후속 조치

가. 반발 세력 무마

(중략)

나. 본안 사건 처리

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어차피 1심 선고도 8개월가량 소요되었음

(가) 2013. 10. 24. 접수 ⇨ 2014. 6. 19. 선고

(나) 곧 법원 정기 인사 시기도 다가옴 ⇨ 해당 재판장(민중기 수석부장판사) 교체(법원장 발령) 가능성 높음

(2) 긍정적 이미지를 최대한 지속시킬 수 있음

나) 결론은 해당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도출하면 될 것으로 보임

(1) 재판장이 교체될 경우 본안에 관한 화해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도 가능 ⇨ 사회적 이슈화된 문제의 대승적 해결 시도 이미지 과시

(가) ‘전교조는 문제가 된 해직 노조원 9명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하여 법내 노조로서 요건을 충족한 후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와 같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조정안 제시

(2) 만일 결국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에도 재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가) 결정문에 결정 이유가 기재되는 경우 더욱 그러할 것임

(3) 설령 대법원의 잠정적 결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본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심증이 집행정지 사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이상 BH 등의 동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임

(가) 오히려 대법원에 의한 하급심 판결 교정 기능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다. 협조 요청 사항

가) BH가 대법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1)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적극 협조 ⇨ 법무부의 반대 무마

(2)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 적극 협조 ⇨ 내년 초 예정

(3) 재외 공관 법관 파견에 적극 협조 ⇨ 외교부의 긍정적·전향적 태도 유도

(4) 한정위헌결정 관련 적극 협조 ⇨ 헌재와 의견 대립 시 협조 요청

(5) 법관 정원 증원 추진에 적극 협조 ⇨ 약 30명의 추가 증원 등에 국회·기재부의 적극 협조 유도 [끝]

# 현안 관련 말씀 자료

對 外 秘

2015. 7.

기획조정실

## 라. 과거 왜곡의 광정

- (1)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 (가) ①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
    - ① 아래 ① **과거사 정립**,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 (나) ② **미래지향적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 **국가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음
    - ① 아래 ③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4대 부문 개혁 중 ④ **노동**, ⑤ **교육**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 (2) ① **과거사** 정립

- (가)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정파간 소모적 대립·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옴 ⇨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

### (나)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 ①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보고서만 믿고 국가 배상을 결정해선 안 되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함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 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차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음**

**☑ 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4다234155 판결**

▶ 과거사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음

### (다)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 ①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3) ㉓ **자유민주주의** 수호

(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  
⇒ **혼돈·경시되어온 국가관의 바른 정립** 노력

(나) **이석기 전 의원 사건**

①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폭동과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죄로 중형을 선고**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선동한 행위를 **내란선동죄로 인정함**

(다)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

①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를 이끌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을 걸**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 이 사건 빨치산 추모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이고,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인솔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참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 ㉔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가) 경제 관련 사건의 처리 ⇒ 단순한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

(나) 한편, 첨예한 갈등·대립의 존재로 말미암아 정당한 결론이라도 이를 도출하는 과정·절차가 소홀하면 또 다른 소모적인 논쟁을 초래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대법원은 공개변론 중계방송 등을 통하여 **절차적으로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모색**하였음

(다) **통상임금 사건**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약 38조 원으로 추산됨)**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함**

❖ 특히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통하여 그러한 결론이 **최소한의 혼란 속**

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임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도 정기상여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시킴

(라) 키코 사건

① 금융기관과 기업이 침해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역시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실시하는 등 절차적인 노력을 통하여 양측이 승복할 수 있는 결론 도출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

① 철도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된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하여 이를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킴

**☑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여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함

(5) ④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

(가)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은 노동 부문 ⇨ 노동 부문의 선진화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

(나) KTX 승무원 사건

❖ 공공 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계된 사안에서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함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 KTX 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고,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다) 정리해고 사건

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 악기 제조업체인 콜텍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

(라) 철도노조 파업 사건

① 노사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립함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 철도공사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측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철도노조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

(6) ⑤ 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관련

(가)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건이 다수 존재함 ⇨ 역시 **4대 부문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함

(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①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 표현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①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과, 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통보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함**

**☑ 대법원 2015. 6. 3.자 2014무548호 결정**

▶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놓음**

[끝]

# 조사 보고서 (첨부)

2018. 5. 25.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첨부 1.

특별조사단 인적 조사 목록

순번	이름	현재 소속	직위	관련 법원 등	당시 보직	관련 기간	대면 조사	서면 조사	기타 조사
1	곽▼▼	퇴직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2015. 2. ~ 2016. 5.	대면		
2	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1, 2심의관	2015. 2. ~ 2017. 2.	대면		
3	김★★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2013. 2. ~ 2015. 2.	대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법관	2015. 2. ~ 2017. 2.			
4	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2015. 2. ~ 2017. 11.	대면		
5	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2013. 2. ~ 2015. 2.	대면		
6	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1, 2심의관	2013. 2. ~ 2015. 2.	대면		
7	노◆◆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제1, 2심의관	2015. 2. ~ 2017. 2.	대면		
8	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2015. 2. ~ 2017. 2.	대면		
9	박■■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2015. 2. ~ 2017. 2.	대면		
10	방△△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제1, 2심의관	2016. 2. ~ 2018. 2.	대면		
11	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1, 2심의관	2014. 2. ~ 2016. 2.	대면		
12	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	2013. 2. ~ 2016. 2.	대면		
13	이규진	서울고등법원(사법연구)	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015. 2. ~ 2017. 5. 1.	대면		
14	이민걸	서울고등법원(사법연구)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2015. 8. ~ 2017.11.8.	대면		
15	이▷▷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 2. ~ 2015. 2.	대면		
16	임종현	퇴직	변호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2.8. ~ 2015.8.11.	대면		
				법원행정처	차장	2015.8.12. ~ 2017.3.20.			
17	임◎◎	수원지방법원(해외/휴직)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1, 2심의관	2016. 2. ~ 2018. 2.	대면		
18	정◆◆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2013. 2. ~ 2015. 2.	대면		

순번	이름	현재 소속	직위	관련 법원 등	당시 보직	관련 기간	대면 조사	서면 조사	기타 조사
19	조■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사	법원행정처	형사접수 행정관	2015. 2.	대면		
20	김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2015. 2. ~ 2017. 2		서면	
21	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2014. 2. ~ 2016. 2		서면	
22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 2. ~		서면	
23	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3. 2. ~ 2016. 2.		서면	
24	김	퇴직	변호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2016. 2. ~ 2018. 2		서면	
25	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해외/파견)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6. 2. ~ 2018. 2.		서면	
26	박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2013. 2. ~ 2015. 2.		서면	
27	방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 2. ~ 2018. 2.		서면	
28	심	퇴직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2015. 2. ~ 2016. 7.		서면	
29	심준보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2016. 2. ~ 2017. 11.		서면	
30	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3. 2. ~ 2015. 2.		서면	
31	이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2011. 2. ~ 2013. 2.		서면	
32	이진만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013. 2. ~ 2015. 2.		서면	
33	이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2015. 2. ~ 2016. 2.		서면	
34	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4. 2. ~ 2016. 2.		서면	
35	정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2014. 2. ~ 2016. 2.		서면	
36	조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공보관	2016. 2. ~ 2018. 2.		서면	
37	조	서울중앙지방법원(휴직)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2015. 2. ~ 2017. 2.		서면	
38	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2014. 2. ~ 2016. 2		서면	
39	최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법관	2014. 2. ~ 2015. 2.		서면	
40	최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015. 2. ~ 2016. 2.		서면	
41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2016. 2. ~ 2017. 8.		서면	

순번	이름	현재 소속	직위	관련 법원 등	당시 보직	관련 기간	대면 조사	서면 조사	기타 조사
42	홍◆◆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2014. 2. ~ 2016. 2.		서면	
43	고영한	대법원	대법관	법원행정처	처장	2016. 2. ~ 2017. 5.			방문청취
44	민일영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대법원	대법관	2009. 9. ~ 2015. 9.			방문청취
45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2014. 8. ~ 2017. 2.			서신
46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 2. ~ 2018. 2.			서신
47	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011. 2. ~ 2018. 2.			서신
48	박병대	퇴직	전 대법관	법원행정처	처장	2014. 2. ~ 2016. 2.			서신
49	정○○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5. 2. ~ 2017. 2.			서신

첨부 2.

조사결과 주요파일 종합(410개)

순번	디스크	암호	구분	파일 상태	지정 번호	파일명	등급	중복
1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	(150819)인사모관련[실장회의용](이규진)	a	
2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	(150823)인사모대응방안(기조심의관)	a	
3	S1	암호	검색어	일반	1	(150823)인사모대응방안종합[박■■■]	a	2
4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	(150915)인사모보고-3(이규진)	a	
5	S1	암호	검색어	일반	1	(160407)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인사모관련추가)[박■■■]	a	
6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	(160412)인사모이동연등[이규진]	a	
7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	(170112)인사모대응방안(4)[이규진]	a	
8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	제1회모임정리[박○○]	a	
9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	(160205)인사모1월모임논의정리(평택지원이○○판사)	b	
10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	(160205)[인사모]판사의사법행정참여방안1월모임 후기(평택지원이○○판사).pdf	c	
11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	새로운소모임구성및경과안내[박○○]	c	8
12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2	(160407)전문분야연구회일반개편방안[박■■■]	a	
13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2	(170206)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안내말씀 [이규진]	a	
14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2	(170210)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안내말씀 [이규진]	a	
15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2	(170213)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2 [전문재판부 추가]	a	
16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2	(160308)전문분야연구회 구조개편방안(초안)	a	
17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2	(150917)민판연대응방안검토	b	
18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2	(170220)전문분야연구회발전방안마련을위한의견수렴계획등에대한안내말씀	c	
19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202)송○○판사건의문검토(김☆☆)	b	
20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405)사법행정위원회안건관련보고(임종현수정)[임●●]	b	
21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407)사법행정위원회향후운영계획(차장의견반영수정)[임●●]	b	
22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408)사법행정위원회향후운영계획(차장의견반영)[심⊗⊗]	b	21
23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415)사법행정위원회관련추가정책결정필요사항 검토[심⊗⊗]	b	
24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428)안건선정후회의진행절차검토[임●●]	b	
25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1110)사법행정위원회성과분석및향후운영방안(기초검토)[김☆☆]	c	
26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4	(150226)이판사판계시글초안[정◆◆]	a	
27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4	(150302)이판사판카페동향보고	a	



순번	디스크	암호	구분	파일 상태	지정 번호	파일명	등급	중복
28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4	(150303)이판사판카페동향보고2	a	
29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4	(150309)인터넷활동대응방안권고의견대비	a	
30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4	(150406)인터넷활동동향	a	
31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4	(150814)홍○○판사와법원장면담후속조치	a	
32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4	(150815)차장지시사항(이판사판야단법석)	a	
33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4	150724카페_설득논리_및_대응책[1]	a	
34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4	150724카페_설득논리_및_대응책[2]	a	
35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5	(150706)내부반대동향대응방안	a	346
36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5	(150706)상고법원에대한사법부내부이해도심층화방안	a	
37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5	(150813)차○○판사게시글관련동향과대응방안	a	
38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5	(150922)차○○시사인투고관련대응방안(김☆☆) (대외비)	a	
39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5	(160406)차○○판사재산관계검토[김■■]	a	
40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5	(141106)김♠♣부장징계대응방안보고	b	
41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5	(150707)상고법원내부인식	b	
42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5	(150818)합의부중심조직문화리빌딩방안	b	
43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5	(150825)내부여론전반대응방안	b	
44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5	(160905)양성평등상담위원제도시행관련특이사항 (차○○)[임○○]	b	
45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5	(150821)차○○기고보고서(감사관)	c	
46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6	(160307)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의장경선대응방안 (대외비)[김☆☆]	a	
47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6	(160418)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현황및전망[김★★]	a	
48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6	(160922)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경과보고[김★★]	a	
49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6	(140808)서울중앙단독동향보고	b	
50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6	(150312)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보고(김★★)	b	189
51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6	(150317)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보고(김★★)	b	190
52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6	(150827)서울중앙민사부문제점검	b	
53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6	(160801)서울중앙민사단독상반기통계분석[김★★]	b	
54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6	(140922)단독판사회의결과보고	c	
55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6	(160408)판사회의, 운영위원회구성관련보고(대전지 방법원)[차○○]	c	
56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7	(140915)원세훈사건1심판결및비판에한분석및설명 자료	a	
57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7	(140918)원세훈사건1심판결분석및향소심전망(설명 자료)	a	
58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7	(150208)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a	
59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7	(150210)원세훈전국정원장판결선고관련각계동향	a	
60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7	(151006)원세훈사건환송후당심심리방향	a	
61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7	(20140823)국정원선거개입(원세훈)사건요약보고	a	

순번	디스크	암호	구분	파일 상태	지정 번호	파일명	등급	중복
62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7	(160719)원세훈파기후환송사건보고[이∅∅]	b	
63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7	원세훈재판현장 스케치	b	65
64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7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원세훈) 공판진행상황[1]	b	
65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7	원세훈재판현장 스케치	b	
66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7	(150723)원세훈전국정원장대법원판결관련	c	
67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7	(150725)425지논파일및시큐리티파일(수석연구관)	c	
68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7	1014 이후 요약보고 추가분(최종)	c	
69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8	(131219)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	a	
70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8	(150727)과거왜곡의과정	a	
71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8	(150731)정부운영에대한사법부의협력사례	a	
72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8	[131219]통상임금 전함 선고결과에 대한 각계 동향	c	
73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9	(150922)대법원판례정면위반하급심판결대책(대외비)[김☆☆]	b	395
74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107)통진당행정소송검토보고(정책실)	a	
75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212)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대책내부용	a	
76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915)통진당지방의원인용파장분석(문□□)수정(이규진)	a	
77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1125)통진당지방의원행정소송결과보고(전주지법)	a	
78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1126)현재설명자료(통진당전주지법)	a	
79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326)상고법원B대응전략	a	
80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728)상고법원입법추진을위한해설득방안	a	
81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921)상고법원도입시대법관수감촉	a	
82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1119)상고법원입법추진을위한협상추진전략[민정수석]	a	
83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40901)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나◇◇)	b	
84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41229)민변대응전략	b	
85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115)상고법원입법추진관련법무부대응전략	b	
86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128)상고법원기고문조선일보버전(김◎◎)	b	
87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201)상고법원입법추진동력boom-up방안검토	b	
88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203)조선일보상고법원기고문(김◎◎)	b	
89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215)상고법원논의프레임변경전략	b	
90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319)입법환경중간상황점검	b	
91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323)상고법원내부소통강화검토	b	
92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330)조선일보첨보보고	b	
93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405)해로부터의상고법원입법추진동력확보방안	b	
94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408)상고법원장관설명용(1장)	b	
95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417)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b	
96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420)상고법원입법추진을위한법무부설득방안	b	
97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427)조선일보홍보전략	b	

순번	디스크	암호	구분	파일 상태	지정 번호	파일명	등급	중복
98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506)상고법원입법을위한대국회전략	b	
99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506)조선일보방문설명자료	b	
100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520)라디오방송프로그램검토	b	
101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520)상고법원입법추진을위한법무부설득방안	b	
102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601)전통매체홍보전략	b	
103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612)이정현의원님면담결과보고	b	
104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711)상고법관추천위추가검토	b	
105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713)상고법원입법추진법무부설득방안	b	
106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717)홍보RESTART팀최종보고(요약본추가)	b	
107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731)상고법원설명자료(BH)	b	
108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813)대한변협회장관련대응방안	b	
109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821)중요사법정책추진기의조직문화개선방안검토	b	
110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903)상고법원판사임명절차추가검토	b	
111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905)BH민주적정당성부여방안	b	
112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907)인사제도개선공지세부추진계획	b	
113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920)조선일보보도요청사항	b	
114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920)조선일보보도요청사항	b	112
115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1102)상고법원법을안11월국회통과전략	b	
116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1127)상고법원추진연착륙방안[대내적전략]	b	
117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317)상고법원안법사위통과전략(나◇◇)	b	
118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40721)대응전략팀TFT5차회의결과	c	
119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40723)상고법원대응전략세부추진사항현황(2차수정)	c	
120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40723)상고법원대응전략세부추진사항현황(3차수정)	c	
121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40926)공청회이후입법추진계획	c	
122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203)조선일보칼럼(이○○스타일)	c	
123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324)법사위원접촉일정현황(이○○수정)	c	
124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331)조선일보기고문	c	
125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414)상고법원관련언론지상간담회시행방안	c	
126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417)썰전주요쟁점	c	
127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417)썰전주요쟁점	c	
128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421)의원별대응전략	c	
129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421)쟁점별대응전략	c	
130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503)상고법원홍보전략	c	
131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504)조선일보기사일정및컨텐츠검토	c	
132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602)뉴미디어활용상고법원홍보방안(요약본추가)	c	
133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604)6월상고법원추진전략	c	
134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607)6월상고법원홍보전략	c	
135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621)상고법원입법추진환경및국회통과전략	c	

순번	디스크	암호	구분	파일 상태	지정 번호	파일명	등급	중복
136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723)하반기상고법원입법추진방안(내부용)	c	
137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723)하반기상고법원입법추진방안(위원장님용)	c	
138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816)VIP_면담_이후_상고법원_입법추진전략[1]	c	358 유사
139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820)VIP면담이후상고법원입법추진전략	c	358 유사
140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827)연착륙연도별시물레이션[이○○]-수정(이규진)	c	
141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828)각수정안의주요내용(이규진)	c	
142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917)상고법원관련야당대응전략	c	
143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1003)상고법원입법실패대비출구전략	c	
144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1006)소수증원론대응(요약)	c	
145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1006)소수증원론대응[원문]	c	
146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1127)상고법원추진연착륙방안(종합)	c	
147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1207)상고법원추진중단공표등구체적방안	c	
148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60504)상고법원후속대책[임○○]	c	
149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315)상고법원입법추진환경및대응전략	c	
150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40813)이석기항소심판결설명자료(여당)	a	
151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41203)전교조효력정지	a	
152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412)성완종리스트영향분석과대응방향검토	a	
153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70126)이원화통계및공론화[이규진]	a	
154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31101)8배재결정설명자료(수정)	b	
155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40831)법무비서관실과의회식관련	b	
156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40929)미디어오늘기사관련	b	
157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630)VIP거부권정국분석	b	
158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823)한명숙판결후정국전망과대응전략	b	
159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916)인사정책관련임시판사회의관련검토	b	
160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1026)이원화재검토추진전략	b	
161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60725)순회간담회정례화방안[박■■■]	b	324
162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40212)2014년사법부주변환경의현황과전망[보고용]	c	
163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40505)세월호사건관련적정관할법원및재판부배당방안	c	
164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40813)내란음모사건항소심선고관련보고	c	
165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803)VIP보고서	c	
166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823)한명숙판결이후정국전망및대응전략	c	
167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930)문제법관시그널링및감독방안(인사조치추가) [김☆☆]	c	
168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60119)4월총선이전국회전망	c	
169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60419)가정법원관련검토[권○○]	c	

순번	디스크	암호	구분	파일 상태	지정 번호	파일명	등급	중복
170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60526)문제법관시그널링및감독방안(향후계획추가) [김☆☆]	c	
171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60727)제20대국회의원분석[김☆☆]	c	
172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70118)기획총괄심의관신규보임필요성검토[김☆☆]	c	
173	S1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안철수 후보자 대선공약(0928박○○)	c	
174	S1	암호불문	BH검색	일반	10	(150615)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행정소송[bh관련]	a	
175	S1	암호불문	BH파생	일반	10	(150212)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행정소송설명자료	a	
176	S1	암호불문	BH파생	일반	10	(150612)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	a	
177	S1	암호불문	BH검색	일반	10	(150615)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행정소송[bh관련]	a	174
178	S1	암호불문	BH파생	일반	10	(150212)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행정소송설명자료	a	175
179	S1	암호불문	BH파생	일반	10	(150612)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	a	176
180	S1	암호	유실	일반	1	(150823)인사모대응방안종합[박■■■]	a	2
181	S1	암호	정상	일반	2	(160325)전문분야연구회구조개편방안[박■■■]	a	
182	S1	암호	유실	일반	2	(160407)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인사모관련추가) [박■■■]	a	5
183	S1	암호	유실	일반	2	(170311)현안에대한입장표명	a	
184	S1	암호	정상	일반	2	최근 현안 관련 경과 정리	b	
185	S1	암호	정상	일반	3	(160328)사법행정위원회위원후보자검토(최종)[김☆☆]	a	
186	S1	암호	정상	일반	4	(150221)법관익명게시판관련추가검토	a	
187	S1	암호	정상	일반	4	(150221)법관익명게시판관련추가검토	a	186
188	S1	암호	유실	일반	4	(150221)법관익명게시판관련추가검토	a	186
189	S1	암호	정상	일반	6	(150312)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보고(김★★)	a	50
190	S1	암호	정상	일반	6	(150317)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보고(김★★)	a	51
191	S1	암호	정상	일반	6	(160307)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의장경선대응방안 (대외비)[김☆☆]	a	46
192	S1	암호	정상	일반	6	(160324)서울중앙지법단독판사현안관련검토[정◆◆]	a	
193	S1	암호	정상	일반	6	(160326)서울중앙수석부장재편방안[김●●]	a	
194	S1	암호	정상	일반	6	(160405)서울중앙수석부장재편실행방안[노◆◆]	a	
195	S1	암호	정상	일반	6	(160412)서울중앙수석부장재편실행방안(수정)[노◆◆]	a	
196	S1	암호	정상	일반	6	(160418)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현황및전망[김★★]	a	47
197	S1	암호	정상	일반	6	(160801)서울중앙민사단독상반기통계분석[김★★]	b	53
198	S1	암호	정상	일반	6	(170213)2017년 형사부 구성안[신○○]	c	
199	S1	암호	정상	일반	6	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연구반1차회의결과[김★★]	c	
200	S1	암호	정상	일반	10	(160608)통진당사건전화회부관련[문□□]	a	
201	S1	암호	정상	일반	10	(151003)정기국회후성공적상고법원입법추진전략	b	
202	S1	암호	정상	일반	10	(160312)이원화보도관련대응방안F[김●●]	b	
203	S1	암호	정상	일반	10	(160314)이원화보도관련대응방안[이규진]	b	202

순번	디스크	암호	구분	파일 상태	지정 번호	파일명	등급	중복
204	S1	암호	정상	일반	10	(150315)국무총리대국민담화의영향분석과대응방향 검토	c	
205	S1	암호	정상	일반	10	(150315)국무총리대국민담화의영향분석과대응방향 검토	c	
206	S1	암호	정상	일반	10	(150823)한명숙판결이후정국전망및대응전략	c	166
207	S1	암호	정상	일반	10	(150823)한명숙판결이후정국전망및대응전략	c	166
208	S1	암호	정상	일반	10	(150823)한명숙판결이후정국전망및대응전략	c	166
209	S1	암호	정상	일반	10	(151224)정기인사정책결정관련검토사항	c	
210	S1	암호	정상	일반	10	(160224)2016년사법부주변환경의현황과전망	c	
211	S1	암호	정상	일반	10	(160224)2016년사법부주변환경의현황과전망[정◆◆]	c	
212	S1	암호	유실	일반	10	(160414)_413_총선_후_사법부_주변_환경의_현황과 _전망[2]	c	
213	S1	암호	유실	일반	10	(160414)_413_총선_후_사법부_주변_환경의_현황과 _전망+1[1]	c	
214	S1	암호	정상	일반	10	(160414)413총선후사법부주변환경의현황과전망	c	
215	S1	암호	정상	일반	10	(160414)413총선후사법부주변환경의현황과전망	c	
216	S1	암호	유실	일반	10	(160418)_20대_총선_이후_주요_상황_보고_(수 정)+1[1]	c	
217	S1	암호	정상	일반	10	(160418)20대총선이후주요상황보고(수정)[김☆☆]	c	
218	S1	암호	정상	일반	10	(160620)개헌정국과사법부주변환경의현황과전망 [정◆◆]	c	
219	S1	암호	정상	일반	10	(160620)개헌정국과사법부주변환경의현황과전망 [정◆◆]	c	218
220	S1	암호	정상	일반	10	(160620)개헌정국과사법부주변환경의현황과전망 [정◆◆]	c	218
221	S1	암호	정상	일반	10	(160620)개헌정국과사법부주변환경의현황과전망 [정◆◆]	c	218
222	S1	암호	정상	일반	10	(160704)개헌정국과사법부의대응방안[김☆☆]	c	
223	S1	암호	정상	일반	10	20121220-박○○최종보고서(사법행정TF)수정	c	
224	S1	암호	정상	일반	10	(150604)이정현의원면담주요내용	b	
225	S1	암호	정상	일반	10	(170720)이춘석의원만찬면담결과보고[시▲▲]	b	
226	S2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유실)_880_상고심 기능 강화(2)	c	
227	S2	암호불문	BH검색	일반	10	(160412)공무집행방해관련보고(최종)	b	
228	S2	암호불문	BH검색	일반	10	(161122)_특검법_통과_이후_검토[1]	b	
229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224)_사법행정위원회_개선_요구에_대한_대응_ _방안[1]	a	325
230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9	680_(유실)_231_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c	
231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60222) 체크리스트[2]	a	
232	S3	암호불문	overwrite	OW	10	(160402) 체크리스트	a	
233	S3	암호불문	overwrite	OW	10	(160404) 체크리스트	a	
234	S3	암호불문	overwrite	OW	10	(160415) 체크리스트	a	

순번	디스크	암호	구분	파일 상태	지정 번호	파일명	등급	중복
235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1039_(유실)_55_체크리스트 (2016. 7. 6.)	a	
236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1063_(유실)_581_체크리스트 (2016. 6. 7.)	a	
237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1064_(유실)_582_체크리스트 (2016. 1. 30.)	a	
238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1066_(유실)_584_체크리스트 (2016. 4. 4.)	a	
239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1068_(유실)_586_체크리스트 (2016. 6. 15.)	a	
240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1084_(유실)_5_체크리스트 (2016. 3. 10.)	a	
241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60618) 체크리스트[1]	a	
242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1184_(유실)_693_체크리스트 (2016. 4. 1.)	a	
243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1238_(유실)_742_체크리스트 (2016. 4. 2.)	a	
244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1240_(유실)_744_체크리스트 (2016. 5. 24.)	a	
245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1242_(유실)_746_체크리스트 (2016. 8. 25.)	a	
246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1243_(유실)_747_체크리스트 (2016. 4. 15.)	a	
247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1257_(유실)_75_체크리스트 (2017. 1. 1.)	a	
248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1278_(유실)_77_체크리스트	a	
249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1360_(유실)_855_체크리스트 (2016. 2. 17.)	a	
250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1376_(유실)_86_체크리스트 (2016. 4. 9.)	a	
251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1453_(유실)_93_체크리스트 (2016. 3. 4.)	a	
252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1496_(유실)_97_체크리스트 (2016. 5. 6.)	a	
253	S3	암호불문	overwrite	OW	10	(170113) 체크리스트	a	
254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36_(151024) 체크리스트	a	
255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37_(151207) 체크리스트	a	
256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38_(151214) 체크리스트	a	
257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43_(161128) 체크리스트	a	
258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45_(161222) 체크리스트	a	
259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4_(170111) 체크리스트	a	
260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554_(유실)_1454_2015. 11. 8. 체크리스트	a	
261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555_(유실)_1455_2015. 11. 11. 체크리스트	a	
262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656_(유실)_20_체크리스트 (2016. 10. 2.)	a	
263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695_(유실)_247_체크리스트 (2017. 1. 13.)	a	
264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698_(유실)_24_체크리스트 (2016. 12. 10.)	a	
265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704_(유실)_255_사법부의 핵심 과제	a	
266	S3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931_(유실)_45_체크리스트 (2016. 2. 10.)	a	
267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303) 체크리스트	c	
268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309) 체크리스트	c	
269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310) 체크리스트	c	
270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633_인사모%20월%20모임%20논의%20정리%20내용[1]	c	
271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30_(150615) 체크리스트	c	
272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31_(150624) 체크리스트	c	

순번	디스크	암호	구분	파일 상태	지정 번호	파일명	등급	중복
273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32_(150630) 체크리스트	c	
274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33_(150708) 체크리스트	c	
275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34_(150722) 체크리스트	c	
276	S3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35_(150817) 체크리스트	c	
277	H4	암호	정상	일반	2	(160407)전문분야연구회_일반_개편방안	a	12
278	H4	암호	정상	일반	2	(160408)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	a	5
279	H4	암호	정상	일반	6	(160324)_서울중앙지법_현안_관련_검토	a	192
280	H4	암호	정상	일반	2	(160315)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 [임종현수정]	a	
281	H4	암호	정상	일반	2	(1603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인사)	a	
282	H4	암호	정상	일반	2	(1603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인사)	a	281
283	H4	암호	정상	일반	2	(160315)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 [임종현수정]	a	280
284	H4	암호	정상	일반	2	(160407)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	a	5
285	H4	암호	정상	일반	2	(160407)전문분야연구회_일반_개편방안	a	12
286	H4	암호	유실	카빙	2	1938_(유실)_11765_[3ef2742]	a	280
287	H4	암호	유실	카빙	2	22641_(유실)_3082_[3249333]	a	281
288	H4	암호	유실	카빙	2	22652_(유실)_3083_[324945d]	a	280
289	H4	암호	유실	카빙	2	26037_(유실)_3398_[33405d9]	a	280
290	H4	암호	유실	카빙	6	26081_(유실)_3402_[33406f0]	a	192
291	H4	암호	유실	카빙	2	26797_(유실)_3467_[335a7ae]	a	281
292	H4	암호	유실	카빙	2	26942_(유실)_3480_[335ae36]	a	280
293	H4	암호	유실	카빙	2	53760_(유실)_7022_[37b06a6]	a	12
294	H4	암호	유실	카빙	2	56773_(유실)_9761_[3bfd4e6]	a	12
295	H4	암호	정상	일반	10	(150315)_국무총리_대국민담화의_영향_분석과_대 응_방향_검토(정◆◆)	b	
296	H4	암호	정상	일반	10	150315_국무총리_대국민담화의_영향_분석과_대응_ 방향_검토(정◆◆)	b	295
297	H4	암호	정상	일반	3	사법행정위원회_추천법관_검증 (인사실 송부용)	b	
297	S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6	(160314)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방안(운영 측면 검토)	a	323
298	H4	암호	정상	일반	3	사법행정위원회_추천법관_검증(송부용)	b	297
299	H4	암호	정상	일반	3	(160404) 사법행정위원회_추천법관_검증(송부용) (인사실)	b	297
300	H4	암호	정상	일반	10	(150412)_성완종_리스트_영향_분석과_대응_방향_ 검토+1 (박■■■)	b	152 유사
301	H4	암호	유실	카빙	3	25360_(유실)_3335_[33120eb]	b	297
302	H4	암호	유실	카빙	3	25371_(유실)_3336_[3312c35]	b	297
303	H4	암호	유실	카빙	3	25872_(유실)_3383_[333a498]	b	297
304	H4	암호	유실	카빙	10	26808_(유실)_3468_[335a8d8]	b	300
305	H4	암호	정상	일반	10	대법원_판결_이후_정국_전망_및_대응_전략(김○○)	c	
306	H4	암호	정상	일반	10	(151003) 정기국회 후성공적 상고법원 입법 추진 전략 (차장님)	c	



순번	디스크	암호	구분	파일 상태	지정 번호	파일명	등급	중복
307	H4	암호	정상	일반	2	(160307) 우리법연구회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 검토 (대외비) (암호설정)	c	
308	H4	암호	정상	일반	10	(160414)413총선후사법부주변환경의현황과전망(차장님수정)	c	
309	H4	암호	정상	일반	2	(160531)법원_미디어_연구회 설립방안_로드맵	c	
310	H4	암호	정상	카빙	2	17502_(유실)_2609_[320e7af]	c	307
311	H4	암호다름	정상	일반	10	(141203) 전교조 집행정지 취소+1	d	151 관련
312	H4	암호다름	정상	일반	1	(170124)인사모 관련 검토+1 [박■■■]	d	
313	H4	암호다름	정상	일반	10	기획조정실 심의관 후보군	d	
314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2	(170116)인권법운영위원회경과(5)	a	
315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2	(170216)중복가입 해소 조치 관련 대응논리	b	
316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2	(170206)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에관한안내말씀(양형실장님수정)	c	13
317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2	(170216)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에관한추가안내말씀(박■■■)	c	
318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5	(150818)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3	a	37
319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5	(150921)차○○	a	
320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5	(150922)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김☆☆)	a	38
321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5	(150922)차○○ 판사	a	38
322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6	(160307)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방안	a	46
323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6	(160314)판사회의 순기능 제고방안(운영측면 검토)	a	
324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607)순회 간담회 정례화 방안(박■■■)	a	
325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224)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a	
326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323)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단	a	
327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328)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최종)	a	185
328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328)사법행정위원회위원후보자	a	185
329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402)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	a	
330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법원문화연구반	a	
331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404)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검토+1	a	352 관련
332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402)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	a	329
333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402)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1 (박○○부장님)	a	329 관련
334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2	(160308)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방안(대외비)+1	a	16
335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2	(160308)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방안(차장님 수정)	a	16
337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2	(170206)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관련 점검사항(초안)	a	13
338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2	(170207)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1(전정국 의견 반영)	a	15

순번	디스크	암호	구분	파일 상태	지정 번호	파일명	등급	중복
339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2	(170213)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전문재판부 추가)	a	15
340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2	(170215)중복가입 해소 조치 관련 대응논리	b	315
342	H4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5	57452_송수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a	
343	H4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5	57983_송수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a	342
344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4	(150214) 이판사판 카페 현황 보고	a	
345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711상고법관 추천위 추가검토	b	
346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706)내부 반대 동향 대응방안	b	
347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717)상고법원에 대한 사법부 내부 소통 및 흥 보 방안	b	
348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717)홍보 RESTART팀 최종 보고	c	
349	H4	암호불문	검색어	OW	5	우리법 연구회 회원 분석	d	
350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6	(160314)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방안	a	323
351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60224)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1	b	
352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404)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검토	a	401 관련
353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411)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반응과 향 후 계획	a	
354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60824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a	
355	H4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4	2078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a	
356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4	(150215) 인터넷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a	
357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720)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b	
358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820)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1	b	
359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326) 상고법원 BH 대응전략+1	b	
360	H4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7	2076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a	59
361	H4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7	10월 21일 원세훈 공판(kbs 윤진 기자)	b	
362	H4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7	(150209)(종합)국정원_선거개입(원세훈)_사건_항 소심_선고_보고	c	
363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728)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b	80
364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731)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b	71
365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1109) 상고법원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효과 적인 협상추진 전략	b	82
366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506)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2	c	
367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917)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 전략	c	
368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7	(150209) (요약) 원세훈 사건 항소심 판결 분석보고	b	
369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1119)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인 협상추진 전략	a	82
370	H4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유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 분석	b	
371	H4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유실)-10940 대외비	b	
372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405) 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추진동력 확보 방안	c	93

순번	디스크	암호	구분	파일 상태	지정 번호	파일명	등급	중복
373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413)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 방안	b	
374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429) 재보선 영향 분석+1	c	
375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40701) 상고법원 설치안 대국민 설득 방안 검토	c	
376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유실) 2015년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 전망과 대응전략	b	
377	H4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유실)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b	84
378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607) 신문방송 홍보2(종편 지역지)+2	c	
379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1) 상고법원 관련 대외기관 대응 전략	a	
380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40901) 상고법원 공동 발의 가능 국회의원 명단	c	
381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41025) 상고법원 입법 추진 검토사항(부장회의 결과반영)	c	
382	H4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유실) 57537 상고법원안 입법추진(발의) 방안	c	
383	H4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유실) 57545 상고법원 관련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검토	c	
384	H4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유실) 57569 상고법원	c	
385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910) 9월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a	
386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1102) 상고법원 법률안 11월 정기국회 통과 전략	c	
387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713)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 방안+3	a	
388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706) 상고법원에 대한 사법부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	c	
389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000086 야당분석	c	
390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61107)하야가능성 검토(박■■■)	c	
391	H4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8	(유실)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a	69
392	H4	암호불문	검색어	카빙	10	(유실) 58002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a	
393	H4	암호불문	검색어	0W	5	박○○ 판사의 향후 동향	d	
394	H4	암호불문	검색어	0W	5	박○○ 판사의 향후 동향[1]	d	
395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9	(150921)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b	
396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9	(150918)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가부 검토계획(2) (최⊙⊙)	b	
397	H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5	005710_후보군	c	
398	S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2	(170326)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참관 보고	c	
399	S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607) 순회 간담회 정례화 방안	a	324 관련
400	S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321) 명단	b	
401	S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404)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검토+1	a	352 관련
402	S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328)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최종)	a	185
403	S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3	(160402)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	a	329
405	S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70308 이탄희 판사 관련 정리	c	

순번	디스크	암호	구분	파일 상태	지정 번호	파일명	등급	중복
406	S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경위서[임종현]	c	
407	S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70425) 현안 관련 추가 물적 조사 여부 검토	b	
408	S4	암호불문	검색어	일반	10	(150709) 내부 관심도 및 인식제고방안	c	
409	S1	추가(비암호)	검색어	일반	8	(130822)통상임금 경제적 영향 분석	z	
410	S1	추가(비암호)	검색어	일반	8	2012다89339(통상임금)	z	
411	H4	추가(비암호)	검색어	일반	8	(151118)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력사례+1	z	71 업데 이트
412	S1	추가(비암호)	검색어	일반	9	(150919)잘못된재판에대한직무감독검토	z	396 업데 이트

첨부 3.

H4 암호파일 분석표(757개)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1	2014_하반기_법원사무관_평정_기초자료_(시설담당관실)[1]	암호 모름	정상		
2	(121224) 사법발전 TFT 취합 보고서	암호1		e	
3	행정처조직개편	암호 모름	정상		
4	행정처조직개편종합(실장님080619)	암호 모름	정상		
5	행정처조직개편	암호 모름	정상		
6	행정처조직개편종합(실장님080619)	암호 모름	정상		
7	(101111) 문제의 쟁점(형사)(최종)	암호 모름	정상		
8	법우회폐지후처리방안(06.3.종합보고)	암호 모름	정상		
9	예상질의(개인)	암호 모름	정상		
10	예상질의(개인-후보자님수정)	암호 모름	정상		
11	해명(용인)	암호 모름	정상		
12	검토-2010.0802	암호 모름	정상		
13	(110215) 예상질의답변(이정미 후보자님)	암호 모름	정상		
14	이상훈 대법관 검증 수정(20110206)	암호 모름	정상		
15	재산 관련 예상 답변 수정본(2011.0218)	암호 모름	정상		
16	전국법원장 간담회 보도자료 (3. 5.자)	암호 모름	정상		
17	예상질의(개인)	암호 모름	정상		
18	예상질의(개인-후보자님수정)	암호 모름	정상		
19	해명(용인)	암호 모름	정상		
20	검토-2010.0802	암호 모름	정상		
21	19일 보고	암호 모름	정상		
22	(110215) 예상질의답변(이정미 후보자님)	암호 모름	정상		
23	법정연행 사례	암호 모름	정상		
24	4-5-군사재판 검토(08년 연구반, 여○○)	암호 모름	정상		
25	4-6-선거소송 검토(08년 연구반, 여○○)	암호 모름	정상		
26	4-7-권한쟁의심판제도 검토(08년 연구반, 여○○)	암호 모름	정상		
27	5-1(요약)-기본권 관련 조항 개정 검토(08년 연구반, 여○○)	암호 모름	정상		
28	5-2(상세)-기본권 관련 조항 개정 검토(08년 연구반, 여○○)	암호 모름	정상		
29	재산 관련 예상 답변 수정본(2011.0218)	암호 모름	정상		
30	(완성)집행관제도_현황_및_직무분석_보고-1	암호 모름	정상		
31	노조대응조직의 정비 문제+1	암호 모름	정상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32	노조대응조직의 정비 문제+최초	암호 모름	정상		
33	노조대응조직의 정비 문제+2(2006-05-30)	암호 모름	정상		
34	노조대응조직의 정비 문제+3(2006-06-05)	암호 모름	정상		
35	노조대응조직의 정비 문제+4(2006-07-04)	암호 모름	정상		
36	처장님 이메일	암호 모름	정상		
37	향후 대처방안 요약(2006-5-8)	암호 모름	정상		
38	법원 노사관계 정립방안+1(2006-5-10)	암호 모름	정상		
39	전국 법원장 사무국장 연석 간담회 (060515) 회의록	암호 모름	정상		
40	간이보고서2	암호 모름	정상		
41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안내-2006.7.8	암호 모름	정상		
42	청문회 전담 요원 구성방안-2006.5.26-보고필	암호 모름	정상		
43	최근 국회 상황 보고(5. 26)	암호 모름	정상		
44	김○○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45	강○○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46	노○○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47	박○○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48	박○○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49	박○○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50	오○○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51	윤○○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52	이○○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53	정○○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54	홍○○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55	평정서(5급)	암호 모름	정상		
56	평정서(6급이하)	암호 모름	정상		
57	변호사시험법제실무위원회 1차 회의보 고(0802)	암호 모름	정상		
58	[회의록]법조비리사건 보고 및 법관윤리 강화대책 토론(060807)	암호 모름	정상		
59	법원장 평가들에 관하여	암호 모름	정상		
60	08 비용 내역	암호 모름	정상		
61	05 비용 내역[2005]	암호 모름	정상		
62	06 비용 내역[2006]	암호 모름	정상		
63	07 비용 내역[2007]	암호 모름	정상		
64	공약 아이템(성○○)	암호 모름	정상		
65	검찰주도개혁주제(○○)	암호 모름	정상		
66	검찰주도개혁주제2(이○○,071217)	암호 모름	정상		
67	시대과제 첫 회의(071112) 논의내용	암호 모름	정상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68	시대과제TFT 구성 및 운영검토(홍○ ○,071105)	암호 모름	정상		
69	첨부물-2	암호 모름	정상		
70	첨부물(사실관계)	암호 모름	정상		
71	첨부물-3(국회용)	암호 모름	정상		
72	국회설명자료(언론보도)	암호 모름	정상		
73	첨부물-3(국회용)-1	암호 모름	정상		
74	대법관제청관련(김○○)	암호 모름	정상		
75	과제 아이템 정리	암호 모름	정상		
76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태도	암호 모름	정상		
77	111대책팀 활동 지침(070112)	암호 모름	정상		
78	최근사태에대한 대책(070108-임종헌)	암호 모름	정상		
79	최근 상황전개에 따른 대응방안(070108)	암호 모름	정상		
80	(101111) 문제의 쟁점(형사)(최종)	암호 모름	정상		
81	최종 보고서(사법행정TF)	암호1		e	
82	최종보고서(사법행정TF)수정	암호1		e	
83	최종 보고서(사법행정TF)+3	암호1		e	
84	[참고자료](121215)사법개혁 추진 및 논 의 대응 전략+2	암호1		e	
85	(121224)2013 사법발전 TFT 종합 보고서- 양면출력용[TF2, 3 취합]	암호1		e	
86	2013년 기조실 5급 이상 평정의견	암호 모름	정상		
87	(121025)법정언행개선방안+2-외부 작성	암호 모름	정상		
88	2013년국정감사자료제출1권	암호 모름	정상		
89	2013년국정감사자료제출2권	암호 모름	정상		
90	2013년국정감사자료제출4권	암호 모름	정상		
91	2013년국정감사자료제출6권	암호 모름	정상		
92	2013년국정감사자료제출7권	암호 모름	정상		
93	2013년국정감사자료제출8권	암호 모름	정상		
94	2013년국정감사자료제출11권	암호 모름	정상		
95	2013년국정감사자료제출12권	암호 모름	정상		
96	재산 증감 내역(서기석)- 기획1심의관 송부	암호 모름	정상		
97	(131005)경력자임용	암호 모름	정상		
98	3차 회의자료(가사소년)	암호1		e	
99	(121203)검토주제-민사	암호1		e	
100	(121129) TF 운영계획	암호1		e	
101	(121204)가사소년(전○○)	암호1		e	
102	(121203) 최종 보고서 구성	암호1		e	
103	(121210)의무적 국민참여재판	암호1		e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104	(121130)검토주제-민사(전○○)	암호1		e	
105	(121203)검토주제_형사(정○○)	암호1		e	
106	(121203)사법개혁 2013(2)	암호1		e	
107	(121206)검토주제-민사(전○○)	암호1		e	
108	(121210)7_검토주제보고서_형사	암호1		e	
109	(121220)F통합 보고서+4(F)	암호1		e	
110	(121203) 각 주제별 보고서 서식	암호1		e	
111	(121219)통합 보고서+1(박○○)	암호1		e	
112	(121130)TF검토주제(형사-정○○)	암호1		e	
113	(121130)사법개혁 2013(박○○)	암호1		e	
114	(121206)3차 회의자료(심급-소통)	암호1		e	
115	(121130) TF 1차 회의 결과 보고	암호1		e	
116	(121203) TF 2차 회의 결과 보고	암호1		e	
117	(121203)검찰 개혁 공약 등(박○○)	암호1		e	
118	(121203)검찰 개혁 논의 관련 시사점	암호1		e	
119	(121206) TF 3차 회의 결과 보고서	암호1		e	
120	(121210) TF 4차 회의 결과 보고서	암호1		e	
121	(121216) TF 5차 회의 결과 보고서	암호1		e	
122	(121203)사법신뢰 제고방안(투명한 법원)	암호1		e	
123	(121220)F통합 보고서+3(F)(박○○)	암호1		e	
124	(121215)사법개혁 추진 및 논의 대응 전략+2	암호1		e	
125	(121219)최종보고서(사법제도TF)+3- 박○○	암호1		e	
126	(121224)취합 보고서[1]-[TF2, 3 취합]	암호1		e	
127	(121224)취합 보고서-양면출력용[TF2, 3 취합]	암호1		e	
128	(121220)최종보고서(사법행정TF)수정(박○○ 부장님)	암호1		e	
129	(121220)F최종보고서(사법제도TF)+5(박근혜 당선자)	암호1		e	
130	(121206)7_검토주제_형사추가(가석방, 피해자 절차참여)	암호1		e	
131	(121220)F최종보고서 버전2(사법제도TF)+5(박근혜 당선자)	암호1		e	
132	(121213)각 주제별 보고서 서식(실국 검토 단계 등 표 포함됨)	암호1		e	
133	(121220)FF사법발전 TF 전략 (사법발전TF, 박근혜 당선자)+6	암호1		e	
134	(121225)최근 주요 이슈 점검 등	암호1		e	
135	(121226)TF 1차 회의결과 보고	암호1		e	
136	(121228)최근 주요 이슈 점검 등	암호1		e	
137	(130101)최근 주요 이슈 점검 등	암호1		e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138	(121228)사법발전 TFT 정책추진방안	암호1		e	
139	(130103)사법발전 TFT 정책추진방안	암호1		e	
140	(121226)당선자 공약사항 점검 및 그 대응	암호1		e	
141	(121227)사법정책 과제 중 조기 시행 과제	암호1		e	
142	(130103)당선자 공약사항 점검 및 그 대응	암호1		e	
143	(130103)사법정책 과제 중 조기 시행 과제	암호1		e	
144	(121226)당선자 공약사항 점검 및 그 대응(최)	암호1		e	
145	(121227)사법정책 과제 중 조기 시행 과제(최)	암호1		e	
146	(130108)2013년 초기 시행 가능 정책(요약본)	암호1		e	
147	(20120911)의무적 국민참여재판 실시 논의 검토	암호 모름	정상		
148	(20120911)의무적 국민참여재판 실시 논의 검토+2	암호 모름	정상		
149	(121216)최종 보고서(사법행정TF)[1]	암호1		e	
150	(121224)최종보고서(사법행정TF)수정+1	암호1		e	
151	(120925)대응팀 운영 기본계획	암호 모름	정상		
152	(120915)전관예우 방지 등(박○○)	암호 모름	정상		
153	(120915)전관예우방지 & 사법신뢰회복방안	암호 모름	정상		
154	(120915)각 정당별 주요 사법제도 관련 정책	암호 모름	정상		
155	(120916)전관예우 방지 등(수정- 박○○ 부장님)	암호 모름	정상		
156	(20120902)법원 주도의 선제적 사법제도 개선 관련	암호 모름	정상		
157	(20120905)재외 공관에 대한 법관 파견 방안 검토	암호 모름	정상		
158	20120821-법원 주도의 선제적사법제도개선 관련 보고	암호 모름	정상		
159	(20120831)-법원 주도의 선제적사법제도 개선 관련 보고	암호 모름	정상		
160	[참고자료](121215)사법개혁 추진 및 논의 대응 전략+2	암호1		e	
161	(121224) 사법발전 TFT 취합 보고서	암호1		e	
162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암호 모름	정상		
163	한정위헌등 문제점(요약-easy)	암호 모름	정상		
164	(121129) TF 운영계획	암호1		e	
165	사법연구원설치필요성	암호1		e	
166	(121025)법정언행개선방안+2-외부 작성	암호 모름	정상		
167	(150315)_국무총리_대국민담화의_영향_분석과_대응_방향_검토(정◆◆)	암호1		b	
168	(151228)정보화정책위원회신설검토	암호1		e	
169	(160119) 2016년 법원행정처 등 심의관 인력 운용 방안	암호1		e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170	(160119) 2016년 법원행정처 등 심의관 인력 운용 방안+1	암호1		e	
171	150315_국무총리_대국민담화의_영향_분석_과_대응_방향_검토(정◆◆)	암호1		b	
172	18 대 , 19 대 _ 개 헌 논 의 _ 정 리 _ 보 고 (2015._12.)[1]	암호 모름	정상		
173	대법원_판결_이후_정국_전망_및_대응_전략(김○○)	암호1		c	
174	(140514) 감사교수출신 대법관 임명요청 대응방안+5	암호 모름	정상		
175	(141201) 상고법원 반대논리 대응방향 검토	암호 모름	정상		
176	(141203) 전교조 집행정지 취소+1	암호 모름	정상	d	
177	(141222)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보고+1	암호 모름	정상		
178	(160429) 정운호 사건 관련 대응 방안 (기조실)	암호1		e	
179	(160509) 정운호 사건 관련 대응 방안 (기조실)	암호1		e	
180	(160511) 정운호 사건 관련 대응 방안(기조실)	암호1		e	
181	(160512) 정운호 사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최종본)	암호1		e	
182	(160511) 정운호 사건 관련 대응 방안(기조실) (초안, 미완성)	암호1		e	
183	(160516) 현안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추진 업무분담	암호1		e	
184	(160520) 정운호 사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연고 관계재배당 추가)	암호1		e	
185	(160518) 정운호 사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최종본)	암호1		e	
186	(160523) 연고관계에 기한 선임 사건 재배당 전면 시행 방안	암호1		e	
187	(151030)_대법원_사건배당_개선방안F[1]	암호1		e	
188	(160523) 연고관계에 기한 선임 사건 재배당 전면 시행 방안+1	암호1		e	
189	(160523) 연고관계에 기한 선임 사건 재배당 전면 시행 방안+2	암호1		e	
190	(160523) 연고관계에 기한 선임 사건 재배당 전면 시행 방안+3 (최종)	암호1		e	
191	(160525)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암호1		e	
192	(160530) 전관예우 관련 대법원 신뢰 제고 방안	암호1		e	
193	(160531) 전관예우 관련 대법원 신뢰 제고 방안+1	암호1		e	
194	(160601) 제도개선방안 추진 계획	암호1		e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195	(160608) 현안_TF_발제문_-_전화_녹음+2 (문□□)	암호3	정상	e	
196	(160203)정보화정책위원회 신설 및 사법 정보화 추진 방안	암호1		e	
197	(150921)고법수석부장보임방안(인사실)	암호1		e	
198	검사교수출신_대법관_임명요청_대응방안 (정◆◆)	암호1		e	
199	(151016)검찰총장 후보군 프로필+1	암호1		e	
200	(151019)대법원장님 입원기간 중 조직 동 요 등 방지 방안	암호1		e	
201	(151003)정기국회후성공적상고법원입법추 진전략(차장님)	암호1		c	
202	(160523) 연고관계에 기한 선임 사건 재 배당 전면 시행 방안+3 (최중)	암호1		e	
203	(160520) 정운호 사건 관련 제도 개선 방 안(연고 관계재배당 추가)	암호1		e	
204	(160903)전국_법원장_회의_자료+1(최○○)	암호1		e	
205	(160903)전국_법원장_회의_자료+1(인사)	암호1		e	
206	노조대응조직의 정비 문제+1	암호 모름	정상		
207	노조대응조직의 정비 문제+2(2006-05-30)	암호 모름	정상		
208	노조대응조직의 정비 문제+3(2006-06-05)	암호 모름	정상		
209	노조대응조직의 정비 문제+4(2006-07-04)	암호 모름	정상		
210	노조대응조직의 정비 문제+최초	암호 모름	정상		
211	법원 노사관계 정립방안+1(2006-5-10)	암호 모름	정상		
212	전국 법원장 사무국장 연석 간담회(060515) 회의록	암호 모름	정상		
213	처장님 이메일	암호 모름	정상		
214	향후 대처방안 요약(2006-5-8)	암호 모름	정상		
215	간이보고서2	암호 모름	정상		
216	(101111) 문제의 쟁점(형사)(최중)	암호 모름	정상		
217	이상훈 대법관 검증 수정(20110206)	암호 모름	정상		
218	재산 관련 예상 답변 수정본(2011.0218)	암호 모름	정상		
219	법정언행 사례	암호 모름	정상		
220	전국법원장 간담회 보도자료 (3. 5.자)	암호 모름	정상		
221	법원장 평가들에 관하여	암호 모름	정상		
222	05 비용 내역[2005]	암호 모름	정상		
223	06 비용 내역[2006]	암호 모름	정상		
224	07 비용 내역[2007]	암호 모름	정상		
225	08 비용 내역	암호 모름	정상		
226	11대책팀 활동 지침(070112)	암호 모름	정상		
227	과제 아이템 정리	암호 모름	정상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228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태도	암호 모름	정상		
229	최근 상황전개에 따른 대응방안(070108)	암호 모름	정상		
230	최근사태에대한 대책(070108-임종헌)	암호 모름	정상		
231	최근 국회 상황 보고(5. 26)	암호 모름	정상		
232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안내-2006.7.8	암호 모름	정상		
233	청문회 전담 요원 구성방안-2006.5.26-보고필	암호 모름	정상		
234	[회의록]법조비리사건 보고 및 법관윤리 강화대책 토론(060807)	암호 모름	정상		
235	변호사시험법제정실무위원회 1차 회의보고(0802)	암호 모름	정상		
236	국회설명자료(언론보도)	암호 모름	정상		
237	첨부물(사실관계)	암호 모름	정상		
238	첨부물-2	암호 모름	정상		
239	첨부물-3(국회용)-1	암호 모름	정상		
240	첨부물-3(국회용)	암호 모름	정상		
241	대법관제청관련(김○○)	암호 모름	정상		
242	검찰주도개혁주제(○○)	암호 모름	정상		
243	검찰주도개혁주제2(이○○,071217)	암호 모름	정상		
244	공약 아이템(성○○)	암호 모름	정상		
245	시대과제 첫 회의(071112) 논의내용	암호 모름	정상		
246	시대과제TFT 구성 및 운영검토(홍○○,071105)	암호 모름	정상		
247	강○○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248	김○○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249	노○○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250	박○○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251	박○○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252	박○○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253	오○○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254	윤○○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255	이○○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256	정○○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257	홍○○	암호 모름	정상		'기획후반평정' 폴더
258	평정서(5급)	암호 모름	정상		
259	평정서(6급이하)	암호 모름	정상		
260	재산 관련 예상 답변 수정본(2011.0218)	암호 모름	정상		
261	예상질의(개인)	암호 모름	정상		
262	예상질의(개인-후보자님수정)	암호 모름	정상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263	검토-2010.0802	암호 모름	정상		
264	해명(용인)	암호 모름	정상		
265	(110215) 예상질의답변(이정미 후보자님)	암호 모름	정상		
266	19일 보고	암호 모름	정상		
267	(완성)집행관제도_현황_및_직무분석_보고-1	암호 모름	정상		
268	4-5-군사재판 검토(08년 연구반, 여○○)	암호 모름	정상		
269	4-6-선거소송 검토(08년 연구반, 여○○)	암호 모름	정상		
270	4-7-권한쟁의심판제도 검토(08년 연구반, 여○○)	암호 모름	정상		
271	5-1(요약)-기본권 관련 조항 개정 검토(08년 연구반, 여○○)	암호 모름	정상		
272	5-2(상세)-기본권 관련 조항 개정 검토(08년 연구반, 여○○)	암호 모름	정상		
273	최종 보고서(사법행정TF)+3	암호1		e	
274	최종 보고서(사법행정TF)	암호1		e	
275	최종보고서(사법행정TF)수정	암호1		e	
276	[참고자료](121215)사법개혁 추진 및 논의 대응 전략+2	암호1		e	
277	[참고자료](121215)사법개혁 추진 및 논의 대응 전략+2	암호1		e	
278	2013년국정감사자료제출11권	암호 모름	정상		
279	2013년국정감사자료제출12권	암호 모름	정상		
280	2013년국정감사자료제출1권	암호 모름	정상		
281	2013년국정감사자료제출2권	암호 모름	정상		
282	2013년국정감사자료제출4권	암호 모름	정상		
283	2013년국정감사자료제출6권	암호 모름	정상		
284	2013년국정감사자료제출7권	암호 모름	정상		
285	2013년국정감사자료제출8권	암호 모름	정상		
286	(121224)2013 사법발전 TFT 종합 보고서-양면출력용[TF2, 3 취합]	암호1		e	
287	2013년 기초실 5급 이상 평정의견	암호 모름	정상		
288	(131005)경력자임용	암호 모름	정상		
289	(120915)각 정당별 주요 사법제도 관련 정책	암호 모름	정상		
290	(120915)전관예우 방지 등(박○○)	암호 모름	정상		
291	(120915)전관예우방지 & 사법신뢰회복방안	암호 모름	정상		
292	(120916)전관예우 방지 등(수정- 박○○ 부장님)	암호 모름	정상		
293	(120925)대응팀 운영 기본계획	암호 모름	정상		
294	(20120831)-법원 주도의 선제적사법제도 개선 관련 보고	암호 모름	정상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295	(20120902)법원 주도의 선제적 사법제도 개선 관련	암호 모름	정상		
296	(20120905)재외 공관에 대한 법관 파견 방안 검토	암호 모름	정상		
297	20120821-법원 주도의 선제적사법제도개선 관련 보고	암호 모름	정상		
298	(121224)2013년 사법발전 추진 TF 운영계획	암호1		e	
299	(121225)최근 주요 이슈 점검 등	암호1		e	
300	(121226)TF 1차 회의결과 보고	암호1		e	
301	(121226)당선자 공약사항 점검 및 그 대응(최)	암호1		e	
302	(121226)당선자 공약사항 점검 및 그 대응	암호1		e	
303	(121226)사법발전 TFT 정책추진방안	암호1		e	
304	(121227)사법정책 과제 중 조기 시행 과제(최)	암호1		e	
305	(121227)사법정책 과제 중 조기 시행 과제	암호1		e	
306	(121228)사법발전 TFT 정책추진방안	암호1		e	
307	(121228)최근 주요 이슈 점검 등	암호1		e	
308	(130101)최근 주요 이슈 점검 등	암호1		e	
309	(130102)사법발전 TFT 정책추진방안(정)	암호1		e	
310	(130103)당선자 공약사항 점검 및 그 대응	암호1		e	
311	(130103)사법발전 TFT 정책추진방안	암호1		e	
312	(130103)사법정책 과제 중 조기 시행 과제	암호1		e	
313	(130108)2013년 초기 시행 가능 정책(요약본)	암호1		e	
314	(121129) TF 운영계획	암호1		e	
315	(121130) TF 1차 회의 결과 보고	암호1		e	
316	(121130)TF검토주제(형사-정○○)	암호1		e	
317	(121130)검토주제-민사(전○○)	암호1		e	
318	(121130)사법개혁 2013(박○○)	암호1		e	
319	(121203) TF 2차 회의 결과 보고	암호1		e	
320	(121203) 각 주제별 보고서 서식	암호1		e	
321	(121203) 최종 보고서 구성	암호1		e	
322	(121203)검찰 개혁 공약 등(박○○)	암호1		e	
323	(121203)검찰 개혁 논의 관련 시사점	암호1		e	
324	(121203)검토주제-민사	암호1		e	
325	(121203)검토주제_형사(정○○)	암호1		e	
326	(121203)사법개혁 2013(2)	암호1		e	
327	(121203)사법신뢰 제고방안(투명한 법원)	암호1		e	
328	(121204)가사소년(전○○)	암호1		e	
329	(121206) TF 3차 회의 결과 보고서	암호1		e	
330	(121206)3차 회의자료(심급-소통)	암호1		e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331	(121206)7_검토주제_형사추가(가석방, 피해자 절차참여)	암호1		e	
332	(121206)검토주제-민사(전○○)	암호1		e	
333	(121210) TF 4차 회의 결과 보고서	암호1		e	
334	(121210)7_검토주제보고서_형사	암호1		e	
335	(121210)의무적 국민참여재판	암호1		e	
336	(121213)각 주제별 보고서 서식(실국 검토 단계 등 표 포함됨)	암호1		e	
337	(121215)사법개혁 추진 및 논의 대응 전략+2	암호1		e	
338	(121216) TF 5차 회의 결과 보고서	암호1		e	
339	(121219)최종보고서(사법제도TF)+3- 박○○	암호1		e	
340	(121219)통합 보고서+1(박○○)	암호1		e	
341	(121220)FF사법발전 TF 전략 (사법발전 TF, 박근혜 당선자)+6	암호1		e	
342	(121220)F최종보고서 버전2(사법제도 TF)+5(박근혜 당선자)	암호1		e	
343	(121220)F최종보고서(사법제도TF)+5(박근혜 당선자)	암호1		e	
344	(121220)F통합 보고서+3(F)(박○○)	암호1		e	
345	(121220)F통합 보고서+4(F)	암호1		e	
346	(121220)최종보고서(사법행정TF)수정(박○○ 부장님)	암호1		e	
347	(121224)취합 보고서-양면출력용[TF2, 3 취합]	암호1		e	
348	(121224)취합 보고서[1]-[TF2, 3 취합]	암호1		e	
349	3차 회의자료(가사소년)	암호1		e	
350	(121216)최종 보고서(사법행정TF)[1]	암호1		e	
351	(121224)최종보고서(사법행정TF)수정+1	암호1		e	
352	(20120911)의무적 국민참여재판 실시 논의 검토+2	암호 모름	정상		
353	(20120911)의무적 국민참여재판 실시 논의 검토	암호 모름	정상		
354	재산 증감 내역(서기석)- 기획1심의관 송부	암호 모름	정상		
355	(121025)법정연행개선방안+2-외부 작성	암호 모름	정상		
356	한정위헌등 문제점(요약-easy)	암호 모름	정상		
357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암호 모름	정상		
358	대한민국 사법60주년 주요 초청인사 주소록-청와대(0922).xls	암호 모름	정상		
359	2008년 대한민국 사법60주년 주요 초청인사 주소록-청와대(0922).xls	암호 모름	정상		
360	2012+국정감사+정책자료 I _법제사법위원회[1].pdf	암호1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361	(이슈와 논점747호-20131203)국민참여재판의 쟁점 분석[1].pdf	암호1			
362	(이슈와 논점747호-20131203)국민참여재판의 쟁점 분석[1].pdf	암호1			
363	(이슈와 논점762호-20131230)변호사, 의뢰인의 비닉특권(秘匿特權) 도입과 관련하여.pdf	암호1			
364	(이슈와 논점762호-20131230)변호사, 의뢰인의 비닉특권(秘匿特權) 도입과 관련하여.pdf	암호1			
365	(이슈와+논점670호-20130613)사법(정책)연구원+설립+의의+및+과제 .pdf	암호1			
366	(이슈와+논점670호-20130613)사법(정책)연구원+설립+의의+및+과제[1].pdf	암호1			
367	(이슈와+논점670호-20130613)사법(정책)연구원+설립+의의+및+과제[1].pdf	암호1			
368	(이슈와+논점836호-20140425)해외+주요국의+법관+인사제도(지역법관제도)와+시사점.pdf	암호1			
369	(현장조사보고서28호-20131231)성폭력피해자보호 및 지원 정책 실태와 개선과제-친족 성폭력을 중심으로.pdf	암호1			
370	(현장조사보고서28호-20131231)성폭력피해자보호 및 지원 정책 실태와 개선과제-친족 성폭력을 중심으로.pdf	암호1			
371	2012+국정감사+정책자료 1_법제사법위원회[1].pdf	암호1			
372	2011+국정감사+정책자료+1권_법제사법위원회[1].pdf	암호1			
373	18. (130613)(이슈와논점670호)사법(정책)연구원설립의의및과제.pdf	암호1			
374	2. (이슈와논점595호_20130129)국세청의+금융거래정보에+대한+접근권+확대+요구+관련+쟁점.pdf	암호1			
375	2. (이슈와논점595호_20130129)국세청의+금융거래정보에+대한+접근권+확대+요구+관련+쟁점.pdf	암호1			
376	2011+국정감사+정책자료+1권_법제사법위원회[1].pdf	암호1			
377	6차 회의 결과보고(2017. 1. 5.)	암호 모름	유실		
378	임○○ 전문위원(고유법) (추가).zip	암호1		e	
379	(150908)문제법관에대한Signal	암호1		e	
380	(150908)재판부내갈등확인방안	암호1		e	
381	6차회의논의결과	암호1		e	
382	(130103)사법발전 TFT 정책추진방안	암호1		e	
383	(160314)이원화보도관련대응방안-최종(양형)	암호1		e	
384	(대법원장님_보고)_법관의_사법행정_참여를_위한_위원회_설립_및_운영_방안_(자료집) (최종) (대내외비)	암호1		e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385	순회 간담회 참석자 검토	암호1		e	
386	주호영, _윤상현_의원	암호1		e	
387	법관 프로필	암호1		e	심의관들 프로필
388	(050520)이원화관련방안(2팀)	암호 모름	유실		
389	(150426)확대2차_논의내용	암호 모름	유실		
390	(150506)이원화_관련_의문점_리스트_및_답변	암호 모름	유실		
391	(150506)이원화_관련_의문점_리스트_및_답변_F	암호 모름	유실		
392	(150511)이원화_관련_의문점_리스트_및_답변(보충)	암호 모름	유실		
393	(150525)확대_5차_회의_논의_내용	암호 모름	유실		
394	(150601)요약-이원화관련방안(2팀)F	암호 모름	유실		
395	(150601)이원화_폐지_(실장회의_발표용)	암호 모름	유실		
396	(150701)향후검토내용[이○○]수정(이규진)	암호 모름	유실		
397	150428대안별_표	암호 모름	유실		
398	150506이원화_관련_추가질문_답[F]실장님_2차_질문	암호 모름	유실		
399	150525이원화_관련_의문점_리스트_및_답변Q&A	암호 모름	유실		
400	150611_중간보고_후_1차_논의_내용	암호 모름	유실		
401	이원화_폐지(초안)	암호 모름	유실		
402	이원화_폐지+1	암호 모름	유실		
403	이원화_폐지+2(박■■■ 수정)	암호 모름	유실		
404	이원화이행추가사항(150610)	암호 모름	유실		
405	(150908)문제법관에대한Signal	암호1		e	
406	(150908)재판부내갈등확인방안	암호1		e	
407	(151016) 검찰총장_후보군_프로필 (조◆◆)	암호1		e	
408	(151016) 검찰총장_후보군_프로필	암호1		e	
409	(170124)인사모 관련 검토+1 [박■■■]	암호5	유실	d	
410	(160307) 우리법연구회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양대 지침' 세미나 검토 (대외비) (암호설정)	암호1		c	
411	(160324) 법제연구과장 면담 결과 (정책실)	암호1		e	
412	사법행정위원회_추천법관_검증 (인사실 송부용)	암호1		b	
413	사법행정위원회_추천법관_검증(송부용)	암호1		b	
414	사무분담_대응논리_관련_01	암호1		e	
415	(160322) 사무분담_관련 (조◆◆)	암호1		e	
416	(160404) 사법행정위원회_추천법관_검증(송부용) (인사실)	암호1		b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418	(160408)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	암호1		a	
419	(160324)_서울중앙지법_현안_관련_검토	암호1		a	
420	3. (대법원장님_보고)_법관의_사법행정_참여를_위한_위원회_설립_및_운영_방안_(자료집) (최종) (대외비) (암호설정)	암호1		e	
421	\$RTXWD3D	암호 모름	유실		
422	\$RYXOSFY	암호 모름	유실		
423	(160315)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 [임종현수정]	암호1		a	
424	(1603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인사)	암호1		a	
425	(150412)_성완중_리스트_영향_분석과_대응_방향_검토+1 (박■■■)	암호1		b	
426	(160414)413총선후사법부주변환경의현황과전망(차장님수정)	암호1		c	
427	\$RX7ZFBP	암호 모름	유실		
428	\$RAY5LSI	암호1		e	
429	(160418) 20대 총선 이후 주요 상황 보고 (수정)+1	암호1		e	
430	(160503) 홍보TF 발표문	암호1		e	
431	서울중앙지방법원_단독판사회의 연구반 1차 회의 결과	암호1		e	
432	[언론보도정리]	암호1		e	
433	\$RTKEUYI	암호1		e	
434	\$RZORJLX	암호1		e	
435	헌 법 대 응 반 _ 업 무 _ 분 장 _ 정 리 [2016._6._27.]	암호3	유실	e	
436	(160620)_개헌_정국과_사법부_주변_환경의_현황과_전망 [정◆◆]	암호1		e	
437	\$ROA1003	암호1		e	
438	[언론보도정리]+1	암호1		e	
439	(160707)법원장1심복귀및원로법관도입방안(퇴임대법관포함)[김●●]	암호1		e	
440	\$R53M6GF	암호1		e	
441	(160826) 현안 관련 대응 방안+1	암호1		e	
442	(160903) 전국법원장회의 자료+1	암호1		e	
443	\$ROEERBN	암호1		e	
444	2016국정감사예상질의1(주요_현안)	암호4	유실	e	
445	2016국정감사예상질의2(각실국별)	암호4	유실	e	
446	(160919) 상시 예방 활동 강화 방안	암호1		e	
447	(1603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인사)	암호1		a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448	(160315)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 [임종현수정]	암호1		a	
449	2016국정감사예상질의(추가)	암호1		e	
450	2016국정감사예상질의1(주요 현안)	암호1		e	
451	2016국정감사예상질의2(각실국별)	암호1		e	
452	2016국정감사구두질의답변	암호1		e	
453	1.2016년국정감사자료제출1권(권성동위원 장,백혜련위원)-[하이퍼링크]	암호1		e	
454	2.2016년국정감사자료제출2권(김진태, 노 회찬위원)-[하이퍼링크]	암호1		e	
455	3.2016년국정감사자료제출3권(박범계, 윤 상직위원)-[하이퍼링크]	암호1		e	
456	4.2016년국정감사자료제출4권(이용주, 주 광덕위원)-[하이퍼링크]	암호1		e	
457	6.2016년국정감사자료제출6권(이춘석, 박 지원위원)-[하이퍼링크]	암호1		e	
458	7.2016년국정감사자료제출7권(조응천, 박 주민위원)-[하이퍼링크]	암호1		e	
459	8. 2016년국정감사자료제출8권(정성호, 금 태섭위원)-[하이퍼링크]	암호1		e	
460	(170207) 재판연구원 증원을 위한 입법추 진전략+1 [대외비]	암호5	유실	e	
461	소장_임기_연장법안의_향후_전망_및_대책 (2016._10._6.)	암호1		e	
462	(151016)검찰총장_후보군_프로필	암호1		e	
463	소장_임기_연장법안의_향후_전망_및_대책 (2016._10._6.)	암호3	유실	e	
464	소장_임기_연장법안의_향후_전망_및_대책 (2016._9._29.)	암호3	유실	e	
465	(대외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재판_절차_안내	암호 모름	유실		
466	(170213) 재판연구원 증원을 위한 입법추 진전략+2 [수정본]	암호5	유실	e	
467	(160707)법원장1심복귀및원로법관도입방 안(퇴임대법관포함)[김●●]	암호1		e	
468	1차_회의_결과보고(2016._10._27.)	암호3	유실	e	
469	(161103)대법관_추천위원회_위원장_후보 자군	암호1		e	
470	\$RDH1W5G	암호 모름	유실		
471	(161031)건의사항_답변_검토	암호1		e	
472	2. 2016년도 기획조정실 심의관 수행 업무	암호5	유실	e	
473	5차 회의 결과보고(2016. 12. 20.)	암호3	유실	e	
474	기획조정실 심의관 후보군	암호5	유실	d	
475	(160407)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	암호1		a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476	(160407)전문분야연구회_일반 개편방안	암호1		a	
477	(160531)법원_미디어_연구회 설립방안_로드맵	암호1		c	
478	(160418) 20대 총선 이후 주요 상황 보고(수정)+1	암호1		e	
479	(160414)413총선후사법부주변환경의현황과전망(차장님수정)	암호1		e	
480	(150118)최○○판사사건후속조치(뇌물수수안)	암호1		e	
481	83_(유실)_10076_[3c2104a]	암호1		e	법원장 1심 복귀 및 원로법관 도입 방안
482	885_(유실)_10801_[3d61a83]	암호1		e	미디어 분야 연구회 신설 추진 전략
483	893_(유실)_10809_[3d93b29]	암호1		e	413 총선 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484	954_(유실)_10864_[3ddb735]	암호3	유실	e	개헌 대응반 1차 회의 결과보고(대외비)
485	1031_(유실)_10933_[3dedd5e]	암호1		e	예상질의 추가 사항
486	1045_(유실)_10947_[3df3e87]	암호1		e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장 후보군
487	1111_(유실)_11009_[3e59829]	암호3	유실	e	개헌 대응반 6차 회의 결과보고(대외비)
488	1192_(유실)_11082_[3e5c2df]	암호5	유실	e	2016년도 기획조정실 심의관 수행 업무, 472
489	1229_(유실)_11116_[3e5ca53]	암호1		e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건의사항 검토
490	1679_(유실)_11525_[3ec0843]	암호5	유실	d	기획조정실 심의관 후보군, 474 [313]
491	1836_(유실)_11672_[3ecb00b]	암호1		e	인사총괄심의관실 작성, 이원화 보도 등 관련 대응방안
492	1938_(유실)_11765_[3ef2742]	암호1		a	(160315)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 [임종현수정]
493	1974_(유실)_11799_[3ef76de]	암호1		e	2016년 법원행정처 등 심의관 인력운용 방안
494	2565_(유실)_12341_[3f1103e]	암호 모름	유실		
495	2566_(유실)_12342_[3f11060]	암호 모름	유실		
496	2567_(유실)_12343_[3f110be]	암호 모름	유실		
497	2568_(유실)_12344_[3f11102]	암호 모름	유실		
498	2569_(유실)_12345_[3f11124]	암호 모름	유실		
499	2603_(유실)_12377_[3f113b6]	암호 모름	유실		
500	2610_(유실)_12383_[3f11473]	암호 모름	유실		
501	2615_(유실)_12388_[3f114b2]	암호 모름	유실		
502	2904_(유실)_12658_[3f18401]	암호1		e	413 총선 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503	3327_(유실)_13046_[3f1e885]	암호 모름	유실		
504	4904_(유실)_1449_[2f49937]	암호1		e	문제 법관에 대한 일반 대책 검토
505	4916_(유실)_1450_[2f499c9]	암호1		e	재판부 갈등 확인 방안
506	5144_(유실)_1471_[2f4a45a]	암호1		e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프로필
507	5155_(유실)_1472_[2f4a662]	암호1		e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프로필
508	7065_(유실)_16520_[410cb7f]	암호 모름	유실		
509	8510_(유실)_17846_[415976d]	암호 모름	유실		
510	8512_(유실)_17848_[41598b4]	암호 모름	유실		
511	8922_(유실)_18225_[41699a5]	암호 모름	유실		
512	8944_(유실)_18245_[416acbc]	암호 모름	유실		
513	9935_(유실)_19155_[41771d2]	암호 모름	유실		
514	9944_(유실)_19163_[4177416]	암호 모름	유실		
515	9947_(유실)_19166_[417743a]	암호 모름	유실		
516	9948_(유실)_19167_[417744b]	암호 모름	유실		
517	9949_(유실)_19168_[4177454]	암호 모름	유실		
518	9950_(유실)_19169_[4177462]	암호 모름	유실		
519	10117_(유실)_19320_[417b13d]	암호 모름	유실		
520	10118_(유실)_19321_[417b143]	암호 모름	유실		
521	10119_(유실)_19322_[417b14e]	암호 모름	유실		
522	12053_(유실)_2109_[31d855e]	암호 모름	유실		
523	12376_(유실)_21395_[41b54c4]	암호 모름	유실		
524	13999_(유실)_22891_[41c7732]	암호 모름	유실		
525	14027_(유실)_22916_[41c7c2a]	암호 모름	유실		
526	14828_(유실)_2365_[31e6f2f]	암호 모름	유실		
527	15005_(유실)_2381_[31e72a6]	암호 모름	유실		
528	15185_(유실)_23983_[41ecd90]	암호 모름	유실		
529	15633_(유실)_24394_[41f04cc]	암호 모름	유실		
530	15750_(유실)_2449_[320194c]	암호5	유실	d	(170124)인사모 관련 검토+1 [박■■■]
531	16504_(유실)_2518_[320c60d]	암호1		e	재판부 갈등 확인 방안
532	16514_(유실)_2519_[320c6a7]	암호1		e	문제 법관에 대한 일반 대책 검토
533	17061_(유실)_25699_[4238869]	암호 모름	유실		
534	17068_(유실)_25704_[423888c]	암호 모름	유실		
535	17069_(유실)_25705_[4238891]	암호 모름	유실		
536	17288_(유실)_25904_[4239a68]	암호 모름	유실		
537	17502_(유실)_2609_[320e7af]	암호1		c	
538	18902_(유실)_27411_[427df26]	암호 모름	유실		
539	18957_(유실)_27461_[427e94f]	암호 모름	유실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540	18958_(유실)_27462_[427e955]	암호 모름	유실		
541	18959_(유실)_27463_[427e9db]	암호 모름	유실		
542	18979_(유실)_27481_[427eab6]	암호 모름	유실		
543	18980_(유실)_27482_[427eabf]	암호 모름	유실		
544	19996_(유실)_2840_[322191e]	암호5	유실	e	재판연구원 증원을 위한 입법추진전략, 460
545	20146_(유실)_2854_[3221dba]	암호1		e	희망 우선 사무분담 지침에 대한 대응논리
546	20290_(유실)_2867_[3222c95]	암호 모름	유실		
547	20827_(유실)_29180_[435bac4]	암호 모름	유실		
548	20828_(유실)_29181_[435bacd]	암호 모름	유실		
549	20829_(유실)_29182_[435bad5]	암호 모름	유실		
550	20830_(유실)_29183_[435badd]	암호 모름	유실		
551	20831_(유실)_29184_[435bae5]	암호 모름	유실		
552	20832_(유실)_29185_[435baed]	암호 모름	유실		
553	20833_(유실)_29186_[435baf5]	암호 모름	유실		
554	20834_(유실)_29187_[435baf d]	암호 모름	유실		
555	20835_(유실)_29188_[435bb05]	암호 모름	유실		
556	20836_(유실)_29189_[435bb0d]	암호 모름	유실		
557	20838_(유실)_29190_[435bb15]	암호 모름	유실		
558	20840_(유실)_29192_[435bb27]	암호 모름	유실		
559	20841_(유실)_29193_[435bb33]	암호 모름	유실		
560	21583_(유실)_2986_[323ff80]	암호1		e	국회 법제실 법제연구과장 면담 결과
561	22641_(유실)_3082_[3249333]	암호1		a	(1603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인사)
562	22652_(유실)_3083_[324945d]	암호1		a	(160315)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 [임종현수정]
563	24262_(유실)_32304_[44993f8]	암호 모름	유실		
564	24389_(유실)_3241_[32c4b26]	암호1		e	사무분담 대응논리 검토
565	25276_(유실)_3323_[33029bb]	암호1		e	정운호 사건 관련 대응방안
566	25360_(유실)_3335_[33120eb]	암호1		b	
567	25371_(유실)_3336_[3312c35]	암호1		b	
568	25579_(유실)_33560_[44b9498]	암호 모름	유실		
569	25580_(유실)_33561_[44b94aa]	암호 모름	유실		
570	25679_(유실)_33655_[44bd0c0]	암호 모름	유실		
571	25680_(유실)_33656_[44bd0ca]	암호 모름	유실		
572	25764_(유실)_3373_[3337ab2]	암호3	유실	e	권한쟁의사건에서 부수적 규범통제의 문제점(대외비) 2016. 2. 23.
573	25872_(유실)_3383_[333a498]	암호1		b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574	25964_(유실)_33923_[44c25dc]	암호 모름	유실		
575	25982_(유실)_3393_[333f90f]	암호1		e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위원회 설립 및 운영방안
576	26037_(유실)_3398_[33405d9]	암호1		a	(160315)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 방안검토 [임종현수정]
577	26081_(유실)_3402_[33406f0]	암호1		a	(160324)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현안관련검토[정◆◆]
578	26082_(유실)_34030_[44c6199]	암호 모름	유실		
579	26236_(유실)_3416_[3340859]	암호 모름	유실		
580	26567_(유실)_3446_[335800d]	암호1		e	413 총선 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581	26578_(유실)_3447_[33580f2]	암호1		e	권한쟁의사건에서 부수적 규범통제의 문제점
582	26589_(유실)_3448_[3358166]	암호1		e	20대 총선 이후 주요 상황 보고
583	26698_(유실)_3458_[3358727]	암호3	유실	e	권한쟁의사건에서 부수적 규범통제의 문제점(대외비) 2016. 2. 23.
584	26797_(유실)_3467_[335a7ae]	암호1		a	(1603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인사)
585	26808_(유실)_3468_[335a8d8]	암호1		b	성완중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방향 검토
586	26942_(유실)_3480_[335ae36]	암호1		a	(160315)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 방안검토 [임종현수정]
587	27604_(유실)_3540_[3367ed1]	암호1		e	현안 관련 제도 개선방안 준비 계획
588	27637_(유실)_3543_[336802e]	암호1		e	정운호 사건 관련 제도 개선 방안
589	27670_(유실)_3546_[33681a8]	암호1		e	홍보 자원의 수요 예측, 확보 및 죄적 배치 방안
590	27868_(유실)_3564_[336abc4]	암호1		e	정운호 사건 관련 제도 개선 방안
591	27878_(유실)_3565_[336ad0b]	암호1		e	정운호 사건 관련 제도 개선 방안
592	27889_(유실)_3566_[336adf8]	암호1		e	정운호 사건 관련 제도 개선 방안
593	27998_(유실)_3576_[336bd9b]	암호1		e	서울중앙 단독판사회 연구반 개요 -가칭 충실한 재판연구반-
594	31870_(유실)_39330_[46e6f8e]	암호 모름	유실		
595	39763_(유실)_46558_[483456b]	암호 모름	유실		
596	39764_(유실)_46559_[483458a]	암호 모름	유실		
597	39766_(유실)_46560_[48345a6]	암호 모름	유실		
598	39768_(유실)_46562_[48345c9]	암호 모름	유실		
599	39769_(유실)_46563_[4834600]	암호 모름	유실		
600	41606_(유실)_48252_[494e501]	암호1		e	사법개혁 대비 tft 대비 최종보고서
601	41607_(유실)_48253_[494e60c]	암호1		e	사법개혁 대비 tft 대비 최종보고서
602	41608_(유실)_48254_[494e6e5]	암호1		e	사법개혁 대비 tft 대비 최종보고서
603	41654_(유실)_48296_[494f45c]	암호1		e	2013년 사법발전 추진 및 관련 논의 대응전략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604	43392_(유실)_49893_[49b02ad]	암호1		e	2013년 사법발전 추진 및 관련 논의 대응전략
605	44104_(유실)_50543_[4a6273c]	암호 모름	유실		
606	44105_(유실)_50544_[4a637b0]	암호 모름	유실		
607	44106_(유실)_50545_[4a64037]	암호 모름	유실		
608	44107_(유실)_50546_[4a64959]	암호 모름	유실		
609	44112_(유실)_50550_[4a67cb7]	암호 모름	유실		
610	44113_(유실)_50551_[4a69634]	암호 모름	유실		
611	44114_(유실)_50552_[4a6aaa2]	암호 모름	유실		
612	44835_(유실)_51265_[4a99c0b]	암호1		e	2013년 사법발전 TFT
613	45711_(유실)_52097_[4ab0f7c]	암호 모름	유실		
614	46049_(유실)_52403_[4ae34a7]	암호 모름	유실		
615	46293_(유실)_52628_[4aeed4d]	암호 모름	유실		
616	46294_(유실)_52629_[4aeed8d]	암호 모름	유실		
617	46296_(유실)_52630_[4aeed90]	암호 모름	유실		
618	46297_(유실)_52631_[4aeef6b]	암호 모름	유실		
619	46298_(유실)_52632_[4aeef6e]	암호 모름	유실		
620	46304_(유실)_52638_[4aef2f6]	암호 모름	유실		
621	46305_(유실)_52639_[4aef404]	암호 모름	유실		
622	46307_(유실)_52640_[4aef682]	암호 모름	유실		
623	46308_(유실)_52641_[4aef9cf]	암호 모름	유실		
624	46314_(유실)_52647_[4aefee2]	암호1		e	2013년 사법발전 추진 TFT 운영 계획
625	46315_(유실)_52648_[4aefee8]	암호1		e	최근 주요 이슈 점검 등 (121226)
626	46316_(유실)_52649_[4aefeed]	암호1		e	2013년 사법발전 TFT 1차 회의 결과 보고
627	46318_(유실)_52650_[4aeef5]	암호1		e	당선자 공약사항 점검 및 대응 방안
628	46319_(유실)_52651_[4aef01]	암호1		e	당선자 공약사항 점검 및 대응 방안
629	46320_(유실)_52652_[4aef0b]	암호1		e	사법발전 TFT 정책추진 사항 점검
630	46321_(유실)_52653_[4aef2b]	암호1		e	사법정책 과제 중 2013년 초기 시행과제
631	46322_(유실)_52654_[4aef34]	암호1		e	사법정책 과제 중 2013년 초기 시행과제
632	46323_(유실)_52655_[4aef3b]	암호1		e	사법발전 TFT 정책추진 사항 점검
633	46324_(유실)_52656_[4aef5f]	암호1		e	최근 주요 이슈 점검 등 (121226)
634	46327_(유실)_52659_[4aefb0]	암호1		e	최근 주요 이슈 점검 등 (130101)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635	46329_(유실)_52660_[4af0080]	암호1		e	사법발전 TFT 정책추진 방안 및 추진 사항 점검
636	46331_(유실)_52662_[4af0186]	암호1		e	당선자 공약사항 점검 및 대응 방안
637	46332_(유실)_52663_[4af0192]	암호1		e	사법발전 TFT 정책추진 방안 및 추진 사항 점검
638	46333_(유실)_52664_[4af01b6]	암호1		e	사법정책 과제 중 2013년 초기 시행과제
639	46335_(유실)_52666_[4af02c5]	암호1		e	2013년 초기 시행 가능한 정책 과제(요약)
640	46348_(유실)_52678_[4af135b]	암호1		e	정권교체기 사법개혁 논의 대응 TFT 운영 계획
641	46349_(유실)_52679_[4af139b]	암호1		e	2013년 사법발전 TFT 1차 회의 결과 보고
642	46351_(유실)_52680_[4af13a0]	암호1		e	검토 대상 주제(형사)
643	46352_(유실)_52681_[4af13a5]	암호1		e	검토 대상 주제(민사, 가사)
644	46353_(유실)_52682_[4af13a9]	암호1		e	사법개혁 2013
645	46354_(유실)_52683_[4af13ac]	암호1		e	사법개혁 대응 TFT 2차 회의결과 보고
646	46355_(유실)_52684_[4af13b6]	암호1		e	후보 공약 관련 검토
647	46356_(유실)_52685_[4af13be]	암호1		e	사법개혁 대응 TFT 2차 최종결과 보고
648	46357_(유실)_52686_[4af13c1]	암호1		e	대선후보 검찰개혁안과 주요 시사점
649	46358_(유실)_52687_[4af13fc]	암호1		e	검토주제(보충)
650	46359_(유실)_52688_[4af1472]	암호1		e	검토 대상 주제(민사, 가사)
651	46360_(유실)_52689_[4af1478]	암호1		e	검토 대상 주제(형사)
652	46362_(유실)_52690_[4af1484]	암호1		e	사법개혁 2013
653	46363_(유실)_52691_[4af1488]	암호1		e	사법신뢰 제고방안(투명한 법원)
654	46364_(유실)_52692_[4af14fa]	암호1		e	치료사법(문제해결법원)
655	46367_(유실)_52695_[4af1587]	암호1		e	사법개혁 대응 TFT 3차 회의결과 보고
656	46368_(유실)_52696_[4af1595]	암호1		e	행정소송법 개정 등
657	46369_(유실)_52697_[4af15ad]	암호1		e	가석방의 투명성 확보
658	46370_(유실)_52698_[4af15b1]	암호1		e	민사배심 제도 도입 등
659	46371_(유실)_52699_[4af15be]	암호1		e	사법개혁 대응 TFT 4차 회의결과 보고
660	46374_(유실)_52700_[4af15c5]	암호1		e	공적변호사제도유보등
661	46375_(유실)_52701_[4af15d0]	암호1		e	의무적국민참여재판도입
662	46376_(유실)_52702_[4af15d7]	암호1		e	2013년 사법발전 추진 및 관련 논의 대응전략
663	46377_(유실)_52703_[4af15e0]	암호1		e	사법개혁 대응 TFT 5차 회의결과 보고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664	46378_(유실)_52704_[4af15f2]	암호1		e	사법개혁 대응 TFT 최종보고서
665	46379_(유실)_52705_[4af15f7]	암호1		e	사법개혁 대응 TFT상세보고서 목차
666	46380_(유실)_52706_[4af160c]	암호1		e	사법발전TFT 최종보고서
667	46381_(유실)_52707_[4af1659]	암호1		e	사법개혁 대응 TFT 최종보고서
668	46382_(유실)_52708_[4af1670]	암호1		e	사법개혁 대응 TFT 최종보고서 (사법정책 부분)
669	46383_(유실)_52709_[4af1688]	암호1		e	사법개혁 대응 TFT 상세보고서
670	46385_(유실)_52710_[4af169c]	암호1		e	사법개혁 대응 TFT(정책) 상세 보고서
671	46386_(유실)_52711_[4af1707]	암호1		e	사법개혁 대응 TFT 최종보고서 (사법행정 부분)
672	46387_(유실)_52712_[4af1772]	암호1		e	2013년 사법발전 TFT
673	46388_(유실)_52713_[4af1878]	암호1		e	2013년 사법발전 TFT
674	46389_(유실)_52714_[4af1c34]	암호1		e	약물법원
675	46390_(유실)_52715_[4af1e0f]	암호1		e	사법개혁 대응 TFT 최종보고서 (사법행정 부분)
676	46391_(유실)_52716_[4af1e17]	암호1		e	사법개혁 대응 TFT 최종보고서 (사법행정 부분)
677	46392_(유실)_52717_[4af1ef0]	암호1		e	사법개혁 대응 TFT 최종보고서 (사법행정 부분)
678	47790_(유실)_54007_[4b10ba3]	암호 모름	유실		
679	47791_(유실)_54008_[4b10c7e]	암호 모름	유실		
680	48963_(유실)_55212_[4b699b1]	암호 모름	유실		
681	49482_(유실)_55695_[4ba7bce]	암호 모름	유실		
682	52254_(유실)_58295_[4c8c779]	암호 모름	유실		
683	52268_(유실)_58307_[4c8ce15]	암호 모름	유실		
684	53644_(유실)_6917_[379a8b9]	암호1		e	연고관계에기한선임사건재배당
685	53645_(유실)_6918_[379aa55]	암호1		e	연고관계에기한선임사건재배당
686	53646_(유실)_6919_[379ab2a]	암호1		e	연고관계에기한선임사건재배당
687	53648_(유실)_6920_[379ad35]	암호1		e	연고관계에 기한 선임 사건 재 배당 전면 시행방안
688	53652_(유실)_6924_[379cbfb]	암호1		e	대법원 사건 배당절차 개선방안
689	53659_(유실)_6930_[37aa84b]	암호1		e	제도개선 방안
690	53710_(유실)_6979_[37ade77]	암호1		e	전관예우 논란 관련 대법원 신 뢰제고 방안
691	53712_(유실)_6980_[37adf20]	암호1		e	전관예우 논란 관련 대법원 신 뢰제고 방안
692	53718_(유실)_6986_[37adfb6]	암호1		e	제도개선 방안 추진계획
693	53760_(유실)_7022_[37b06a6]	암호1		a	(160407)전문분야연구회일반개 편방안[박■■■]
694	53893_(유실)_7143_[37d06f4]	암호1		e	제20대 국회 개헌논의 예상보고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695	53894_(유실)_7144_[37d1ec1]	암호1		e	제18대, 19대 개헌논의 요약보고
696	53975_(유실)_7218_[37d60c7]	암호3	유실	e	전화 녹음 시행 방안 검토 2016. 6. 8. 195
697	54239_(유실)_7458_[37de67c]	암호1		e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선방안 검토
698	54333_(유실)_7542_[385cdfb]	암호3	유실	e	헌법대응반 업무분장(대외비) 2016. 6. 27. 435
699	54689_(유실)_7868_[387d9d8]	암호1		e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위원회 설립 및 운영방안
700	54698_(유실)_7876_[38810cb]	암호1		e	예상질의, 주요 현안 추가여부 검토 필요사항
701	54718_(유실)_7894_[38815b3]	암호3	유실	e	이슈와 논점' 관련 보고(대외비) 2016. 11. / 현재소장 임기 관련
702	55379_(유실)_8490_[38ba990]	암호1		e	최○○ 판사 사건 관련 대응방안
703	55816_(유실)_8889_[38c98da]	암호1		e	연고관계에 기한 선임사건 재배 당 전면 시행방안
704	55818_(유실)_8890_[38c994a]	암호1		e	정운호 사건 관련 제고 개선방안
705	55828_(유실)_889_[2f0f03b]	암호1		e	심의관 프로필
706	55849_(유실)_8918_[38cd17a]	암호1		e	법원장 1심 복귀 및 원로법관 도입 방안
707	55905_(유실)_896_[2f0f2b8]	암호 모름	유실		
708	55910_(유실)_8974_[38d2cf1]	암호1		e	현안관련 대응방안(김○○ 부장 관련)
709	56002_(유실)_905_[2f0fa37]	암호 모름	유실		
710	56013_(유실)_906_[2f0fac3]	암호 모름	유실		
711	56024_(유실)_907_[2f0fb48]	암호 모름	유실		
712	56035_(유실)_908_[2f0ff18]	암호 모름	유실		
713	56041_(유실)_9095_[38fe659]	암호1		e	법관윤리 제고를 위한 제도 개 선방안
714	56054_(유실)_9106_[38ffaf3]	암호1		e	법관윤리 제고를 위한 제도 개 선방안
715	56058_(유실)_910_[2f0ff75]	암호 모름	유실		
716	56077_(유실)_9127_[3902359]	암호1		e	법관윤리 제고를 위한 제도 개 선방안
717	56080_(유실)_912_[2f0ff96]	암호 모름	유실		
718	56091_(유실)_913_[2f10008]	암호 모름	유실		
719	56094_(유실)_9142_[3905e45]	암호1		e	최○○ 판사 사건 관련 대응방안
720	56124_(유실)_916_[2f100d4]	암호 모름	유실		
721	56165_(유실)_9206_[3907a21]	암호 모름	유실		
722	56167_(유실)_9208_[3907c4e]	암호 모름	유실		
723	56168_(유실)_9209_[3907efa]	암호 모름	유실		
724	56170_(유실)_9210_[390865f]	암호 모름	유실		
725	56171_(유실)_9211_[3908b48]	암호 모름	유실		

순번	파일명	암호	유실 여부 (암호 모름)	중요도	문서 내용
726	56172_(유실)_9212_[390916f]	암호 모름	유실		
727	56176_(유실)_9216_[3910049]	암호4	유실	e	2016. 9. 국정감사 예상 질의 답변 자료 I (주요 현안)
728	56178_(유실)_9218_[3910623]	암호4	유실	e	2016. 9. 국정감사 예상 질의 답변 자료 II (각 실국)
729	56251_(유실)_9284_[3921078]	암호1		e	상시 예방활동 강화방안
730	56268_(유실)_929_[2f119d1]	암호 모름	유실		
731	56280_(유실)_930_[2f11ac9]	암호 모름	유실		
732	56291_(유실)_931_[2f11b38]	암호 모름	유실		
733	56302_(유실)_932_[2f11ba4]	암호 모름	유실		
734	56330_(유실)_9355_[392c043]	암호1		e	20대 총선 이후 주요 상황 보고
735	56480_(유실)_9493_[3abf7bc]	암호 모름	유실		
736	56483_(유실)_9496_[3abfa71]	암호1		e	현재소장 임기연장 법안 관련 보고
737	56515_(유실)_9524_[3bd80ee]	암호 모름	유실		
738	56517_(유실)_9526_[3bd8681]	암호 모름	유실		
739	56547_(유실)_9553_[3bdc3c5]	암호 모름	유실		
740	56548_(유실)_9554_[3bdc983]	암호 모름	유실		
741	56638_(유실)_963_[2f123ae]	암호 모름	유실		
742	56649_(유실)_964_[2f12425]	암호 모름	유실		
743	56660_(유실)_965_[2f124a0]	암호 모름	유실		
744	56671_(유실)_966_[2f12804]	암호 모름	유실		
745	56674_(유실)_9672_[3bf47d8]	암호 모름	유실		
746	56701_(유실)_9697_[3bf621f]	암호3	유실	e	현재소장 임기연장 법관 관련 보 고(대외비) 2016. 10.
747	56703_(유실)_9699_[3bf6235]	암호3	유실	e	현재소장 임기연장 법관 관련 보고(대외비) 2016. 9. 30.
748	56773_(유실)_9761_[3bfd4e6]	암호1		a	(160407)전문분야연구회일반기 편방안[박■■■]
749	56832_(유실)_9815_[3c0be5c]	암호 모름	유실		
750	56839_(유실)_9821_[3c0c27c]	암호 모름	유실		
751	56903_(유실)_9880_[3c11b5a]	암호 모름	유실		
752	56911_(유실)_9888_[3c12213]	암호1		e	사법발전 TFT 정책추진 방안 및 추진 사항 점검
753	56928_(유실)_9902_[3c14229]	암호3	유실	e	개헌 대응반 5차 회의 결과보고 (대외비) 2016. 12. 473 추정
754	입법%5B규제%5D영향분석+모형+및+지침+개 발에+관한+연구_홍완식.pdf	암호1			
755	사회적+비용을+고려한+SOC의+비용%2C효과 분석%28항공분야를+중심으로%29_(1).pdf	암호1			
756	\$FK7YX00.pdf	암호 모름	유실		
757	중장기+재정수요+전망시스템+구축+및+분 야별+재정수요+예측에+관한+연구.pdf	암호1			